202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

총 괄
부 처 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http://budget.na.go.kr

CONTENTS

총 괄

Ⅰ. 개 관

1. 편성 배경 ····· 3
2. 주요 내용 및 세부구성 ····· 9

Ⅱ. 주요 검토사항

1. 재정총량 변동 및 재정건전성 ····· 26
2. 추경안의 재원 ····· 33
3. 추경안 규모의 적정성 ····· 39
4. 2025년도 예산 집행 계획 및 1분기 집행 실적 ····· 42

Ⅲ. 유형별 검토

1. 개요 ····· 47
2. 재해·재난 대응 ····· 48
3. 통상·AI 지원 ····· 53
4. 민생지원 ····· 60

부 처 별

정무위원회

❖ 금융위원회

Ⅰ. 개 관

1.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69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 71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 72
1.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한시특례보증): 특례보증 공급 시 리스크 관리 및 공급편중 문제 해소방안 마련 필요 ····· 72
2.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설비투자지원특별프로그램): 조속한 현물출자 병행을 통한 저리대출 적기 공급 검토 필요 ····· 78
3. 산업은행 출자(관세대응저리지원특별프로그램): 지원대상의 명확화 및 향후 자체재원을 통한 저리대출 지원 필요 ····· 83
4.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기업구조혁신펀드): 기업구조조정에 선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신속투자 방안 마련 필요 ····· 87

기획재정위원회

❖ 기획재정부

Ⅰ. 개 관

1.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 95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 98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 99
1. 예비비: 당해연도 예비비 집행내역 공개 필요 ····· 99
2. 한국수출입은행 출자(금융시장 안정화): 위기 대응을 위해 출자를 반복하는 사업방식에 대한 검토 필요 ····· 102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지 출> ····· 107
3. 국고채이자상환(개인투자용국채포함): 최근 국고채 금리 수준 및 통화정책 방향을 고려한 검토 필요 ····· 10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Ⅰ. 개 관

1.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 113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 116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World Best LLM 프로젝트: 구체적인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통합 검토 필요 ····· 118

【일반회계】

<세 출> ····· 124
2. AI컴퓨팅자원활용기반강화: GPU 서버 확충 및 통합운영환경 구축을 수행할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마련 필요 등 ····· 124
3. 최고급 AI해외인재 유치지원(R&D): 조속한 연구개발기관 선정을 통한 연내 예산 집행 필요 등 ····· 131
4. AI 국가대표 양성(InnoCORE): 박사후연구원 실적평가 시 다른 연구개발과제 참여실적 고려 필요 등 ····· 134

【정보통신진흥기금】

<지　출> ····· 138

5. AI 혁신펀드: 자펀드 운용사의 연내 조합 결성 및 투자 개시를 위한 노력 필요 ····· 138

6. 고성능컴퓨터지원: NPU 수요 확대 노력 필요 등 ····· 142

외교통일위원회

❖ 외교부

Ⅰ. 개　관

1.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149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 151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 152

1. 2025 APEC 의장국 운영: 시설물 적기 구축을 위한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 152

행정안전위원회

❖ 행정안전부

Ⅰ. 개 관

1.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161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 163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 164
1. 재난대책비 지원: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 16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 출> ····· 168
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 168

❖ 소방청

Ⅰ. 개 관

1.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172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 174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산불 진화 장비 도입: 철저한 사업일정 관리를 통한 적기 장비 도입 필요 ····· 17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Ⅰ. 개 관

1.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185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 188

Ⅱ. 사업별 검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

<세 출> ····· 189
1.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공공배달앱 진단·분석 필요 ····· 189
2. 농축산물 할인지원: 면밀한 사업설계 및 집행계획 수립 필요 ····· 194

❖ 산림청

Ⅰ. 개 관

1.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197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 200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 201
1. 산림재해대책비: 산림재난피해 복구상황의 면밀한 점검 및 예산집행의 철저한 관리 필요 ····· 201
2. 긴급벌채: 산림재해대책비(2331-300)로 이관편성 필요 ····· 206
3. 산림헬기 도입·운영: 국산 헬기 도입 우선적 고려 및 헬기·부품 공급선 다변화 필요 ····· 209
4. 산불방지대책: 산불진화장비 도입 시 충분한 사전검토 필요 ····· 21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원계정)】

<세 출> ····· 219
5. 임도시설: 충분한 사전 검토 후 임도확충 필요 ····· 219

❖ 해양수산부

Ⅰ. 개 관

1.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23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 226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 227

1. 구명조끼 보급 한시지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면밀한 집행계획 수립 필요 등 ····· 227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

<세 출> ····· 232

2.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객관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사업 추진 필요 등 ····· 23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Ⅰ. 개 관

1. 추가경정예산안 ····· 241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 244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 245

1.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 향후 협상 진행 상황에 따른 관세대응 바우처 세부유형 재설계 필요 등 ····· 245
2.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지원: 국비 지원비율 상향에 따른 증액 예산의 이월방지 노력 필요 ····· 253
3.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지원: 기평비 규모조정 및 주민 갈등 등 외부변수에 대한 면밀한 사전조율 필요 ····· 260
4. 소부장 공급망 안정종합지원: 보조금이 중복지원되지 않도록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 264
5. 무역보험기금 출연: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필요 등 ····· 268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 출> ····· 277

6.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 핵심광물 수급 상황을 고려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비축자원의 철저한 사후관리 필요 ····· 27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 출> ····· 283

7. 산업단지환경조성: AX 실증산단 구축비가 이월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등 ····· 283

❖ 중소벤처기업부

Ⅰ. 개 관

1.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 290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 293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 295

1. 신용보증기금 출연: 지원대상 선정기준 명확화 및 '위기대응 특례보증 대위변제' 세부사업의 별도 편성 검토 필요 ····· 295

2. 수출지원기반활용: 신속 지원을 통한 통상장벽 해소 노력 제고 및 집행관리 철저 필요 ····· 299

【중소벤처기업진흥기금】

<지 출> ····· 306

3.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융자): 저리대출의 지원대상 명확화 필요 ····· 306

4. 수출기업글로벌화: 신속한 자금 지원 및 리스크 관리 병행 필요 ····· 310

5.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증액 규모의 적정성 검토 및 리스크 관리 필요 ····· 314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지 출> ····· 320

6.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연내 집행 가능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등 ····· 320

7.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 지원대상의 적정성 검토 및 지원목적 외 사용제한의 검증 방안 마련 필요 ····· 327
8. 상생페이백: 행정비용 발생 등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등 ····· 331
9. 온누리상품권 발행: 당초 계획 편성과 달리 사업의 임의 변경 지양 필요 ····· 336
10. 희망리턴패키지: 지방자치단체 유사 폐업지원 사업과의 연계 및 사업 관리 강화 필요 ····· 340

환경노동위원회

❖ 환경부

Ⅰ. 개 관

1.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349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 352

Ⅱ. 사업별 검토

【환경개선특별회계】

<세 출> ····· 353
1. 재해대책비: 조속히 피해복구 계획을 확정하여 신속한 집행 필요 ····· 353
2. 국립공원공단 출연: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신속한 집행 필요 ····· 35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 출> ····· 362

3. 하수관로 정비: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등 ····· 362

❖ 고용노동부

Ⅰ. 개 관

1.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 368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 371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 373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연내 집행 가능성 제고를 위한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등 ····· 373

【고용보험기금(고용안정 · 직업능력계정)】

<지 출> ····· 381

2. 고용유지지원금: 연내 집행 가능성 제고 및 사업주 대상 안내 교육 강화 필요 ····· 381

【근로복지진흥기금(신용보증사업계정)】

<지 출> ····· 387

3. 신용보증대위변제: 구상채권 회수율 개선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387

【근로복지진흥기금(중소복지계정)】

<지 출> ····· 394

4. 생활안정자금(융자): 특정 직종으로 융자가 편중되는 문제 개선 필요 ····· 394

【임금채권보장기금】

<지 출> ····· 401

5. 대지급금 지급: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와 연계한 기금건전성 강화 방안 검토 필요 ····· 401

국토교통위원회

❖ 국토교통부

Ⅰ. 개 관

1.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 413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 416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 417

1. 국토안전관리원 출연: 지반탐사방식 다양화 필요 ····· 417

2. 지반탐사 지원: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지원 필요 ····· 421

3.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신속한 예산 집행 방안 마련 필요 ····· 424

【교통시설특별회계(공항계정)】

<세 출> ····· 427

4. 일반공항 시설 관리: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 설치대상 공항의 적정성 검토 필요 ····· 427

5. 방위각시설 개선: 사업추진방식 변경 고려 필요 ····· 433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

<세 출> ····· 436

6. 도로유지보수: 타 사업으로 전용 및 이월·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철저한 집행 관리 필요 ····· 43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 출> ····· 439

7. 특별재생사업: 특별재생계획 수립 기간을 고려하여 신속한 집행 방안 마련 필요 ····· 439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

<지 출> ····· 441

8. 다가구매입출자·융자: 원활한 공급을 위한 신속 집행 방안 마련 필요 등 ····· 441

9. 재해주택복구자금(융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지원 기준 보완 필요 ····· 44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 총 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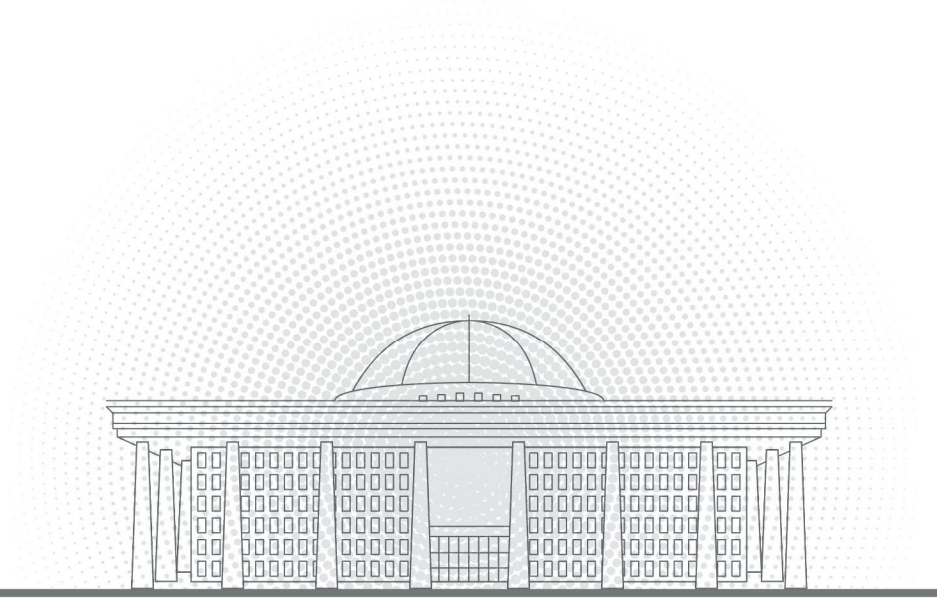

총 괄

Ⅰ. 개 관

1. 편성 배경

가. 편성이유

정부는 2025년 3월에 발생한 산불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포함한 재해·재난 대응, 통상 위기 대응, 인공지능(이하 "AI"라 함) 등 첨단 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내수 회복 지연에 따른 민생지원을 위하여 총 12.2조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추경안"이라 함)을 2025년 4월 21일 국회에 제출하였음.

추경안 편성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이번 산불은 건조한 날씨 속에 강풍의 영향으로 경북, 경남, 울산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였으며 3월 21일 최초 발생하여 3월 30일에 진화가 완료되었음. 행정안전부는 3월 22일 경북·경남·울산지역에 재난사태를 선포하였고, 산림청은 3월 22일 충청·영남·호남 지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발령하고, 3월 25일 전국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하였음.

또한, 정부는 이번 산불과 관련하여 3월 22일 경남 산청군, 24일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 27일 경북 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등 총 8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음. 2000년 이후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례는 이번을 포함하여 총 6차례임.

이번 산불의 피해규모를 살펴보면, 산림청이 발표한 잠정 산불피해구역은 총 103,876ha이며, 인명피해는 총 83명(사망 31명, 부상 52명)임. 과거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된 산불 중 2000년 산불의 피해면적이 23,794ha로 가장 넓었으며, 2023년 산불의 인명피해가

문의 : 양창석 예산결산조사관 ycs82@assembly.go.kr (02-6788-5684)
정원철 예산결산조사관 jungwc@asesembly.go.kr (02-6788-5679)

35명(사망 1명, 부상 34명)으로 가장 많았던바, 이번 산불의 피해규모가 역대 가장 심각한 수준임.

[2000년 이후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산불 및 피해내역]

(단위: ha, 명)

산불명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산불 발생기간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피해내역	
			피해면적	인명피해 (사망자수)
동해안 산불 (강원 고성, 강릉, 동해, 삼척)	'00.4.7.~15.	'00.4.17.	23,794	17(2)
양양 산불 (강원 양양)	'05.4.4.~6.	'05.4.7.	973	-
강원 동해안 일원 산불 (강원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	'19.4.4.	'19.4.6.	2,832	3(2)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 (경북 울진, 삼척, 강원 강릉, 동해)	'22.3.4~13.	'22.3.6.	20,523	-
	'22.3.5~8.	'22.3.8.		
2023년 4월 산불 (경북 영주, 충남 금산, 당진, 보령, 부여, 대전 서구, 충북 옥천, 전남 순천, 함평, 강원 강릉)	'23.4.2.~4.	'23.4.5.	3,723	35(1)
	'23.4.11.	'23.4.12.		
경북·경남·울산 산불 (경남 산청, 하동, 경북 안동, 영덕, 영양, 의성, 청송, 울산 울주)	'25.3.21.~30.	'25.3.22./24./27.	103,876	83(31)

주) 2025년 산불 피해면적은 잠정치임.
자료: 산림청 자료를 재작성

다음으로,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와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승함에 따라 대외 경제 여건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음.

미국은 2025년 4월 5일부터 대부분의 국가에게 10%의 상호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철강·알루미늄 및 자동차에 대해서는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 중임. 또한, 60개국의 경우 국가별 별도의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하였으나, 4월 10일부터 90일간의 유예 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상황임. 한국에 대해서는 25%의 상호관세 부과가 예고되어 있어 향후 수출 여건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음.

또한 대내적으로는 물가안정, 금리인하 등으로 인해 2024년 하반기 이후 소비 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경제심리 위축으로 인해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살펴보면, 2022년 5.1% 2023년 3.6%였던 상승률이 2024년에는 2.3%로 안정되었고, 2025년에 들어서도 월별로 전년동월 대비 2.0~2.2%의 안정된 추세를 보이고 있음. 또한, 한국은행은 2023년 1월 이후 3.5%였던 기준금리를 2024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0.25%p씩 인하하여 2025년 2월 이후 2.75%를 유지하고 있음.

[전년동기 대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현황]

(단위: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1월	2월	3월
CPI상승률	2.5	5.1	3.6	2.3	2.2	2.0	2.1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및「월별 소비자물가 등락률」을 바탕으로 재작성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경 내역]

(단위: %, %p)

변경일자		기준금리	직전 대비 조정치
연도	월일		
2023	1월 13일	3.50	0.25
2024	10월 11일	3.25	△0.25
	11월 28일	3.00	△0.25
2025	2월 25일	2.75	△0.25

자료: 한국은행 발표자료로 재작성

다만, 이와 같은 소비 여건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경제심리는 2024년말 이후 여전히 위축된 상황임. 한국은행의 경제심리지수(ESI)는 2024년 12월 83.3으로 전월 대비 9.7포인트 급락하였으며, 이후 2025년 2월에는 90.2로 일시적 회복세를 보였으나 3월에는 다시 87.2로 하락하였음.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2024년 6월부터 100 이상을 기록하며 긍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2024년 12월 88.2로 급락한 이후 2025년 3월 93.4로 여전히 비관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음. 기업심리지수(CBSI)의 경우 2024년 4월부터 11월까지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12월 87.3 이후 80대로 하락하여 2025년 3월까지도 86.7에 머물러 회복이 지연되고 있음.

[경제심리 관련 지수 변동 추이]

구분	2024년도												2025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경제심리지수	91.8	93.7	92.5	94.8	94.1	95.0	96.3	94.5	94.0	92.8	93.0	83.3	86.7	90.2	87.2
소비자심리지수	101.6	101.9	100.7	100.7	98.4	100.9	103.7	100.8	100.0	101.8	100.7	88.2	91.2	95.2	93.4
기업심리지수	89.8	88.2	89.8	91.7	93.3	96.0	95.5	92.8	91.6	92.5	91.8	87.3	85.9	85.3	86.7

자료: 한국은행 발표자료로 재작성

이런 대내외적 불확실성은 한국의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최근 주요 국제기구 및 국내기관 모두 2025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음. OECD는 2025년 3월 무역장벽 강화, 정책적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인해 전세계 경제성장률을 3.1%로 기존 전망 대비 △0.2%p 하향 조정하면서,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은 기존 2.1%에서 1.5%로 하향 조정하였음. 또한 IMF(2.0%→1.0%), ADB(2.0%→1.5%), AMRO(1.9%→1.6%) 등의 국제기구 및 정부(2.2%→1.8%), 한국은행(1.9%→1.5%), 국회예산정책처(2.2%→1.5%), KDI(2.0%→1.6%) 등 국내기관들도 일제히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였음.

[2025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조정 현황]

(단위: %, %p)

구분		조정 전(A)	조정 후(B)	조정치(B-A)
국제기구	OECD	2.1 (2024.12.)	1.5 (2025.3.)	△0.6
	IMF	2.0 (2025.1.)	1.0 (2025.4.)	△1.0
	ADB	2.0 (2024.12.)	1.5 (2025.4.)	△0.5
	AMRO	1.9 (2024.12.)	1.6 (2025.3.)	△0.3
정부 및 국내기관	정부	2.2 (2024.7.)	1.8 (2025.1.)	△0.4
	한국은행	1.9 (2024.11.)	1.5 (2025.2.)	△0.4
	국회예산정책처	2.2 (2024.10.)	1.5 (2025.4.)	△0.7
	KDI	2.0 (2024.11.)	1.6 (2025.2.)	△0.4

자료: 각 기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마지막으로, AI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국제 경쟁이 한층 격화되고 있음. 2022년 대화형 AI 서비스인 ChatGPT의 출시 이후, 거대 정보기술기업(Big Tech)을 중심으로 AI 기술개발이 진행되어 왔으나, 2024년 12월 중국의 Deepseek가 저비용·고성능의 AI 언어모형 구현에 성공하면서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가속화되고, 기술활용 범위도 확대되는 추세임. 미국, EU, 프랑스 등 주요국들은 수백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 유치[1]를 발표하는 등 AI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도 심화되고 있음.

1) (미국) ‘스타게이트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에 약 730조원 투자, (유럽연합) ‘AI기가 팩토리 사업’ 포함 약 300조원 투자, (프랑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에 163조원 투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2.20. 보도참고자료 “인공지능컴퓨팅 기반 확충을 통한 국가 인공지능 역량 강화로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실현”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정부는 신속한 재해·재난 대응, 통상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 AI·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 내수 부진에 따른 어려운 민생 경제 지원 등을 위하여 추경안을 제출하였다는 입장임.

나. 편성요건

「국가재정법」은 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②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추경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2)]

법령상 명시된 요건 외에도 추경안 제도의 취지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이론적으로 추경안 편성 시 목적적합성, 예측불가능성, 보충성, 시급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음.

대내외 경제 위기상황 및 산불 피해, 내수 부진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추경안은 「국가재정법」상 편성요건에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산불은 피해 규모가 매우 크며, 신속한 복구가 절실한 상황임. 또한 내수 회복 지연, 미국의 관세정책 시행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확대,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국제 경쟁 심화 등 대내외 여건의 급격한 변화가 동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미국의 관세정책은 아직 초기 시행 단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국의 경제성장률 등 주요 경제지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를 감안할 때 이번 추경안은 전반적으로 「국가재정법」상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전반적인 추경안 편성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음.

---

2)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첫째, 추경안은 차년도 예산으로 편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편성되는데, 일부 사업의 경우 여건상 즉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의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은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저조하고, 신청 후 보조금 지급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며, ‘특별재생사업’은 특별재생계획 수립에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나 아직 피해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 또한 행정안전부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 사업’의 경우 추경안이 편성된 16개 사업 중 11개 사업이 2025년도 신규사업이거나 공사 착공 전 단계에 머물러 있음.

둘째, 추경안이 제한된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에 대한 명확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나, 일부 사업은 지원대상이 불분명하거나 사업방식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의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사업’은 지원대상이 ‘미국 관세 품목업종 및 대미 수출 중소기업’으로 이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사업’은 사업 추진체계 및 사업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토교통부의 ‘방위각시설 개선 사업’은 추경안 편성 시 제시된 방식과 방위각시설 개선 TF를 통해 의견이 수렴된 방식 간에 차이가 있는 상황이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 사업’은 관세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출 바우처에 대한 세부유형 재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셋째, 추경안은 본예산 편성·심의 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해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나, 일부 사업은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시 법 개정 등을 인지하고도 이를 적기에 추진하지 않고 이번 추경안에 편성하였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술개발 및 보급지원 사업’은 장애인·고령자 등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을 위한 것이나, 이미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각각 2021년과 2024년에 개정되어 2025년 현재 시행중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신규로 이번 추경안에 편성되었음.

의무 위반 시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관련 법률이 이미 시행되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추경안 편성을 통한 조속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향후 정부는 사업을 적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 주요 내용 및 세부구성

가. 주요 내용

이번 추경안은 총 12.2조원 규모로 ① 재해·재난 대응, ② 통상·AI 지원, ③ 민생 지원 등 3개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음.

[2025년도 제1회 추경안의 주요내용]

(단위: 조원)

기본방향	총 12.2조원	
	◇ 우리경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① 재해·재난 대응, ② AI·통상 대응, ③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 집중 투자	
주요내용	1 재해 · 재난 대응	3.2
	▸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	1.4
	▸ 재해 · 재난 예방 · 대응력 강화	1.7
	▸ 노후 SOC 개량 등 안전투자	0.2
	2 통상 및 AI 지원	4.4
	▸ 통상리스크 대응(관세, 공급망, 고용불안)	2.1
	▸ AI 생태계 혁신	1.8
	▸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0.5
	3 민생 지원	4.3
	▸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	2.6
	▸ 영세 · 중소 사업자 매출기반 확대	1.6
	▸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0.2
	4 기타(국채이자, 주요행사 개최 등)	0.2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25.4.21.

먼저, ① 재해·재난 대응 분야는 총 3.2조원 규모이며,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에 1.4조원, 재해·재난 예방·대응력 강화에 1.7조원, 노후 SOC 개량 등 안전투자에 0.2조원을 지원할 계획임. 금번 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부처 재해·재난 대책비 부족분을 보강(9,460억원)하였고, 지방재정 지원을 위해 지방채 인수예산 0.2조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를 1.4조원 증액 편성하였음.

다음, ② 통상·AI 지원 분야는 총 4.4조원이며, 통상리스크 대응(관세, 공급망, 고용불안)을 위해 2.1조원, AI 생태계 혁신 사업 투자에 1.8조원,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0.5조원을 투자할 예정임. 관세부과로 인한 피해기업과 수출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자금공급을 위해 1.5조원을 편성하였고, 국내 AI 생태계 혁신을 위해 고성능 GPU 1만장 확보를 위한 1.5조원과 석박사급 이상의 고급인재를 1,650명 추가로 양성하기 위한 예산 등을 편성하였음.

마지막으로, ③ 민생 지원 분야는 총 4.3조원 규모로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2.6조원, 영세·중소 사업자 매출기반 확대를 위해 1.6조원,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0.2조원을 투자할 계획임. 소상공인 대상 50만원 크레딧 지원 및 정책자금 2.5조원을 확충하였고, 전통시장·골목상권 등의 매출 신장을 위한 상생페이백 1.4조원을 반영하였으며, 저소득 근로자, 최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정책자금 확대를 위해 0.2조원을 편성하였음.

나. 분야별 재원배분

이번 추경안에 따른 총지출 증가액은 12.2조원이며, 이를 12대 분야별로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가 6.0조원 증가하여 가장 큰 폭(21.2%)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번 추경안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2.6조원) 및 통상리스크 대응(2.1조원)이 모두 이 분야에 포함되기 때문임.

다음으로 크게 증가하는 분야는 공공질서・안전 분야(0.7조원), 농림・수산・식품 분야(0.6조원) 순으로, 대규모 산불 발생으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9,460억원) 및 지방재정 보강을 위한 지방채 인수(0.2조원) 등의 사업이 포함됨.

예비비는 이번 추경안에서 1.4조원이 증액되었으나, 12대 분야별 지출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음.

[2025년도 제1회 추경안의 분야별 재원배분안]

(단위: 조원, %)

구 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C=B-A)	
				증감률 (C/A)
총지출	**673.3**	**685.5**	**12.2**	**1.8**
1. 보건·복지·고용	248.7	249.1	0.4	0.2
2. 교육	98.5	98.5	0.0	0.0
3. 문화·체육·관광	8.8	8.8	-	-
4. 환경	13.0	13.1	0.2	1.4
5. R&D	29.6	29.7	0.1	0.2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8.2	34.1	6.0	21.2
7. SOC	25.4	25.6	0.2	0.6
8. 농림·수산·식품	25.9	26.4	0.6	2.2
9. 국방	61.2	61.2	-	-
10. 외교·통일	7.7	7.7	0.0	0.1
11. 공공질서·안전	25.0	25.7	0.7	2.7
12. 일반·지방행정	110.7	111.6	1.0	0.9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25.4.21.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 소관별 구성

이번 추경안은 총지출 기준 9개 상임위원회 14개 부처의 9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소관 부처별로 증액규모를 살펴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5조 112억원(소상공인성장지원 1조 6,973억원,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1조 4,345억원 등)으로 가장 큰 규모로 증액되었고, 다음으로는 기획재정부 1조 9,770억원(예비비 1조 4,000억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조 8,452억원(AI컴퓨팅 자원 활용기반 강화 1조 6,194억원 등) 순임.

[2025년도 제1회 추경안의 소관별 구성(총지출 기준)]

(단위: 개, 백만원)

소관 상임위원회	소관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수	증액규모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4	386,500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2	1,600,000
		복권기금	1	15,000
		공공자금관리기금	2	361,970
		소계	5	1,976,970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	13	1,755,50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5,000
		정보통신진흥기금	3	74,680
		방송통신발전기금	1	10,000
		소계	18	1,845,184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일반회계	1	8,177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일반회계	2	660,93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17,678
		소계	3	678,608
	소방청	일반회계	2	7,363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	115,000
	해양수산부	일반회계	1	6,18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	20,000
		소계	2	26,180
	산림청	일반회계	4	319,16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100,825
		소계	5	419,987

(단위: 개, 백만원)

소관 상임위원회	소관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수	증액규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회계	10	669,01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	199,43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	90,650
		소계	13	959,092
	중소벤처기업부	일반회계	6	296,547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3	700,000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5	4,014,661
		소계	14	5,011,208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2	119,65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55,644
		소계	3	175,294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2	29,70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30,000
		고용보험기금	2	15,385
		임금채권보장기금	1	81,85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	6,560
		근로복지진흥기금	2	47,832
		소계	9	211,334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3	3,473
		교통시설특별회계	5	147,71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8,000
		주택도시기금	3	176,400
		소계	12	335,591
9개 상임위	**14개 부처**	**합 계**	**93**	**12,156,488**

자료: 기획재정부

라. 회계·기금별 구성

이번 추경안의 회계·기금별 구성을 살펴보면, 예산은 일반회계와 5개의 특별회계에서 6조 6,521억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은 11개의 기금에서 5조 5,043억원이 증액되어 총 12조 1,565억원이 증액되었음. 이 중 일반회계가 5조 7,426억원(AI 컴퓨팅 자원 활용기반 강화 1조 6,194억원, 예비비 1조 4,000억원 등)으로 가장 큰 규모로 증가하였고, 다음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조 147억원,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7,000억원 순으로 증액되었음.

[2025년도 제1회 추경안의 회계·기금별 구성(총지출 기준)]

(단위: 개, 백만원)

회계·기금		세부사업수	증감규모	주요 증액내용
예산	일반회계	50	5,742,554	· AI컴퓨팅 자원 활용기반 강화 1조 6,194억원 · 예비비 1조 4,000억원 · 재난대책비(보조) 6,600억원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3	135,000	· 푸드서비스 선진화 650억원 · 농식품소비기반조성 500억원 · 수산업가치및소비촉진제고 200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	5	147,718	· 도로유지보수 930억원 · 일반공항시설관리 224억원 · 항행안전시설운영및구축 209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1	199,430	·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 1,994억원
	환경개선특별회계	2	119,650	· 재해대책비 1,120억원 · 국립공원공단출연 77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8	307,797	· 임도시설 1,008억원 · 하수관로 정비 556억원 · 산업단지환경조성 511억원
	소 계	69	6,652,149	-
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3	74,680	· AI 혁신펀드 550억원 · AI산업육성 147억원 · 디지털전문·융합인재양성 50억원
	고용보험기금	2	15,385	· 고용유지지원금 111억원 ·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 43억원
	임금채권보장기금	1	81,851	· 대지급금지급 819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1	10,000	·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R&D) 100억원

(단위: 개, 백만원)

회계·기금		세부사업수	증감규모	주요 증액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기금	1	6,560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66억원
	중소벤처기업창업 및진흥기금	3	700,000	·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5,000억원 ·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1,000억원 · 통상 리스크 대응 긴급자금(융자) 1,000억원
	근로복지진흥기금	2	47,832	· 신용보증대위변제 330억원 · 생활안정자금(융자) 149억원
	복권기금	1	15,000	·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15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2	361,970	· 지방채 인수(융자) 2,000억원 · 국고채이자상환 1,620억원
	주택도시기금	3	176,400	· 다가구매입임대(융자) 800억원 · 다가구매입임대출자 720억원 · 분양주택(융자) 244억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5	4,014,661	· 소상공인성장지원 1조 6,973억원 ·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1조 4,345억원 · 소상공인지원(융자) 5,000억원
	소 계	24	5,504,339	-
합 계		93	12,156,488	-

자료: 기획재정부

마. 비목별 구성

이번 추경안에서 증액된 비목은 총지출 기준 총 16개임.

이를 비목별로 살펴보면, 민간경상보조(320-01) 비목이 3조 3,801억원(산불 피해복구 재해대책비 등)으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다음으로 사업출연금(350-02) 2조 5,203억원(통상·AI 지원 등), 예비비(710-01) 1조 4,000억원, 기타민간융자금(450-04) 1조 3,258억원(긴급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지원 등) 순으로 증액되었음.

[2025년도 제1회 추경안의 비목별 증감규모(총지출 기준)]

(단위: 백만원)

목 - 세목		예산	기금	합계
인건비 (110)	상용임금(03)	1,273	-	1,273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01)	4,809	-	4,809
	공공요금및제세(02)	2	-	2
	피복비(03)	66	-	66
	특근매식비(05)	2	-	2
	임차료(07)	122	-	122
	유류비(08)	5	-	5
	복리후생비(12)	15	-	15
	일반용역비(14)	3,491	-	3,491
	소 계	8,512	-	8,512
여비 (220)	국내여비(01)	243	23	266
	국외업무여비(02)	1,255	-	1,255
	소 계	1,498	23	1,521
업무추진비 (240)	사업추진비(01)	210	7	217
	관서업무추진비(02)	18	-	18
	소 계	228	7	235
연구용역비 (260)	일반연구비(01)	300	-	300
보전금 (310)	기타보전금(04)	28,534	81,851	110,385
민간이전 (320)	민간경상보조(01)	329,605	3,050,453	3,380,058
	민간위탁비(02)	12,094	-	12,094
	보험금(04)	-	11,113	11,113
	이차보전금(05)	1,927	-	1,927
	민간자본보조(07)	132,290	-	132,290
	고용부담금(09)	355	-	355
	소 계	476,271	3,061,566	3,537,837

(단위: 백만원)

목 - 세목		예산	기금	합계
자치단체이전 (330)	자치단체경상보조(01)	150,945	-	150,945
	자치단체자본보조(03)	828,293	36,000	864,293
	소 계	979,238	36,000	1,015,238
일반출연금 (350)	사업출연금(02)	2,017,202	503,130	2,520,332
	금융성기금출연금(03)	470,000	-	470,000
	소 계	2,487,202	503,130	2,990,332
연구개발출연금 (360)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05)	78,157	10,000	88,157
건설비 (420)	실시설계비(02)	10,062	-	10,062
	공사비(03)	296,406	-	296,406
	감리비(04)	5,110	-	5,110
	시설부대비(05)	1,603	-	1,603
	소 계	313,181	-	313,181
유형자산 (430)	자산취득비(01)	128,325	-	128,325
융자금 (450)	기타민간융자금(04)	-	1,325,840	1,325,840
	지방자치단체융자금(05)	-	200,000	200,000
	소 계	-	1,525,840	1,525,840
출자금 (460)	일반출자금(01)	749,430	91,000	840,430
상환지출 (510)	차입금이자(03)	-	161,970	161,970
예비비 (710)	예비비(01)	1,400,000	-	1,400,000
	반환금및손실금(03)	-	32,952	32,952
	소 계	1,400,000	32,952	1,432,952
합 계		6,652,149	5,504,339	12,156,488

자료: 기획재정부

바.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 내역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계·특별회계)과 함께 총 11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2025년도 제1회 추경안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 내역]

(단위: 백만원)

국회제출사유		구 분	지출변경액 (총지출 기준)	유형
「국가재정법」 제70조제3항 제1호에 따라 국회제출 필요	프로그램(항) 20% 초과 증액	정보통신진흥기금	74,680	사업성 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47,832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700,000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014,661	
「국가재정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자체변경도 가능하지만 국회 제출		방송통신발전기금	10,000	사업성 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81,851	
		주택도시기금	176,400	
		고용보험기금	15,385	사회보험성 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6,560	
		복권기금	15,000	계정성기금
회계·기금 간 거래 심의결과에 따른 연동조치 필요		공공자금관리기금	361,970	계정성기금
합 계 (11개)			5,504,339	

자료: 기획재정부

이 중에서 「국가재정법」 제70조[3]에 따라 주요사업비(프로그램) 지출금액의 변경 범위가 기존계획의 20%(금융성 기금은 30%)를 초과하여 의무적으로 국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한 기금은 정보통신진흥기금·근로복지진흥기금·중소벤처기업창업 및진흥기금·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개임.

3)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기금관리주체(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는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
2.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3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2 이하로 한다.

그 밖에 방송통신발전기금·임금채권보장기금 및 주택도시기금 등 6개 기금은 자체 변경이 가능하지만 변경내용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제출되었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결과에 따라 회계·기금 간 재원이동의 연계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추경안 심의의 효율성 차원에서 함께 제출되었음.

사. 의무·재량지출 구성

총지출 기준 추경안의 지출 유형별 구성을 살펴보면, 의무지출은 본예산 대비 2,438억원(0.07%)이 증가한 365조 2,619억원이고, 재량지출은 11조 9,127억원(3.9%)이 증가한 320조 1,962억원임. 재량지출이 의무지출에 비해 큰 비율로 증가하여 총지출 대비 재량지출 비중은 46.7%로 본예산 대비 0.9%p가 증가한 반면, 의무지출 비중은 53.3%로 본예산 대비 △0.9%p 감소하였음.

이는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의무지출이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고채 이자상환(1,620억원) 사업과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대지급금지급 사업(819억원) 2개 사업밖에 없고, 나머지 11조 9,127억원이 모두 재량지출에 해당되기 때문임.

[2025년도 제1회 추경안의 지출 유형별 구성(총지출 기준)]

(단위: 백만원, %, %p)

구 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 의무지출	365,018,030	365,261,851	243,821
(구성비)	(54.2)	(53.3)	(△0.9)
□ 재량지출	308,283,550	320,196,217	11,912,667
(구성비)	(45.8)	(46.7)	(0.9)
계	673,301,580	685,458,068	12,156,488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도 제1회 추경안의 의무지출 구성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의무지출	365,018,030	365,261,851	243,821
1. 지방이전	142,425,223	142,425,223	-
2. 복지분야 법정지출	181,810,989	181,892,840	81,851
3. 이자지출	29,382,059	29,544,029	161,970
4. 기타 의무지출	11,399,759	11,399,759	-

자료: 기획재정부

아. 신규 증액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이번 추경안에서 증액된 사업은 세부사업 기준으로 총 93개(12조 1,565억원) 사업으로, 이 중 올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신규 세부사업은 총 12개(12.9%), 증액 규모로는 2조 993억원(17.3%)이며, 이 중 10개의 신규 세부사업은 최근 3년간 정부 예산에 편성된 바가 없는 사업임.

예산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세부사업으로는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출자(관세대응저리지원) 1,000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기업구조혁신펀드) 500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컴퓨팅 자원 활용 기반 강화 1조 6,194억원, World Best LLM 데이터 활용지원 300억원, 산업통상자원부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지원사업 626억원,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기금출연 1,000억원, 통상 리스크 대응 긴급자금(한시, 융자) 1,000억원, 총 7개 사업임.

[2025년도 제1회 추경안 증액사업 중 신규사업 비중(총지출 기준)]

구분	증액 세부사업 개수		증액 규모	
신규사업	12개	12.9%	2조 993억원	17.3%
최근 3년('23~'25)간 편성연혁 없는 경우	10개	10.8%	1조 9,493억원	16.0%
기존사업	81개	87.1%	10조 572억원	82.7%
합 계	93개	100.0%	12조 1,565억원	100.0%

주) 신규사업: 세부사업 기준 2025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
자료: 기획재정부

신규 사업 중에서 「국가재정법」 제38조[4]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비 지원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되, 같은 조에 따른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으며, 면제한 경우 같은 법 제34조제15호[5]에 따라 그 내역을 추경안에 첨부하여야 함.

---

4)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5) 「국가재정법」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경안에 첨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은 다음 1건임.

[2025년도 제1회 추경안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단위: 백만원)

소관부처	사업명	추경안	면제 사유
산업통상자원부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송전선로 지중화 지원사업	62,580	제10호 국가정책적 추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 2025.4.21. 바탕으로 재작성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관련 조항]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2. 문화재 복원사업
3.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 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9.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정부는 신규 세부사업 중 'AI컴퓨팅 자원 활용 기반 강화 사업(1조 6,194억원)'과 'World Best LLM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300억원)'은 통신 분야의 사업으로서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대상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15.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각호[6]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대상 사업으로 ①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②「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7]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③「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8]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④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등 특정 분야[9]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는 상기 2개 사업은 제4호의 특정 분야에 포함되지 않는 통신 분야 사업이라는 입장임.

그러나 현행「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는 '특정 분야'는 2008년 법률 개정 당시의 재정지출이 급증한 분야들을 지정하였고,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과 ICT기술 발전으로 인한 정보통신 분야의 중요성 및 사업규모의 확대로 동 분야에도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2006년「국가재정법」 제정[10] 시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이라고 규정하면서, 이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은 ①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②「정보화촉진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정보화 사업, ③「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연구단지 조성, 연구개발센터 및 연구장비 구축 등 구체적 산출물이 있는 연구기반조성사업을 규정한 바 있음.

---

6)「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 · 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7)「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물류, 과학기술, 재난안전, 치안, 국방, 에너지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지능정보화(이하 "공공지능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하여야 한다.

8)「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9)「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4조(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재정사업은 프로그램 예산체계상의 분야 · 부문 분류에 따라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 · 중소기업 분야에 해당되는 사업 중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 정보화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말한다.

10)「국가재정법」(법률 제8050호, 2006.10.4. 제정)

이후 시행령에 일반 연구개발사업(2008년 2월) 및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 · 중소기업 등 특정 분야 사업(2008년 7월)까지 순차적으로 규정되었으며, 2014년 1월 「국가재정법」 개정 시 시행령의 내용들이 동일하게 법률로 상향 규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대상 변화]

구분	2007년 1월1일 ~ 2008년 2월28일	2008년 2월29일 ~ 2008년 7월22일	2008년 7월23일 ~ 현재 (2014년 법률로 상향 규정)
예타 조사 대상	(공통기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		
	(개별기준) ①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개별기준) ①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개별기준) ①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②「정보화촉진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정보화 사업	②「정보화촉진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정보화 사업	②「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③「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연구단지 조성, 연구개발센터 및 연구장비 구축 등 구체적 산출물이 있는 연구기반조성사업	③「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③「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④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등 특정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사업)

주) 정보화 사업의 경우 근거 법률이 「정보화촉진기본법」 → 「국가정보화 기본법」 →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변화함에 따라 인용 법률은 달라졌으나 내용은 유사하게 유지되었음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특정 분야 사업들이 포함될 당시의 「국가재정법」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분야 등에 대한 재정지출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전평가 제도는 미흡한 문제가 있으므로 조사 대상사업에 중기사업계획서상의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되는 사회복지 등 분야의 신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대상 분야의 신규 사업 착수 이전에 타당성 및 적정 사업규모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 이라 밝히고 있음.

이에 따르면 통신 분야는 2008년 7월 시행령 개정 시에 정부가 재정지출 규모나 사업의 중요성이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2008년에 비해 현재는 사회 전 분야에서 ICT기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미래 주요 성장 동력인 AI 등 첨단 기술에 대한 국제적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통신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통신 분야가 2008년 당시의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AI컴퓨팅 자원 활용 기반 강화 사업'과 같이 1조원이 넘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전혀 판단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가정책의 효과적 추진 및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분야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Ⅱ. 주요 검토사항

1. 재정총량 변동 및 재정건전성

가. 추경안에 따른 재정총량 변동 현황

이번 추경안의 총수입은 본예산 대비 1.3조원이 증가한 652.8조원으로 전년 대비 40.6조원 증가한 수준으로, 총수입 증가분은 한국은행 잉여금 초과수납분 1조 2,491억원 등에 기인하며, 총지출은 본예산 대비 12.2조원 증가한 685.5조원으로 전년 대비 28.9조원 증가하였음.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32.6조원(GDP 대비 △1.2%) 적자로 본예산에 비해 △10.9조원(GDP 대비 △0.4%p) 악화될 전망이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험성기금 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84.7조원(GDP 대비 △3.2%) 적자로 본예산 대비 △10.9조원(GDP 대비 △0.4%p) 적자규모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국가채무는 1,279.4조원(GDP 대비 48.4%)으로 본예산 대비 6.0조원(0.2%p) 증가하였는데, 이는 이번 추경안의 재원마련을 위한 국고채 추가발행 규모 8.1조원과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채무상환 등이 반영된 것에 기인함.

문의 : 정원철 예산결산조사관 jungwc@assembly.go.kr (02-6788-5679)
고정철 예산결산조사관 gojc31@assembly.go.kr (02-6788-5683)
김영빈 예산결산조사관 kyb@assembly.go.kr (02-6788-5698)

[2025년도 제1회 추경안에 따른 재정총량 변화]

(단위: 조원)

	2024년 본예산	2025년		B-A
		본예산(A)	추경(B)	
◇ 총수입	612.2	651.6	652.8	1.3
(증가율)	(△2.2)	(6.4)	(6.6)	
◇ 총지출	656.6	673.3	685.5	12.2
(증가율)	(2.8)	(2.5)	(4.4)	
▪ 통합재정수지	△44.4	△21.7	△32.6	△10.9
(GDP대비,%)	(△1.8)	(△0.8)	(△1.2)	(△0.4%p)
▪ 관리재정수지	△91.6	△73.9	△84.7	△10.9
(GDP대비,%)	(△3.6)	(△2.8)	(△3.2)	(△0.4%p)
▪ 국가채무	1,195.8	1,273.3	1,279.4	6.0
(GDP대비,%)	(47.4)	(48.1)	(48.4)	(+0.2%p)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25.4.21.

「국가재정법」[12]은 정부로 하여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추경안이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그 관리방안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2024년 9월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이번 추경안에 따른 변화요인을 반영하게 되어 있음.

먼저, 총수입과 총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이번 추경안으로 총수입은 1.3조원이 증가하고, 총지출은 12.2조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정부는 이러한 재정총량의 변화가 2025년에만 한시적으로 영향을 미쳐 2026년 이후의 총수입 및 총지출은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동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12)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및 제89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될 때에는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그 관리방안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안이 총수입 및 총지출에 미치는 영향]

(단위: 조원)

		2024	2025	2026	2027	2028
총수입	2024~2028계획	612.2	651.6주)	677.7	706.4	731.5
	■(+) 세외・기금수입 확대	-	+1.3	-	-	-
	2025년 추경(안) 반영	612.2	652.8	677.7	706.4	731.5
총지출	2024~2028계획	656.6	673.3주)	704.2	730.3	756.2
	■(+) 추경 사업	-	+12.2	-	-	-
	2025년 추경(안) 반영	656.6	685.5	704.2	730.3	756.2

주) 2025년 본예산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25.4.21.

통합재정수지는 이번 추경안에 따른 총수입과 총지출 증가액의 차이인 △10.9조원만큼 본예산 대비 적자규모가 확대되어 2025년에 △32.6조원(GDP 대비 △1.2%)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며, 2026년부터는 추경안에 따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동일함.

관리재정수지 역시 △10.9조원 적자규모가 확대되어 △84.7조원(GDP 대비 △3.2%) 적자로 GDP 대비 △3.0% 이내로 제한하려는 정부의 목표는 이번 추경안으로 달성이 어려워진 상황이며, 2026년 이후부터는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동일하게 GDP 대비 △3.0% 이내에서 점차 개선되어 2028년 △2.4%를 기록할 전망임.

국가채무는 2025년 본예산 대비 약 6.0조원이 증가하고, 2026년 이후부터는 재정수지의 변동은 없으므로 2025년 예산안 국회심의과정에서 감소한 국고채 발행규모 △3.7조원을 차감한 2.3조원만큼만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025년도 제1회 추경안이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미치는 영향]

(단위: 조원)

		2024	2025	2026	2027	2028
통합재정수지	2024~2028계획	△44.4	△21.7[1]	△26.6	△23.9	△24.7
	(GDP대비, %)	(△1.8)	(△0.8)	(△1.0)	(△0.8)	(△0.8)
	2025년 추경(안) 반영	△44.4	△32.6	△26.6	△23.9	△24.7
	(GDP대비, %)	(△1.8)	(△1.2)	(△1.0)	(△0.8)	(△0.8)
관리재정수지	2024~2028계획	△91.6	△73.9[1]	△75.8	△73.1	△72.2
	(GDP대비, %)	(△3.6)	(△2.8)	(△2.7)	(△2.5)	(△2.4)
	2025년 추경(안) 반영	△91.6	△84.7	△75.8	△73.1	△72.2
	(GDP대비, %)	(△3.6)	(△3.2)	(△2.7)	(△2.5)	(△2.4)
국가채무	2024~2028계획	1,195.8	1,273.3[1]	1,353.9	1,432.5	1,512.0
	(GDP대비, %)	(47.4)	(48.1)	(49.1)	(49.8)	(50.5)
	2025년 추경(안) 반영[2]	1,195.8	1,279.4	1,356.2	1,434.8	1,514.3
	(GDP대비, %)	(47.4)	(48.4)	(49.1)	(49.9)	(50.6)
※ 명목GDP(2024~2028계획)		2,520.5	2,646.5	2,759.5	2,875.0	2,993.0
(변경)		2,549.1[3]	2,646.0[4]	2,759.5	2,875.0	2,993.0

주 1) 2025년 본예산 기준
2) 2026년 이후는 당초 계획상 전망에 2025년 본예산 및 2025년 추경안 등 반영
3) 2024년 GDP 잠정치(한국은행)
4) 2025년 경제정책방향(2025.1월)의 2025년 성장전망 수정치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25.4.21.

나. 검토의견

첫째,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하락함에 따라 이와 연동되는 국세수입 여건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가 침체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추경안을 편성하는 등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게 되는 경우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음.

한국은행의 국민소득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021년에는 4.6% 증가하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23년에는 1.4% 성장에 그쳤고, 2024년은 2.0% 성장할 것으로 잠정 전망되고 있음.[13)]

국내총생산의 분기별 성장률을 보면, 2024년 3/4분기와 4/4분기에는 각각 0.1%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2025년 1/4분기에는 전기대비 △0.2%(전년동기대비 △0.1%)로 2024년 2/4분기 이후 다시 역성장을 기록하였음.

[국내총생산 연간 성장률(2020년 연쇄가격 기준)]

(단위: %, 전년대비)

	2021	2022	2023	2024
국내총생산(GDP)	4.6	2.7	1.4	2.0

자료: 한국은행, 「2024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2025.3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2020년 연쇄가격 기준)]

(단위: %, 계절조정계열 전기대비)

	2023				2024				2025	
	1/4	2/4	3/4	4/4	1/4	2/4	3/4	4/4	1/4	
국내총생산 (GDP)	0.4 (1.1)	0.6 (1.0)	0.8 (1.4)	0.5 (2.1)	1.3 (3.3)	-0.2 (2.3)	0.1 (1.5)	0.1 (1.2)	-0.2	(-0.1)
농 림 어 업	-3.4	2.6	-0.1	-7.4	1.8	4.4	2.4	-3.4	3.2	(6.5)
제 조 업	1.6	3.0	1.5	1.2	0.9	0.8	0.2	0.2	-0.8	(0.4)
전기가스수도사업	-6.8	3.1	3.1	1.8	-0.1	-1.0	5.9	-5.8	7.9	(6.4)
건 설 업	1.2	-2.7	3.7	-3.5	5.5	-6.0	-1.4	-4.1	-1.5	(-12.4)
서 비 스 업[1)]	0.2	0.1	0.5	0.4	0.9	0.0	0.2	0.4	0.0	(0.7)

주 1)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교육서비스업,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포함
2) ( ) 내는 원계열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2025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2025.4.24.

또한, 최근 주요 국제기구 및 국내기관 모두 2025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는데, OECD는 2025년 3월 무역장벽 강화, 정책적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인해 전세계 경제성장률을 3.1%로 기존 전망 대비 △0.2%p 하향 조정하면서,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은 기존 2.1%에서 1.5%로 하향 조정하였고, IMF(2.0%→1.0%), ADB(2.0%→1.5%), AMRO(1.9%→1.6%) 등의 국제기구 및 정부(2.2%→1.8%), 한국은행

13)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의 2025년 잠재성장률은 1.9%로 지난 전망(2024.10월)에 비해 0.2%p 하향조정하였음(2024년과 2025년의 실질GDP 성장률 실적치와 전망치가 기존 전망에 비해 하향조정되어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중장기적 추세가 반영되는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 (「2025년 NABO 경제전망」, 2025.3.)

(1.9%→1.5%), 국회예산정책처(2.2%→1.5%), KDI(2.0%→1.6%) 등 국내기관들도 일제히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였음.[14)]

이렇듯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하락함에 따라 이와 연동되는 국세수입 여건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침체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추경안을 편성하는 등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게 되는 경우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음.

둘째, 정부는 추경안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미치는 효과가 당해연도에만 한시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으나, 「국가재정법」에서 추경안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관리방안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고려하여 보다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 제7조제8항[15)]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을 보면, 총수입과 총지출은 2025년에만 일시적으로 1.3조원, 12.2조원이 각각 증가하고,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도 각각 2025년에만 일시적으로 △10.9조원만큼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정부가 총수입·총지출 및 재정수지를 2025년에만 일시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추계한 것은 이번 추경안의 수입과 지출이 모두 한시적으로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임.

---

14) <2025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조정 현황>

(단위: %, %p)

구분		조정 전(A)	조정 후(B)	조정치(B-A)
국제 기구	OECD	2.1 (2024.12.)	1.5 (2025.3.)	△0.6
	IMF	2.0 (2025.1.)	1.0 (2025.4.)	△1.0
	ADB	2.0 (2024.12.)	1.5 (2025.4.)	△0.5
	AMRO	1.9 (2024.12.)	1.6 (2025.3.)	△0.3
국내 기관	정부	2.2 (2024.7.)	1.8 (2025.1.)	△0.4
	한국은행	1.9 (2024.11.)	1.5 (2025.2.)	△0.4
	국회예산정책처	2.2 (2024.10.)	1.5 (2025.4.)	△0.7
	KDI	2.0 (2024.11.)	1.6 (2025.2.)	△0.4

주) 실질GDP 기준
자료: 각 기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5)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및 제89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될 때에는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그 관리방안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추경안이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미치는 영향(요약)]

(단위: 조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총수입 변동	-	1.3	-	-	-
총지출 변동	-	12.2	-	-	-
통합재정수지 변동	-	△10.9	-	-	-
관리재정수지 변동	-	△10.9	-	-	-
국가채무 변동	-	6.0	2.3	2.3	2.3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25.4.21.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총수입의 경우 한국은행 잉여금, 세계잉여금의 경우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결과이므로 2025년에 한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지방채 이자수입의 경우 당해연도 수입으로 그치지 않고, 장기로 융자해주는 것과 동일하므로 향후 총수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또한, 총지출의 경우에도 8.1조원 규모의 국고채를 추가로 발행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이자상환액 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통상·AI, 소상공인 지원 등 12.2조원의 정부지출 증가에 따라 2026년 이후 총수입이나 총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존재할 것임에도 이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변화요인으로 추계하지 않고 있는 것임.

이와 같이 정부가 추경안이 재정총량에 미치는 영향을 당해연도 이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은 2020년 이후 추경안 편성에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임.

「국가재정법」이 추경안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관리방안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추경안이 미치는 중장기적인 영향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내실있는 심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부는 「국가재정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향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관리방안」을 보다 충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음.[16)]

16) 이에 대하여 정부는 추경으로 2025년 총지출·총수입의 일부 변동이 있더라도 기존 중기계획상 총지출·총수입 범위 내에서 운용할 예정이며, 향후 경제·재정여건 변동 및 재정수요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25.9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2. 추경안의 재원

이번 추경안은 총지출 기준 12.2조원의 증액 규모를 국채 발행 8.1조원(66.6%), 한국은행 잉여금 1.2조원(10.3%), 기금 여유자금 등 2.6조원(21.3%) 등으로 충당할 계획임.

[2025년도 제1회 추경안의 재원]

(단위: 백만원, %)

항 목		재원 규모	비 중
국채 발행		8,098,499	66.6
각종 결산상잉여금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218,439	1.8
	한국은행 잉여금	1,249,098	10.3
기금 여유자금 등주)		2,590,452	21.3
합계		12,156,488	100.0

주)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 이자수입 40억원 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가. 국채 발행

2025년 국고채 발행계획은 총 197.6조원으로, 전년 대비 39.2조원(24.7%) 증가하였고, 순증 규모 또한 80.0조원으로 전년 대비 30.1조원(60.3%) 증가할 전망임. 이러한 상황에서 총 8.1조원의 국고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것이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국가채무의 추가적인 증가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이번 추경안은 총지출 규모 12.2조원의 66.6%인 8.1조원을 국고채로 조달할 계획임.

정부는 한국은행 잉여금, 일반회계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채 추가 발행규모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각종 잉여금·여유재원 등 상대적으로 건전한 재원 외의 부족분을 국채로 충당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2021~2025년 연도별 국고채 발행규모를 보면, 코로나19 발생 이전 국고채 발행규모는 2016년 101.1조원, 2017년 100.8조원, 2018년 97.4조원, 2019년 101.7조원으로 연간 100조원 내외의 규모였으나, 2020년 174.5조원, 2021년 180.5조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후 감소 추세가 2024년까지 지속되었음.[17]

17) 기획재정부, 「2023년 국채백서」, 2024.3.

[2021~2025년 연도별 국고채 발행규모]

(단위: 조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A)	2025년(B)	(B-A)
◇ 총발행		180.5	168.6	165.7	158.4	197.6	39.2
ㅇ 순 증		**120.6**	**97.3**	**61.5**	**49.9**	**80.0**	**30.1**
○ 차 환		59.9	71.4	104.2	108.5	117.5	9.0
	만기상환	45.4	56.2	86.0	85.7	94.0	8.3
	조기상환	14.5	15.2	18.2	22.8	23.5	0.7

주) 2025년은 발행계획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 2024.12.30.

2021년 총 발행규모는 180.5조원으로 차환을 제외한 순증 규모는 120.6조원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4년에는 총 발행규모가 158.4조원(△12.2%)까지 감소하였고, 순증 규모도 49.9조원(△58.6%)으로 감소하였음.

그러나 2025년 국고채 발행계획은 총 197.6조원으로, 전년 대비 39.2조원(24.7%) 증가하였으며, 순증 규모 또한 80.0조원으로 전년 대비 30.1조원(60.3%) 증가할 전망임.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추경안의 재원 조달을 위해 총 8.1조원의 국고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것이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감안할 때 국가채무의 추가적인 증가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나. 기금 여유재원

기금 여유재원은 즉각적인 지출소요가 없는 자금으로서 추경안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나, 여유재원은 금융기관에 투자되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금이라는 점에서 그 기회비용을 인식하고 사용할 필요가 있음.

이번 추경안은 복권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9개의 기금에서 1조 8,865억원 규모의 여유재원을 활용할 예정이며,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에서는 7,000억원의 중소기업진흥채권을 발행하여 해당 기금 사업비로 활용할 예정임.

[2025년도 제1회 추경안의 재원 중 기금 여유자금 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규모	비고
복권기금	15,000	해당 기금 사업 증액
정보통신진흥기금	1,494	
방송통신발전기금	200	
고용보험기금	15,385	
임금채권보장기금	81,85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6,560	
근로복지진흥기금	47,832	
주택도시기금	176,400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541,730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700,000	중소기업진흥채권 발행
합계	2,586,452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기금 여유재원은 향후 재정운용을 위한 예비 재원으로 즉각적인 지출소요가 없어 추경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며, 이번 추경안의 기금 여유재원은 해당 기금의 고유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공자기금으로 예탁하여 일반재원으로 사용하는 재원은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정부는 한국은행 잉여금,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재원 등에 대해 국채발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전한 재원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기금 여유재원은 통상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금이므로 기회비용 측면에서 국채발행과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고 활용할 필요가 있음.

다. 한국은행 잉여금

한국은행은 매월 대차대조표를 공개하고 있고, 국회의 다음연도 예산안 통과는 통상 12월에 이루어지므로 적어도 10월까지의 당기순이익 예측치를 다음연도 세입예산안에 반영하여 세입예산과 실제 수납액의 오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한국은행 잉여금은 「한국은행법」 제99조[18]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발생한 세후 당기순이익의 30%를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중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처리한 후 잔액을 정부의 세입으로 납부하는 자금임.

2024회계연도 한국은행의 세후 당기순이익은 7조 8,189억 2,600만원으로, 한국은행은 이 중 30%인 2조 3,456억 7,800만원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에 24억 1,700만원을 출연한 후 남은 금액 5조 4,491억 100만원을 정부 세입으로 납부하였는데, 이는 당초 2025년 예산액보다 1조 2,490억 9,800만원 초과한 금액임.[19]

[2025년도 한국은행 잉여금 추경안]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한국은행 잉여금	1,630,000	4,200,003	5,449,101	1,249,098	29.7

최근 5년간 한국은행 잉여금의 정부세입 납부 현황을 보면, 2022년의 경우 1조 4,466억원(35.9%)이 초과수납되어 가장 큰 규모의 오차를 보였고, 2024년의 경우 본예산 대비 △7,079억원(△43.4%)이 과소수납되어 가장 큰 오차율을 보였으며, 2025년의 경우에도 1조 2,491억원(29.7%)이 초과수납되어 전액 추경안의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임.

이러한 세입예산과 실제 수납액의 차이에 대해 정부는 한국은행 잉여금 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7월 초까지의 실적을 반영하여 세입예산을 추계하고 있으나,

---

18) 「한국은행법」
제99조(이익금 처분) ① 한국은행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을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결산상 순이익금의 100분의 30을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결산상 순이익금을 제1항에 따라 적립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 이를 특정한 목적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 한국은행은 결산상 순이익금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처분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정부에 세입(歲入)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9) 「한국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이익금처분) ①한국은행은 법 제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순이익금을 매 회계연도 경과후 2월 이내에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하여야한다.

한국은행의 수지는 외화자산운용에 따른 이자, 매매손익 등으로 구성되어 국내외 금리 및 주가, 환율 등 금융환경 변화와 외화자산 운용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전 예측이 곤란한 특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한국은행 잉여금 초과수납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한국은행 결산				정부 결산		
	당기순이익 (A)	법정적립금 (B)	임의적립금 (C)	정부납입금 (D=A-B-C)	본예산 (E)	오차(D-E)	오차율 [(D-E)/E]
2021	73,659	22,098	341	51,220	43,061	8,159	18.9
2022	78,638	23,592	266	54,781	40,315	14,466	35.9
2023	25,452	7,636	270	17,546	12,725	4,821	37.9
2024	13,622	4,087	315	9,221	16,300	△7,079	△43.4
2025	78,189	23,457	241	54,491	42,000	12,491	29.7

주) 각 연도는 정부 회계연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그러나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20]에 따라 매월 대차대조표를 공개하고 있고, 국회의 다음연도 예산안 통과는 통상 12월에 이루어지므로 적어도 10월까지의 당기순이익 예측치를 다음연도 세입예산안에 반영하여 세입예산과 실제 수납액의 오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2023~2024년 한국은행 당기순이익 월별 공고내역]

(단위: 조원)

구분	공고내역(1~11월은 월별 잠정치)												예산안 (전망)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최종)	
2023	0.02	0.3	0.3	0.5	0.8	0.9	1.1	1.4	1.3	1.2	1.3	1.4	2.3
2024	0.4	1.0	1.4	2.0	2.6	3.6	3.6	4.2	4.7	5.8	6.4	7.8	6.0

주) 1~11월까지 공고내역은 현금주의에 기초한 세전 당기순이익이며, 12월(최종)은 발생주의에 기초한 세후 당기순이익임
자료: 한국은행 홈페이지, 각 월별 대차대조표를 바탕으로 재작성

20) 「한국은행법」
제101조(대차대조표의 공고) ① 한국은행은 매월 20일 이내에 전월의 최종영업일 현재의 자산 및 부채를 일정한 항목으로 표시하는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 회계연도 최종영업일 현재의 대차대조표는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공고할 수 있다.

라. 지출구조조정

이번 추경안에서 각종 잉여금, 기금 여유재원 등 가용재원을 상당부분 활용하였으나,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국채 발행규모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국채 발행, 각종 결산상 잉여금, 기금 여유재원을 통해 총 12.2조원을 마련하고 지출구조조정은 시행하지 않았는데, 이는 추경안의 편성 시점(4월)이 본예산이 집행된 지 3개월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연도 내 집행부진 예상 사업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21]

정부가 1998년 이후 제출한 총 30회의 추경안 중 지출구조조정을 재원으로 활용한 것은 7차례뿐이었으나, 이러한 지출구조조정은 국채 추가발행을 최소화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추경안 지출구조조정 연혁]

(단위: 조원, %)

구분		추경안 규모	지출구조조정 규모		국채발행 규모
				추경안 대비 비중	
1998년도	제1회	12.5	8.5	68.0	-
	제2회	11.5	0.7	6.1	7.9
2003년도	제2회	4.2	0.3	7.1	-
2013년도	제1회	17.3	0.3	1.7	15.8
2020년도	제2회	7.6	4.3	56.6	-
	제3회	35.3	4.0	11.3	23.8
2022년도	제2회	59.4	7.0	11.8	-

주) 2020년도 제2회 및 제3회 추경안의 지출구조조정 규모는 당초 정부 발표 기준으로는 6.4조원, 10.1조원이었으나, 이는 사실상 기금 여유재원 조정 성격의 재원이 포함되어 있어 국회 등의 지적이 있었기에 국회·정부 모두 향후 상기 금액(4.3조원, 4.0조원)을 기준으로 통계를 관리할 예정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년도·회차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바탕으로 재구성

따라서 이번 추경안에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국채의 발행규모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21) 정부 1분기 신속집행 결과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집행액은 전년 동기대비 4.2조원 증가한 232.6조원(잠정)

3. 추경안 규모의 적정성

최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급격히 하향조정되는 등 한국 경제의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바, 정부가 제출한 12.2조원의 추경안이 적정한 규모인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있음.

[2025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조정 현황]

구분		조정 전(A)	조정 후(B)	조정치(A-B)
국제 기구	OECD	2.1% ('24.12.)	1.5% ('25.2.)	△0.6%p
	IMF	2.0% ('25.1.)	1.0% ('25.4.)	△1.0%p
	ADB	2.0% ('24.12.)	1.5% ('25.4.)	△0.5%p
	AMRO	1.9% ('24.12.)	1.6% ('25.3.)	△0.3%p
정부 및 국내 기관	정부	2.2% ('24.7.)	1.8% ('25.1.)	△0.4%p
	한국은행	1.9% ('24.11.)	1.5% ('25.2.)[22]	△0.4%p
	국회예산정책처	2.2% ('24.10.)	1.5% ('25.3.)	△0.7%p
	한국개발연구원(KDI)	2.0% ('24.11.)	1.6% ('25.2.)	△0.4%p

경제 전문기관들은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의 필요성 내지 적정 규모에 대하여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음.

한국은행의 경우, 총재가 2024년 12월부터 조속한 추경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2025년 1월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성장률을 0.2%p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15조원 내지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으며, 2025년 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를 재확인하였음.[23] 참고로,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 12.2조원 추경안에 대하여 경제성장률 0.1%p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음.[24]

22) 한국은행은 2025년 4월 17일 1분기 성장률이 종전 전망치를 밑돌았다고 밝히면서 2025년 5월에 발표할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더욱 하향조정될 것임을 시사함. 또한, 한국은행은 "4월 10일 현재 주요 40여개사 IB 등 시장 참가자들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중윗값은 1.4%, 하위 25%는 1.1%"라고 소개함. -「한은마저 '역성장' 경고... 5월 성장률 하향·금리 인하 불가피」(연합뉴스, 2025.4.17.)

23) 한국은행 총재는 현 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로 경기하락을 막기 어려워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그 규모는 15조 내지 20조원이 적절하며, 재정건전성 및 차기년도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지속적인 재정지원 필요 여부) 등을 고려할 때 20조원을 넘을 경우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힘. - 제422회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2025.2.18.)

24) 2025년 3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학술지 『경제분석』에 정부지출승수를 1.45 로 분석한 논문(김세훈·허준영, 「정부지출의 GDP 효과 분석 : 비근본 문제 해결을 위한 다변수 VAR 모형 접근」)이 게재되었고, 이를 기초로 10조원 규모의 추경이 경제성장률을 0.5%p 올릴 수 있다고 예측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한국은행 총재는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2025년 3월 자체 분석한 '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1.7%)와 재정승수(0.698)를 기초로 잠재성장률(2.0%) 수준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약 9.8조원 규모의 세출 증액이 필요하고,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약 8.3조원 규모의 세입경정(총 18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음.[25]

반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5년 2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로 하향조정하면서도 추경보다는 기존예산 조기집행과 통화정책을 통한 대응을 강조하였고, 2025년 3월 30일 정부가 10조원 추경 추진방침을 밝힌 후에는 재정여력과 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해 추경은 제한적·선택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힘.[26]

[추경 적정 규모에 관한 주요 기관 의견]

기관	적정 규모	출처(시점)
한국은행	15조 내지 20조원 (성장률 0.2%p 제고)	기자간담회(2025년1월) 및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2025년 2월)
현대경제연구원	세출증액 9.8조원, 세입경정 8.3조원 (성장률 0.3% 제고)	2025년 3월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제한적·선택적 (예산 조기집행 및 통화정책이 바람직)	2025년 4월 세미나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0.1%p 정도의 경제성장률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다만, 이번 추경의 목적이 재해·재난 대응, 통상위기 대응, AI 경쟁력 강화, 취약계층 지원에 있으며, 직접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임.[27]

따라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을 참고하여 현 경제상황, 추경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 및 재정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적정 규모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25년 4월 17일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간담회에서 1.45는 너무 높고, 정부지출승수를 0.4~0.5로 보고 있다며 12조원 추경안의 효과를 0.1%p 상승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힘.

25) 현대경제연구원, 「재난 극복과 경기 침체 방어를 위한 추경이 시급하다 - 잠재성장률 수준 복귀를 위해 최소 9.8조원 필요」(『경제주평 25-05(통권 984호)』), 2025.3.26.

26) 「(제24차 경제산업포럼) 트럼프 2.0 시대, 한국경제의 전망과 대책」세미나 (2025.4.9.)에서의 한국개발연구원장 발언

27) 기재부 차관은 추경 브리핑(2025년 4월 17일)에서 순수하게 경기 진작을 목적으로 했다면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을 비롯해 (승수효과가 높은) 정부소비와 투자 위주로 편성했을 것이나 이번 추경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함.

참고로, 이번 추경안 총지출 규모 12.2조원은 2024년도 GDP(명목) 2,549조원의 0.48%에 해당함.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2009년 국제금융위기에 대응하여 당시 GDP 대비 2.3% 규모인 28.9조원의 추경으로 당해연도 경제성장률 0.8%p 제고 효과가 있다고 추정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코로나19 위기 속에 편성된 2020년 1~4차 추경(총액: 당시 GDP 대비 3.3%인 66.8조원 규모) 및 2021년 1차 추경(당시 GDP 대비 0.7%인 14.9조원 규모)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를 2020년 0.5%p, 2021년 0.3%p로 분석한 바 있음.[28] 다만, 추경은 그 규모뿐만 아니라 내용, 시기 등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임.

[2009년~2019년 추경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단위: 조원)

구분	편성규모 〔GDP(명목) 대비〕	세출증액	세입경정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
2009년 추경	28.9 (2.3%)	17.7	11.2	0.8%p
2013년 추경	19.0 (1.2%)	7.0	12.0	0.3%p
2015년 추경	14.9 (0.9%)	9.3	5.6	0.3%p
2016년 추경	8.9 (0.5%)	8.9	-	0.1~0.2%p
2019년 추경	6.7 (0.3%)	6.7	-	0.1%p

주 1. 경제성장률 제고효과는 추경이 편성된 당해연도 기준
2. 세출 증액은 총지출 순증규모를 기준으로 작성
출처: 정부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작성[29]

[2020년·2021년(1차) 추경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 (한국개발연구원 자료)]

(단위: 조원)

구분	편성규모 〔GDP(명목) 대비〕	세출증액	세입경정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
2020년 추경(1차~4차)	66.8 (3.3%)	54.6	12.2	('20년) 0.5%p
2021년 추경(1차)	14.9 (0.7%)	14.9	-	('21년) 0.3%p

출처: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30] 내용을 재구성함

28) 분석자는 2020년·2021년 추경 규모에 비해 성장률 제고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는 원인으로, 추경의 목표가 성장 효과보다는 피해 계층 지원을 통한 민생 안정에 집중됨에 따라 재정지출 상당 부분이 승수효과가 비교적 작은 이전지출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29) 국회예산정책처, 「역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례와 국회 심의결과」(『NABO FOCUS』 제89호), 2025.2.6.

30) 한국개발연구원, 「코로나19 위기 시 재정의 경기대응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KDI 경제전망』 2021년 상반기), 2021.6.1.

4. 2025년도 예산 집행 계획 및 1분기 집행 실적

가. 집행계획

정부는 2025년 건설부진, 소비심리위축 등으로 내수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수출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민생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전체 세출예산의 75%를 배정하였고,[31] 「2025년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본예산의 신속한 조기집행을 추진하였음.

「2025년 신속집행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중앙·지방재정의 신속집행 연간계획액을 562조 5,000억원으로 설정하였고, 그 중 상반기 집행 목표액을 358조원(63.6%)으로 설정하였음. 또한 민생회복 및 경기활성화와 직결된 사업을 중점관리사업으로 지정하여 총 85조원의 예산액 중 34조원(40%)을 1분기 집행 목표액으로 설정하였음.

[2025년 신속집행 계획 현황]

(단위 : 조원, %)

구 분	2025년				
	연간계획 (c)	상반기 계획 (d)	목표 집행률 (d/c)	1분기 계획 (e)	집행률 (e/c)
재 정	562.5	358.0	63.6	-	-
중 앙	254.0	170.2	67.0	-	-
지 방	282.5	170.9	60.5	-	-
지방교육	26.0	16.9	65.0	-	-
- 중점관리사업	85.0	59.5	70.0	34.0	40.0
민생경제	45.2	30.3	67.0	17.5	38.6
경기진작	28.2	21.0	74.5	12.4	44.1
기타	11.6	8.3	71.1	4.1	35.3

자료: 「2025년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31) 「2025년도 예산배정계획」을 참고함.

<최근 5년간 예산배정 추이>

(단위: 조원, %)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 예산총계(일반+특별)	459.9	497.7	534.0	550.0	574.8
■ 상반기 예산배정	333.1	363.5	400.5	412.5	431.4
■ 상반기 예산배정률	71.4	72.4	73.0	75.0	75.0

자료: 「2025년도 예산배정계획」

그 외에도 공공기관 투자 중 국민 주거안정, 에너지·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등 주요사업을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총 66조원의 예산액 중 37조 6,000억원(57%)을 상반기 집행 목표액으로 설정하였고, 민간투자의 연간 집행 규모를 5.2조원으로, 그 중 2.8조원(54%)을 상반기 집행 목표액으로 설정하였음.

정부는 「2025년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통해 설정한 분야별 상반기 목표 집행률을 최근 5년간 정부가 수립한 집행 추진계획과 비교해 보았을 때 모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였고, 집행 실적 점검을 위한 회의 개최 주기도 월 1회에서 주 1회(1분기)로 단축하는 등 예산의 신속집행을 위한 강도 높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음.

[2021~2025년 집행계획 비교]

(단위 : 조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추진배경	코로나 피해 대응 및 경기회복	코로나 피해 대응 및 민생안정	경기 둔화 대응 및 민생안정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대응	내수 부진 및 수출 둔화 대응
신속집행 연간계획	557.8	456.2	482.5	560.9	562.5
상반기	345.5(62%)	281.8(61.7%)	303.8(63%)	350.4(62.5%)	358(**63.6%**)
중점관리사업	67.8	107	31.5	109.1	85
상반기	44.9(66%)	-	-	71.2(65%)	59.5(**70%**)
1분기	23.3(34.3%)	-	-	-	34(**40%**)
공공기관 투자	65	67	63.3	63.4	66
상반기	34.45(53%)	35.5(53%)	34.8(55%)	34.9(55%)	37.6(**57%**)
민간투자	3.5	-	-	5.7	5.2
상반기	1.8(51.5%)	-	-	2.7(47.3%)	2.8(**54%**)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중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재정집행계획, 공공기관 투자계획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나. 집행실적

정부는 「제11차 재정집행 점검회의」(2025. 4. 10. 개최)에서 2025년 1분기 집행실적을 발표하였는데, 1분기 신속집행 달성액은 약 211.7조원(연간 목표 대비 38.4%)으로 2024년 1분기의 집행실적인 207.9조원보다 3.8조원 증가하였음.

[2025년 1분기 집행실적]

(단위: 조원)

구 분	'24년			'25년			증감 (b-a)
	목표		1분기 집행실적(a)	목표		1분기 집행실적(b)	
	연간	상반기		연간	상반기		
재 정	549.5	343.0	**207.9**	551.1	349.9	**211.7**	+3.8
중 앙	240.6	156.4	100.3	241.1	161.1	100.6	+0.3
지 방	282.5	169.5	95.9	283.5	171.5	101.6	+5.7
지방교육	26.4	17.2	11.7	26.6	17.3	9.5	△2.3
공공기관	63.5	34.9	19.0	66.0	37.6	19.5	+0.5
민간투자	5.7	2.7	1.5	5.2	2.8	1.4	△0.1
합 계	618.7	380.6	228.4	622.3	390.3	232.6	+4.2

주) 당초 재정 신속집행 상반기 목표는 359.8조원 이었으나,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사업이 은행 등 민간재원을 우선 활용(국토부)하기로 함에 따라 신속집행 관리대상에서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제11차 재정집행 점검회의」 관련 보도자료)에서 발췌

중점관리사업의 1분기 집행액은 32.8조원으로 당초 계획한 잠정 목표액(34조원)에 미달하였으나 수정계획 기준 목표액인 28.6조원(40%)보다 4.2조원 초과달성하였음.

[2025년 1분기 중점관리사업 집행실적]

(단위: 조원, %)

구 분	예산현액		1분기 집행목표		1분기 집행실적				
						집행률		진도율	
	원계획 (a)	수정 (b)	원계획 (c)	수정 (d)	집행액 (e)	원계획 (e/a)	수정 (e/b)	원계획 (e/c)	수정 (e/d)
민생경제	45.2	31.2	17.5	12.4	15.6	34.5	50.0	89.1	125.8
경기진작	28.2	28.3	12.4	12.1	12.8	45.4	45.2	103.2	105.8
기타	11.6	12.1	4.1	4.1	4.4	37.9	36.4	107.3	107.3
합 계	85	71.6	**34.0**	**28.6**	**32.8**	38.6	**45.9**	96.5	114.7

주) 원계획은 「2025년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통해 발표된 값이고, 수정은 이후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사업이 은행 등 민간재원을 우선 활용(국토부)하기로 함에 따라 신속집행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조정된 값임

자료: 기획재정부

그 외 공공기관 투자 실적은 19.5조원으로 2024년 1분기 대비 0.5조원 증가하였고 민간투자 실적은 1.4조원으로 2024년 1분기 대비 0.1조원 감소하였으나, 상반기 목표 집행액인 2.8조원의 절반 수준은 달성 하였으므로 계획한 목표액을 달성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임.

정부는 「2025년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에서 건설부진, 심리위축 등으로 내수회복이 제약되는 가운데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어 경기 하방위험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추진배경으로 제시하였으므로, 1분기 신속집행이 당초 의도한 결과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우선 ① 우리나라의 건설기성[32]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1월 9조 7,948억 7,700만원에서, 2월 9조 9,423억 500만원으로 1,474억 2,800만원(1.5%)이 증가하였으나, 2024년 2월 12조 6,909억 4,200만원에 비하여는 21.6% 감소한 값으로 건설투자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건설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시점	'24.2	'24.8	'24.9	'24.10	'24.11	'24.12	'25.1	'25.2
건설기성	12,690,942	11,072,897	10,850,917	10,800,459	10,462,386	10,270,446	9,794,877	9,942,305

주) 건설기성은 불변_계절조정 값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통계청

② 우리나라의 소비자심리지수[33]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12월 88.2로 전월대비 12.5 급감한 이후 2025년 1월 91.2, 2월 95.2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3월에 93.4로 다시 감소하고 있어 심리위축이 지속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임.

[소비자심리지수 현황]

시점	'24.6	'24.7	'24.8	'24.9	'24.10	'24.11	'24.12	'25.1	'25.2	'25.3
지표	100.9	103.7	100.8	100.0	101.8	100.7	88.2	91.2	95.2	93.4
전월비	2.5	2.8	△2.9	△0.8	1.8	△1.1	△12.5	3.0	4.0	△1.8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32) 건설업체의 실제 시공실적을 금액으로 평가한 것으로, 공사대금의 청구나 수취여부와는 무관하며 공사비 중 지가를 제외하고 발주자공급원자재비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임.

33) 경제지표와의 상관성 및 선행성이 우수한 6개 주요구성지수(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를 합성한 지수

③ 우리나라의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3월 기준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수출액 증가율(3.1%)이 2024년 3월의 전년 동기 대비 수출액 증가율(3%)보다 높아 수출 증가세가 회복되는 것으로 보임. 다만 2025년 1분기 기준 수출액(1,599억달러)은 2024년 1분기 기준 수출액(1,633억달러)보다 2.1% 낮아 수출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수출액 현황]

(단위 : 억달러, %)

시점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1분기	3월	1분기	3월	1분기	3월	1분기	3월	1분기	3월
수출액	1,464	536.9	1,734	637.8	1,512	548.8	1,633	565.1	1,599	582.8
전년 동기비	12.5	16.3	18.4	18.8	△12.8	△14	8	3	△2.1	3.1

자료: 관세청 통계자료 및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의 2025년 1분기 신속집행 실적은 계획대비 양호하나, 이를 통한 내수감소 및 수출부진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Ⅲ. 유형별 검토

1. 개요

정부는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① 재해・재난 대응(3.2조원), ② 통상・AI 지원(4.4조원), ③ 민생지원(4.3조원) 등을 주요 현안으로 보고 이에 대한 집중 투자를 위해 총 12.2조원을 편성하였다고 설명하였음.[1)]

[2025년 제1회 추경안 유형별 주요내용]

기본방향	총 12조 2,000억원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①재해・재난 대응, ②통상・AI 지원, ③민생 지원 등 3대 분야 집중 투자	
주요내용	① 재해・재난 대응	3.2조원
	-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	1.4조원
	- 재해・재난 예방・대응력 강화	1.7조원
	- 노후 SOC 개량 등 안전투자	0.2조원
	② 통상・AI 지원	4.4조원
	- 통상리스크 대응(관세, 공급망, 고용불안)	2.1조원
	- AI 생태계 혁신	1.8조원
	-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0.5조원
	③ 민생 지원	4.3조원
	-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	2.6조원
	- 영세・중소 사업자 매출기반 확대	1.6조원
	-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0.2조원
	④ 기타(국채이자, 주요행사 개최 등)	0.2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보도자료”, 2025.4.17.

기획재정부는 해당 유형의 사업이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추경 목적과 직접 관련되며 효과성이 높고, 신속 집행이 가능한 필수 사업만을 선별하였다고 설명하였는데, 이하에서는 각 유형별로 추경안의 신규・증액 사업에 대해 효과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검토하였음.

문의 : 김지수 예산결산조사관 kkjjss@assembly.go.kr (02-6788-5689)
김영빈 예산결산조사관 kyb@assembly.go.kr (02-6788-5698)
노장원 예산결산조사관 shwkddnjs12@assembly.go.kr (02-6788-5697)

1) 기획재정부,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보도자료”, 2025.4.17.

2. 재해·재난 대응

가. 개요

추경안의 재해·재난 대응 관련 사업은 7개 부처 27개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3조 2,221억원이 증액된 15조 5,402억원이 편성되었음.

국토교통부 소관 추경안은 일반회계 내 3개 사업, 교통시설특별회계 내 5개 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1개 사업, 주택도시기금 내 3개 사업으로, 12·29 여객기사고 피해지원 사업 14억원, 다가구매입임대(융자) 사업 800억원, 도로유지보수 930억원 등 총 3,356억원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음.

기획재정부 소관 추경안은 일반회계 1개 사업, 공공자금관리기금 1개사업으로, 예비비 1조 4,000억원 및 지방채 인수(융자) 사업 2,00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산림청 소관 추경안은 일반회계 4개 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개 사업으로, 산림재해대책비 1,740억원, 산림헬기 도입·운영 987억원, 임도시설(지원) 1,008억원 등 총 4,200억원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음.

소방청 소관 추경안은 일반회계 2개 사업으로, 화재안전 및 설비기준개발 51억원 및 중앙119특수구조대지원 2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환경부 소관 추경안은 환경개선특별회계 2개 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개 사업으로, 재해대책비 1,120억원, 하수관로 정비 556억원 등 총 1,75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해양수산부 소관 추경안은 일반회계 1개 사업으로, 어선사고예방 시스템 구축 6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행정안전부 소관 추경안은 일반회계 1개 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개 사업으로, 재난대책비(보조) 6,600억원 및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17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025년도 추경안 재해·재난대응 관련 사업 개요]

(단위: 억원)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 (A)	추경안 (B)	증감액 (B-A)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건설 및 지하안전관리	20	17	30	14
		건축안전	81	94	106	12
		국토안전관리원출연	843	860	869	9
	교통시설 특별회계	12·29여객기사고 피해 지원	-	-	14	14
		드론안전및활성화지원	233	223	323	100
		일반공항시설관리	4	3	227	224
		항행안전시설운영및구축	350	442	651	209
		도로유지보수	8,378	8,665	9,595	930
	지역균형 발전특별회계	도시재생사업	4,295	4,729	4,809	80
	주택도시기금	다가구매입임대(융자)	46,370	30,444	31,244	800
		다가구매입임대출자	24,343	2,731	3,451	720
		분양주택(융자)	20,153	14,716	14,960	244
소계			105,071	62,925	66,280	3,356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예비비	42,000	24,000	38,000	14,000
	공공자금 관리기금	지방채 인수(융자)	26,000	100	2,100	2,000
소계			68,000	24,100	40,100	16,000
산림청	일반회계	산림재해대책비	1,000	1,000	2,740	1,740
		산림헬기 도입·운영	1,123	939	1,925	987
		산불방지대책	624	579	927	348
		대형산불 대응 지능형 솔루션 기술개발(R&D)	-	-	117	117
	지역균형 발전특별회계	임도시설(지원)	1,828	1,900	2,909	1,008
소계			4,576	4,418	8,618	4,200
소방청	일반회계	화재안전 및 설비기준개발	9	10	62	51
		중앙119특수구조대지원	499	374	396	22
소계			508	384	458	74

(단위: 억원)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 (A)	추경안 (B)	증감액 (B-A)
환경부	환경개선 특별회계	재해대책비	500	500	1,620	1,120
		국립공원공단 출연	2,295	2,227	2,304	77
	지역균형 발전특별회계	하수관로 정비	12,816	16,264	16,821	556
소계			15,611	18,991	20,744	1,753
해양수산부	일반회계	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	18	22	83	62
소계			18	22	83	62
행정안전부	일반회계	재난대책비(보조)	6,000	3,600	10,200	6,600
	지역균형 발전특별회계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8,697	8,742	8,918	177
소계			14,697	12,342	19,119	6,777
7개 부처		27개 사업	208,482	123,181	155,402	32,221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재구성

나. 검토의견

첫째, 정부는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지원예산을 신규 또는 증액편성 하였는바, 피해규모에 대한 정확한 추계 및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편성된 추경안임을 고려하여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 선행절차를 보다 신속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의 **'재난대책비 지원'** 사업은 피해규모에 대한 집계가 진행 중인 이유로 사유시설 복구비 1,334억 5,000만원, 소상공인 생계비 지원 213억원, 공공시설 복구비 2,664억 5,000만원 및 파손주택 철거비 436억 5,000만원의 세부 산출내역이 미정임.

국토교통부의 **'지반탐사 지원'** 내역사업은 지반침하 위험구간에 대한 지반탐사 용역비를 지자체에 지원하기 위해 13억 6,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나, 굴착공사현장 주변, 노후하수관로 매설 지역, 지하수위 급변 지역, 상습침수지역이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역 등 데이터나 시스템에 기반하여 선별된 고위험지역과 무관하게 지자체 수요에만 근거하여 사업대상을 선정하였음.

또한 국토교통부의 **‘특별재생사업’**은 대규모 산불 피해지역에 특별재생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특별재생지역 지정을 위한 피해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곳을 지정하여 40억원씩 8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경안이 편성된 상황임.

환경부의 **‘재해대책비’** 사업은 재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조사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합동조사 후 피해복구 계획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는 구조이나, 이번 추경안을 통한 증액분 1,120억원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피해복구 계획이 미확정된 상황에서 편성된 금액임.

또한 환경부의 **‘산불예방 및 진화차량 확보’** 내역사업은 구체적인 배치 계획 없이 2대의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구매할 예정임.

산불로 인한 역대 최대규모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긴급 대응을 위한 추경안 편성은 타당성이 있으나, 상술한 바대로 추경안이 피해규모에 대한 정확한 추계 및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편성되었음을 고려하여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 선행절차를 보다 신속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

둘째, 기존 사업의 집행이 미진한 상황에서 추경안으로 증액 편성되거나, 2026년 이후 집행 계획이 있는 사업의 예산이 이번 추경안을 통해 전액 편성된 경우에는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함.

행정안전부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 내역사업은 산불간접피해지역 5개소 및 긴급정비필요지구 11개소의 정비를 위한 설계비·공사비 176억 7,800만원이 추경안을 통해 편성되었으나, 그 중 14개 사업지구의 사업기간이 2026년 6월까지로 예정되어 있고, 일부 사업지구는 2025년에 신규로 사업지구로 선정되었거나 계속사업임에도 2025년 3월 기준 공사비가 전액 미집행되는 등 추진실적이 미흡함.

국토교통부의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은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실시하기 위해 추경안에 1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실집행률을 살펴보면 2022년 19.0%, 2023년 7.8%, 2024년 29.0%, 2025년은 4월 기준 2.2%에 불과하고, 신청접수부터 공사시행 후 보조금 지급까지 상당 기간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토교통부의 **‘다가구매입임대 출자·융자’** 사업은 신축 매입임대의 경우 매입공고에서 계약체결까지 1~3년이 소요됨에 따라 기존에는 3년으로 분할 편성하였는데, 이번 추경안에는 매입임대 1,000호의 공급에 필요한 공사비 전액이 편성되었음.

산림청의 **‘산림재해대책비’** 사업은 산림재난피해지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1,74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330-03)로 지원하는 재원의 평균 실집행률이 64.5%로 다소 부진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 산림재난피해 복구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음.

소방청의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 개발’** 및 **‘중앙119특수구조대지원’** 사업은 과거 지방비 미확보나 계약 후 도입까지 기간 소요 등을 사유로 당초 계획 대비 집행이 지연되었는바,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연내 집행하여 도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 및 계약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이처럼 기존 사업의 집행이 미진한 상황에서 추경안으로 증액 편성되거나, 2026년 이후 집행계획이 있는 사업의 예산이 이번 추경안을 통해 전액 편성된 경우에는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임.

셋째, 정부는 재해·재난 대비 등을 위해 예비비를 1조 4,000억원 증액 편성하였는바, 산불 피해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고 부처별 재해·재난대책비가 증액편성 되었으며, 최근 예비비 집행실적이 다소 저조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예비비의 적정 증액 규모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산불 추가 복구,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추경안에서 목적예비비 1조원, 일반예비비 4,000억 등 본예산 대비 예비비 1조 4,000억원을 증액 편성하면서, 이와 동시에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6,600억원, 환경부 재해대책비 1,120억원 및 산림청 산림재해대책비 1,74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아직 산불 피해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정확한 피해규모 산정이 되어야 복구 규모가 확정된다는 점과 2023년 28.5%, 2024년 39.0% 등 코로나19 이후 최근 예비비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예비비의 적정한 증액 규모에 대해 국회 심의 시 논의가 필요해 보임.

3. 통상·AI 지원

가. 개 요

추경안의 통상·AI 지원 관련 사업은 6개 부처 48개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4조 4,167억원이 증액된 9조 5,585억원이 편성되었음.

기획재정부 소관 추경안은 일반회계 내 1개 사업으로,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사업이 2,000억원 증액 편성되었음.

금융위원회 소관 추경안은 일반회계 내 3개 사업으로, 산업은행 출자(관세대응 저리 지원) 사업 1,000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기업구조혁신펀드) 사업 5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산업은행 출자(반도체 저리대출 지원) 사업 2,00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추경안은 일반회계 내 10개 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2개 사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개 사업으로,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지원 사업 626억원, 소부장공급망 안정종합지원사원 860억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고 무역보험기금 출연 사업 3,000억원,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 사업 1,994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어 총 9,591억원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음.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추경안은 일반회계 내 6개 사업, 중소벤처기업진흥기금 내 3개 사업으로 신용보증기금출연(위기대응특례보증) 사업 1,0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중소기업융자 사업 7,000억원, 기술보증기금출연(위기대응특례보증) 사업 700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어 총 9,965억원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음.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안은 일반회계 내 2개 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1개 사업, 고용보험기금 내 2개 사업으로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300억원,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254억원 등 총 75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추경안은 일반회계 내 12개 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1개 사업, 정보통신진흥기금 내 3개 사업, 방송통신발전기금 내 1개 사업으로 AI 컴퓨팅 자원 활용 기반 강화 사업 1조 6,194억원, World Best LLM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 300억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고 AI 혁신펀드 사업 550억원, AI 반도체 실증 지원 사업 400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어 총 1조 8,360억원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음.

[2025년도 추경안 통상·AI 지원 관련 사업 개요]

(단위: 억원)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 (A)	추경안 (B)	증감액 (B-A)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	1,000	3,000	2,000
소계			-	1,000	3,000	2,000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기업구조혁신펀드)	500	-	500	500
		산업은행 출자 (반도체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	2,500	4,500	2,000
		산업은행 출자 (관세대응저리지원 특별프로그램)	-	-	1,000	1,000
소계			500	2,500	6,000	3,500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투자유치기반조성	3,579	3,642	4,038	396
		산업단지환경조성	3,972	3,314	3,825	51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 (비축출자)	2,518	2,007	4,001	1,994
	일반회계	무역보험기금 출연	450	800	3,800	3,000
		친환경차 보급촉진 이차보전	25	55	75	20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	60	51	125	74
		통상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23	31	50	19
		소부장공급망 안정종합지원사업	19	45	905	860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지원	-	-	626	626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기반시설구축지원	-	252	1,422	1,170
		팹리스기업첨단장비 공동이용지원	-	72	95	23
		반도체아카데미구축	43	47	57	10
		수출지원기반활용	864	914	1,802	888
소계			11,553	11,230	20,821	9,591
중소벤처기업부	일반회계	수출지원기반활용	1,119	1,276	2,174	898
		기술보증기금출연	200	400	1,100	700
		신용보증기금출연	800	-	1,000	1,000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4,232	5,680	5,780	100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915	821	921	100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2,191	2,361	2,528	167

(단위: 억원)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추경안 (B)	2025년도 증감액 (B-A)
	중소벤처기업 진흥기금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1,500	2,500	7,500	5,000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1,894	3,825	4,825	1,000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한시, 융자)	-	-	1,000	1,000
소계			12,851	16,863	26,828	9,965
고용노동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	1,062	1,079	1,379	300
	고용보험기금	고용유지지원금	714	703	814	111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 (폴리텍)	552	577	620	43
	일반회계	청년일자리창출지원	6,577	7,772	8,026	254
		중장년 인턴제	-	36	79	43
소계			8,905	10,167	10,918	751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일반회계	AI컴퓨팅 자원 활용 기반 강화	-	-	16,194	16,194
		AI 반도체 실증 지원	188	244	644	400
		World Best LLM 데이터 활용 지원	-	-	300	300
		한국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2,073	2,184	2,334	150
		AI챔피언 프로젝트 지원(R&D)	-	-	100	100
		울산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860	902	977	75
		융합서비스 글로벌시장 진출지원	78	173	227	54
		최고급AI해외인재유치지원 (R&D)	-	-	50	50
		광주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935	976	1014	38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898	977	1014	37
		생성AI선도인재양성(R&D)	35	52	87	35
		AI스타펠로우십지원(R&D)	-	60	90	30

(단위: 억원)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 (A)	추경안 (B)	증감액 (B-A)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연구개발특구육성(R&D)	1,003	1,061	1,111	50
	정보통신 진흥기금	AI 혁신펀드	-	450	1,000	550
		AI산업육성	-	767	914	147
		디지털전문·융합인재양성	819	508	558	50
	방송통신 발전기금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 (R&D)	1,054	1,304	1,404	100
소계			7,943	9,658	28,018	18,360
6개 부처		48개 사업	41,752	51,418	95,585	44,167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재가공

나. 검토의견

첫째, 일부 사업의 경우 정책지원 대상이 광범위하거나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어 정책효과 저하가 우려되므로, 지원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등 정책지원 대상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용보증기금 출연'** 사업은 무역분쟁 및 산업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내 위기대응 특례보증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으나, 지원대상 선정기준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실제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원대상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의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사업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보다 0.3%p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많은 자금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타 사업과 비교했을때 지원대상이 '미국 관세 품목업종 영위 또는 대미 수출 중소기업'으로 불분명해 구체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금융위원회의 **'산업은행 출자(관세대응저리지원특별프로그램)'** 사업은 미국의 품목별 관세 부과 등으로 인하여 생산·수출 위축이 우려되는 대미 수출비중이 큰 주요산업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지원대상이 광범위하여 대출 수요가 예상대비 과도할 수 있으므로 저리대출 지원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한정된 저리대출 공급액이 필요한 기업에게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둘째,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각각 추진하는 2차 수출바우처 사업은 관세피해 수출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데 관세대응패키지 사용의무 여부에 양자간 차이가 있으므로, 관세피해 대응이라는 정책 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업설계를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2025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각각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2차공고를 게시하였음. 두 사업 모두 관세피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수출바우처의 14대 메뉴와 함께 '관세특화패키지'를 지원하는 것은 유사하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이 '관세특화패키지'에 바우처 총액의 50% 사용의무가 있는 것과 달리,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은 관세특화패키지에 대한 사용의무가 없음.

[2025년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의 제2차 수출바우처 사업 비교]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명	2차 수출바우처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2차 수출바우처 (수출 바로(Barrier zero) 프로그램)
주무부처 운영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대상	2022~2024년 ①미국 직접수출 실적 보유, ②해외생산거점에서 미국 직접수출 실적 보유, ③캐나다·멕시코 중간재 직접수출 실적 보유 중소·중견기업	최근 3개년 ①미국 직접수출 실적 보유, ②해외생산거점에서 미국 직접수출 실적 보유, ③ 미국 간접수출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수출바우처 지원 14개 메뉴판 + 관세대응패키지 (관세대응패키지 50% 이상 사용의무)	수출바우처 지원 14개 메뉴판 + 관세대응패키지 (관세대응패키지 관련 의무규정 없음)
사업기간	2025.4.1. ~ 2026.1.31.(10개월)	2025.4.1. ~ 2026.2.28.(11개월)
사용기간	2025.5.초 ~ 2025.11.15.	2025.5. ~ 2026.2.28.
게시일	2025.4.2.	2025.4.1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5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공고", 2025.4.2.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공고", 2025.4.10.

추경안의 수출바우처 증액 편성 이유가 미국 및 주요국의 관세부과 등으로 인한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 만큼,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바우처 사용금액 중 일정 부분에 대해 관세특화패키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피해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셋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World Best LLM(WBL) 프로젝트 관련 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부재한 상황에서 관련 사업을 신규로 추진함에 따라 각 사업의 추진계획이 미흡하게 수립된 측면이 있으므로, 조속히 구체적인 WBL 프로젝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World Best LLM 운영·관리'** 사업은 WBL 프로젝트 참가팀 선정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인데, WBL 프로젝트 참가팀에 대하여 대규모 재정지원(추경안 기준 1,936억원)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WBL 프로젝트 참가팀 선정기준 검토에 필요한 시간과 공고기간을 충분히 부여할 필요가 있으나, 현 계획은 최대 3개월(5월 ~ 7월)내에 선정 및 평가 절차를 모두 마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어 사업이 면밀하게 추진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고급 AI해외인재 유치지원'** 사업은 WBL 프로젝트 참가팀에 대한 해외 인재 유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7월부터 인재 활용을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현 계획대로 WBL 프로젝트 참가팀이 선정된다고 하여도 8월에서야 지원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지원 일정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처럼 WBL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한 상황에서 관련 사업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여 추진함에 따라 각 예산사업의 추진계획이 면밀히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조속히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넷째, 정책펀드 조성 사업의 경우 기존 정책펀드가 자펀드 결성 후 투자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신규 펀드 조성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연내 자펀드 결성을 통하여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금융위원회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기업구조혁신펀드)'** 사업은 제4·5차 기업구조혁신펀드의 미투자액(총 2조 1,256억원)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안을 통해 제6차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신규 조성하려는 것으로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신규 펀드조성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신규 펀드를 조성하는 경우 제4·5차의 사례보다 일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내년 연초부터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혁신펀드'** 사업은 AI 및 SaaS 분야 유망 기업의 발굴·육성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이므로, 시행사 선정 이후 3개월 이내에 자펀드가 결성되어 연내에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집공고 시기를 당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4. 민생지원

가. 개 요

추경안의 민생지원 관련 사업은 7개 부처 15개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4조 3,467억원이 증액된 10조 3,132억원이 편성되었음.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추경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내 5개 사업으로, 부담경감크레딧 1조 5,660억원, 상생페이백 1조 3,700억원,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 1,314억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고, 소상공인지원(융자) 5,000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3,334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어 총 4조 146억원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경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내 2개 사업으로, 공공배달앱 할인 관련 65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농축산물 할인지원 500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1,150억원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음.

해양수산부 소관 추경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내 1개 사업으로,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20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추경안은 일반회계 내 1개 사업으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개발 92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안은 임금채권보장기금 내 1개 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내 1개 사업, 근로복지진흥기금 내 2개 사업으로, 대지급금 관련 819억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66억원, 생활안정자금(융자) 149억원 등 총 1,36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기획재정부 소관 추경안은 복권기금 내 1개 사업으로,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햇살론 유스)이 150억원 증액 편성되었음.

금융위원회 소관 추경안은 일반회계 내 1개 사업으로, 최저신용자 한시특례보증 사업이 365억원 증액 편성되었음.

[2025년도 추경안 민생지원 관련 사업 개요]

(단위: 억원)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 (A)	추경안 (B)	증감액 (B-A)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1,254	2,110	5,444	3,334
		소상공인성장지원	2,925	2,651	19,624	16,973
		소상공인재기지원	1,663	2,748	3,242	494
		소상공인지원(융자)	37,100	37,700	42,700	5,000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4,228	4,652	18,997	14,345
소계			47,170	49,861	90,007	40,146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푸드서비스선진화	26	19	669	650
		농식품소비기반조성	1,236	1,234	1,734	500
소계			1,262	1,253	2,403	1,150
해양수산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1,363	1,017	1,217	200
소계			1,363	1,017	1,217	200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일반회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술개발 및 보급지원(정보화)	-	-	92	92
소계			-	-	92	92
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기금	대지급금지급	4,747	5,293	6,112	819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143	143	209	66
	근로복지진흥기금	생활안정자금(융자)	885	915	1,064	149
		신용보증대위변제	302	317	647	330
소계			6,077	6,668	8,032	1,364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150	306	456	150
소계			150	306	456	150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최저신용자 한시특례보증)	560	560	925	365
소계			560	560	925	365
7개 부처		15개 사업	56,582	59,665	103,132	43,467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재가공

나. 검토의견

첫째, 대규모 민생지원 예산인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1조 5,600억원) 및 ‘상생페이백’(1조 3,700억원) 사업은 지원대상이 광범위하여 관련 부처·공공기관·민간금융회사와의 긴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며, 한시사업임에도 500억원 이상의 시스템 구축·운영비용 등이 수반되는 등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사업은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311만 1,000명에게 공공요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원 상당의 카드를 발급·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주의 방식에 따라 행정비용이 크게 발생하거나 신청률이 예상보다 낮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 지원의 법적 근거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및 세부지침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페이백’** 사업은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점포에서 카드로 결제한 경우 20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대비 증가분의 일부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사업으로, 이미 시스템이 완비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에 대비하여 상당한 행정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2개 사업은 모두 대규모 정책대상자를 대상으로 신청·검증·등록·정산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부처·공공기관·민간금융기관 등과 계약 준비 및 체결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연내 신청·접수 시스템의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임.

둘째, 소비진작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배달앱 할인’, ‘농축산물 할인지원’ 및 해양수산부의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사업은 사업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온누리 환급행사’는 향후 기금운용계획 집행 시 국회 심사내용을 존중하도록 집행관리에 철저할 필요가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배달앱 할인’** 사업은 예산안 산출 근거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고 기존 지방자치단체 운영 공공배달앱이 중단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배달앱에 대한 진단을 통해 경쟁력 여부를 검토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 개선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또한, 상당히 많은 지자체에서 공공배달앱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사업은 정책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 지역간 정책혜택의 차별을 발생시킬 가능성도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전통시장·대형마트 등의 농축산물 할인판매를 지원하는 것으로, 연례적으로 추경 및 예비비로 재원을 추가배정 받아 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안 산출근거가 다소 미흡하고 면밀한 사업계획이 필요할 수 있음.

해양수산부의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사업은 전통시장·대형마트 등의 수산물 할인판매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0년부터 추진되고 있음에도 사업의 주요 추진 목적인 어업인 소득 증대 기여 효과, 물가 안정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수산물 할인 지원을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 기여 효과, 물가 안정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사업 추진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의 경우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부담 경감 및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증액 편성되었으나, 사업 구조 상 개인별이 아닌 유통업체별로 지원하고 있어 정책효과가 일부 소비층에게 집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많은 국민이 수혜를 볼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온누리 환급행사’** 사업은 2025년 5~9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 환급 상시행사를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과 다른 내용으로 연초 사업내용을 변경 집행하고 이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으로 증액 편성하는 것임.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국회 심사내용과 달리 임의로 변경·집행하여 국회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형해화하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음.

셋째,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은 융자 대상자 확대 후 특정 업종에 대출이 집중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생활안정자금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신용보증대위변제’ 사업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므로 대위변제 후 구상채권 회수율 제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의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은 생계의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통해 장기·저리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대상에 포함된 이후 보험설계사와 같이 정보접근성이 높은 특정 직종에 융자가 편중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추경안 제출을 계기로 사업홍보를 강화하고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의 **‘신용보증대위변제’** 사업은 추경안에서 동 사업으로 신용보증을 받는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148억 8,000만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65억 6,0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향후 신용보증잔액 증가에 따른 대위변제액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므로 대위변제 후 회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넷째, 추경안의 소관 부처는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집행과정에서 사후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 사업은 중신용 소상공인에게 1,00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6개월 무이자 할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 제한 범위를 면밀히 설계하고 결제액 사용처의 사후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리턴패키지(점포철거비 지원)’** 사업은 폐업시 점포철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지원단가 상승 및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과의 중복수혜 가능성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요비용의 적정성 평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유사사업 지원정보 사전 공유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해양수산부의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사업은 추경안으로 증액되는 예산 중 50.0%를 전통시장에 배정하였는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관련 부정환급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 목적에 맞게 환급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관리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 부처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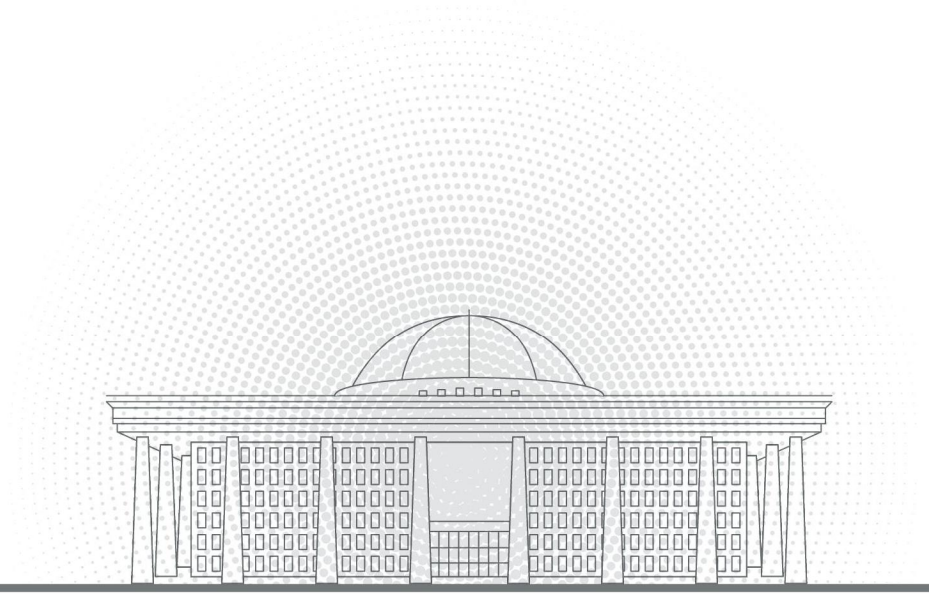

정무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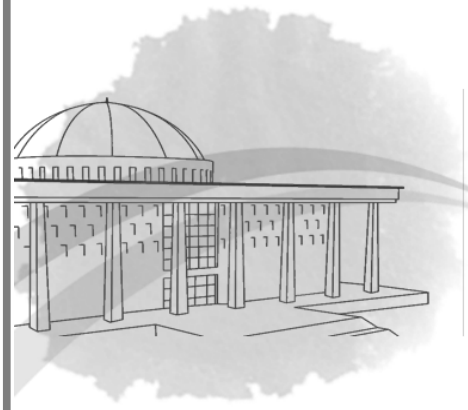

금융위원회

Ⅰ. 개 관

1.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추경안의 총수입은 3조 9,209억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함. 예산은 본예산과 동일한 1,011억원이고, 기금은 본예산과 동일한 3조 8,198억원임.[1)]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추경안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 (현계획)(A)	추경안 (변경안)(B)	증감(B-A)	(B-A)/A
예 산	896	1,011	1,011	-	-
기 금	43,325	38,198	38,198	-	-
합 계	44,221	39,209	39,209	-	-

주 1) 2024년도 본예산 중 기금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2) 2025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추경안의 총지출은 2조 1,274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3,865억원(22.2%) 증가함. 예산은 2조 1,273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3,865억원(22.2%) 증가한 반면, 기금은 1억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함.

문의 : 김지수 예산결산조사관 kkjjss@assembly.go.kr (02-6788-5689)

---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추경안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 (현계획)(A)	추경안 (변경안)(B)	증감(B-A)	(B-A)/A
예 산	15,030	17,408	21,273	3,865	22.2
기 금	1	1	1	-	-
합 계	15,031	17,409	21,274	3,865	22.2

주 1) 2024년도 본예산 중 기금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2) 2025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나.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입추경안은 일반회계 1개로 구성되며, 본예산과 동일한 1,011억원임.

[2025년도 금융위원회 세입추경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일반회계	896	1,011	1,011	-	-
합계	896	1,011	1,011	-	-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출추경안은 일반회계 1개로 구성되며, 본예산 대비 3,865억원(22.2%) 증가함.

[2025년도 금융위원회 세출추경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일반회계	40,030	41,838	45,703	3,865	9.2
합계	40,030	41,838	45,703	3,865	9.2

주) 총계 기준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신규 및 증액편성된 사업은 총 4개 세부사업으로, 총 증액규모(총계 기준)는 3,865억원임.[2)]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기업구조혁신펀드)’ 사업은 제6차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하여 기업구조조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목적으로 5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또한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설비투자지원특별프로그램)’ 사업은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연계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2,00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업은행 출자(관세대응저리지원특별프로그램)’ 은 미국 관세부과 조치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재정연계 저리대출을 위해 1,0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한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특례보증)’ 사업은 저신용 취약차주에 대한 한시특례보증을 확대하기 위해 36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025년도 금융위원회 추경안 신규 및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4년도 예산	2025년도			
		본예산 (당초)(A)	추경안 (변경안)(B)	증감(B-A)	(B-A)/A
[일반회계]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기업구조혁신펀드)	50,000	-	50,000	50,000	순증
산업은행 출자 (반도체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	250,000	450,000	200,000	80.0
산업은행 출자 (관세대응저리지원 특별프로그램)	-	-	100,000	100,000	순증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최저신용자 한시특례보증)	56,000	56,000	92,500	36,500	65.2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한시특례보증): 특례보증 공급 시 리스크 관리 및 공급편중 문제 해소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은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특례보증을 공급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위변제를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2025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365억원(65.2%) 증액된 925억원이 편성되었음.[3)]

[2025년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56,000	56,000	92,500	36,500	65.2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은 최저신용자(연소득 4,500만원 이하,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햇살론15 거절자)에게 3년 또는 5년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 1년)을 통해 최대 1,000만원까지 15.9%(최초)의 대출금리로 지원하는 제도임.

2025년도 예산은 2024년과 동일하게 56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예상사업손실률이 20%에서 33%로 상승함에 따라 연간 보증공급액을 2,800억원에서 1,700억원으로 축소한 바 있는데,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 사업 예산을 365억원 증액한 925억원으로 확대하여 보증공급액을 당초 계획보다 1,100억원이 추가된 2,800억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3) 세부사업: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1831-881)(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60억원	2,800억원(연간 보증공급금액) × 20.0%(예상사업손실률) × 100%(보증비율) = 560억원	560억원	1,700억원(연간 보증공급금액) × 33.0%(예상사업손실률) × 100%(보증비율) = 560억원	925억원	2,800억원(연간 보증공급금액) × 33.0%(예상사업손실률) × 100%(보증비율) = 925억원

자료: 금융위원회

나. 검토의견

첫째, 금융위원회는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의 신규 공급 시 받아야 하는 금융교육의 내용 및 교육 이수혜택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부실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금융위원회는 2025년 2월말, 1,700억원 규모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상반기에 1,000억원 조기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2달이 채 지나기 전에 다시 공급 규모를 연 2,800억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

[주요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2025년 상반기 공급계획(안)]

(단위: 억원)

구분	2025년 재원	2025년 공급계획(A)	상반기(B)	하반기	상반기 집행률 (B/A)
근로자햇살론	5,395	33,300	18,810	14,490	56.5%
햇살론15	1,450	10,500	6,500	4,000	61.9%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560**	**1,700**	**1,000**	**700**	**58.8%**
조기집행 소계	7,405	45,500	26,310	19,190	57.8%

자료: 관계부처 합동, 「조속한 민생 안정을 위한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 2025.2.28.

이는 은행권에 대한 건전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저신용자의 대출한도 축소가 확대되어 1인당 대출잔액이 감소하는 등 저신용·취약계층의 금융애로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4] 금융소외계층이 확산되고 불법사금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을 조기에 공급하려는 것임.

4) 아시아타임즈, “4대 은행 청년부터 중저신용자까지 대출 축소”, 2024.10.10.
서울경제, “중저신용자 외면하는 인뱅... 대출 신용점수 역대 최고”, 2025.3.4.

중·저신용자에 대한 제도권 민간금융의 대출공급이 축소되는 경우 비제도권 금융(불법 사금융)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기공급조치 외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한 특례보증 확대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당초 계획 대비 확대된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의 공급이 연중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5)]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분기별 지원실적]

(단위: 건, 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지원 건수	신청	34,943	30,521	33,793	19,223	34,861	19,191	14,692	17,127	22,598
	지원	34,208	28,776	28,382	17,647	37,204	19,754	13,940	15,852	21,090
총 대출액		10,019,490	6,946,380	6,785,680	4,889,000	10,613,940	5,152,020	3,321,220	3,719,900	7,160,360
평균 대출액		292	241	239	277	285	261	238	235	340

자료: 금융위원회

그런데 2022년 9월 동 상품이 출시된 이후 거치기간(최대 1년)이 도래하여 원리금 상환의무가 발생한 최저신용자가 증가하면서 대위변제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대위변제율은 2023년 6월 7.3%, 동년 12월 14.5%, 2024년 6월 22.0%, 2024년 12월 26.8%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관련 보증 공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1)]	2022년	2023년				2024년			
	4/4분기 (2022.9.29.~)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보증잔액(A)	96,689	158,128	198,906	219,746	291,795	303,227	293,036	281,596	310,784
신규보증액	100,195	69,464	67,857	48,890	106,139	51,520	33,212	37,199	71,604
보증해지액[2)]	3,505	8,025	27,079	28,050	34,090	40,088	43,403	48,639	42,416
대위변제액[3)]	8	211	17,360	36,017	57,093	79,428	104,851	134,960	156,859
대위변제율[4)]	0.01	0.1	7.3	12.6	14.5	17.9	22.0	26.2	26.8

주 1) 각 기간 중 신규보증액 및 각 기간 말 보증잔액, 누적 대위변제액, 대위변제율 기준
2) 보증해지액 = (누적 신규보증액 - 보증잔액) - (전분기 누적 신규보증액 - 보증잔액)
3) 대위변제액 = 대위변제발생액 - 대위변제회수액 (월말 누적 기준)
4) 대위변제율 = (누적 대위변제발생액 - 누적 대위변제회수액) / 누적 보증공급액

자료: 금융위원회

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규모는 2022년 1,002억원, 2023년 2,924억원, 2024년 1,935억원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례보증 지원규모(2,800억원)는 2023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보임.

대위변제율의 지속적인 증가는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상품의 지속적인 상품 공급에 차질을 초래하고, 보증공급 축소, 대출금리 상승, 가입요건 심사 강화로 인한 정책효과 축소 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한편, 현재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대출 실행 시 금융교육 필수 이수, 성실상환 시 추가대출 허용 및 이자율 인하, 신용·부채 컨설팅 이수 후 이자율 감면제도를 두고 있으나, 필수 금융교육은 14분으로 실질적인 교육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신용·부채관리 교육 이수에 따른 연 이자율 감면혜택은 금리(최대 15.9%) 대비 미미(△0.1%p)한 상황임.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대출한도 및 금리]

ㅇ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 최초 5백만원 이내에서 심사에 따라 지원하고, 6개월간 성실상환시 추가대출 가능 ㅇ금리: 최대 연 15.9% - 대출기간 3년: 최초 15.9% → 1년 성실상환 12.9% → 2년 성실상환 9.9% +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이수자 or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공자 0.1%p 인하 - 대출기간 5년: 최초 15.9% → 1년 성실상환 14.4% → 2년 성실상환 12.9% → 3년 성실상환 11.4% → 4년 성실상환 9.9% +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이수자 or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공자 0.1%p 인하

자료: 금융위원회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관련 금융교육 개요]

◦ (개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약정 체결 전에 인터넷을 통한 필수교육 3차시(총 14분) 이수가 필요함. 선택과목 3과목은 필수교육이 아니며, 선택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최전신용자특례보증 신청 가능.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인터넷 교육과정 - (필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이용자 필수교육 - 3차시/14분 - (선택) 청년 대상 생애주기별 금융교육 - 4차시/32분 - (선택) 중장년 대상 생애주기별 금융교육 - 10차시/46분 - (선택) 시니어 대상 생애주기별 금융교육 - 18차시/87분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https://edu.kinfa.or.kr/edu/online/onlineEduIntro.do)

이에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은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신청자의 필수 금융교육 내용을 강화하고, 신용·부채 컨설팅에 대한 이수혜택을 확대하는 등 실효성 있는 금융교육을 통해 보증부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의 인터넷 금융교육 중 "정책금융이용자 사후교육"에 대해서도 이수 시 정책금리 우대를 적용하거나,[6] 청년금융 컨설팅센터를 통한 기

6) [정책금융이용자 사후교육]
- (기본)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사후교육 (12차시/112분)
- (심화)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사후교육 (2차시/20분)
- (부채관리) 다중채무 예방을 위한 대출관리(1차시/4분)
- (부채관리) 새롭게 시작하는 부채관리(1차시/8분)

초재무진단 및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사업과 유사하게 최저신용자 한시특례보증에 대해서도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컨설팅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7)]

둘째,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의 특정 지방은행 공급이 높은 편이므로, 금융위원회는 협약 금융기관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여 협약 금융기관이 보증공급을 고르게 지원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음.

최저신용자 한시특례보증 협약기관이 총 14개사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금융기관의 특례보증공급 편중이 과도한 상황임. 해당 특례보증의 특정 지방은행(광주은행, 전북은행)의 공급 비율은 2022년 87.7%, 2023년 88.2%, 2024년 81.1%, 2025년 1월 80.6%임.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의 은행별 대출공급액 현황]

(단위: 백만원)

은행명	구분	대출 출시일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월
광주	**지방은행**	**2022년 9월**	**26,636**	**126,179**	**71,177**	**7,711**
전북	**지방은행**	**2022년 9월**	**61,284**	**131,806**	**85,866**	**11,621**
NH저축	저축은행	2022년 11월	12,275	1,396	320	26
DB저축	저축은행	2023년 3월	-	2,659	138	5
웰컴저축	저축은행	2023년 5월	-	15,969	2,039	86
우리금융저축	저축은행	2023년 9월	-	3,753	11,860	2,866

· (신용관리) 금융생활 밑거름, ‘신용관리’의 필요성(1차시/4분)
· (투자·저축) 월급으로도 할 수 있다! 건강한 투자·저축법(1차시/5분)
· (종합편)미소금융 대출 사후교육 - 댈님의 금융FIVE(1차시/7분)

7) [2024~2025년 청년금융 컨설팅센터 구축 및 운영 현황]

○ (사업개요) 청년도약계좌 협약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과 은행권이 협업(기존 자원 활용)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을 대상으로 금융상황 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교육 지원

[청년금융 컨설팅 프로세스]

[1단계] 기초재무진단	[2단계] 전문가 컨설팅	[3단계] 탐구
“자산현황보고서”(홈페이지) 또는 “신용·자산관리 서비스”(서민금융 잇다 앱)를 통해 스스로 재무진단 ⇨ 나의 재무·금융상황에 대한 이해도 높이기	기초재무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신용·부채관리컨설팅(서금원) 또는 은행권 재무컨설팅을 신청 ⇨ 나의 재무문제와 금융상품에 대한 궁금증 해결하기	관심있는 주제에 대한 금융교육 콘텐츠 조회, 경험공유, 만족도 조사 등 진행 ⇨ 자기주도적인 금융·경제생활 시작하기

○ (구축현황) 1397청년도약계좌 상담센터 內 서금원의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 센터(대면상담센터) 1개소를 개소(2024.12.4.)하고, 은행권과 협업하여 총 172개 지점에서 재무전문가의 대면상담 지원
○ (운영현황) 사업 개시 후 약 3개월 간((2024.12.4.~2025. 2. 25.), 사전진단 3,506건, 컨설팅 3,087건 수행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단위: 백만원)

은행명	구분	대출 출시일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월
신한저축	저축은행	2023년 10월	-	1,726	7,861	701
하나저축	저축은행	2023년 10월	-	3,615	2,283	59
IBK저축	저축은행	2023년 10월	-	4,330	4,325	315
KB저축	저축은행	2023년 12월	-	-	2,710	183
BNK저축	저축은행	2023년 12월	-	917	4,052	257
융창저축	저축은행	2024년 5월	-	-	311	32
진주저축	저축은행	2024년 5월	-	-	559	40
SBI저축	저축은행	2024년 12월	-	-	34	74
소계			100,195	292,350	193,535	23,975
특례보증액 중 광주·전북은행 비중			87.7%	88.2%	81.1%	80.6%

자료: 금융위원회

특례보증공급기관이 편중될 경우 정책수요자의 특례보증 접근성이 낮아져 제도권 정책금융을 활용하지 못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위원회는 협약 금융기관이 특례보증공급을 고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광주·전북은행 외 다른 협약기관에 적극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음.

2.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설비투자지원특별프로그램): 조속한 현물 출자 병행을 통한 저리대출 적기 공급 검토 필요

가. 개 요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설비투자지원특별프로그램)' 사업은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을 위한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기 위해 산업은행에 출자하는 예산으로, 2025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2,000억원(80.0%) 증액된 4,500억원이 편성되었음.[8)]

[2025년도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설비투자지원특별프로그램)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산업은행 출자 (반도체설비투자지원특별프로그램)	-	250,000	450,000	200,000	80.0

정부는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2024.6.)을 발표하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금융·세제·재정·인프라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는 일환으로, 2027년까지 최대 2조원(현금출자 1조원, 현물출자 1조원)의 정부출자를 통해 산업은행의 대출공급 여력을 확충하여 산업은행이 반도체설비투자에 대해 저리대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였음.

8) 세부사업: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설비투자지원특별프로그램)(2414-322)(금융정책국)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개요]

○ (운용목적) 반도체 산업의 제조역량 구축 지원 및 경쟁력 제고

○ (운용규모) 3년간(2025~2027년) 17조원

구 분	2025년	2026~2027년	합 계
운용규모	4조 2,500억원	12조 7,500억원	17조원
현금출자 요청액*	2,500억원	7,500억원	1조원

*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2024.6.26) 上 현물출자계획 1조원은 미반영

** 2024년 7월부터 산업은행 자체재원으로 저리대출 프로그램 가동

○ (지원대상) 국내에 신규 투자하려는 반도체 全분야(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등)의 국내외 기업(중소·중견·대기업 모두 포함)

○ (자금용도) 설비·R&D 투자자금 등 시설자금(장기대출 위주)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의 대환이 아닌 신규투자에 대해 자금지원

○ (대출한도) 현행 「산업은행법」상 동일계열 여신한도*까지 지원

* BIS개별자기자본(기본자본 +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 × 25%

○ (금리조건) 일반 산업은행 대출 대비 우대(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 제공 목표)

- 대기업 △0.8~△1.0%p, 중소·중견 △1.2~△1.5%p 우대

자료: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2024.6.)과 금융위원회 제공자료를 재가공

산업은행은 정부 출자 연계 프로그램 가동 이전에 반도체 산업 기업의 금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7월부터 자체재원을 바탕으로 하여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Ⅰ’을 가동하였음.[9)]

2025년에는 이 사업을 통한 산업은행으로의 현금출자금을 바탕으로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재정연계)’을 개시하였으며, 현금출자 2,500억원(3개년 총 1조원)과 현물출자 1조원 등을 통해 자본금을 확충하여 4조 2,500억원(3개년 총 17조원)의 저리대출을 국고채 수준의 낮은 금리(최저 2%대)로 지원할 계획임.[10)] 구체적으로는 ‘AI컴퓨팅 인프라’ 분야에 6,250억원(3개년 2.5조원)을 우선적으로 할당하고, 그 외 반도체설비투자에 대해서는 3조 6,250억원(3개년 14.5조원)을 지원할 예정임.

9)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Ⅰ(산업은행 자체재원) 개요]

○ 출시 배경

-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2024.6.26.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따라, 정부 출자 연계 프로그램 가동 이전에 반도체 산업 영위 기업의 금융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2024년 7월부터 산업은행 자체재원으로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Ⅰ’을 출시함

○ 주요 내용

- 지원대상 : 반도체 산업 영위기업(종합반도체, 설계, 패키징 등 全 영역)
- 자금용도 : 시설자금(설비투자, R&D투자)
- 상품한도 : 2조원(산은 자체재원, 재정연계 프로그램 출시전까지 운용)
- 금리우대 : 최대 △1.40%p

자료: 산업은행 제출자료를 재가공

10)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재정 연계) 개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반도체 설비투자지원을 가속화하기 위해 2025년 출자규모를 당초 예산보다 2,000억원을 늘린 4,500억원으로 하고, 이에 따른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운용규모를 2025년 당초 4조 2,500억원에서 7조 6,500억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운용규모]

구 분	2025년		2026~2027년	합 계	
	본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본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운용규모	4조 2,500억원	7조 6,500억원	12조 7,500억원	17조원	20조 4,000억원
현금출자 요청액*	2,500억원	4,500억원	7,500억원	1조원	1조 2,000억원

주)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2024.6.26) 上 현물출자계획 1조원은 미반영
자료: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2024.6.)과 금융위원회 제공자료를 재가공

나. 검토의견

국가적 반도체 산업 경쟁 및 무역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현금출자 증액을 통해 저리대출을 위한 산업은행의 자본금을 확충하여 반도체 설비투자를 지원할 필요성은 인정되는바,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당초 계획하였던 현물출자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저리대출 프로그램의 적기 공급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정부재정의 산업은행 현금출자를 통해 반도체 산업 기업의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에 대해 국고채 수준으로 낮은 금리를 지원하려는 사업임. 첨단 산업의 핵심으로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저리대출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고, 이 사업의 증액을

○ 출시 배경
- 2025년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재정과 연계하여 최저 국고채 수준 금리 지원이 가능한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재정연계)'을 2025년 1월 24일에 출시하였음.
- 총 운영규모 17조원 중 2025년에는 출자 규모*에 비례하여 4조 2,500억원을 운영
  * 2025년에는 현금출자 1조원 중 2,500억원이 확정됨에 따라 총 17조원 중 25%인 4.25조원을 운영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반도체 산업 영위기업(종합반도체, 설계, 패키징 등 全 영역)
- 자금용도 : 시설자금(설비투자, R&D투자)
- 상품한도 : 2025년 4.25조원
- 적용금리* : 국고채 유통수익률 + (차주별)신용리스크 프리미엄
  * 중소·중견의 경우 △0.10%p 금리인하 적용(단, 실행금리 하한은 국고채 유통수익률)

자료: 산업은행 제출자료를 재가공

통해 산업은행의 자본금을 충당하고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저리대출 지원을 계속하여 확대할 수 있을 것임.

2025년 4월 현재, ① 산업은행 자체재원을 활용한 저리대출 프로그램은 일반대출상품 대비 1%p 낮은 금리(2.97~3.92%)로 공급하는 것으로 13개사 7,585억원의 대출이 승인되어 지원 중에 있고, ② 정부재정과 연계된 저리대출 프로그램은 기존보다 더 낮은 금리(2.41~3.22%)로 공급하는 것으로 15개사 4,795억원의 대출이 승인되어 지원 중에 있으며, 나머지 한도 3조 1,455억원도 대출상담이 진행되는 등 이미 한도확인이 완료되어 추가승인이 불가능한 상황임.[11)]

특히 이 사업은 국고채 금리 수준의 초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융자수요가 충분한데, 2025년 1월 24일 재정연계 저리대출 프로그램 출시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공급한도가 소진됨에 따라, 추가 대출수요에 대해서는 금리가 1%p 이상 높은 산업은행의 자체재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어 반도체 설비투자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2024년 말 한국산업은행의 BIS 비율은 전분기 대비 0.46%p 하락한 13.90%으로 국내 시중은행 대비 제일 낮은 수준인데,[12)] 산업은행 BIS 하락요인[13)]이 지속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산업은행의 자체재원을 통한 저리대출 지원도 산업은행의 재정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한계가 있음.

정부는 2024년 7월 반도체 설비투자 특별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2025~2027년 현금출자 1조원 및 현물출자 1조원을 투입할 계획을 발표하고, 2025년에는 3개년의 25%에 해당하는 목표공급액[14)]과 현금출자액[15)]을 반영하였는데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출자계획을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임. 실제로, 가장 최근 산업은행으로의 현물출자는 2024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식 2조원을 현물출자한 것이고, 2025년에는 없는 상황임.

---

11) 2025년도 대출 목표액 4조 2,500억원 중 6,250억원은 관계부처 합동 추진 중인 ' AI컴퓨팅인프라 ' 사업참여 기업에게 지원하도록 우선 할당하고 나머지 3조 6,250억원을 이외 반도체 기업에게 지원함에 따라, 현재 잔여한도는 3조 6,250억원에서 4,795억원을 제외한 3조 1,455억원임.

12) 2024년 말 기준으로 주요 시중은행의 BIS 비율은 국민은행 17.31%, 신한은행 17.58%, 우리은행 15.85%, 하나은행 17.39%, 농협은행 17.57%, 중소기업은행 14.69% 등임.
금융소비자정보포털-금융회사핵심경영지표 참고
(https://fine.fss.or.kr/fine/fncco/coreMngmt/fisisBank.do?menuNo=900047)

13) 환율 상승으로 인한 외화대출의 위험가중자산 증가 및 미국 관세부과 등 무역량 감소로 인한 HMM의 주가 하락 등

14) 2025년 목표공급액: 4조 2,500억원(2025~2027년 목표공급액 17조원의 25%)

15) 2025년 현금출자액: 2,500억원(2025~2027년 현금출자액 1조원의 25%)

[2020~2025년 현재 한국산업은행 현물출자 내역]

(단위: 억원, %)

현물출자 일자	출자 증권명	현물출자 금 액	BIS 비율 변동	
			출자 전 BIS 비율	출자 후 BIS 비율
2022.12.28.	한국토지주택공사	5,650	13.08	13.20
2023.03.30.	한국토지주택공사	4,350	13.40	13.50
2024.03.28.	한국토지주택공사	20,000	14.07	14.50

자료: 한국산업은행

반도체 산업 기업에 대한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산업은행의 자본금을 확충하는 방법으로서 동 사업과 같은 현금출자와 현물출자가 있으나, 현금출자 대비 현물출자의 계획은 구체적이지 않고 언제 어떠한 규모로 출자될 것인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임.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산업은행의 자본금을 충당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금출자 증액 뿐만 아니라 현물출자 시기 및 증액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함께 수반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당초 계획하였던 현물출자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저리대출 프로그램의 적기 공급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3. 산업은행 출자(관세대응저리지원특별프로그램): 지원대상의 명확화 및 향후 자체재원을 통한 저리대출 지원 필요

가. 개 요

'산업은행 출자(관세대응저리지원특별프로그램)' 사업은 반도체 외 첨단전략산업 및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인한 관세 피해기업 등에 대해 저리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에 출자하기 위한 예산으로, 2025년도 추경안에는 1,0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6]

[2025년도 산업은행 출자(관세대응저리지원특별프로그램)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산업은행 출자 (관세대응저리지원특별프로그램)	-	-	100,000	100,000	순증

미국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자동차·부품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25%) 등으로 인해 대미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전기전자 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으로, 정부는 수출기업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칭) 위기대응 특별 대출 프로그램' 등을 신설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17]

이 사업은 수출 피해기업의 금융지원의 일환으로, 관세 피해기업 및 첨단전략산업(반도체 제외) 영위 기업 등에 대해 2025년 4조원의 최저 국고채 금리 수준의 저리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에 1,000억원의 현금출자를 하려는 것임.[18]

16) 세부사업: 산업은행 출자(관세대응저리지원특별프로그램)(2414-324)(금융정책국)

17) 관계부처 합동,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 2025.4.9.

18)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설비투자특별지원프로그램)(2414-322)를 통해 지원하고 있음.

[관세대응 저리지원 특별프로그램 개요]

○ 출시 배경 -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극대화 및 경기둔화 등의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가 주력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저리대출 지원 프로그램 신설 ○ 운용규모 - 2025년 총 4조원(현금출자 요청액 1,000억원) *2025년 이후의 운용규모 여부는 추후 관세부과로 인한 피해정도에 따라 필요시 추가 검토 예정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첨단전략산업 영위(반도체 제외) 기업 및 관세 피해기업 - 자금용도 : 설비투자, R&D 자금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상품한도 : 2025년 4조원 - 적용금리 : 국고채 유통수익률 + (차주별)신용리스크 프리미엄 등

자료: 금융위원회

나. 검토의견

미국 행정부의 품목별 관세 부과 등으로 인하여 생산·수출 위축이 우려되는 대미 수출비중이 큰 주요산업을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지원대상이 광범위하여 대출 수요가 예상 대비 과도할 수 있으므로 저리대출 지원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한편, 재정연계 저리대출 프로그램 종료 후 산업은행 자체재원을 통한 저리대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재 미국 행정부는 국내 제조업 육성, 세수 확대, 무역적자 해소 및 공급망 확보 등을 위해 품목별 관세 및 국가별 관세·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품목별 관세의 경우, ① 철강은 무관세 쿼터(263만톤)를 폐지하고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알루미늄은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상향 적용되었으며, ② 자동차·부품의 경우 완성차는 4월 3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되고,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향후 관세 시행시점이 추가 발표 예정이고 ③ 반도체·의약품에 대해서도 품목별 관세 부과를 검토 중으로 밝힌 바 있음.

상호 관세의 경우 4월 5일부터 모든 국가에 단일세율 10%가 적용 중에 있고, 한국은 25%의 상호관세가 추가로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90일간 유예된 상황임.

이에 대미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철강 업종 등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고, 가전·디스플레이 등은 해외생산의 위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19] 기업부담을 경감하고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저리대출의 필요성이 있음.

19) [주요 연구기관의 미국 과세부과의 산업별 영향분석]

다만, 이 사업은 저리대출의 대상을 반도체를 제외한 첨단전략산업 영위 기업 및 관세 피해기업 등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어, 국고채 수준의 저리대출 혜택을 받으려는 기업의 대출수요가 집중될 수 있고, 지원대상 선정에 대한 형평성 논란 등이 제기될 우려가 있음.

이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반도체설비투자지원특별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반도체 산업에 한정하여 대출신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출시 후 3개월만에 4조 2,500억원의 대출 운용한도가 모두 소진되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증액 편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업의 대출 운용한도 4조원 역시 이차전지·자동차 등 다른 첨단전략산업 및 관세피해기업을 지원하는데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저리대출 지원의 우선순위와 기업규모별 최대 지원액을 명확히 설정하여, 한정된 저리대출 공급액이 필요한 기업에게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사업설계를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재정출연을 통한 관세대응 저리지원 특별프로그램의 대출 운용한도가 모두 소진된 이후에도 관세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은행의 다른 자체 지원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자체재원을 활용한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산업은행은 2025년 3월 인공지능(AI), 2차전지, 바이오헬스,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설비 및 연구개발(R&D) 등 자금을 자체재원을 통해 지원하는 '핵심산업 설비투자지원 특별자금'을 출시하였으며, 2025년에는 6조원을, 2027년까지 총 19조원을 운영할 계획임.

산업	對美 수출비중 (2024년 기준)	분석 결과
❶ 자동차	49.1%	▪높은 對美 수출 의존도로 인해 對美 수출 큰 폭 감소 전망(IBK硏, SK증권)
❷ 철강	13.1%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對美 수출 큰 폭 감소 전망(IBK硏, 한신평)
❸ 반도체	7.5%	▪IT기기 가격 상승, 수요 감소로 對美 수출 감소 전망(산업硏)
❹ 이차전지	47.2%	▪우리나라는 對美 배터리 소재 수출 1위 국가로서, 미국 내 가격인상 및 수요위축 우려(신한증권)
❺ 디스플레이	0.6% (對베트남 수출비중 : 60%)	▪최종 생산기지인 베트남에 높은 관세(46%)로 부정적 영향(IBK硏)
❻ 전기전자	가전 48.5% 무선통신기기 7.9%	▪베트남(46%) 등 주요생산기지 고율 관세로 부정적 영향(신한증권) ▪가전은 멕시코 USMCA 관세 제외로 멕시코 생산 확대로 대응 가능성

자료: 관계부처 한동,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 2025.49.

[핵심산업 설비투자지원 특별자금(자체재원)]

○ 개요 - AI 등 유망산업 글로벌 패권경쟁에 대응하여 국내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강화 및 글로벌 초강대국 도약을 위한 첨단전략산업 설비투자 지원 ○ 운용규모 - 2025년 총 6조원(2027년까지 19조원) ○ 주요내용 - 지원대상: ① 국내 신규 투자하는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디스플레이, AI 영위기업 ②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디스플레이, AI 분야 핵심기술 확보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기업인수 추진 기업 - 자금용도: 설비투자, R&D 투자, M&A(해외기업 인수를 위한 자금 지원) - 대출한도: 건별, 업체별 한도 제한 없음 - 적용금리: 산금채 유통수익률 + (차주별)신용리스크 프리미엄 등

자료: 산업은행 홈페이지

해당 상품은 재정연계 상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금리수준이 높으나, 산업은행이 운용하는 대출상품 중에서는 금리수준이 낮아 첨단전략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에도 기여할 수 있으므로,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재정연계 대출상품의 종료 후에도 자체재원을 통한 저리대출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4.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기업구조혁신펀드): 기업구조조정에 선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신속투자 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기업구조혁신펀드)' 사업은 구조조정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출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추경안은 5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20]

[2025년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기업구조혁신펀드)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기업구조혁신펀드)	50,000	-	50,000	50,000	순증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정부재정 및 정책금융기관 등이 출자하여 모펀드를 구성하고, 자펀드 운용사가 민간자금 매칭을 통해 자펀드를 조성하면 자펀드가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집행하는 구조임.

자펀드는 투자대상 기업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민간자금을 모집하는 '프로젝트 펀드'와 투자대상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채 민간자금을 모집하는 '블라인드 펀드'로 구성되고, 투자집행은 투자 건이 발생할 때마다 건별로 투자자에게 자금을 받아 집행하는 캐피탈 콜(Capital Call) 방식으로 이루어짐.

기업구조혁신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은 사후적 구조조정 절차에 있지는 않으나 부실징후가 나타나는 기업인 '사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 및 워크아웃, 회생절차 개시 및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절차가 개시된 기업인 '사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임.

20) 일반회계-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기업구조혁신펀드)(2432-304)(구조개선정책관)

[기업구조혁신펀드 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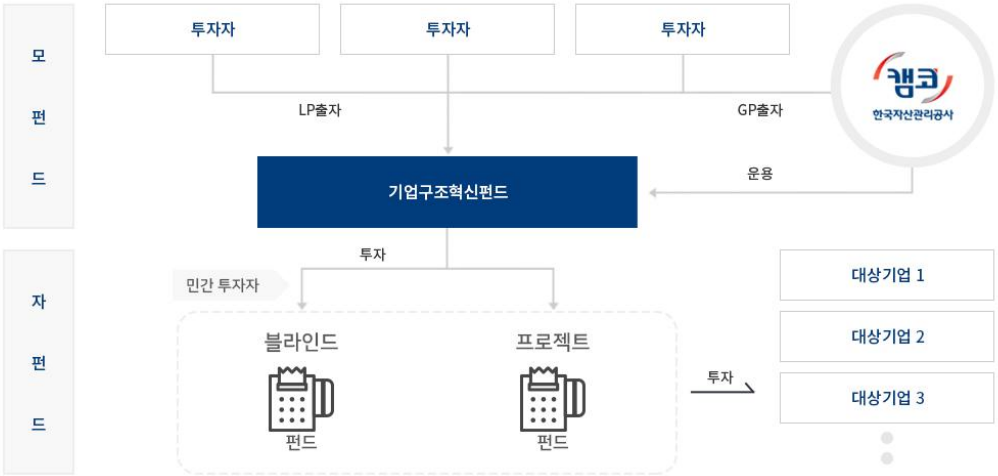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참고로, 기업구조혁신펀드는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고,[21] 2024년 제5차 기업구조혁신펀드가 조성되었음.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 현황]

(단위: 억원, 기준: 2025.3.)

연도	차수	정부재정 투입액	모펀드 약정총액 (정부재정 +정책금융기관)	민간출자액	자펀드 결성액	투자액
2018년	1차	-	5,415	11,026	16,441	15,995
2020년	2차	750	5,015	10,836	15,851	15,080
2021년	3차	675	4,510	13,283	17,793	15,722
2023년	4차	-	5,000	6,160	11,160	2,501
2024년	5차	500	5,000	7,637	12,637	40
2025년(추경안)	6차	500	2,500	2,500 이상	5,000 이상	-

자료: 금융위원회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제6차 기업구조혁신펀드 5,000억원을 조성하기 위해 해당 펀드의 후순위 투자를 위한 정부재정 투입분 500억원이 편성됨.

21) 제1차 기업구조혁신펀드는 2018년 정부재정 투입 없이 1조 6,441억원이 조성되었고, 제2차 기업구조혁신펀드는 2020년 정부재정이 750억원 출자되어 1조 5,851억원이 조성되었음. 제3차 기업구조혁신펀드는 2021년 정부재정이 675억원 출자되어 1조 7,793억원, 제4차 기업구조혁신펀드는 2023년 정부재정 투입 없이 1조 1,160억원이 조성되었으며, 제5차 기업구조혁신펀드는 2024년 정부재정이 500억원 출자되어 1조 2,637억원이 결성되었음.

나. 검토의견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신규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 시 이 펀드를 통해 사전적·사후적 구조조정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주목적 투자대상 및 비율 조정 등 관세피해업종에 대한 집중투자 방안을 마련하고 자펀드 결성을 앞당겨 조속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하반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제6차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신규 조성하여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해 선제적 투자지원이 가능하도록 후순위 투자 재정출자금을 편성하려는 것임.

2021년부터 금리가 인상된 이후 재무구조가 허약해진 가운데 소비침체,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글로벌 경쟁 등으로 산업전반적인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석유화학, 이차전지 등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수요가 증가하여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22][23]

이러한 상황에서 사전적·사후적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자금대여, 회사 보유자산 매입, 조기할인변제, 인수합병 등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한계기업을 정상화하고 기업 및 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다만, 최근 조성된 제4차·제5차 기업구조혁신펀드의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기업구조조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규 펀드를 미리 조성해야 할 시급성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제4차·제5차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합쳐 현재 2조원 이상의 투자여력이 남아있는 상황이고,[24] 이는 향후 4~5년에 걸쳐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투자로 집행될 예정임.

금융위원회는 제4차, 제5차 기업구조혁신펀드가 운영 중임에도 신규 펀드를 조성하는 이유로, 미 관세피해 등 통상정책에 따른 주력산업군의 영향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관세피해 산업(자동차·이차전지·철강·석유화학·반도체·디스플레이

---

22) 미국의 상호관세(기본 10% 적용, 한국 25% 유예) 및 품목별 관세(철강·알루미늄·자동차 25%)로 인해 대미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수출산업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서울경제, "주력사업 빼고 다 파는 현대제철... 국내 철강산업 지각변동 부른다", 2025.4.15.
서울경제, "철강·광섬유까지 덮친 中 덤핑... 구조조정 실기땐 충격 더 커져", 2025.4.11.
연합뉴스 "격변기 맞은 산업계, 전방위 구조조정... 한계기업 '퇴출 도미노'", 2025.4.2.

23) 석유화학 사업의 경우에는 중국의 공급량 확대로 인해 2030년까지 불황이 지속되고 2035년은 되어야 일반적인 불황 국면으로 회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컨설팅 결과도 제기된 상황임(헤럴드경제, "BCG 석화 전망 보고서 정부보고... 지속손실 업체 구조조정 시급", 2025.4.11.).

24) [제4차(2023년) 제5차(2024년)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 및 투자현황]

등)에 특화하여 이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신규펀드를 올해 조속히 조성하여 내년 초부터 주력산업 중심의 기업구조조정 자금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신규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 시에는 이 펀드를 통해 사전적·사후적 구조조정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펀드 목적에 부합하는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먼저, 제6차 기업구조혁신펀드(안)의 경우 정부재정의 후순위 투자비율을 기존 5%보다 높은 10%로 높게 설정하여 자펀드의 손실을 과거 대비 정부가 더 많이 부담하게 되므로, 블라인드 펀드의 주목적 투자비율(기존 60%)을 상향하거나 주목적 투자대상을 협소하게 규정하는 등 관세피해업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펀드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금융위원회는 정부재정을 전액 후순위 재원으로 출자하여 민간의 투자 리스크를 완화하고 투자 난이도가 높은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을 도모할 계획인데, 신규 펀드의 정부재정 후순위 투자비율이 기존 펀드의 5%의 2배 규모로 상향되어 민간투자의 위험 부담이 줄어든 측면이 있음. 이에 민간투자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블라인드 펀드의 주목적 투자비율 상향 또는 주목적 투자대상의 취약산업군 제한 강화 등을 포함하여 취약산업군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다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투입된 정부재정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펀드 공고 및 선정, 자펀드 결성 일정을 기존 펀드 대비 앞당기는 등 적극적인 펀드 조성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금융위원회는 2025년 내 재정·정책 모펀드를 설립하고 2026년 투자집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추진일정을 설정하였음.

(단위: 개, 억원, 기준: 2025년 3월)

연도 (확정예산 회계연도 기준)	정부 출자액 (a)	정책금융기관 출자액 (b)	민간 출자액 (c)	자펀드 결성액 (a+b+c)	자펀드 결성 수	주목적 투자비율	2025년 3월말 기준 누적		미투자액 (a+b+c-d)	약정 상 자펀드 투자기간
							투자액 (d)	투자 건수		
2023	-	5,000	6,160	11,160	7	블라인드 60% 프로젝트 100%	2,501	13	8,659	4~5년
2024	500	4,500	7,637	12,637	6		40	1	12,597	4~5년

주) 자펀드 결성액과 관련하여, 블라인드펀드는 실제 모집액을 반영하였으나, 프로젝트펀드는 수시 제안접수 방식으로 최소 결성 목표금액 기준으로 작성
자료: 금융위원회

[제6차 기업구조혁신펀드(안) 집행계획]

추진 시기	사업 추진 내용
2025.9월	◦ 재정·정책 모펀드 정관 체결 및 설립
2025.10월~ 2025.12월	◦ 자펀드(블라인드펀드) 선정공고 및 심사
2025.10월~	◦ 자펀드(프로젝트펀드) 수시 출자 제안 접수 및 심사(재원 소진시까지)
2026년~	◦ 선정 자펀드는 민간자금 매칭을 거쳐 투자집행 개시

주) 추가경정예산안의 집행 시기, 정책금융기관 내부승인 절차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자료: 금융위원회

참고로, 2023년 제4차 기업구조혁신펀드의 경우, 자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공고는 5월 2일, 자펀드 위탁운용사 선정은 6월 28일에 이루어졌고 블라인드 펀드의 결성은 6개월 후인 12월 27일에야 완료되었음.[25] 2024년 제5차 기업구조혁신펀드의 경우 자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공고는 6월 24일, 자펀드 위탁운용사 선정은 8월 8일에 이루어졌고, 블라인드 펀드는 12월 31일 결성이 완료되었음.[26]

금융위원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 신속한 투자집행이 가능하도록 제5차 기업구조혁신펀드보다 펀드 집행이 늦어지지 않도록 자펀드 선정공고 및 선정, 블라인드 펀드 결성일정을 앞당길 필요가 있고, 자펀드 위탁운용사가 투자확약서를 신속히 확보하는 등 블라인드 펀드 자펀드 결성이 가능한 한 연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음.

25)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 추진일정]

세부 사업 추진 내용	당초 계획	실행
▸ 모펀드 조성기관간 MOU 체결	2023.2분기	2023. 4. 11.
▸ 모펀드 설립	2023.2분기	2023. 6. 26.
▸ 자펀드 운용사 모집 공고	2023.2분기	2023. 5. 2.
▸ 자펀드(블라인드펀드) 운용사 선정	2023.2분기	2023. 6. 28.[주]
▸ 자펀드 1조원 조성	~2023.12월	~2023. 12. 27

주) 프로젝트펀드는 민간 운용사로부터 출자를 수시로 제안 받아 심사 및 출자

26) [기업구조혁신펀드 5호 추진일정]

세부 사업 추진 내용	당초 계획	실행
▸ 재정모펀드 설립	2024.1분기	2024. 03. 20
▸ 정책모펀드 설립	2024.2분기	2024. 07. 30
▸ 자펀드 운용사 모집 공고	2024.2분기	2024. 06. 24
▸ 자펀드(블라인드펀드) 운용사 선정	2024.2분기	2024. 08. 08[주]
▸ 자펀드 1조원 조성	~2024.12월	~2024. 12. 31

주) 프로젝트펀드는 민간 운용사로부터 출자를 수시로 제안 받아 심사 및 출자

기획재정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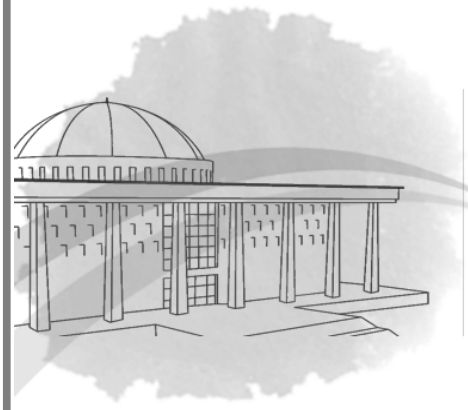

기획재정부

Ⅰ. 개 관

1.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추경안의 총수입은 396조 3,784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조 2,531억원(0.3%) 증가함. 예산은 385조 2,676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조 2,491억원(0.3%) 증가하고, 기금은 11조 1,108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40억원(0.04%) 증가함.[1)]

[2025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추경안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 (현계획)(A)	추경안 (변경안)(B)	증감(B-A)	(B-A)/A
예산	3,623,748	3,840,185	3,852,676	12,491	0.3
기금	104,876	111,068	111,108	40	0.04
총수입	3,728,624	3,951,253	3,963,784	12,531	0.3

주 1) 2024년도 본예산 중 기금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2) 2025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문의 : 정원철 예산결산조사관 jungwc@assembly.go.kr (02-6788-5679)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5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추경안의 총지출은 41조 4,375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조 9,770억원(5.0%) 증가함. 예산은 4조 9,367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조 6,000억원(48.0%) 증가하고, 기금은 36조 5,008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3,770억원(1.0%) 증가함.

[2025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추경안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 (현계획)(A)	추경안 (변경안)(B)	증감(B-A)	(B-A)/A
예산	51,993	33,367	49,367	16,000	48.0
기금	355,202	361,238	365,008	3,770	1.0
총지출	407,195	394,605	414,375	19,770	5.0

주 1) 2024년도 본예산 중 기금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2) 2025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나.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추경안은 총 2개 회계(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며, 본예산 대비 8조 7,908억원(1.8%) 증가함.

[2025년도 기획재정부 세입추경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일반회계	4,408,102	4,638,148	4,722,977	84,830	1.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30,422	139,089	142,167	3,078	2.2
합계	4,538,524	4,777,236	4,865,144	87,908	1.8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세출추경안은 총 2개 회계(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며, 본예산 대비 1조 8,916억원(4.6%) 증가함.

[2025년도 기획재정부 세출추경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일반회계	320,317	409,310	428,227	18,916	4.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039	-	-	-	-
합계	322,355	409,310	428,227	18,916	4.6

주) 총계 기준

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2개 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복권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는 321조 9,590억원으로 현계획 대비 8조 2,605억원(2.6%) 증가함.

기금별로 살펴보면,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313조 905억원으로, 현계획 대비 8조 2,605억원(2.7%) 증가하였고,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8조 8,685억원으로 현계획과 동일함.

[2025년도 기획재정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계획	2025년도				
		당초	현계획(A)	변경안(B)	증감(B-A)	(B-A)/A
공공자금관리기금	3,286,068	3,048,300	3,048,300	3,130,905	82,605	2.7
복권기금	84,156	88,685	88,685	88,685	-	-
합계	3,370,224	3,136,985	3,136,985	3,219,590	82,605	2.6

주) 총계 기준이며, 2024년도 계획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2025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신규 및 증액편성된 사업은 총 5개 세부사업으로, 총 증액규모(총지출 기준)는 1조 9,770억원임.[2)]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한국수출입은행 출자’는 미국의 상호관세 등 통상정책 변화로 직·간접적 피해가 우려되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10조원 규모의 수출기업 위기극복 지원 패키지를 신설·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00억원을 증액하였음.

‘예비비’는 산불 추가복구 소요 및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재원 확보를 위해 본예산 대비 1.4조원을 증액한 3.8조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예비비는 0.4조원 증가한 1.2조원, 목적예비비는 1조원 증가한 2.6조원 규모임.

또한, 추가 국고채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을 상환하기 위해 ‘국고채 이자상환(개인투자용국채포함)’ 예산을 1,620억원 증액하였고, ‘지방채 인수(융자)’ 사업은 산불 피해 발생 지역의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방채를 장기저리로 인수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2,000억원을 증액하였음.

[2025년도 기획재정부 추경안 신규 및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4년도 확정예산	2025년도			
		본예산 (당초)(A)	추경안 (변경안)(B)	증감(B-A)	(B-A)/A
[일반회계]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금융시장 안정화)	-	100,000	300,000	200,000	200.0
예비비	4,200,000	2,400,000	3,800,000	1,400,000	58.3
[복권기금]					
청년·대학생 소액금융지원	15,000	30,640	45,640	15,000	49.0
[공공자금관리기금]					
국고채 이자상환 (개인투자용국채포함)	28,259,942	29,977,898	30,139,868	161,970	0.5
지방채 인수(융자)	2,600,000	10,000	210,000	200,000	2,000.0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예비비: 당해연도 예비비 집행내역 공개 필요

가. 개 요

‘예비비’ 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헌법」[3] 및 「국가재정법」[4]에 따라 사업별 내역을 확정하지 않고 편성하는 자금으로서,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하는 목적예비비와 별도의 목적 지정 없이 일반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예비비로 구분됨.

2025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1조 4,000억원(58.3%) 증액된 3조 8,00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목적예비비는 본예산 대비 1조원(62.5%)이 증액된 2조 6,000억원, 일반예비비는 본예산 대비 4,000억원(50.0%)이 증액된 1조 2,000억원이 편성되었음.[5]

[2025년도 예비비 추경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예비비	4,200,000	2,400,000	3,800,000	1,400,000	58.3
목적예비비	2,200,000	1,600,000	2,600,000	1,000,000	62.5
일반예비비	2,000,000	800,000	1,200,000	400,000	50.0

예비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는데, 일반회계는 「국가

3) 「대한민국헌법」
제55조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5) 세부사업: 예비비(3069-300)(예산실)

재정법」 제22조에 따라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고, 특별회계는 근거 법률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는 규정[6]이 있는 경우 예비비의 편성이 가능하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있는 특별회계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51조에 따라 예비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지 않아도 일반회계로부터 예비비를 전입받아 사용할 수 있음.[7]

[2019년 이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편성 추이]

(단위: 억원)

구 분	2019 예산	2020 예산	2021 예산	2022 예산	2023 예산	2024 예산	2025	
							예산	추경안
합 계	30,000	56,100	97,000	55,000	46,000	42,000	24,000	38,000
목적예비비	18,000	42,100	81,000	37,000	28,000	22,000	16,000	26,000
일반예비비	12,000	14,000	16,000	18,000	18,000	20,000	8,000	12,000

주) 2019 ~ 2022년도 예비비는 추경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 이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의 추이를 보면, 코로나19 이전 2019년은 3조원 수준이었으나, 2020년에는 5조 6,100억원, 2021년 9조 7,000억원, 2022년 5조 5,000억원으로 코로나19 기간 동안 예비비 편성규모가 크게 증가하였고,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참고로, 2025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안은 목적예비비 2조 6,000억원, 일반예비비 2조 2,000억원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목적예비비 1조원(△38.5%), 일반예비비 1조 4,000억원(△63.6%) 등 총 2조 4,000억원(△50.0%)이 감액되었음.

[2025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안 국회 심의 결과]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안(A)	국회확정(B)	증감(B-A)	(B-A)/A
예비비	4,800,000	2,400,000	△2,400,000	△50.0
목적예비비	2,600,000	1,600,000	△1,000,000	△38.5
일반예비비	2,200,000	800,000	△1,400,000	△63.6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4.12.

6) (예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11조(예비비) 각 계정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7) 「국가재정법」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④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은 특별회계는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예비비를 전입 받아 그 특별회계의 세출로 사용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예비비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연도 목적예비비와 일반예비비의 배정·집행 내역과 이를 바탕으로 한 가용 예비비 규모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정부는 해당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번 추경안의 예비비 증액 규모는 1조 4,000억원으로, 추경안의 전체 총지출 증액 규모 12.2조원의 1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증액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올해 편성된 목적예비비와 일반예비비의 세부 배정·집행내역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예비비 가용규모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나 정부는 해당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해 정부는「대한민국헌법」제55조[8]에서 예비비 지출은 차기국회에서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차년도 국회에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당해연도 예비비의 배정·집행 내역의 공개가 곤란하다는 입장임.

그러나「대한민국헌법」및「국가재정법」은 예비비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자금이라고만 규정할 뿐, 예비비의 공개를 제한하고 있지 않음.

한편, 정부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는 특수활동비(230-00)로,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정보활동 및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등은 안보비(270-00)로,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국방, 국민 안전 분야의 정보자산 취득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는 정보보안비(280-00)로 편성하고 있음.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보안과 기밀성 유지가 필요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나 안보비 및 정보보안비 등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비목으로 편성·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산불, 태풍 및 집중호우와 같이 예측하지 못한 재해·재난 등에 사용하는 예비비의 경우 그 집행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8)「대한민국헌법」
제55조 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한국수출입은행 출자(금융시장 안정화): 위기 대응을 위해 출자를 반복하는 사업방식에 대한 검토 필요

가. 개 요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사업은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의 지원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9]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2,000억원(200.0%) 증액된 3,000억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한국수출입은행 출자(금융시장 안정화)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금융시장 안정화)	-	100,000	300,000	200,000	200.0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25조원 중 납입자본금은 16조 9,733억원(67.9%)이며, 이 중 정부가 12조 9,878억원을 출자하여 76.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 추경안에 따라 2,000억원이 추가 출자되면 정부 출자금은 13조 1,878억원으로 증가하고, 지분율도 76.8%로 증가하게 됨.

[한국수출입은행 자본금 및 주주 현황]

(단위: 억원)

법정자본금	납입자본금			
		정부	한국산업은행	한국은행
250,000	169,733(67.9%)	129,878(76.5%)	28,205(16.6%)	11,650(6.9%)

주) 2025.1.23. 정부 출자금 1,000억원 출자 완료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9) 「한국수출입은행법」
제4조(자본금) :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은 25조원으로 하고, 정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수출업자의 단체와 국제금융기구가 출자하되, 정부 출자의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사업은 인프라·방산·원전 등 초대형 해외수주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2025년 본예산에 1,000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2025.1월 한국수출입은행에 출자되었음. 그러나 미국발 관세부과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10조원의 자금을 추가 공급하고자 이번 추경안에 2,000억원의 출자금을 반영하였음.

[미국 관세 등 수출위기대응 자금공급 계획]

(단위: 조원)

	위기대응 지원		상생 지원	수출 다변화	합계
	중소·중견	대기업			
추가 자금공급 계획	3.0	3.0	3.0	1.0	10.0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번 추경안의 2,000억원 출자규모는 추가 자금공급 10조원에 한국수출입은행의 평균 손실률 4.1%를 반영하고, 이를 정부가 50% 분담하는 것으로 산출되었음.[10] 향후 정부는 10조원 중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각각 3조원씩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대-중소기업 상생 지원을 위해 3조원, 수출다변화 지원 프로그램에 1조원을 투입할 예정임.

[수출위기대응 프로그램 세부내역]

구 분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 (6조원)	규모	3.0조원	3.0조원
	대상	첨단·혁신산업, 철강·석화 등 위기주력산업, 수출다변화 기업, 新통상·무역질서 피해 기업 등	
	주요 내용	① 금리인하 최대 2.0%p ② 신용등급 하락에도 추가가산금리 미부과 ③ 통상대응, 시장개척, ESG대응 컨설팅 등	수출실적 기반의 수출성장자금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 지원 (3조원)	대상	해외 진출 대기업에 납품 또는 동반 진출하는 중소·중견기업 등	
	주요 내용	금리차감 확대: 최대 0.3 → 1.0%p	
수출 다변화 지원 프로그램 (1조원)	대상	신규 수출시장 개척 등 다변화 추진 기업 등	
	주요 내용	대출금리: 최대 0.4%p, 대출한도 : 최대 +10%p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0) 2,000억원 = 추가자금 공급목표 10조원 × 수은 평균 손실률 4.1% × 정부 분담 50%

나. 검토의견

수은에 대한 정부 출자는 수은의 BIS 비율 유지 및 추가 신용 확보를 통해 대규모 정책금융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미 출자된 자금은 정부 배당금을 제외하면 회수할 방법이 없으므로, 수출환경 변화가 발생할 때마다 추가적인 출자를 반복하는 사업방식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추경 편성을 통한 수은 출자 현황을 보면, 정부는 2009년 경제위기에 직면한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당초 출자액 3,000억원과 추경 2,500억원을 합한 5,500억원을 출자하였고, 2016년에는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을 위해 1조원을 추경으로 추가 출자하는 등 수출기업에 대한 외부 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수은에 대한 출자 확대로 대응하여 왔음.

[추경 편성을 통한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현황]

(단위: 억원)

연 도	당초 출자액(A)	추경증액 (B)	소계 (A+B)	추경편성 목적
2009	3,000	2,500	5,500	경제위기 직면 수출중소기업 지원 확대
2013	200	800	1,000	수출 중소·중견기업 및 취약산업(조선)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2015	550	750	1,300	수출부진품목 등 추가지원
2016	200	10,000	10,200	조선사 구조조정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자본확충 (해운보증기구 설립사업 650억원 포함)
2019	262	300	562	특별계정 지원을 위한 자본확충
2020	1,883	3,900	5,783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여력 확충
2025	1,000	2,000	3,000	미국 관세부과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합계	**7,095**	**20,250**	**27,345**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수은에 대한 출자는 1976년 기관 설립 시부터 2000년까지 1994·1995·1996년을 제외하고 매년 실시되었고, 2001~2025년 중에는 2001년, 2018년을 제외하고 매년 현금 또는 현물출자가 이루어졌음.

특히 IMF, 경제위기, 조선업 구조조정, 코로나19 대응 등 대내외 환경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출자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국내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을 수은 출자금 확대를 통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대응 방식은 이번 추경안에도 반복되고 있음.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연도별 출자 현황]

(단위: 억원)

연도	정부			한국은행	외환은행	산업은행	계
	현금	현물	소 계				
1976~1993	3,060	-	3,060	2,650	1,150	-	6,860
1994	-	-	-	-	-	-	-
1995	-	-	-	-	-	-	-
1996	-	-	-	-	-	-	-
1997	250	1,600	1,850	-	-	-	1,850
1998	1,000	8,199	9,199	-	△1,150	-	8,049
1999	1,000 △1,536	-	△536	7,000	-	1,536	8,000
2000	-	-	-	2,000	-	-	2,000
2001	-	-	-	-	-	-	-
2002	500	-	500	-	-	-	500
2003	400	-	400	-	-	-	400
2004	100	-	100	-	-	-	100
2005	200	5,000	5,200	-	-	-	5,200
2006	100	-	100	-	-	-	100
2007	30	-	30	-	-	-	30
2008	-	6,500	6,500	-	-	-	6,500
2009	5,500	5,000	10,500	-	-	-	10,500
2010	1,500	-	1,500	-	-	-	1,500
2011	1,000	-	1,000	-	-	10,000	11,000
2012	-	8,793	8,793	-	-	-	8,793
2013	1,000	-	1,000	-	-	-	1,000
2014	1,300	3,800	5,100	-	-	-	5,100
2015	1,300	10,000	11,300	-	-	-	11,300
2016	10,200	-	10,200	-	-	5,000	15,200
2017	-	2,500	2,500	-	-	11,669	14,169
2018	-	-	-	-	-	-	-
2019	562	-	562	-	-	-	562
2020	5,783	-	5,783	-	-	-	5,783
2021	2,988	-	2,988	-	-	-	2,988
2022	250	-	250	-	-	-	250
2023	-	20,000	20,000	-	-	-	20,000
2024	1,000	20,000	21,000	-	-	-	21,000
2025	1,000	-	1,000	-	-	-	1,000
합계	**38,486**	**91,392**	**129,878**	**11,650**	**-**	**28,205**	**169,733**

자료: 기획재정부

수은에 대한 연도별 출자 현황을 보면, 수은의 법정자본금 25조원까지는 아직 8조원 정도의 자본금이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대내외 통상환경 변화 등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수은의 자본금 확충을 통한 여신 확대로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더욱이 이번 추경안은 2025년 1월 본예산을 통해 이미 1,000억원의 자본금을 확충한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추가로 2,000억원을 출자하려는 것이므로, 현 시점에서의 수은의 자본건전성, 정책금융 확대에 따른 자금 수요, 수은의 자체적인 재원 조달 및 효율화 가능성, 그리고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화 정책 등을 폭넓게 고려하여 출자 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수은에 대한 정부 출자는 수은의 BIS 비율 유지 및 추가 신용 확보를 통해 대규모 정책금융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지만, 이미 출자된 자금은 정부 배당금을 제외하면 회수할 방법이 없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해소되거나 정책금융 수요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은은 출자금을 반납하지 않으므로, 대내외 환경변화가 발생할 때마다 추가적인 출자를 반복하는 사업방식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해 보임.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지 출>

3. 국고채이자상환(개인투자용국채포함): 최근 국고채 금리 수준 및 통화정책 방향을 고려한 검토 필요

가. 개 요

'국고채이자상환(개인투자용국채포함)' 사업은 이번 추경안의 재원마련을 위한 국고채 추가 발행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변경안은 현계획액 대비 1,619억 7,000만원(0.5%)이 증액된 30조 1,398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음.[11)]

[2025년도 국고채이자상환(개인투자용국채포함) 사업 변경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도		2025년도				
	당초	수정	당초	현계획(A)	변경안(B)	증감(B-A)	(B-A)/A
국고채이자상환 (개인투자용 국채포함)	28,259,942	28,259,942	29,977,898	29,977,898	30,139,868	161,970	0.5

주 1) 2024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2) 2025년도 현계획은 2025년 당초 계획액 대비 변경된 계획액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안의 재원조달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8조 984억 9,900만원 규모의 국고채를 추가 발행하여 일반회계 등으로 예탁할 계획이며, 늘어난 국고채 발행액에 따라 이자상환 규모를 당초보다 1,619억 7,000만원 증액하였음.

[국고채이자상환(개인투자용국채포함) 변경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국고채 발행규모	금리	기간	이자
8,098,499	3.0	8/12(8개월)	161,970

자료: 기획재정부

11) 세부사업: 국고채이자상환(개인투자용국채포함)(1071-780)(국고국)

추경안의 국고채 이자상환 증액 규모는 국고채 추가 발행규모(8조 984억 9,900만원)와 3.0%의 편성금리, 발행시기(2025년 5월)를 고려하여 산출되었음.

참고로, 이 사업의 2025년 예산안의 편성금리는 3.4%였으나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금리하락 추세를 반영하여 당초 계획액 대비 5,000억원이 감액되었음.

나. 검토의견

추경안은 3.0%의 금리를 기준으로 이자상환액을 편성하고 있으나, 2025년 3월 현재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는 약 2.65% 수준이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기조 또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고채 이자상환액 규모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부가 시장에서 국고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빌리는 데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조달금리의 추이를 보면, 2023년 평균 조달금리는 3.57%였으나, 2024년은 3.22%로 하락하였고, 이후 하락 추세가 지속되어 2025년 3월은 2.65%의 금리를 보이고 있음.

[2023년 및 2024.11.~2025.3월 국고채 발행액 및 평균 조달금리]

(단위: 조원, %)

	2023년	2024년			2025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 발행잔액	998.0	1,047.1	1,066.7	1,047.1	1,079.7	1,064.9	1,085.7	1,079.7
□ 발행액	165.7	157.7	7.8	1.4	60.3	18.3	21.3	20.7
□ 평균 조달금리	**3.57**	**3.22**	**2.90**	**2.59**	**2.68**	**2.71**	**2.69**	**2.65**
□ 평균 응찰률	271	321	332	288	281	286	305	252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4월호, 2025.4.

그리고 이미 발행된 국고채가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국고채 시장금리 추이를 보면, 각 연물별 시장금리는 2024년 4월 3.375 ~ 3.567% 수준에서 2025년 3월 2.451 ~ 2.795% 수준까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국고채 3년물의 경우 2024년 4월 3.439%에서 2025년 3월 2.59%까지 금리가 하락하고 있고, 10년물의 경우 3.567%에서 2.795%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임.

[최근 1년간 월평균 국고채 시장금리 추이]

(단위: %)

	2024/04	2024/05	2024/06	2024/07	2024/08	2024/09	2024/10	2024/11	2024/12	2025/01	2025/02	2025/03
국고채(3년)	3.439	3.432	3.262	3.083	2.924	2.868	2.911	2.858	2.59	2.571	2.611	2.59
국고채(5년)	3.495	3.467	3.284	3.107	2.948	2.918	2.974	2.909	2.683	2.694	2.71	2.665
국고채(10년)	3.567	3.527	3.337	3.171	2.999	3.011	3.07	3.006	2.771	2.821	2.83	2.795
국고채(20년)	3.491	3.462	3.294	3.138	2.997	2.963	2.962	2.939	2.708	2.745	2.746	2.688
국고채(30년)	3.397	3.378	3.223	3.06	2.906	2.912	2.921	2.865	2.635	2.696	2.669	2.581
국고채(50년)	3.375	3.358	3.207	3.02	2.839	2.83	2.844	2.785	2.537	2.587	2.56	2.451

주) 월평균(영업일기준)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또한, 한국은행은 최근 경기둔화에 대한 대응과 물가안정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2024년 10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세 차례[12] 인하하였고,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가계부채 및 환율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어 시장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당분간 크지 않아 보임.[13]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3.0%의 금리를 기준으로 편성된 이번 추경안은 국고채 조달금리 및 시장금리의 수준을 고려할 때 다소 과다편성의 우려가 있어 보이며, 한국은행의 향후 통화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이자상환 규모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14]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연평균 국고채(3년, 10년) 금리는 우리나라의 경기둔화 및 물가상승률 하락,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기조 등에 따라 각각 2.5%, 2.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15]

---

12) 2024년 10월 11일: 3.50% → 3.25% (0.25%p 인하)
2024년 11월 28일: 3.25% → 3.00% (0.25%p 인하)
2025년 2월 25일: 3.00% → 2.75% (0.25%p 인하)

13)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보도자료, 2025.4.17.

14)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국고채 이자는 예산 부족에 따른 미지급 시 국가의 신용등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무지출 소요임을 감안하여 보수적 편성이 필요하며,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시점 지연(2025.11→2026.4)에 따른 금리 상승 압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5)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NABO 경제전망」, 2025.3.3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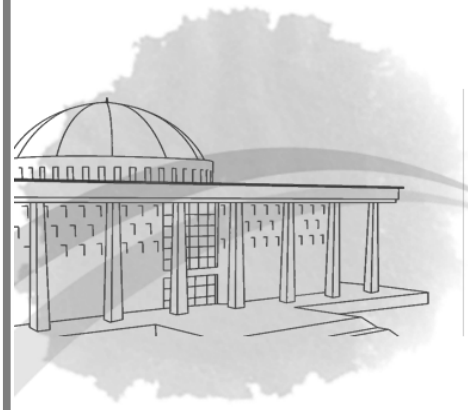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Ⅰ. 개 관

1.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추경안의 총수입은 9조 6,494억원으로, 예산은 8조 1,736억원, 기금은 1조 4,758억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함.[1)]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추경안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 (현계획)(A)	추경안 (변경안)(B)	증감(B-A)	(B-A)/A
예 산	80,628	81,736	81,736	-	-
기 금	14,477	14,758	14,758	-	-
합 계	95,105	96,494	96,494	-	-

주 1) 2024년도 본예산 중 기금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2) 2025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문의 : 김영빈 예산결산조사관 kyb@assembly.go.kr (02-6788-5698)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추경안의 총지출은 20조 7,418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조 8,452억원(9.8%) 증가함. 예산은 18조 6,903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조 7,605억원(10.4%) 증가하고, 기금은 2조 516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847억원(4.3%) 증가함.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추경안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 (현계획)(A)	추경안 (변경안)(B)	증감(B-A)	(B-A)/A
예 산	156,992	169,298	186,903	17,605	10.4
기 금	22,182	19,669	20,516	847	4.3
합 계	179,174	188,967	207,418	18,452	9.8

주 1) 2024년도 본예산 중 기금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2) 2025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나.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세입추경안은 총 2개 회계(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며, 본예산과 동일함.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입추경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일반회계	3,768	3,923	3,923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03	120	120	-	-
합계	3,870	4,043	4,043	-	-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세출추경안은 총 2개 회계(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며, 본예산 대비 1조 7,605억원(18.5%) 증가함.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출추경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일반회계	75,504	85,931	103,486	17,555	20.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431	9,204	9,254	50	0.5
합계	82,935	95,134	112,739	17,605	18.5

주) 총계 기준

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개 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는 1조 9,562억원으로 현계획 대비 847억원(4.5%) 증가함.

기금별로 살펴보면, 정보통신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1조 757억원으로, 현계획 대비 747억원(7.5%) 증가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8,805억원으로, 현계획 대비 100억원(1.1%) 증가함.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계획	2025년도				
		당초	현계획(A)	변경안(B)	증감(B-A)	(B-A)/A
정보통신진흥기금	13,797	10,010	10,010	10,757	747	7.5
방송통신발전기금	9,888	8,705	8,705	8,805	100	1.1
합계	23,686	18,715	18,715	19,562	847	4.5

주) 총계 기준이며, 2024년도 계획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신규 및 증액편성된 사업은 총 18개 세부사업으로, 총 증액규모(총계 기준)는 1조 8,451억 8,400만원임.[2)]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AI컴퓨팅 자원 활용 기반 강화’ 사업은 시급한 국내 AI 컴퓨팅 수요 뒷받침을 위해, 선제적인 GPU 구매 및 임차 후 국가적 프로젝트 및 국내 AI 생태계 지원을 위한 것으로, 1조 6,19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또한, ‘AI 혁신펀드’ 사업은 AI 특화펀드를 통해 민간의 적극적 투자를 견인하고 국가 AI 혁신을 뒷받침할 도전적 스타트업·유망 AI·SaaS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550억원을 증액하였음.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추경안 신규 및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4년도 예산	2025년도			
		본예산 (당초)(A)	추경안 (변경안)(B)	증감(B-A)	(B-A)/A
[일반회계]					
AI컴퓨팅 자원 활용 기반 강화	-	-	1,619,438	1,619,438	순증
AI 반도체 실증 지원	18,813	24,370	64,370	40,000	164.1
World Best LLM 데이터 활용 지원	-	-	30,000	30,000	순증
한국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207,269	218,356	233,356	15,000	6.9
AI챔피언 프로젝트 지원(R&D)	-	-	10,000	10,000	순증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술개발 및 보급지원(정보화)	-	-	9,166	9,166	순증
울산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85,922	90,160	97,660	7,500	8.3
융합서비스 글로벌시장 진출지원	7,763	17,263	22,663	5,400	31.3
최고급AI해외인재 유치지원(R&D)	-	-	5,000	5,000	순증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4년도 예산	2025년도			
		본예산 (당초)(A)	추경안 (변경안)(B)	증감(B-A)	(B-A)/A
광주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93,491	97,634	101,384	3,750	3.8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지원(R&D)	89,842	97,697	101,447	3,750	3.8
생성AI선도인재양성(R&D)	3,500	5,200	8,700	3,500	67.3
AI스타펠로우십지원(R&D)	-	6,000	9,000	3,000	50.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연구개발특구육성(R&D)	100,332	106,104	111104	5,000	4.7
[정보통신진흥기금]					
AI 혁신펀드	-	45,000	100,000	55,000	122.2
AI산업육성	-	76,664	91,344	14,680	19.1
디지털전문・융합인재양성	81,858	50,752	55,752	5,000	9.9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 (R&D)	105,410	130,400	140,400	10,000	7.7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World Best LLM 프로젝트: 구체적인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통합 검토 필요

가. 개 요

정부는 2025년 2월 20일 「인공지능(AI)컴퓨팅 기반 확충을 통한 국가 인공지능(AI)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동 계획에는 인공지능 국가대표 사업인 ‘(가칭)세계 최고 대형언어모형(World Best LLM: WBL)’ 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었음.

정부는 WBL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인공지능 정예팀을 선발하고 단시간에 세계 최고 수준의 대형언어모형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데이터, 그래픽 처리 장치 등 핵심 인프라를 지원하며, 정예팀이 필요로 하는 국제 인공지능 핵심 인재를 국내에 유치할 경우 인건비, 연구비, 체재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인공지능(AI)컴퓨팅 기반 확충을 통한 국가 인공지능(AI)역량 강화 방안의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추진전략	핵심과제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 확충	1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 확충 종합계획(마스터 플랜) 가동 2 민간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 투자 촉진 3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성장 지원
차세대 인공지능 모형 개발	1 혁신적인 인공지능 연산방식(AI알고리즘) 개발 지원 2 고급 인공지능 인재 양성체계 고도화
인공지능 전환 가속화	1 분야별 선도과제 추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참고자료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 확충을 통한 국가 인공지능 역량 강화로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실현」에서 발췌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WBL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AI 컴퓨팅자원활용기반강화(신규)’ 사업, ‘World Best LLM 데이터 활용 지원(신규)’ 사업 및 ‘최고급 AI해외인재 유치지원(신규)’ 사업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음.

‘AI 컴퓨팅자원활용기반강화’ 사업은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AI 컴퓨팅 자원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국내 AI 생태계 육성 및 AI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추경안은 1조 6,194억 3,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3)]

내내역사업인 **‘GPU 임차 지원’** 사업은 GPU[4)] 자원(2,000장)을 임차하여 WBL 프로젝트 참가팀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추경안은 1,576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또 다른 내내역사업인 **‘World Best LLM 운영·관리’** 사업은 WBL 프로젝트 참가팀을 선정·평가하고 관련 정책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추경안은 1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2025년도 AI 컴퓨팅자원활용기반강화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AI 컴퓨팅자원활용기반강화	-	-	1,619,438	1,619,438	순증
GPU 서버 확충	-	-	862,496	826,496	순증
GPU 통합운영환경 구축	-	-	598,342	598,342	순증
GPU 임차	-	-	158,600	158,600	순증
GPU 임차 지원	-	-	157,600	157,600	순증
World Best LLM 운영·관리	-	-	1,000	1,000	순증

‘World Best LLM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은 WBL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전폭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경안은 3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5)]

3) 세부사업: AI 컴퓨팅자원활용기반강화(2602-357)(인공지능기반정책관)

4) GPU는 게임, 영상편집 등에 필요한 그래픽스 처리나 기계 학습의 행렬 연산 등을 가속화하기 위한 병렬 연산을 수행하는 컴퓨터 하드웨어 장치를 의미(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용어사전)

5) 세부사업: World Best LLM 데이터 활용 지원(2602-356)(인공지능기반정책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World Best LLM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을 통해 WBL 프로젝트 참가팀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셋을 제공하고 WBL 프로젝트 참가팀이 개발한 독자 AI 모델을 평가·검증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임.

[2025년도 World Best LLM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World Best LLM 데이터 활용 지원	-	-	30,000	30,000	순증

'최고급 AI해외인재 유치지원' 사업은 기업 등이 해외 AI 우수연구자를 유치하여 도전적 AI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우수성과를 창출하고, AI 고급인재 양성 및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AI 연구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추경안은 5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고급 AI해외인재 유치지원 사업 추진 시 WBL 프로젝트 참가팀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국제 인공지능 핵심 인재를 WBL 프로젝트 참가팀에 유치하려는 경우 인건비, 연구비, 체재비 등을 최대 연 20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임.

[2025년도 최고급 AI해외인재 유치지원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최고급 AI해외인재 유치지원	-	-	5,000	5,000	순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서 소개한 WBL 프로젝트 관련 사업을 통하여 WBL 프로젝트 참가팀을 선정(약 5팀)한 후 각 참가팀에 대하여 데이터·GPU·인재를 전폭 지원하고, 연차평가를 거쳐 실적이 저조한 참가팀에 대한 지원은 중단하고 우수한 참가팀에 지원을 집중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형 대형언어모형(LLM: Large Language Model)을 개발할 계획임.

6) 세부사업: 최고급 AI해외인재 유치지원(R&D)(2232-327)(소프트웨어정책관)

나. 검토의견

첫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WBL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부재한 상황에서 관련 사업을 신규로 추진함에 따라 각 사업의 추진계획이 미흡하게 수립된 측면이 있으므로 조속히 구체적인 WBL 프로젝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인공지능(AI)컴퓨팅 기반 확충을 통한 국가 인공지능(AI)역량 강화 방안」에 포함된 글로벌 TOP 수준의 LLM(WBL)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WBL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참가팀 선정 및 지원(GPU・데이터・인재) 내용을 반영한 3개 세부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2025년도 추경안 기준 WBL 프로젝트 관련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추경안	WBL 프로젝트 지원 사항
AI 컴퓨팅자원활용기반강화(신규)	1,619,438	
GPU 임차	158,600	
GPU 임차 지원	157,600	WBL 프로젝트 참가팀에 대한 GPU(2,000장) 지원
World Best LLM 운영・관리	1,000	WBL 프로젝트 참가팀 선정 및 관리
World Best LLM 데이터 활용 지원(신규)	30,000	WBL 프로젝트 참가팀에 대한 데이터 지원
최고급 AI해외인재 유치지원(신규)	5,000	WBL 프로젝트 참가팀에 대한 해외인재 유치 지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WBL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사항들을 여러 세부사업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므로 각 사업의 내용과 추진일정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WBL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추어 각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WBL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별도의 시행계획 수립 없이 각 세부사업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함에 따라 각 사업의 수행계획이 면밀하게 수립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예를 들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World Best LLM 운영·관리사업을 통하여 WBL 프로젝트 참가팀 선정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인데, WBL 프로젝트 참가팀에 대하여 대규모 재정지원(추경안 기준 1,936억원의 예산 지원)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WBL 프로젝트 참가팀 선정기준 마련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또한 충분한 공고기간을 부여하여 다양하고 우수한 지원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계획은 최대 3개월(5월 ~ 7월)내에 WBL 프로젝트 참가팀의 선정기준 마련, 공고 및 선정평가 절차를 모두 마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② WBL 프로젝트 참가팀에 대한 해외 인재 유치지원을 위한 최고급 AI해외인재 유치지원 사업은 7월부터 인재 활용을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현 계획대로 WBL 프로젝트 참가팀이 선정된다고 하여도 8월에서야 지원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지원 일정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우수한 해외인재의 유치를 위해서는 기업과 해외인재 간의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WBL 프로젝트 참가팀이 공고기간(최대 2개월) 동안 WBL 프로젝트 지원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유치하고자 하는 해외인재와 사전협의를 마칠 수 있을지 우려됨.

이처럼 WBL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한 상황에서 관련 사업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여 추진함에 따라 각 예산사업의 추진계획이 면밀히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조속히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둘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WBL 프로젝트 관련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WBL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참가팀 선정·관리 및 참가팀에 대한 GPU, 데이터 및 인재 지원 사업을 각각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이로 인하여 세 개의 전담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WBL 프로젝트 참가팀을 각각 지원할 예정임.

[WBL 프로젝트 관련 전담기관 현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로 인하여 WBL 프로젝트 참가팀의 실적에 대한 연차평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하게 될 예정이고, WBL 프로젝트 참가팀이 구축한 데이터에 대한 검수 및 과업 이행의 충실도 점검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하게 될 예정이며, WBL 프로젝트 참가팀이 유치한 해외인재 활용 실적에 대한 평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하게 될 예정임.

이처럼 WBL 프로젝트 참가팀에 대한 분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면 WBL 프로젝트 참가팀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점검이 어려워지고, 연차평가를 거쳐 우수 참가팀에게 지원을 집중하려는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WBL 프로젝트 참가팀에 대한 지원 및 관리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일반회계】

<세 출>

2. AI컴퓨팅자원활용기반강화: GPU 서버 확충 및 통합운영환경 구축을 수행할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마련 필요 등

가. 개 요

'AI 컴퓨팅자원활용기반강화' 사업은 AI 시대 핵심 인프라인 AI 컴퓨팅 자원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국내 AI 생태계 육성 및 AI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추경안은 1조 6194억 3,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7)]

[2025년도 AI 컴퓨팅자원활용기반강화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AI 컴퓨팅자원활용기반강화	-	-	1,619,438	1,619,438	순증
GPU 서버 확충	-	-	862,496	862,496	순증
GPU 통합운영환경 구축	-	-	598,342	598,342	순증
GPU 임차	-	-	158,600	158,600	순증
GPU 임차 지원	-	-	157,600	157,600	순증
World Best LLM 운영·관리	-	-	1,000	1,000	순증

7) 세부사업: AI 컴퓨팅자원활용기반강화(2602-357)(인공지능기반정책관)

(1) GPU 서버 확충 및 통합운영환경 구축 관련 사업 개요

내역사업인 **'GPU 서버 확충'** 사업은 국내 AI 생태계 지원을 위한 GPU 서버를 확충하려는 것으로, 추경안은 8,624억 9,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또 다른 내역사업인 **'GPU 통합운영환경 구축'** 사업은 GPU 서버 확충에 따른 대규모 클러스터링 비용을 지원하는 등 통합운영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추경안은 5,983억 4,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GPU 서버 확충 사업 및 GPU 통합운영환경 구축 사업을 통하여 GPU 서버 1,250대(GPU 총 10,000장)를 구축할 계획임.

[GPU 서버 확충 계획 수량]

(단위: 대, 백만원)

서버	구성	수량	구매 단가	통합운영환경 구축 단가	총 구축 비용
DGX H200	H200 8장	800	550.55	541.15	873,360
DGX B200	B200 8장	450	937.91	376.61	587,478
합계	10,000장	1,250	862,496	598,342	1,460,838

주 1) GPU 확보 기종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2) 단가 산정 시 환율은 $1=1,450원으로 계산하였음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예산 전액을 출연하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공모를 통하여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을 사업수행자로 선정하고 사업수행자가 GPU를 확보하고 구축하는 방식으로 수행할 계획임.

GPU 서버의 구축은 사업수행자가 소유한 데이터센터에 이루어질 예정으로 GPU 서버에 대한 소유권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갖고,[8] GPU 서버의 운영·관리는 사업수행자가 수행할 계획임.

구축한 GPU 서버의 일부에 대한 사용·수익 권한을 사업수행자에게 부여하여 GPU 서버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도록 하고, 나머지 GPU 서버는 WBL 프로젝트 참가팀을 포함한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임.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가 소유권을 가질 경우 「물품관리법」에 따른 GPU 서버 설치 장소제한 문제, 「국유재산법」에 따른 GPU 서버의 수요자 활용에 대한 제약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가가 아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GPU 서버 소유권을 갖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2) GPU 임차를 통한 WBL 프로젝트 참가팀 지원 사업 개요

내내역사업인 **'GPU 임차 지원'** 사업은 GPU 자원을 임차하여 WBL 프로젝트 참가팀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추경안은 1,576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또다른 내내역사업인 **'World Best LLM 운영·관리'** 사업은 WBL 프로젝트 참가팀 선정 및 관리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추경안은 1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GPU 임차 지원 사업 및 World Best LLM 운영·관리 사업을 통하여 WBL 프로젝트 참가팀을 선정하고, GPU 자원을 임차하여 WBL 프로젝트 참가팀에게 지원할 계획임.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예산 전액을 출연하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WBL 프로젝트 참가팀을 선정·평가하고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등 WBL 프로젝트 참가팀을 관리하는 한편, 별도의 공모 절차를 통하여 GPU 자원 제공이 가능한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을 선정하여 WBL 프로젝트 참가팀에게 GPU 자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행됨.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GPU 임차 지원 사업을 통하여 GPU 총 2,000장을 임차하여 2025년 8월부터 2026년 6월까지(총 11개월) WBL 프로젝트 참가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고, GPU 임차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전술한 GPU 서버 확충 및 통합운영 환경 구축 사업을 통해 확충한 GPU 서버 일부를 WBL 프로젝트 참가팀에 지원할 계획임.

[GPU 임차 계획 수량]

(단위: 장, 백만원)

GPU	수량	임차단가 (장월)	임차기간	총 비용
H100	1,000	6.12	11개월	67,300
B200	1,000	8.209	11개월	90,300
합계	2,000	-	-	157,6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검토의견

첫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GPU 서버 확충 사업 및 GPU 통합운영환경 구축 사업을 통하여 구축 예정인 GPU 서버의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될 민간 클라우드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내용을 공모 단계에서부터 명시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2025년 2월 20일 발표한 「인공지능(AI)컴퓨팅 기반 확충을 통한 국가 인공지능(AI)역량 강화 방안」에서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GPU 1만장을 연내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안) 주요내용]

- 개요 : 민·관 합작 투자를 통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정책금융 대출 등을 활용해 1EF(ExaFlops) 이상 최대 2조원 규모의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 사업추진방안 : SPC 지분은 공공 51%, 민간 49%로 구성하고, 입지(비수도권)·전력 확보방안 및 요금 등은 민간이 제안
  ※ 공공지분을 과반으로 유지하여 정책목표를 달성하되, 구체적 경영방식은 민간의 전문성 활용
- 사업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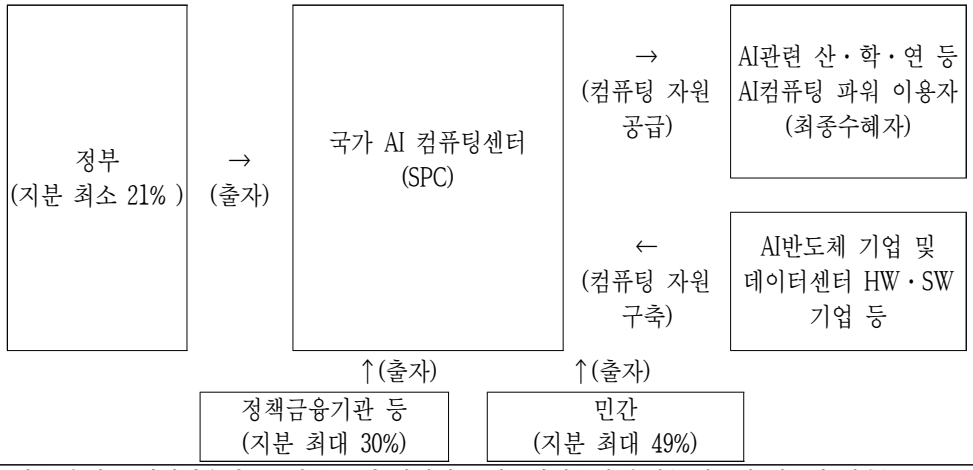

주) 정부 출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업인 '한국산업은행 출자(AI컴퓨팅 인프라 확충)'를 통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예산을 출자하면 한국산업은행이 SPC에 재출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AI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AI 개발·고도화·서비스 등 생태계 전반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AI컴퓨팅 인프라인 GPU 서버를 조속히 확보하려는 정부의 입장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국가 AI컴퓨팅 센터의 GPU 서버 구축 부지는 민간참여자가 제안할 예정인데,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을 위한 민간참여자 모집 절차가 아직 진행 중(5월 30일까지 사업참여계획서 제출)인 관계로 국가 AI컴퓨팅 센터의 GPU 서버 구축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

그 결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확충할 계획인 GPU 서버를 국가 AI컴퓨팅 센터에 구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GPU 서버를 기존에 데이터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민간 클라우드 기업에 구축하고 그 운영·관리도 민간 클라우드 기업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9)]

그런데 이 경우 사업전담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민간 클라우드 기업 사이의 정보비대칭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①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중에는 자체적으로 AI 개발을 병행하는 기업들도 있으므로 국비로 구축한 GPU 서버 중 유휴자원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관련 법령이나 협약 등을 위배하며 활용할 유인이 있음.

②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GPU 서버 대신 국비로 구축한 GPU 서버를 우선 활용하여, 자사 소유 GPU 서버의 물리적 감가로 인한 성능 저하를 방지할 가능성이 있음.

③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은 GPU 서버 구축이 완료된 후에는 해당 GPU 서버 운영·관리 업무 수행에 대하여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받게 되므로, 추후 서버 운영·관리 위탁 계약 갱신 시점에 필요한 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하여 면밀한 관리·감독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민간 클라우드 기업 사이의 계약 내용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특히 GPU 서버 확충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면 대상 기업 선정 후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것은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을 위해 필수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사항들은 공모 단계에서부터 명시할 필요가 있음.

---

9) 당초 정부는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을 통하여 GPU 서버를 확충할 계획이었고, 이 경우 GPU 서버 구축 부지는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에 참여하는 민간참여자가 제안할 계획이었음. 그러나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을 위한 민간참여자 모집 공고가 아직 진행 중(5월말까지 공고기간임)인 상황이므로, 이번 추경안을 통해 확충한 GPU 서버는 국가 AI컴퓨팅 센터에 구축하기는 어렵고 별도로 구축 부지를 확보할 시간적 여유도 없는 관계로 GPU 서버를 기존 데이터센터를 보유한 민간 클라우드 기업에 구축할 계획임.

둘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World Best LLM 운영·관리 사업을 통한 WBL 프로젝트 참가팀 선정을 위한 기준을 면밀히 검토한 후 선정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고, WBL 프로젝트 참가 준비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부여함으로써 다양하고 우수한 지원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인공지능(AI)컴퓨팅 기반 확충을 통한 국가 인공지능(AI)역량 강화 방안」에 포함된 글로벌 TOP 수준의 LLM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WBL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참가팀 선정 및 지원(GPU·데이터·인재) 내용을 반영한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각 사업은 WBL 프로젝트 참가팀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어 WBL 프로젝트 참가팀 선정이 이루어져야 관련 사업들도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WBL 프로젝트 참가팀의 선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는 있음.

그러나 이와 동시에 WBL 프로젝트 참가팀에 대하여 상당한 규모(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1,936억원)의 지원이 예정되어 있고, GPU 2,000장을 독점적으로 지원[10]하고 우수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인건비, 체재비 등을 연 20억원까지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선정 과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2025년도 추경안 기준 WBL 프로젝트 관련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추경안	WBL 프로젝트 지원 사항
AI 컴퓨팅자원활용기반강화(신규)	1,619,438	
GPU 임차	158,600	
GPU 임차 지원	**157,600**	WBL 프로젝트 참가팀에 대한 GPU(2,000장) 지원
World Best LLM 운영·관리	**1,000**	WBL 프로젝트 참가팀 선정 및 관리
World Best LLM 데이터 활용 지원(신규)	**30,000**	WBL 프로젝트 참가팀에 대한 데이터 지원
최고급 AI해외인재 유치지원(신규)	**5,000**	WBL 프로젝트 참가팀에 대한 해외인재 유지 지원
합계	**193,6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말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WBL 프로젝트 참가팀 선정을 위한 통합공고를 6월까지 진행하고 7월 중에 평가를 거쳐 선정된 참가팀과 7월말 ~ 8월 중에 협약을 체결할 계획임.

10) 참고로 2023년 「AI산업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전체 H100의 수가 약 2,000개였음. 그런데 WBL 프로젝트 참가팀에게 H100 1,000장과 B200 1,000장 총 2,000장의 GPU를 지원할 계획임.

[WBL 프로젝트 참가팀 선정 계획]

구분	내용
선발대상	복수의 정예팀(국내 AI 기업 등 컨소시엄, 최대 5개팀 내외) 공모·선발
일정(안)	('25.5월) 공모 → ('25.7월) 선정평가 → ('25.8월~) 지원
지원기간	최대 3년 (연차평가에 따라 압축지원)
지원내용	GPU 지원, Data 지원, Talent(인재) 지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런데 5월 중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WBL 프로젝트 참가팀이 개발하여야 할 AI 모델의 성능 기준, 참가팀의 규모 및 형태 등 선정 기준을 최대 1개월 내로 확정해야 하는데, 이는 다소 촉박한 일정으로 보임.

World Best LLM 운영·관리 사업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 10억원 중에는 정책연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3억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선정 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 공청회 개최 등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선정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WBL 프로젝트 참가팀 선정 이후 관련 사업을 통한 데이터 및 인재 지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자로 하여금 공고기간 내에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목록과 개발목표(AI모델)에 맞는 데이터 구축·가공 계획을 준비하고, 유치하고자 하는 해외 인재와의 협의 진행 등을 거쳐 이를 공모신청서에 포함하도록 할 예정임.

이처럼 지원자에게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을 요구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사전협의 공고 기간은 최대 2개월(5월 ~ 6월)로 예정되어 있어 지원 준비에 충분한 시간이 부여되지 않아 다양하고 우수한 지원자들이 참여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여유있는 공고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3. 최고급 AI해외인재 유치지원(R&D): 조속한 연구개발기관 선정을 통한 연내 예산 집행 필요 등

가. 개 요

'최고급 AI해외인재 유치지원' 사업은 기업 등이 해외 AI 우수연구자를 유치하여 도전적 AI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우수성과를 창출하고, AI 고급인재 양성 및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AI 연구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추경안은 5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1)]

[2025년도 최고급 AI해외인재 유치지원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최고급 AI해외인재 유치지원	-	-	5,000	5,000	순증

이 사업은 R&D 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문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예산 전액을 출연하면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공고 절차 등을 거쳐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임.

[최고급 AI 해외인재 유치지원 사업 지원내용]

구분	내용
지원대상	①기업+대학 컨소시엄(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 ②기업 ※ WBL 프로젝트에 선정된 기업을 우선하여 지원
지원기간	3년
지원내용	해외 우수 연구자*(팀)의 인건비**, 체제비 및 연구활동비 등 연 20억원 *해외 우수대학 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서 일정기간 이상의 경험과 R&D 연구성과가 있는 박사급 외국인 또는 재외한인 연구자 ** 그 중 인건비는 연 10억원 한도로 지원하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매칭 필수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 세부사업: 최고급 AI해외인재 유치지원(2232-327)(소프트웨어정책관)

나. 검토의견

이번 추경안에서 신규편성된 최고급 AI해외인재 유치지원 사업과 기존 사업인 해외우수과학자 유치 사업의 Brain Pool Plus(BP+) 유형 과제는 지원대상(해외 우수연구자) 및 지원내용(인건비 및 해외연구자 유치지원비)이 유사하므로 차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연구개발기관 선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예산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이 AI 분야의 해외 우수연구자를 유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고급 AI해외인재 유치지원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음.

그런데 최고급 AI해외인재 유치지원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 중인 해외우수과학자 유치 사업[12]의 Brain Pool Plus(BP+) 유형 과제와 비교했을 때 그 지원대상(해외 우수연구자) 및 지원 내용(인건비 및 해외연구자 유치지원비)이 유사함.

[양 사업간 비교]

구분	해외우수과학자 유치 사업 (BP+ 유형)	최고급 AI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안)
지원대상	연구개발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영입하려는 **최고급 해외인재***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 중인 박사학위 소지자. 다만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로 유치하는 경우에는 박사학위 없이 현지 산업체 5년 이상 경력자도 신청 가능	**해외 우수대학 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 연구소의 연구경험(10년 이상)과 R&D성과**가 있는 해외 거주 중(일시체류자 제외) **박사급 재외한인 또는 외국인**
지원내용	**인건비 및 해외연구자 유치지원비**	**인건비 및 해외연구자 유치지원비**
지원금액	연 6억원	연 20억원
지원분야	과학기술 전 분야 (12대 전략기술분야 우대)	인공지능 분야
지원대상	대학, 출연연, 기업 등	기업(주관)+대학, 기업
유치기간	4년(+6년)	3년(+2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와 2025년 해외 우수 과학자 유치 사업 공고문을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해외우수과학자 유치 사업의 Brain Pool Plus(BP+) 유형 과제는 지원 분야 중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AI포함)를 우대하고 있는데, 그간 해당 과제를 통해 유치한 우수연구자 13명 중 5명이 AI 관련 분야의 인재이므로 두 사업의 차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세부사업인 인재활용확산지원(R&D)(1744-412) 사업의 내역사업

[Brain Pool Plus(BP+) 유형을 통한 AI 관련 분야 해외우수연구자 유치 현황]

(단위: 명)

분야	기계	AI	바이오	환경	신소재	양자	산업공학	합계
연구자 수	1	5	2	2	1	1	1	13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고급 AI해외인재 유치지원 사업의 2025년 신규과제로 총 5개의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각 과제당 10억원(연 20억원, 2025년은 6개월 지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계획임.

이를 위해서는 상반기 중에 연구개발과제 선정 절차를 마치고 7월부터 예산을 지원하여야 하므로, 2025년 4월 말에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연구개발과제 선정 절차가 최대 2개월 내로 완료되어야 함.

그런데 유사사업인 해외우수과학자 유치 사업의 Brain Pool Plus(BP+) 유형 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유치하고자 하는 해외우수과학자와 협의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약 4개월간의 공고기간을 부여하고 있음.

또한 과제 선정을 위하여 요건검토(연구개발기관 및 해외우수과학자의 자격요건 검토), 전문가 평가(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 - 해외우수과학자 참여) 및 종합심사를 거치는 등 2개월간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음.

[2025년 Brain Pool Plus(BP+) 유형 과제 공고 및 선정 일정]

일정	추진내용
2025.2.13.	2025년도 BP/BP+사업 신규과제 공고
2025.5.30.	(BP+) 연구책임자 접수 마감(18:00:00)
2025.6.3.	(BP+) 연구개발기관 승인 마감(18:00:00)
2025.6~7월	선정평가(요건검토, 전문가평가, 종합심사) 및 최종선정
2025.8.1. 이후	과제별 연구개시(매월 1일자)

자료: 2025년 해외 우수 과학자 유치 사업 공고문에서 발췌

최고급 AI해외인재 유치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연구개발기관이 우수한 해외인재와 협의할 기간이 필요하고, 해외 우수 과학자 유치 사업의 Brain Pool Plus(BP+) 유형 과제보다 지원 액수가 크고 지원 대상의 요건도 까다로운 점을 감안하면 선정평가에 소요되는 기간도 상당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연구개발과제 선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준비하여 기업 또는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거나 선정평가 절차를 밀도 있게 진행하는 등 조속한 사업추진을 통하여 예산이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4. AI 국가대표 양성(InnoCORE): 박사후연구원 실적평가 시 다른 연구개발과제 참여실적 고려 필요 등

가. 개 요

‘AI 국가대표 양성(InnoCORE)’ 사업은 AI 분야의 국내외 Top 수준 박사후연구원 중심으로, 4대 과학기술원의 중장기 집단·융합연구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추경안은 3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3)]

[2025년도 AI 국가대표 양성(InnoCORE)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207,269	218,356	233,356	15,000	6.8
사업비	94,067	102,105	117,105	15,000	14.7
일반사업비	18,557	24,083	39,083	15,000	62.2
AI 국가대표 양성 (InnoCORE)	-	-	15,000	15,000	순증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89,842	97,697	101,447	3,750	3.8
사업비	44,931	50,967	54,717	3,750	7.4
일반사업비	11,675	11,018	14,768	3,750	34.0
AI 국가대표 양성 (InnoCORE)	-	-	3,750	3,750	순증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85,922	90,160	97,660	7,500	8.3
사업비	32,701	36,365	43,865	7,500	20.6
일반사업비	3,300	4,000	11,500	7,500	187.5
AI 국가대표 양성 (InnoCORE)	-	-	7,500	7,500	순증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93,491	97,634	101,384	3,750	3.8
사업비	45,777	48,532	52,282	3,750	7.7
일반사업비	9,953	8,560	12,310	3,750	43.8
AI 국가대표 양성 (InnoCORE)	-	-	3,750	3,750	순증

13) 세부사업: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2231-401)(미래인재정책국),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2231-402)(미래인재정책국),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2231-403)(미래인재정책국),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2231-405)(미래인재정책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면, 복수의 과학기술원이 함께하는 컨소시엄들을 대상으로 선정평가를 통해 연구단을 선정할 계획인데, 평가에 필요한 예산은 각 과학기술원이 집행하되 선정평가위원 구성 등 평가 절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직접 수행할 예정임.

각 연구단이 선정되면 연구단 별로 박사후연구원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4개 과학기술원이 박사후연구원 채용공고 및 헤드헌팅을 통해 각 연구단 소속으로 활동할 박사후연구원을 채용할 계획임.

이후 각 연구단의 참여교원과 각 연구단에 소속된 박사후연구원은 선정평가 당시 제출한 연구주제를 토대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게 됨.

[AI 국가대표 양성(InnoCORE) 사업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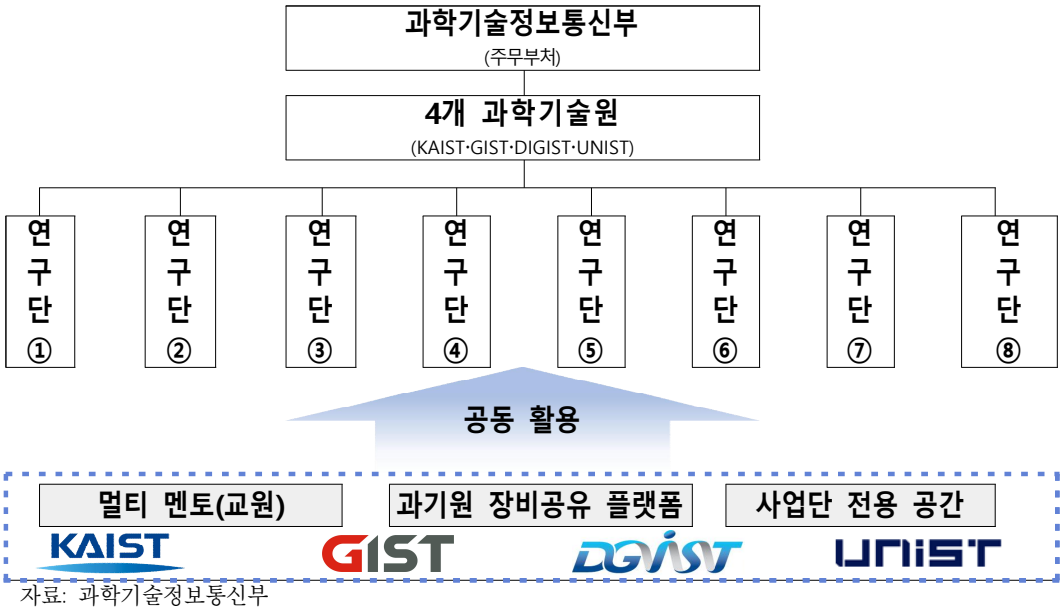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검토의견

첫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국가대표 양성(InnoCORE) 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박사후연구원의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계약 연장여부를 결정할 계획인데 박사후연구원 실적평가 시 다른 연구개발과제 참여실적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사업을 통해 각 과학기술원에 채용한 박사후연구원의 계약 기간을 1년 단위로 갱신하면서, 매년 박사후연구원의 실적을 평가하고 실적이 부족한 박사후연구원에 대하여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새로운 박사후연구원을 채용할 계획임.

이 사업의 취지가 우수한 박사후연구원을 지원하려는 것이고 지원하는 급여 수준이 다른 박사후연구원 지원 사업의 급여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주기적인 실적평가를 통하여 인재 풀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측면은 있음.

[다른 박사후연구원 대상 인건비 지원 사업과의 비교]

구분	AI 국가대표 양성 (InnoCore)	장영실 펠로우 프로그램	출연연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예산	300억원	55억원	91억원
규모	연 400명 내외	50명 내외	140명 내외
중점 지원 대상	학계 상위 1% 박사 취득 후 3년 이내의 내·외국인	박사 취득 후 5년 이내 내·외국인	박사 취득 후 5년 이내 내국인
지원 분야	AI Core / AI+ST 연구	이공계 범용 연구	각 출연연 연구
형태	포닥 집단 연구	단독 연구	출연연 연구 참여
기간	최대 5년 (매년 평가)	최대 3년 (매년 평가)	3년
지원	1.5억원+α (**인건비 0.9억원** +연구비 0.6억원 +펠로우십인센티브)	0.8억원	0.6억원
지원 성격	인건비 +연구비	인건비	인건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실적평가 기준에 대하여 검토 중으로 연구실적, 연구역량, 협업 및 연구단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실적평가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데, 박사후연구원의 실적평가 시 연구단 수행과제에 대한 기여도 외에 박사후연구원의 다른 연구개발과제 참여실적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왜냐하면 박사후연구원의 다양한 연구개발과제 참여는 우수한 박사후연구원을 국내에 유치하여 활용하려는 이 사업의 취지와도 부합하고 박사후연구원이 다양한 연구경험을 축적하고 성장하여 기업이나 연구기관에서 활약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임.

둘째, 박사후연구원의 중도 이탈로 인하여 해당 박사후연구원이 참여하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의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처우가 다른 사업에 비하여 좋은 편이기는 하나 박사후연구원의 신분이 계약직인 점, 최장 5년까지만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구단에 소속된 박사후연구원으로서는 이직을 통해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이 사업의 취지가 박사후연구원을 지원하여 핵심인재로 양성하려는 것이므로 박사후연구원이 대학의 교원,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원 및 창업 등의 사유로 이직하는 것은 오히려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음.

다만 박사후연구원의 중도 이탈로 인하여 해당 박사후연구원이 참여하던 연구단의 과제 또는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면 해당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투입된 인력과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정보통신진흥기금】

<지 출>

5. AI 혁신펀드: 자펀드 운용사의 연내 조합 결성 및 투자 개시를 위한 노력 필요

가. 개 요

'AI 혁신펀드' 사업은 AI 유망 기술을 개발 및 제공하는 기업을 발굴하여 투자자금을 공급하고 AI 기술을 접목하는 SaaS 기업에 투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변경안은 현계획 대비 550억원(122.2%) 증액된 1,000억원이 편성되었음.[14]

[2025년도 AI 혁신펀드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도		2025년도				
	당초	수정	당초	현계획(A)	변경안(B)	증감(B-A)	(B-A)/A
AI 혁신펀드	-	-	45,000	45,000	100,000	55,000	122.2

주 1) 2024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2) 2025년도 현계획은 2025년 당초 계획액 대비 변경된 계획액

이 사업은 정부 출자비율을 50%로 하여 펀드 결성 목표액을 2,000억원으로 설정하고, 존속기간은 8년이며, 생성형 AI,[15] AI 기반기술, AI 응용서비스 기업 등 AI 유망기술을 개발·제공하는 기업 및 AI 기술을 접목하는 SaaS 기업에 약정 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할 계획임.

14) 세부사업: AI 혁신펀드(2602-334)(인공지능기반책관)

15) 생성형 AI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독창적인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사례로 챗GPT, 챗봇 등이 있음.

[AI 혁신펀드 조성(안) 주요내용]

- 펀드 조성규모 : 2,000억원(정부 1,000억원, 민간 1,000억원 이상)
- 주목적 투자대상 및 비율 : 생성형 AI, AI기반 기술, AI 응용서비스 기업 등 AI 유망 기술을 개발·제공하는 기업 및 AI 기술을 접목·활용하는 SaaS[16] 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 존속/투자기간 : 8년/4년
- 주요 내용

구분	출자예산	결성 목표액	정부 출자비율	선정 운용사수	자조합별 최대출자액
본예산	450억원	900억원	50%	3개	300억원
추경증액	550억원	1100억원	50%	1개	300억원
				2개	400억원
합계	1,000억원	2,000억원	50%	6개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3월 17일에 본예산 450억원을 모태펀드(한국벤처투자 운용)에 출자하였고, 한국벤처투자는 2025년 2월 26일부터 4월 8일까지 공고기간을 거쳐 현재 자펀드 운용사 선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5월 중 운용사를 선정하여 발표할 계획임.

[AI 혁신펀드 사업 추진 현황]

사업 추진 내용	일자	비고
AI 혁신펀드 모태펀드 출자	2025년 3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벤처투자
자펀드 운용사 모집공고	2025년 2월 26일 ~ 2025년 4월 8일	AI 분야 15개(2개 선정), SaaS 분야 3개(1개 선정)의 기업이 접수
자펀드 운용사 선정	2025년 5월 중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를 거쳐 선정된 운용사 3곳은 민간 자금을 추가로 유치하여 조합(자펀드)을 결성하고, AI 및 SaaS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게 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경우 이를 다시 모태펀드(한국벤처투자 운용)에 출자하고 별도의 공고 절차를 거쳐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임.

16) SaaS(Software as a Service)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로서, 소프트웨어를 기기에 설치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및 제공 수단을 의미함.

[AI 혁신펀드 사업방식]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검토의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및 SaaS 분야 유망 기업의 발굴·육성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이므로, 연내에 조합 결성이 완료되어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을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본예산(450억원)을 활용하여 AI 혁신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으로, 2025년 5월 말 자펀드 운용사 선정이 완료되면 2025년 8월 이후 조합 결성을 완료하고 투자를 시작할 계획임.

이에 더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추가경정예산안(550억원 추가 증액)을 편성하여 연내 AI 혁신펀드를 추가로 조성하고 AI 및 SaaS 분야의 유망 기업 발굴·육성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인데, AI 분야가 갖는 전략적 가치를 고려할 때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확대를 통해 AI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보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에 대한 조속한 투자를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면 3분기에 자펀드 운용사 선정을 완료하고 4분기에 조합 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조합 결성이 완료되어야 실질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내 조합 결성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한 것은 타당함.

[AI 혁신펀드 사업 추진 일정]

사업 추진 내용	본예산 활용 일정(안)	추경예산 활용 일정(안)
자펀드 운용사 모집공고	2025년 2월 26일	2025년 6월 예정
AI 혁신펀드 모태펀드 출자	2025년 3월 17일	2025년 6월 예정
자펀드 운용사 선정	2025년 5월 말	2025년 9월 예정
조합 결성	2025년 8월 이후	**2025년 12월 예정**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앞서 본예산을 활용한 운용사 선정 경쟁률(AI분야 15:2, SaaS분야 3:1)을 감안할 때, 민간수요는 충분한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 준비를 통해 모집공고가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운용사 선정에도 차질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임.

다만 본예산을 활용한 자펀드 운용사 모집공고에 따르면 조합 결성 시한을 선정 후 3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기는 하나, 부득이한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어 3개월 내에 조합을 결성하지 못할 우려도 병존하고 있음.

조합 결성까지 4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조합의 연내 결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합 결성이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고, 모집공고 시기를 당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6. 고성능컴퓨팅지원: NPU 수요 확대 노력 필요 등

가. 개 요

'고성능컴퓨팅지원' 사업은 인공지능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의 학습용 및 추론용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임차하여 중소·벤처기업 등에 제공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변경안은 현계획 대비 146억 8,000만원(74.1%) 증액된 344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음.[17]

[2025년도 고성능컴퓨팅지원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도		2025년도				
	당초	수정	당초	현계획(A)	변경안(B)	증감(B-A)	(B-A)/A
AI산업육성	87,823	87,823	76,664	76,664	91,344	14,680	19.1
고성능 컴퓨팅지원	13,200	13,200	19,800	19,800	34,480	14,680	74.1

주 1) 2024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2) 2025년도 현계획은 2025년 당초 계획액 대비 변경된 계획액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성능컴퓨팅지원 사업 예산 전액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출연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사업관리비를 제외한 전액을 운영기관[18]에 교부하며, 운영기관은 사업수행비를 제외한 전액을 고성능컴퓨팅 자원 공급자에게 지급할 계획임.

[고성능컴퓨팅지원 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부처		전담기관		운영기관		공급자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34,480)	=> (34,480)	정보통신산업 진흥원 (800)	=> (33,680)	한국정보통신 진흥협회 (1,080)	=> (32,600)	기업 또는 컨소시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 세부사업: AI 산업육성(2602-301)(인공지능기반책관)

18) 매년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며, 2025년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선정됨.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사업목표 및 계획 수립, 운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협약·용역 사업 총괄, 지원체계 관리·감독, 사업비 지급 및 성과분석 등 전반적인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운영기관은 공급자 및 사용자 선정·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①공급자를 선정하여 국내 민간 컴퓨팅 자원(AI 학습용 GPU 및 추론용 NPU)을 확보하고 ②사용자를 선정하여 확보한 컴퓨팅 자원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공급자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GPU 또는 NPU[19] 자원 제공이 가능한 국내 기업 또는 컨소시엄 중에서 선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국내 중소·벤처기업, 창업기업 등 민간부문과 연구기관, 대학 등 공공부문으로 구분하여 선정함.

사용자는 NPU 자원은 무상으로 할당받을 수 있으나 GPU 자원은 일부 자부담금을 선납(공공부문 사용자는 무상지원)하는 조건으로 할당받고 있음.[20]

[고성능컴퓨팅지원 사업방식]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 NPU는 인공 신경망 알고리즘의 연산을 고속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개발한 장치로 기존 컴퓨터에 있는 중앙 처리 장치(CPU: Central processing unit)와 그래픽스 처리 장치(GPU: Graphics Processing Unit)에 비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빠른 속도로 행렬 곱셈 연산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음(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용어사전).

20)

〈지원 대상별 자부담금〉

상품 \ 지원대상	민간부문 사용자	청년기업	공공부문 사용자
GPU	-	-	-
A100(2장) *39TF	20만원/월	10만원/월	무상지원
H100(1장) *67TF	40만원/월	20만원/월	
H100(2장) *134TF	80만원/월	40만원/월	
NPU	무상지원		

자료: 2025년 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용자 모집 안내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GPU 자원인 H-100 600장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임.

[고성능컴퓨팅지원 사업 자원 할당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GPU	NPU
본예산	19,800	- 39TF(A100 2장) x 200개 - 67TF(H100 1장) x 150개 - 134TF(H100 2장) x 150개	- 60TOPS x 120개 - 120TOPS x 60개 - 240TOPS x 20개
증액분	14,680	H100 600장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검토의견

첫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NPU 상품에 대한 지원 저조로 인하여 사용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NPU 수요 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고, 현실적으로 확보 가능한 NPU 사용자 수와 GPU 자원 초과 수요에 대한 면밀히 검토를 통하여 NPU 지원을 위한 예산을 GPU 자원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2월 7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운영기관으로 선정하였고, 현재 본예산을 활용한 컴퓨팅 자원 할당을 위해 공급자 및 사용자 선정 과정 중에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면 앞서 선정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운영기관으로 하여 공급자 및 사용자 선정 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계획임.

[2025년 본예산을 활용한 고성능컴퓨팅지원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사업 추진 내용	본예산	추경안
부처 출연금 교부	2025년 2월 27일	
운영기관 선정	2025년 2월 7일	기 선정된 운영기관 활용
공급자 및 사용자 모집 공고	2025년 1월 23일 ~ 3월 17일	2025년 5월 ~ 6월
사용자 모집 추가공고(NPU)	2025년 4월 3일 ~ 2025년 5월 8일	-
공급자 및 사용자 선정	2025년 4월 중	2025년 7월 중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런데 2025년 본예산을 활용한 사용자 모집 과정에서 GPU 상품은 충분한 지원자가 접수된 반면에, NPU 상품은 사용자의 지원이 상당히 저조하여 현재 NPU 사용자 추가 모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다만, NPU 자원의 모집계획 수(총 19,200 TOPS)가 2023년(총 9,000 TOPS) 및 2024년(총 12,300 TOPS)에 비하여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에,[21] NPU 자원에 대한 신청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2025년 사용자 모집계획을 달성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고성능컴퓨팅지원 사업 NPU 사용자 신청 및 선정 현황]

연도	상품	신청수	선정수	경쟁률
2023	60TOPS	94	50	1.9:1
	120TOPS	43	30	1.4:1
	240TOPS	44	10	4.4:1
2024	60TOPS	50	45	1.1:1
	120TOPS	48	34	1.4:1
	240TOPS	32	23	1.3:1
2025	60TOPS	8	120	0.1:1
	120TOPS	19	60	0.3:1
	240TOPS	12	20	0.6:1

주) 고성능컴퓨팅지원 사업을 통한 NPU 자원 임대 지원은 2023년부터 시작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PU 관련 산업도 육성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NPU에 대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나, NPU를 GPU와 달리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저조한 상황에서 단순히 NPU 사용 비용 지원만을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NPU 활용도 제고 등 NPU 수요 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고, 올해 현실적으로 확보 가능한 NPU 사용자 수를 고려하여 잔여 NPU 자원에 할당된 예산을 GPU 자원 할당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산출 근거에 따르면 추가 지원할 계획인 H-100은 67TF 이상의 상품으로만 구성할 수 있어 39TF 지원 확대는 제한되므로 잔여 NPU 자원에 할당된 재원을 39TF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1) 매년 총 TOPS는 상품을 구성하고 있는 TOPS X 선정수를 합한 값임. 예를 들어, 2023년은 60TOPS X 50 + 120TOPS X 30 + 240TOPS X 10 = 9,000 TOPS 임.

둘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가로 제공하고자 하는 GPU 자원(H-100 600장)이 올해 초 GPU 사용자 모집 접수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초과수요(H-100 480장)보다 큰 점을 감안하여 면밀한 수요 파악을 통해 사용자 모집이 적시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5년 본예산을 활용한 사용자 모집 과정에서 GPU 상품은 모두 모집계획보다 접수자 수가 많아 초과수요가 발생하였음.

[고성능컴퓨팅지원 사업 GPU 사용자 신청 현황]

구분	상품			합계
	39TF (A100-2장)	67TF (H100-1장)	134TF (H100-2장)	
모집계획	200개	150개	150개	500개
접수현황	333개	178개	376개	887개
경쟁률	1.7 : 1	1.2 : 1	2.5 : 1	1.8 : 1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내 AI 활용 역량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컴퓨팅 자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 현장의 GPU 활용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GPU를 추가로 지원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사용자 모집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초과수요는 134TF 상품 226개(H-100 452장) 및 67TF 상품 28(H-100 28장)개인데, 이는 H-100 480장에 해당하는 양임.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할 계획인 H-100은 600장으로 초과수요의 1.25배에 해당하는 양임.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장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사용자 모집을 적시에 완료함으로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현장 수요 충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외교통일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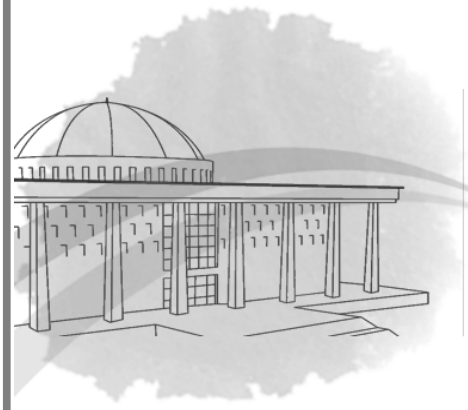

외교부

Ⅰ. 개 관

1.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외교부 소관 추경안의 총수입은 3,334억원으로, 예산은 2737억원, 기금은 597억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함.[1)]

[2025년도 외교부 소관 추경안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 (현계획)(A)	추경안 (변경안)(B)	증감(B-A)	(B-A)/A
예 산	2,773	2,737	2,737	-	-
기 금	1,160	597	597	-	-
합 계	3,933	3,334	3,334	-	-

주 1) 2024년도 본예산 중 기금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2) 2025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문의 : 손재일 예산결산조사관 sonjaeil@assembly.go.kr (02-6788-5676)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5년도 외교부 소관 추경안의 총지출은 4조 2,87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82억원(0.2%) 증가함. 예산은 4조 2,3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82억원(0.2%) 증가하고 기금은 570억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함.

[2025년도 외교부 소관 추경안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 (현계획)(A)	추경안 (변경안)(B)	증감(B-A)	(B-A)/A
예 산	40,298	42,218	42,300	82	0.2
기 금	1,607	570	570	-	-
합 계	41,905	42,788	42,870	82	0.2

주 1) 2024년도 본예산 중 기금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2) 2025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나.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외교부 소관 세입추경안은 총 1개 회계(일반회계)로 구성되며, 본예산과 동일함.

[2025년도 외교부 세입추경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일반회계	2,773	2,737	2,737	-	-
합계	2,773	2,737	2,737	-	-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외교부 소관 세출추경안은 총 1개 회계(일반회계)로 구성되며, 본예산 대비 82억원(0.2%) 증가함.

[2025년도 외교부 세출추경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일반회계	40,298	42,218	42,300	82	0.2
합계	40,298	42,218	42,300	82	0.2

주) 총계 기준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2025년도 외교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증액편성된 사업은 총 1개 세부사업으로, 총 증액규모(총계 기준)는 81억 7,700만원임.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2025 APEC 의장국 운영’ 사업은 2025년에 우리나라가 의장국 자격으로 개최하는 제32차 APEC 정상회의 및 공식 제반회의와 관련 행사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역사업인 ‘정상회의 주간회의 개최’ 및 ‘APEC 지자체 지원’ 사업에 81억 7,700만원을 증액하였음.

[2025년도 외교부 추경안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4년도 예산	2025년도			
		본예산 (당초)(A)	추경안 (변경안)(B)	증감(B-A)	(B-A)/A
[일반회계]					
2025 APEC 의장국 운영	2,460	100,830	109,007	8,177	8.1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2025 APEC 의장국 운영: 시설물 적기 구축을 위한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가. 개 요

'2025 APEC 의장국 운영' 사업은 2025년에 우리나라가 의장국 자격으로 개최하는 제32차 APEC 정상회의 및 공식 제반회의와 관련 행사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81억 7,700만원(8.1%) 증액된 1,090억 700만원이 편성되었음.[2)3)]

[2025년도 2025 APEC 의장국 운영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2025 APEC 의장국 운영	2,460	100,830	109,007	8,177	8.1
기획단 운영	-	4,279	4,279	-	-
정상회의 주간 회의 개최	-	27,492	27,755	263	1.0
공식 제반회의 개최	-	21,096	21,096	-	-
대국민 행사 등 홍보	-	4,895	4,895	-	-
APEC 지자체 지원	-	43,068	50,982	7,914	18.4
기획단 운영 및 지원인력	1,690	-	-	-	-
공식회의 개최	501	-	-	-	-
의장국 활동 홍보	200	-	-	-	-
2025 APEC 의장국 운영	68	-	-	-	-

2) 세부사업: 2025 APEC 의장국 운영(3031-403)(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3) APEC 회원(21): 한국,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페루,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대만, 태국, 미국, 베트남
※ 옵서버 기구(3): 아세안(ASEAN),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2025 APEC 정상회의는 2015년 11월에 우리나라 개최가 결정되었고, 2023년 12월에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이 발족하였음. 이후 2024년 6월 27일에 경상북도 경주가 정상회의 개최도시로 최종 의결되었고, 8월 30일에 APEC 지자체 지원 예산(보조금) 430억 6,800만원을 포함한 총 1,008억 3,000만원의 '2025 APEC 정상회의 의장국 운영' 사업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12월 10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과 동일하게 의결되었음.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관련 진행경과 및 향후 일정]

일자	내용
2015. 11. 19.	제23차 마닐라 APEC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상의 정상회의 개최 의향 공식 발표 및 회원국 동의로 2025 APEC 의장국 수임 확정
2023. 12. 13.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발족
2024. 5. 20. ~ 22.	「개최도시선정위원회」 유치후보지 현장실사
2024. 6. 27.	제2차 「2025 APEC 준비위원회」 정상회의 개최도시 최종 의결(경주)
2024. 8. 7. ~ 9.	정상회의 개최도시 정부합동실사
2024. 8. 30.	외교부장관, 정상회의 개최지 현장실사 정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2024. 12. 10.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본회의 의결
2025. 11.	APEC 정상회의 개최(예정)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와 관련하여 2024년 12월 20일 제정된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은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 등 참석자가 이용할 숙박시설, 교통시설 및 관광 편의시설 등의 설치·확충 또는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 또한 제7조에서 준비기획단 또는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등에 정상회의 관련 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4]

4)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등 참석자가 이용할 숙박시설, 교통시설 및 관광 편의시설 등의 설치 · 확충 또는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 등의 지원) ① 준비기획단 또는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법인 · 단체 등에 행정적 · 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2025년도 제1회 추경안에 만찬장 조성, 정상차량기지 설치, 숙박시설 정비를 위한 ‘APEC 지자체 지원’ 예산 79억 1,400만원과 회의장 추가 임차, 정상회의 주간 전후 기획단 인원 출장을 위한 ‘정상회의 주간 회의 개최’ 예산 2억 6,300만원, 총 81억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2025 APEC 의장국 운영 사업 추경안 증액 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금액	내용
APEC 지자체 지원	7,914	ㅇ 정상회의 만찬장 조성: 40억원(국비 100%) - 만찬장 규모 증가(900㎡→2,000㎡) 및 기존 건물 리모델링 면적(500㎡→4,000㎡) 증가에 따른 증액 ㅇ 정상차량기지 설치: 5억원(국비 50%) - 정상 의전차량 주차장 예정지에 차량기지 및 수행원 대기를 위한 임시시설물(대형텐트) 설치에 따른 증액 ㅇ 숙박시설 정비: 34억 1,400만원(국비 50%) - 객실 원상복구비용 및 경호 안전공사(승하차 경호 가림막, UPS)를 위한 증액
정상회의 주간회의 개최	263	ㅇ 정상회의 산하회의(CSOM·AMM) 회의장 추가 임차: 4,400만원 ㅇ 정상회의 주간 전후 60일(잠정) 기획단 인원(30인) 경주 상시 출장에 따른 국내여비: 2억 1,900만원
계	8,177	

주)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1. 정상회의등 기반사업 조성
2. 정상회의등 회의장 인근 도시경관 조성
3. 정상회의등 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4. 그 밖에 정상회의등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검토의견

첫째, 증액 편성된 ‘정상회의 만찬장 조성’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 및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외교부는 국립경주박물관에 2025 APEC 정상회의 만찬장 등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도 예산안에 ‘정상회의 만찬장 조성’ 사업으로 40억원의 지자체보조금(국비 100%)을 편성하였고, 2024년 12월 10일 정부안대로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

[정상회의 만찬장 조성 사업비 및 사업내용]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위치	사업내용
	국비	지방비		
정상회의 만찬장 조성	4,000	-	국립경주박물관	• 특별전시관 리모델링, 문화공연장 건립 - 신라역사관 또는 특별전시관 리모델링(10억원) - 야외만찬장 및 문화공연장(30억원)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러나 2025년 1월 22일,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5차 준비위원회에서 만찬장 규모 증가(900㎡→2,000㎡) 및 수행원 대기공간 추가 등에 따른 리모델링 면적 증가(500㎡→4,000㎡)가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외교부는 ‘정상회의 만찬장 조성’ 사업에 40억원을 추가 증액하는 추경안을 편성하였음.

외교부에 따르면 ‘정상회의 만찬장 조성’ 사업은 당초 2024년 12월까지 관련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2025년 1월부터 설계용역을 진행할 계획이었음. 그러나 만찬장 장소 결정이 지연되면서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및 설계용역의 공모가 지연되었고, 2025년 4월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 중으로 당초 계획 대비 약 2개월의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

[정상회의 만찬장 조성 사업 당초 일정 및 추진 상황]

구분	당초 일정(2025년도 예산안)	추진 상황 및 계획
정상회의 만찬장 조성 (국립경주박물관)	• ’24. 9. ~ 12. 관련기관 협의, 기본계획 확정 • ’25. 1. ~ 2.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5. 3. ~ 8. 공사착공 및 준공	• ’25. 1. 만찬장 장소 결정, 국가유산청 협의 • ’25. 3. ~ 4.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5. 6. ~ 10. 공사착공 및 준공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건설공사 입찰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4항에 따라 긴급입찰공고를 실시하더라도 실무협의를 포함하여 계약체결까지는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또한 완공 이후 시험운영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은 계획 상의 5개월(6~10월)보다 단기일 것으로 예상됨.

입찰공고 유찰 등의 사유로 착공이 늦어지는 등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기간 및 시험운영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외교부는 지자체와 추진일정을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신규 편성된 '정상차량기지 설치' 사업의 경우 기존 '주차시설 보강' 사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므로 주차시설 보강사업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두 사업이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정상차량기지 설치' 사업은 추경안에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정상 의전차량 주차장 예정지에 임시시설물(대형텐트)을 설치하여 차량기지 및 수행원 대기장소로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5억원(국비 50%)이 편성되었음.

이 사업이 진행되는 신라밀레니엄파크 주차장은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주차시설 보강' 사업 대상 주차장이므로, 주차시설 보강 사업의 바닥공사가 먼저 완료되어야 정상차량기지 설치가 가능함.

[정상차량기지 설치 및 주차시설 보강 사업비 및 사업내용]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위치	사업내용
	국비	지방비		
정상차량기지 설치(추경안)	500	500	신라밀레니엄파크 주차장(신평동 719-70번지 일원)	• 임시시설물(대형텐트) 설치(5억원) - 설치면적: 6,000㎡ - 차량정비고, 준비인원 및 수행원 대기
주차시설 보강(본예산)	2,900	2,900	보문관광단지 일원 (신라밀레니엄파크 주차장 포함)	• 정상회의장 인근 주차장(모터풀) 조성(40억원) - 회의장 인근 반경 1km 이내: 4~6개소 - 주차면: 약 4,000면 - 사유지 사용에 따른 부지 임차 • 대형 환승 임시주차장 조성 : 1개소 400면(18억원) - 임시 주차장(잔디블럭포장) 조성 - 주차면수 400면 정도, A=16,350㎡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런데 주차시설 보강 사업은 당초 2025년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3월부터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2025년 4월 4일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4월 중에 보강공사 입찰공고가 진행될 예정으로, 입찰공고기간 등을 고려하면 5월 중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착공 시점을 기준으로 약 2개월 정도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경상북도의 설명에 따르면 주차시설 보강 사업을 8월 초까지 완료하여 당초 일정에서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정상차량기지 설치는 보강 사업 완료 시점에 연계하여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를 준비 중이라고 함.

[주차시설 보강 및 정상차량기지 설치 사업 당초 일정 및 추진 상황]

구분	당초 일정(2025년도 예산안)	추진 상황 및 계획
주차시설 보강 (신평동 719-70번지 일원)	• '24. 9. ~ 12. 관련기관 업무 협의 • '25. 1. ~ 2. 실시설계 용역 시행 • '25. 3. ~ 8. 공사착공 및 준공	• '24. 9. ~ 12. 관련기관 업무 협의 • '24. 12. ~ '25. 4. 실시설계 용역 시행 • '25. 5. ~ 8. 공사착공 및 준공
정상차량기지 설치	-	• '25. 6. ~ 7. 발주준비 및 입찰공고 • '25. 9. ~ 11. 정상차량기지 및 대기공간 사용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 및 나라장터 입찰공고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

주차시설 보강 사업에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정상차량기지 설치 사업도 순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외교부는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정상차량기지 설치 사업과 주차시설 보강 사업이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임.

셋째, 현재 국비 편성 전 지방비로 추진되고 있는 '숙박시설 정비' 사업의 경우 사업 완료 후 비용 일부를 정산하여 보조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이므로 외교부는 면밀한 정산 및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숙박시설 정비' 사업은 추경안에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숙박시설에 각국 정상의 안전확보를 위한 승하차 장소의 가림막 설치 등 경호·안전공사를 지원하고, 회의 종료 후 정상용 객실을 원상복구하기 위한 것으로 34억 1,400만원(국비 50%)이 편성되었음.

경상북도의 설명에 따르면 경주 일대에 정상회의에 필요한 정상용 숙소(Presidential Royal Suite: PRS)가 10여 곳에 불과하여 준비의 시급성으로 인해 숙박시설이 먼저 시설 개선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 완료 후 비용 일부를 정산을 통해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중이며, 2025년 9월까지 숙박시설 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임.

[숙박시설 정비 사업비 및 사업내용]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위치	사업내용
	국비	지방비		
숙박시설 정비	3,414	3,414	보문관광단지 일원 (소노캄 경주 등)	• 숙박시설 등 정비(34억 1,400만원) - PRS 객실 원상복구: 13억 6,600만원 - 경호 안전 공사: 5억 3,000만원 - 공용공간 리모델링: 15억 1,800만원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숙박시설 정비 사업 당초 일정 및 추진 상황]

구분	당초 일정(2025년도 예산안)	추진 상황 및 계획
숙박시설 정비 (보문관광단지 일원)	-	• '24. 9. ~ 12. 설계 시행 • '25. 1. ~ 9. 착공 및 완공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

한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나누어 교부하고, 사용 여부를 점검하여 잔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5] 이에 따라 통상적인 보조금 사업은 보조사업자의 교부신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고 사업 종료 후 정산하나, 이 사업의 경우 숙박시설이 먼저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한 후 지자체가 보조금을 교부하게 됨.

이와 같이 지자체가 정산을 통해 보조할 금액을 확정한 이후 보조금을 교부함에 따라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예외적인 집행형태이므로 사업 집행 시 면밀한 정산 및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외교부는 동 사업 추진 시 지자체에 적절한 보조금이 교부되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5)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행정안전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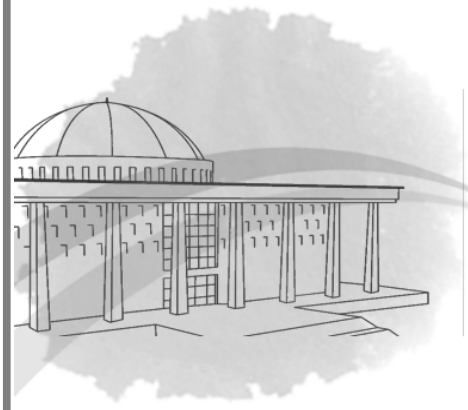

행정안전부

Ⅰ. 개 관

1.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추경안의 총수입은 1,631억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함.[1)]

[2025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추경안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 (현계획)(A)	추경안 (변경안)(B)	증감(B-A)	(B-A)/A
예 산	3,068	1,631	1,631	-	-
합 계	3,068	1,631	1,631	-	-

문의 : 한익현 예산결산조사관 hih8105@assembly.go.kr (02-6788-5682)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5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추경안의 총지출은 72조 7,625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6,786억원(0.9%) 증가함.

[2025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추경안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 (현계획)(A)	추경안 (변경안)(B)	증감(B-A)	(B-A)/A
예 산	724,474	720,839	727,625	6,786	0.9
합 계	724,474	720,839	727,625	6,786	0.9

주 1) 2024년도 본예산 중 기금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2) 2025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나.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입추경안은 총 2개 회계(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며, 본예산과 동일함.

[2025년도 행정안전부 세입추경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일반회계	2,955	1,434	1,434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13	197	197	-	-
합계	3,068	1,631	1,631	-	-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출추경안은 총 2개 회계(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며, 본예산 대비 6,786억원(0.9%) 증가함.

[2025년도 행정안전부 세출추경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일반회계	697,588	697,209	703,818	6,609	0.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6,885	23,631	23,808	177	0.0
합계	723,473	720,872	727,626	6,786	0.9

주) 총계 기준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2025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신규 및 증액편성된 사업은 총 3개 세부사업으로, 총 증액규모(총계 기준)는 6,786억 800만원임.[2)]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재난대책비(보조)’ 사업은 재난 피해 발생 시 피해자 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자연재난)·생활안정자금(사회재난) 및 공공피해 복구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서는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 발생 사유로 ‘재난대책비 지원’ 사업에 6,600억원을 증액하였음.

또한,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사업은 재해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서는 경북·경남·울산 산불로 인한 일부 급경사지 붕괴 위험 증가 등의 사유로 ‘급경사지붕괴위험정비’ 사업에 176억 7,800만원을 증액하였음.

‘국경일등정부행사’ 사업은 국경일 행사·국빈방한 및 대통령 취임행사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서는 조기 대선 실시에 따라 ‘대통령 취임행사’ 사업에 9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음.

[2025년도 행정안전부 추경안 신규 및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4년도 예산	2025년도			
		본예산 (당초)(A)	추경안 (변경안)(B)	증감(B-A)	(B-A)/A
[일반회계]					
재난대책비(보조)	600,040	360,020	1,020,020	660,000	183.3
국경일등정부행사	1,805	4,924	5,854	930	18.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869,667	874,154	891,832	17,678	2.0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재난대책비 지원: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가. 개 요

'재난대책비 지원' 사업은 재난으로 발생한 공공시설 피해복구비, 인명 또는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자 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2025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6,600억원(183.3%) 증액된 1조 199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음.[3)]

[2025년도 재난대책비 지원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재난대책비(보조)	600,040	360,020	1,020,020	660,000	183.3
재난대책비 지원	600,000	359,960	1,019,960	660,000	183.4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330-03목)을 지급하는 지자체 보조사업(국고보조율 50-70%)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화재 등 사회재난에 대한 재난대책비는 목적에 따라 '생활안정지원'과 '피해수습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3) 세부사업: 재난대책비(보조)(2734-300)(재난복구지원국)

이번 추경안에서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로 인한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총 2,619억원이 추가로 계상되었고, 사망·실종자 유족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농업·임업·축산·수산 분야 종사자 사유시설 복구비, 주택파손 등 이재민 대상 주거비, 소상공인 대상 생계비 등을 포함하고 있음.

'피해수습지원'을 위한 예산으로는 총 3,981억원이 추가로 계상되었고, 임시주거시설·낙석방지망 등 도로시설·공중화장실 등 기타시설 등을 복구대상으로 하며, 그 밖에 피해주택 철거비용 등을 포함하고 있음.

[2025년 재난대책비 지원 사업 본예산 및 추경안 세부내역]

2025년도 본예산		2025년도 추경안(증액분)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599억 6,000만원	○ 총액: 3,599억 6,000만원 - 2024년 호우 피해 복구비 지원 : 2,375억 9,800만원 - 2025년 재난대책비 합계 : 1,223억 6,200만원	1조 199억 6,000만원	○ 총액: 1조 199억 6,000만원 (6,600억원 증액) - 2024년 호우 피해 복구비 지원 : 2,375억 9,800만원 - 2025년 재난대책비 합계 : 1,223억 6,200만원 **- 2025년 산불 피해 복구비 지원 : 6,600억원 1) 생활안정지원: 2,619억원 2) 피해수습지원: 3,981억원**

주) 추경안 증액분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은 굵은 글씨체로 표시
자료: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사회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재난지원금(자연재난) 또는 생활안정지원(사회재난)을 위한 구호금·생계비 등의 지원은 재난피해자의 피해신고 및 기초지자체 현장확인 등을 거쳐, 재난복구비용(자연재난) 또는 피해수습지원(사회재난)을 위한 공공시설 복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 자체 피해조사를 거쳐 복구계획 확정 후 보조금을 지급함.

나. 검토의견

일부 지원대상 자치단체의 ‘피해수습지원’ 예산의 실집행이 지연되고 있고, 재난대책비 중 일부 항목에 관한 피해조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아 보조금 교부가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안전부의 보다 면밀한 집행관리가 요구됨.

이번 추경을 통해 2025년 경북·경남·울산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8개 자치단체[4] 대상으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비용이 지원될 예정임.

그런데, 경북 안동시, 경북 영양군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번 산불 이전에 발생한 2024년 호우 재난복구비용의 실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행정안전부는 이번 산불로 인해 지급되는 자치단체 보조금의 경우 이러한 집행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집행 관리를 보다 면밀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음.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8개 기초자치단체 재난대책비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지역명	구분	교부현액 (A)	실집행액 (B)	불용액 (C)	미집행액 (A-B-C)	실집행률 (B/A)
울산 울주군	재난지원금	-	-	-	-	-
	재난복구비용	-	-	-	-	-
	합계	-	-	-	-	-
경북 의성군	재난지원금	2	2	-	-	100.0
	재난복구비용	-	-	-	-	-
	합계	2	2	-	-	100.0
경북 안동시	재난지원금	-	-	-	-	-
	재난복구비용	1,911	1,429	-	482	74.8
	합계	1,911	1,429	-	482	74.8
경북 청송군	재난지원금	-	-	-	-	-
	재난복구비용	-	-	-	-	-
	합계	-	-	-	-	-
경북 영양군	재난지원금	-	-	-	-	-
	재난복구비용	649	393	14	242	60.6
	합계	649	393	14	242	60.6
경북 영덕군	재난지원금	-	-	-	-	-
	재난복구비용	-	-	-	-	-
	합계	-	-	-	-	-
경남 산청군	재난지원금	165	157	8	-	95.2
	재난복구비용	-	-	-	-	-
	합계	165	157	8	-	95.2

4)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북 안동시,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영덕군, 경남 산청군, 경남 하동군 등 8개 자치단체가 선정되었음.

(단위: 백만원, %)

지역명	구분	교부현액 (A)	실집행액 (B)	불용액 (C)	미집행액 (A-B-C)	실집행률 (B/A)
경남 하동군	재난지원금	8	8	-	-	100.0
	재난복구비용	-	-	-	-	-
	합계	8	8	-	-	100.0

주) 2024년 호우·대설에 대한 실집행 현황(2024.1.1.~2025.3.31.). 추경안 미포함.
자료: 행정안전부

특히, 이번 추경안의 전체 지원액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시설 복구비 일부(합계 2,664억 5,000만원) 및 사유시설 복구비(합계 1,334억 5,000만원) 등의 세부 산출내역이 도출되지 않고 있으므로, 보조금 교부에 앞서 선행절차인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을 신속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음.

[재난대책비 지원 사업 추가경정예산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지원대상	피해규모	지원규모	산출 세부내역
생활안정지원	구호금	사망·실종자 유족[1]	27명	380	14백만원×27명≒380백만원
		부상자[2]	9명	70	7백만원×9명≒ 70백만원
	사유시설 복구비	농업·임업·축산·수산 분야 종사자 사유시설 복구비	집계중	133,450	○ 업종별 지원규모[3] - 농업: 71,150백만원 - 임업: 30,300백만원 - 축산: 18,600백만원 - 수산: 13,400백만원
	주거비	주택파손 등 이재민 주거비	4,232동	106,700	25.2백만원 × 4,232동 ≒ 106,700백만원
	소상공인 구호 및 생계안정 지원금	소상공인 생계비 지원	집계중	21,300	미정
	합계			261,900	-
피해수습지원	공공시설 복구비	임시주거시설	4,000세대	88,000	22백만원 × 4,000세대 = 88,000백만원
		낙석방지망 등 도로시설	57개소	23,000	미정
		공중화장실 등 기타시설	집계중	43,350	미정
		마을 도로망 등 간접자본	39개소	200,100	미정
	파손주택 철거비	피해 주택 등 철거대상 시설	집계중	43,650	미정
	합계			398,100	-

주1) 사망자·실종자 31명 중 타 법령에 의해 지원대상이 되는 진화대원 3명, 공무원 1명 제외
2) 부상자 52명 중「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제53조 기준 장해등급 14급 이상에 해당하는 9명 지원
3) 2022년 동해안 산불 업종별 피해비율에 의해 산정됨
자료: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 출>

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가. 개 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 사업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위험 해소를 위해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5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176억 7,800만원(16.4%) 증액된 1,257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음.[5)]

[2025년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869,667	874,154	891,832	17,678	2.0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	149,096	108,099	125,777	17,678	16.4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330-03목)을 지급하는 지자체 보조사업(국고보조율 50%)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붕괴위험지역'[6)]의 정비를 위한 설계비·공사비 등의 용도로 지출됨.

'붕괴위험지역'은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기관이 실시하는 안전점검 또는 급경사지 실태조사 등을 거쳐 지정[7)]·고시되고 있음.

---

5) 세부사업: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2635-300)(자연재난대응국)

6)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붕괴위험지역"이란 붕괴·낙석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와 그 주변 토지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7)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①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에 따

이 사업을 통해서 당초 259개소 대상(신규 100개소, 계속 159개소) 1,080억 99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추경을 통해 기존 사업지구 중 ① 산불로 인근 산림이 유실되는 등의 사유로 위험도가 증가했다고 판단되는 사업지구(산불간접피해지역) 5개소 및 ② 영남지역 외 시·도에서 긴급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지구(긴급정비필요지구) 11개소 등의 총사업비 잔액에 해당하는 176억 7,800만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 투입하고자 함.

[2025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 사업 본예산 및 추경안 세부내역]

2025년도 본예산		2025년도 추경안(증액분)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80억 990만원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 : 1,080억 990만원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신규) 100개 × 2억 1,100만원 × 50% = 105억 4,000만원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계속) 159개 × 12억 2,700만원 × 50% = 975억 5,900만원	1,257억 7,700만원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 1257억 7,700만원 (176억 7,800만원 증액)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 : 1,080억 990만원 1) 신규 100개소: 105억 4,000만원 2) 기존 159개소: 975억 5,900만원 **- 산불피해지역 및 시·도 우선순위에 따라 2026년 완료 예정이던 16개 사업 선정하여 긴급 추가 지원 실시 : 176억 7,800만원 - 산불간접피해지역: 5개소 (경북2, 경남3), 72억 3,600만원 추가지원 - 긴급정비 필요지구: 11개소 (강원2, 충북2, 충남2, 전북2, 전남2, 제주1), 104억 4,200만원**

주) 추경안 증액분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은 굵은 글씨체로 표시
자료: 행정안전부

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관리기관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급경사지에 대하여 직접 재해위험도 평가를 하고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장·군수, 구청장은 해당 붕괴위험지역의 관리기관이 된다.

제5조의2(급경사지 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급경사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새로이 파악된 급경사지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법에 따라 해당 급경사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추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16개 사업지구 중 14개 사업지구의 사업기간이 차년도(2026년) 6월까지로 예정되었고, 일부 사업지구는 2025년에 신규로 사업지구로 선정되었거나 계속사업임에도 현재(2025년 3월 기준)까지 공사비가 전액 미집행되는 등 추진실적이 미흡하므로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이번 추경에 따른 이 사업 예산 증액편성의 의도는 총사업비 조기집행에 의한 사업기간 단축임. 그러나 추가 지원대상 16개 사업지구 중 14개 사업지구의 사업기간 종료 예정 시점이 2026년 6월이어서,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2025년 추경예산안 편성 대상 16개 사업지구 추경 전/후 사업기간 비교]

사업지구명	사업기간		비고
	추경 전	추경 후	
경북 영양군 형제바위	2023.1.~2026.12.	**2023.1.~2026.6.**	
경북 영양군 토구	2021.1.~2026.12.	**2021.1.~2026.6.**	
경남 하동군 서해량	2024.1.~2026.12.	**2024.1.~2026.6.**	
경남 산청군 금서	2024.1.~2026.12.	**2024.1.~2026.6.**	
경남 산청군 신연	2023.1.~2026.12.	**2023.1.~2026.6.**	
강원 평창군 수하리3	2021.1.~2026.12.	**2021.1.~2026.6.**	
강원 화천군 동촌35	2021.1.~2026.12.	2021.1.~2025.12.	
충북 영동군 가람	2024.1.~2026.12.	**2024.1.~2026.6.**	
충북 보은군 길탕3	2025.1.~2026.12.	**2025.1.~2026.6.**	**2025년 신규 지정**
충남 보령시 명천1	2025.1.~2026.12.	**2025.1.~2026.6.**	**2025년 신규 지정**
충남 홍성군 월산	2025.1.~2026.12.	2025.1.~2025.12.	2025년 신규 지정
전북 김제시 오봉	2024.1.~2026.12.	**2024.1.~2026.6.**	
전북 장수군 선창1	2025.1.~2026.12.	**2025.1.~2026.6.**	**2025년 신규 지정**
전남 고흥군 백일(원주도)	2025.1.~2026.12.	**2025.1.~2026.6.**	**2025년 신규 지정**
전남 고흥군 봉양	2025.1.~2026.12.	**2025.1.~2026.6.**	**2025년 신규 지정**
제주 서귀포 하예	2024.1.~2026.12.	**2024.1.~2026.6.**	

주) 사업종료시점이 2025년을 초과하여 예정된 경우 굵은 글씨체로 표시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16개 사업지구의 보조금 실집행 내역을 보면, ‘경북 영양군 형제바위’, ‘경북 영양군 토구’, ‘강원 평창군 수하리3’, ‘강원 화천군 동촌35’, ‘제주 서귀포 하예’ 등 5개 사업지구를 제외한 11개 사업지구에서 2025년 3월말 기준 공사비 집행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5년 추경예산안 편성 대상 16개 사업지구 보조금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지구명	보조금(2025년 3월말 기준)							
		공사비		보상비		설계비 등[2]		합계	
		총액	집행	총액	집행	총액	집행	총액	집행
산불간접 피해지역	경북 영양군 형제바위	5,025	2,592	220	-	1,050	250	7,500	2,842
	경북 영양군 토구	4,250	1,214	630	630	2,120	870	7,000	2,714
	경남 하동군 서해량	1,000	-	600	-	319	-	1,919	-
	경남 산청군 금서	1,233	-	-	-	100	-	1,333	-
	경남 산청군 신연	2,350	-	-	-	100	-	2,450	-
긴급정비 필요지구	강원 평창군 수하리3	13,351	6,893	-	-	2,280	1,834	1,5631	8,727
	강원 화천군 동촌35	2,892	2,892	-	-	3	2	2,895	2,894
	충북 영동군 가람	1,900	-	-	-	-	100	2,000	-
	충북 보은군 길탕3	600	-	199	-	101	22	900	22
	충남 보령시 명천1	860	-	-	-	50	-	910	-
	충남 홍성군 월산	250	-	-	-	20	-	270	-
	전북 김제시 오봉	1,260	-	638	-	102	-	2,000	-
	전북 장수군 선창1	1,360	-	17	-	123	31	1,500	31
	전남 고흥군 백일(완주도)	900	-	200	-	200	-	1,300	-
	전남 고흥군 봉양	800	-	250	-	150	-	1,200	-
	제주 서귀포 하예	545	41	340	-	45	-	930	41

주1) 예산현액 기준
2) 설계비 외 감리비, 시설부대비(관리비), 예비비 등 포함
자료: 행정안전부

2025회계연도가 만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공사비 집행실적이 없는 11개 사업지구 대상 사업은 2025년도 신규사업이거나 추진단계가 공사 착공 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므로, 추경안 편성에 의한 긴급지원의 취지를 고려할 때 연내 신속한 집행을 위해 면밀한 집행관리가 필요함.

소방청

Ⅰ. 개 관

1.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소방청 소관 추경안의 총수입은 46억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함.[1)]

[2025년도 소방청 소관 추경안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 (현계획)(A)	추경안 (변경안)(B)	증감(B-A)	(B-A)/A
예산	43	46	46	-	-
합계	43	46	46	-	-

2025년도 소방청 소관 추경안의 총지출은 3,385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74억원(2.2%) 증가함.

문의 : 오민석 예산결산조사관 ohmin3259@assembly.go.kr (02-6788-5701)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5년도 소방청 소관 추경안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 (현계획)(A)	추경안 (변경안)(B)	증감(B-A)	(B-A)/A
예산	3,404	3,311	3,385	74	2.2
합계	3,404	3,311	3,385	74	2.2

나.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소방청 소관 세입추경안은 총 1개 회계(일반회계)로 구성되며, 본예산과 동일함.

[2025년도 소방청 세입추경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일반회계	43	46	46	-	-
합계	43	46	46	-	-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소방청 소관 세출추경안은 총 1개 회계(일반회계)로 구성되며, 본예산 대비 74억원(2.2%) 증가함.

[2025년도 소방청 세출추경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일반회계	3,404	3,311	3,385	74	2.2
합계	3,404	3,311	3,385	74	2.2

주) 총계 기준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2025년도 소방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증액편성된 사업은 총 2개 세부사업으로, 총 증액규모(총계 기준)는 73억 6,300만원임.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개발’ 사업은 화재취약 대상별 맞춤형 예방대책 수립 및 급변하는 건축환경 변화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확충’에 51억 6,300만원을 증액하였음.

또한, ‘중앙119특수구조대지원’ 사업은 대형·특수재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전국 4개권역 119특수구조대 운영지원 및 특수장비 보강을 위한 것으로,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보강’에 22억원을 증액하였음.

[2025년도 소방청 추경안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4년도 예산	2025년도			
		본예산 (당초)(A)	추경안 (변경안)(B)	증감(B-A)	(B-A)/A
[일반회계]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개발	920	1,017	6,180	5,163	507.7
중앙119특수구조대지원	49,899	37,374	39,574	2,200	5.9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산불 진화 장비 도입: 철저한 사업일정 관리를 통한 적기 장비 도입 필요

가. 개 요

소방청은 매년 반복되는 대형산불 재난피해 경감과 산불 초기 확산 저지를 위한 산불진압 특수장비 보강을 위해 2025년 제1회 추경안에서 일반회계 2개 세부사업(화재안전 및 시설기준개발, 중앙119특수구조대지원)에 73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2025년도 제1회 추경 소방청 산불 진화 장비 도입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도 예산	2025년도			
		본예산 (당초)(A)	추경안 (변경안)(B)	증감(B-A)	(B-A)/A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개발	920	1,017	6,180	5,163	507.7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확충	-	-	5,163	5,163	순증
중앙119특수구조대지원	49,899	37,374	39,574	2,200	5.9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보강	-	-	2,200	2,200	순증

소방청은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개발’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확충’ 사업을 51억 6,300만원 증액하여 11개 시도에 비상소화장치 1,199개를 국비 50%, 지방비 50%의 매칭사업을 통해 추가 설치할 계획임.

소방청이 설치하는 산림인접마을[1] 비상소화장치는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① 소화전이 없는 자리에 소화전과 비상소화장치를 신규로 설치하는 유형1과, ② 기존 소화전을 활용하여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는 유형2임.

1)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으로 도입 예정인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구분	유형1	유형2
사진		
특징	소화전과 비상소화장치 신규 설치	기존 소화전을 활용하여 비상소화장치만 설치
단가	1,500만원	600만원
소요 예산	348개소 × 1,500만원 × 50%(국비) = 26억 1,000만원	851개소 × 600만원 × 50%(국비) = 25억 5,300만원

자료: 소방청

2025년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발생한 경북·경남·울산의 동시다발적인 대형 산불로 인해 2025년 4월 18일 기준 산림면적 10만 3,876ha(약 3억 1,422.5만평) 피해, 시설피해 약 6,652동(계속 조사 중), 인명피해 83명(사망 31명, 부상 52명) 등이 발생함에 따라 추경을 통해 설치 예정인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도 1,199개 중 약 62%인 744개가 경북·경남·울산지역에 설치될 계획임.

[전국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현황 및 추경 후 설치계획]

(단위: 개소)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설치현황	25	10	1	15	63	11	43	97	1,852
추경 후 설치예정	-	-	60	-	-	24	50	130	63
유형1	-	-	20	-	-	19	18	90	35
유형2	-	-	40	-	-	5	32	40	28

구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세종	합계
설치현황	115	17	41	50	434	23	2	8	-	2,807
추경 후 설치예정	-	29	50	80	654	40	-	-	19	1,199
유형1	-	-	25	15	118	18	-	-	7	348
유형2	-	29	25	65	536	22	-	-	12	851

주) 설치현황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임
자료: 소방청

산림인접마을은 소방용수시설이 부족하고 도로상황 등 지리적 조건이 열악함과 동시에 나무와 같은 가연물질 등의 영향으로 주택과 시설물 피해 우려가 높아 초기진화가 매우 중요함.

실제 2021년 7월 강원 삼척 주택화재, 2021년 11월 강원 강릉 산불, 2022년 강원·경북 산불 당시 위 장비를 통해 초기진화에 성공하여 대형산불을 방지한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추경을 통한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도입이 향후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소방청은 '중앙119특수구조대지원'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보강' 사업을 22억원 증액하여 영남 119특수구조대(대구)에 배치할 예정이며, 국가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대에 배치할 예정에 따라 전액 국비가 소요됨.

물탱크 구매에 13억원과 헬기 개조 및 설치비용에 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도입 시 현재 밤비바켓(물주머니) 사용으로 발생하고 있는 ① 제한적인 담수량, ② 이동속도 저하, ③ 장애물에 의한 사고 발생 위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사용 중인 밤비바켓(물주머니)과 도입 예정인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비교]

구분	밤비바켓 (물주머니)	리트렉터블 배면물탱크 (수축·확장식)
담수량	2,000L	3,850L (+1,850L)
헬기최대 속도	80노트 (148.16Km/h)	100~130노트 (185.2~240.76km/h)
참고 사진		

자료: 소방청

나. 검토의견

두 사업의 경우 과거 지방비 미확보나 계약 후 도입까지 기간 소요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 대비 집행이 지연된 바 있으므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연내 집행하여 도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 및 계약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020~2024년 산불 피해면적(ha)과 산불발생 건수(건)를 누적하여 월별로 비교하면 1~3월 급격히 산불피해가 증가하고,[2] 4월~9월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10~12월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2020~2024년 월별 산불 피해면적 및 산불발생 건수(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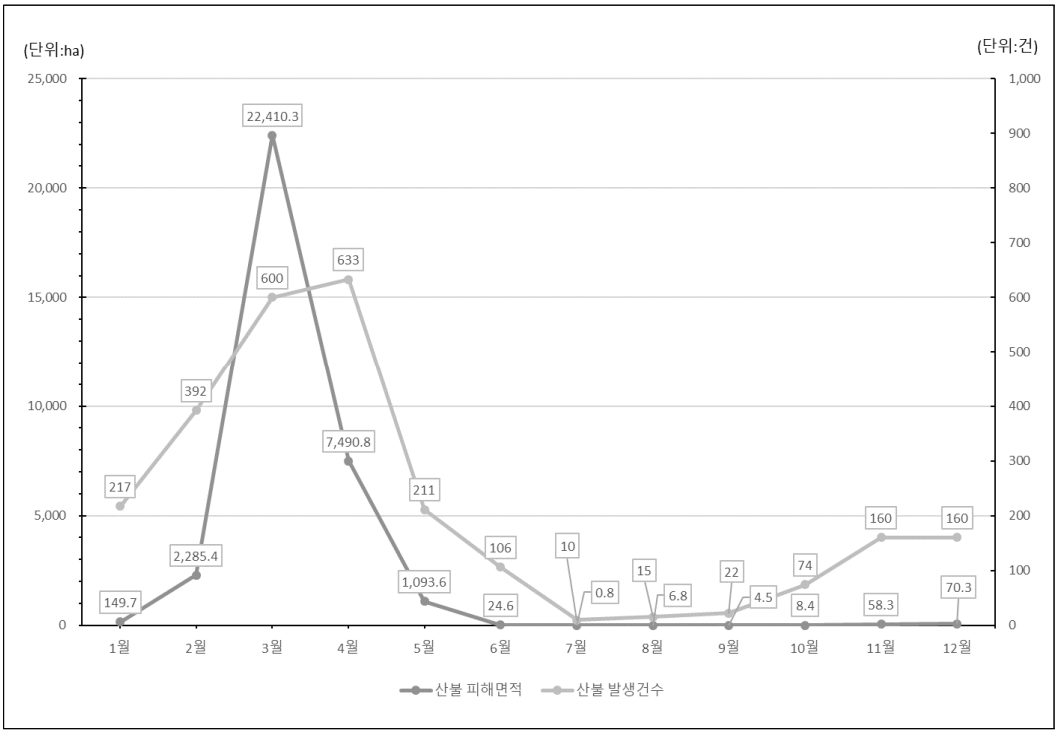

자료: 소방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2026년 연초에도 산불피해가 예상되므로, 이번 추경을 통한 산불 진화 장비 도입이 적기에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연내집행을 통해 빠르게 장비가 도입되어야 할 것임.

2) 봄에 산불 피해가 큰 이유는 건조·강풍으로 인한 것으로, 봄철 한반도의 남쪽에 고기압, 북쪽에 저기압이 머물게 되고 그 가운데 지점에서 편서풍이 생성되는데 이 편서풍이 역전층과 백두대간 사이의 좁은 통로를 지나면서 고온건조해지고, 바람이 강해지는 현상이 나타남.

(1)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확충 사업

소방청은 과거 2020년 제3회 추경(700개소/35억원), 2022년 제2회 추경(627개소/20억원), 2023년 본예산(1,044개소/54억 2,300만원) 당시에도 동일하게 국비 50%의 매칭사업으로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를 확충하였음.

그러나 시·도의 예산확보 및 추경편성이 지연되어 실제 사업착수가 계획보다 늦어졌고 이로 인하여 교부된 예산이 지자체 단계에서 집행되지 못하고 대부분 반복적으로 이월되었음.

예를 들어 경상북도는 2022년 6억 5,000만원을 제2회 추경에 편성하여 교부받았으나 2022년 결산 기준 2억 7,600만원만 집행되어 실집행률이 42.5%에 그쳤고, 2023년 본예산의 경우도 17억 9,100만원을 교부받았으나 9억 4,400만원만 집행되고 8억 4,700만원이 이월되어 실집행률이 52.7%에 그쳤음.

[2020~2023년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확충 사업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사업시행 주체 (기관명)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C)			
2020년	강원도	-	3,500	3,500	-	3,500	1,369	3,500	1,369	2,131	-	39.1
2022년	강원도	-	1,350	1,350	-	1,350	185	1,350	185	1,165	-	13.7
	경상북도	-	650	650	-	650	276	650	276	374	-	42.5
2023년	강원도	3,632	-	3,632	-	3,632	3,523	3,632	3,523	0	109	97.0
	경상북도	1,791	-	1,791	-	1,791	944	1,791	944	847	0	52.7

자료: 소방청

당시 사업추진 일정을 보면, 2022년과 2023년 모두 연도 중 지자체가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지방비 확보를 위한 시·도 추가경정예산 심사·의결까지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기본계획수립부터 공사용역입찰까지의 공사준비기간도 2022년의 경우 99일, 2023년의 경우 약 5개월이 소요되었음.

[2022~2023년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확충사업의 시·도 추가경정예산 확보 및 공사준비기간]

구분	2022년도		2023년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북도
추가경정예산 심사시작	2022.10.10.	2022.07.18.	2023.3.10.
추가경정예산 의결	2022.12.09.	2022.08.26.	2023.3.22.
① 기본계획수립 (설치장소검토)	2022.08.11.	2022.08.11.	2023.3.15. (2023.4.10.)
② 실시설계 용역 입찰	2022.09.14.~10.16.(33일)	2022.08.25.~09.13.(20일)	2023.4.18.~5.4.(17일)
③ 실시설계	2022.10.18.~11.16.(30일)	2022.09.13.~10.03.(20일)	2023.5.8.~6.26.(50일)
④ 공사용역 입찰	2022.11.30.~12.21.(22일)	2022.10.24.~11.17.(25일)	2023.7.19.~8.8.(21일)
⑤ 설치공사	2023.01.09.~2023.12.29.	2022.11.22.~2023.3.29.	2023.8.14.~2024.2.23.
공사준비기간 (①~④)	약 4개월(131일)	약 3개월(99일)	약 5개월(147일)

자료: 소방청

또한 산림인접마을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굴착이 필요하나, 공사가 겨울까지 지연되는 경우 토지결빙으로 인해 굴착이 불가능해 공사가 중단되는 문제가 있음. 실제 2022년의 경우 경북 울진 지역에서 토지 굴착이 어려워 2개월(60일) 이상 공사가 중단되는 등 겨울철 비상소화장치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음.[3)]

[2022년 지역별 토지결빙으로 인한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공사중단 기간]

(단위: 일, C°)

구분	지역명	공사중단기간	공사중단일수	평균기온
강원	동해시	'23.2.7.~2.20.	13	-0.4
	속초시	'23.2.3.~2.16.	13	-4
	삼척시	'23.1.21.~2.3.	13	-5.8
	고성군	'23.1.13.~2.11.	29	-8
	양양군	'23.1.13.~2.16.	34	-6.8
경북	울진군	'22.12.23.~'23.2.28.	67	-6.6

자료: 소방청

위와 같이 동 사업의 경우 사업구조상 장치 설치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적기에 비상소화장치가 설치 및 준비되어 초기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자체 추경 편성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관리를 철저히할 필요가 있음.

3) 이외에도 ① 토상수도관 매립 관망도와 실제 현장이 불일치 하는 경우, ② 토지 소유자가 변심하여 설치를 미동의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집행이 지연되었음.

(2)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보강 사업

소방청이 수립한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보강 사업 계획을 보면, 계약 체결 이후 도입까지의 기간을 약 7개월(제작기간 6개월, 장착 수리개조 수행 3~4주)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2025년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보강 사업 추진 계획]

순번	구 분	예상 소요기간	추진사항
1	예산배정	'25.5.	▸ 배면물탱크 예산 확정
2	계획 수립 및 계약 추진	'25.5.~'25.8. (3개월)	▸ 사업설명회, 규격심의회, 제안서 평가, 협상 진행 등
3	제작 기간	'25.9.~'26.2. (6개월)	▸ 배면물탱크 제작 및 납품
4	장착 수리개조 수행	'26.2.~'26.3. (3~4주)	▸ 배면물탱크 장착을 위한 수리개조(전기설비 구축 등) 수행
5	사업 종료	'26.3.	▸ 수리개조 완료 및 납품검사 결과 제출

자료: 소방청

소방청은 2022년 제2회 추경 당시 중앙 헬기 2대 및 시·도 소속 헬기 8대에 배면물탱크를 장착하기 위해 총 83억 8,80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음.

당시 집행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장비가 계약 후 도입까지 1년 이상 소요되는 등 현재 소방청이 예상하고 있는 계약 후 도입까지의 소요기간인 약 7개월 보다 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 사례가 다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2022년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보강 사업의 지자체별 계약 후 도입까지의 소요기간]

시도	계약일자	도입일자	계약 후 도입까지의 소요기간
강원	'22.11.24.	'23.5.4.	162일 (약 5개월)
경기	'23.11.3.	'24.6.21.	232일 (약 8개월)
충남	'22.12.29.	'23.10.14.	290일 (약 10개월)
전남	'22.11.14.	'23.6.15.	214일 (약 7개월)
전북	'23.1.2.	'23.12.27.	360일 (약 12개월)
광주	'22.12.8.	'23.8.4.	385일 (약 13개월)
부산	'22.11.25.	'23.11.16.	357일 (약 12개월)

자료: 소방청

소방청은 도입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 일부 지역에서 ① 장착하려는 물탱크에 대한 부가형식증명(STC)[4]이 미발급 상태여서 장착 승인 절차가 지연되었고, ② 기체 크기가 작고 하부에 다수의 안테나가 설치된 기종의 경우 안테나를 전면 또는 후면으로 이전하는 설계변경 기간이 필요하였으나 제작사의 설계도서 확보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부품조달 및 장착 일정에 지연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였음.

이번 추경으로 도입하는 소방헬기 배면물탱크의 경우 시콜스키사(社)의 S-92 기종에 보강하는 것으로, 2025년 기준 물탱크는 2개사에서 개발되었으며 이 중 1개사는 부가형식증명(STC) 발급이 완료되었고, 하부 안테나가 2개 정도 위치 이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관련 부품 조달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다고 설명하였음.

소방청은 위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장비구매계획 수립, 업체선정 및 납품 등의 사업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적기에 소방헬기 배면물탱크가 설치되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산불 진화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4)「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e, STC)”** 이라 함은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등의 형식설계에 중대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개조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해당 항공기기술기준의 요구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부가형식증명은 “단수 부가형식증명”과 “복수 부가형식증명”의 두 가지로 구분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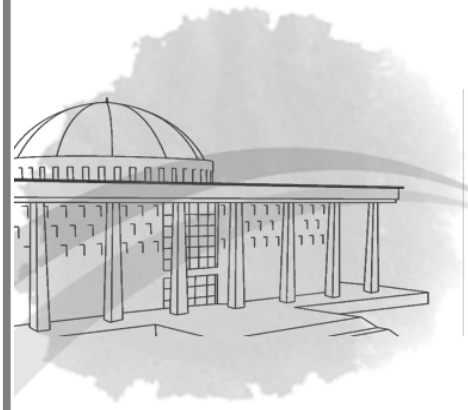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

Ⅰ. 개 관

1.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경안의 총수입은 13조 524억원으로, 예산은 8조 1,592억원, 기금은 4조 8,932억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함.[1)]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경안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 (현계획)(A)	추경안 (변경안)(B)	증감(B-A)	(B-A)/A
예 산	84,635	81,592	81,592	-	-
기 금	50,421	48,932	48,932	-	-
합 계	135,056	130,524	130,524	-	-

주 1) 2024년도 본예산 중 기금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2) 2025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문의 : 이유미 예산결산조사관 youme0803@assembly.go.kr (02-6788-5685)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경안의 총지출은 18조 8,566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150억원(0.6%) 증가함. 예산은 10조 5,968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150억원(1.1%) 증가한 반면, 기금은 8조 2,598억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함.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경안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 (현계획)(A)	추경안 (변경안)(B)	증감(B-A)	(B-A)/A
예 산	98,963	104,818	105,968	1,150	1.1
기 금	85,748	82,598	82,598	-	-
합 계	184,711	187,416	188,566	1,150	0.6

주 1) 2024년도 본예산 중 기금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2) 2025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나.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세입추경안은 총 6개 회계로 구성되며, 본예산 대비 1,350억원(0.8%) 증가함.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세입추경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일반회계	212	213	213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44,906	140,055	141,405	1,350	3.5
에너지및지원사업특별회계	430	430	430	-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0.3	0.3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18	35	35	-	-
양곡관리특별회계	27,460	27,925	27,925	-	-
합계	173,127	168,660	170,010	1,350	0.8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세출추경안은 총 6개 회계로 구성되며, 본예산 대비 2,500억원(1.1%) 증가함.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세출추경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일반회계	58,042	72,594	73,944	1,350	1.9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27,994	122,813	123,963	1,150	0.9
에너지및지원사업특별회계	174	165	165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953	13,624	13,624	-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78	157	157	-	-
양곡관리특별회계	27,460	27,925	27,925	-	-
합계	221,801	237,279	239,779	2,500	1.1

주) 총계 기준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증액편성된 사업은 총 2개 세부사업으로, 총 증액규모(총계 기준)는 1,150억원임.[2)]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푸드서비스선진화’ 사업은 외식업체 경쟁력 강화와 외식물가 안정을 위한 컨설팅 및 식재료 공동구매, 공공배달앱 활용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에 650억원을 증액하였음.

또한, ‘농식품소비기반조성사업’ 사업은 우리 농산물 소비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국민 대상으로 식생활교육, 소비정보 제공 및 홍보, 농축산물 구매시 할인지원 것으로, 농수산물 할인지원사업에 500억원을 증액하였음.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추경안 신규 및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4년도 예산	2025년도			
		본예산 (당초)(A)	추경안 (변경안)(B)	증감(B-A)	(B-A)/A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푸드서비스선진화	2,613	1,925	66,925	65,000	3,376.6
농식품소비기반조성	123,649	123,424	173,424	50,000	40.5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Ⅱ. 사업별 검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

<세 출>

1.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공공배달앱 진단·분석 필요

가. 개 요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은 외식산업 및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운영중인 공공배달앱을 통해 회당 2만원 이상 3회 이용(주문) 이후 4회째 이용할 수 있는 1만원의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5년도 추경안은 650억원이 신규편성되었음.[3)]

[2025년도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푸드서비스 선진화	2,613	1,925	68,350	65,000	3,376.6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925	1,425	66,425	65,000	4,561.4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	-	65,000	65,000	순증

이번 추경안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을 650만명, 1만원 지원을 기준(국비 100%)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3) 세부사업:푸드서비스선진화(2837-370)(식품산업정책관실)

[2025년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사업 본예산 및 추경안 세부내역]

2025년도 본예산		2025년도 추경안(증액분)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650억원	❍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사업 - 650만명 × 1만원 ×국비 100% = 650억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검토의견

예산안 산출근거의 미흡, 공공배달앱에 대한 진단을 통한 경쟁력 여부 검토 및 구조적인 문제 개선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외식 주문시 주문수수료(2.0~9.7%, 2만원 주문기준)가 높아 배달관련 비용으로 인한 외식관련 소상공인 부담이 심화되고 있으며, 민간 3社가 배달앱 시장의 94.9%를 점유하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배달앱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임. 이에 외식산업 및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650억원의 추경안을 편성하였다고 함.

[배달의 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의 음식점주 지출비용 비교(2만원 주문기준)]

구분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공공배달앱)
중개 수수료	1,560원 (7.8%)	1,940원 (9.7%)	400원(2.0%)
결제 수수료(3%)	600	600	600
배달요금 (서울기준)	3,400	2,900	업주 자율
부가세(10%)	556	544	100
차감액 합계	6,116	5,984	1,100
입점업체 수익	13,884	14,306	18,900 - 배달료

주)광고료 제외, 배달용역은 부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배달대행 중개업은 과세대상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배달앱 현황 및 점유율(2025.3월 월간사용자수)]

구분		이용자수(만명)	점유율(%)
주요 민간배달앱(3社)		**3,772**	**94.9%**
	배달의 민족	2,221	55.9%
	쿠팡이츠	1,038	26.1%
	요기요	513	12.9%
주요 공공배달앱(5社)		**199**	**5.1%**
	땡겨요	117	2.9%
	배달특급	29	0.7%
	먹깨비	26	0.7%
	위메프오	3	0.1%
	대구로	16	0.4%
	기타	8	0.2%
합 계		3,975	100%

주) 산출방식 : 8개 배달앱의 MAU(Monthly Active Users, 월간활성사용자) 합계에 각 배달앱 MAU비율, 일부 배달앱 미포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업체 경영부담 완화 및 침체된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편성된 추경안은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나,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음.

첫째, 예산안이 1인당 1만원, 650만명을 기준으로 편성되었으나 산출근거의 합리적인 근거 및 관련 통계자료, 산업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분석이 미비함. 농식품부에 따르면, 추경 확정 이후에야 공공배달앱별로 소비자 지출기록을 확인할 계획이므로, 1인당 1만원 및 650만명 지원을 위한 650억원의 예산편성이 적정한 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움.

둘째, 최근 3년간 공공배달앱 입점업체, 주문건수(천건), 가입자수 현황에서 공공배달앱 경쟁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문건수를 살펴보면, ‘땡겨요’ 및 ‘먹깨비’ 를 제외한 공공배달앱의 경우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주문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예산집행시기가 2025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어, 사업 예산집행 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최근 3년간 공공배달앱 입점업체수, 주문건수, 가입자수 현황]

구분	입점업체수(개, 누계)			주문건수(천건)			가입자수(천명, 누계)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땡겨요	66,383	136,384	193,657	2,723	7,357	12,351	1,656	2,853	4,112
먹깨비	77,971	94,198	122,983	1,945	2,595	2,589	684	906	1,070
위메프오	127,639	144,400	153,697	1,113	716	337	1,295	1,300	1,302
휘파람	6,037	7,239	7,796	276	163	162	123	134	139
배달특급	57,069	62,294	69,360	4,929	3,485	2,469	748	546	484
대구로	13,461	17,294	20,197	2,664	2,317	2,072	316	514	580
배달모아	549	659	749	5	6	8	18	20	22
전주맛배달	3,233	3,896	4,290	172	218	153	45	67	78
배달의명수	1,604	1,788	1,471	276	192	146	139	143	146
배달e음	10,185	11,052	11,656	1,750	1,020	606	2,371	2,434	2,490
울산페달	2,736	2,840	2,759	53	31	19	61	66	68
배달양산	1,762	1,786	1,877	290	269	230	108	104	145
합계	368,629	483,830	590,492	16,196	18,369	21,142	7,564	9,087	10,63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사업의 2025년 예산 집행 및 정산 계획]

ㅇ 실무협의(공공배달앱, 5월) → 추진계획 보고(6월) → 사전홍보(6월) → **프로모션 추진 (7월~예산 소진시까지)** → 정산(aT→공공배달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부산광역시 전체 및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등 상당히 많은 지자체에서 공공배달앱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사업은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 지역간 정책혜택의 차별을 발생시킬 가능성도 있음.

[공공배달앱을 사용할 수 없는 지자체 현황]

-부산광역시 전체
-강원: 강릉, 동해, 속초, 삼척, 횡성, 영원, 평창,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경남: 창원, 진주, 사천, 거제,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전북: 익산,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경북: 포항, 영천, 봉화, 울릉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셋째, 배달앱은 선점효과가 큰 분야로써 이미 민간배달앱의 시장점유율이 94.9%를 차지하고 있는 점 뿐만 아니라 공공배달앱의 비싼 배달대행비, 배달 중 문제 발생시 점주가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민간배달앱의 경우 본사 책임), 플랫폼의 경쟁력 약화 및 편의성 부족 등 공공배달앱의 구조적인 문제[4], 지자체의 보조가 중단될 경우 존속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공배달앱의 경쟁력을 사업수행 이전에 검토한 후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실제로, 대전광역시가 2021년 만든 공공배달앱 '휘파람' 은 이용률 저조로 2년 만에 사업을 종료했고, 2024년에는 강원도의 '일단시켜', 부산의 '동백통', '어디go', 충남의 '소문난샵', 세종시의 '배슐랭' 등 13개의 앱이 사업을 종료한 바 있음.

4) '"착한 가격" 내세웠지만・・・외면받는 공공배달앱' (서울경제, 2025.4.8.) / '군산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 이용 급감' (노컷뉴스, 2025.4.10.)

2. 농축산물 할인지원: 면밀한 사업설계 및 집행계획 수립 필요

가. 개 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부담 경감을 위해 대형유통경로(대형마트 및 온라인몰 등) 및 중소유통경로(중소마트 및 전통시장, 온라인몰 등)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지정 국산 신선 농축산물 구매시 1인당 1만원 한도내에서 품목당 20% 할인지원(전통시장 2만원 한도, 30%)하는 것으로, 2025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500억원(46.3%) 증액된 1,580억원이 편성되었음.[5)]

[2025년도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농식품소비기반조성	123,649	123,424	173,424	50,000	40.5
농축산물 할인지원	108,000	108,000	158,000	50,000	46.3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2025년 본예산으로 1,060만명에 해당하는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었고, 이번 추경을 통해 500만명을 추가하여 1,560만명에 해당되는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2025년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본예산 및 추경안 세부내역]

2025년도 본예산		2025년도 추경안(증액분)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80억원	❍ 농축산물 할인지원 -**1,060만명**×1만원×국비 100% + 운영비 20억원	1,580억원	❍ 농축산물 할인지원 -**1,560만명**×1만원×국비 100% + 운영비 20억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5) 세부사업:농식품소비기반조성(3041-385)(유통소비정책관)

나. 검토의견

예산 산출근거의 미흡, 정책수혜 편차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한 사업 설계 및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생산비 상승, 기후변화 등 물가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금년 하반기 소비자 물가부담 경감을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에 500억원(수혜자 500만명 추가)을 추가하는 추경안을 편성하였음. 2025년 기준, 이 사업에는 농협하나로마트,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뿐만 아니라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등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64개사가 참여하고 있음.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참여업체 현황(2025년도 기준)]

유통업체(총 64개)	
대형유통 (12개소)	대형마트(7개소)-농협하나로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온라인몰(5개소)-11번가(주), 카카오, 현대홈쇼핑 등
중소형유통 (53개소)	지역농협(1개소)-전국 지역단위 농업협동조합
	중소형마트(20개소)
	친환경매장(6개소)
	로컬푸드직매장(12개소)
	온라인몰(민간4개소,공공지자체5개소)-(주)오아시스, ㈜컬리
	전통시장-제로페이, 전통시장온라인몰(4개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에 추가 재원이 필요한 측면은 있음.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의 계획 및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예산 산출근거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연례적으로 추경 및 예비비로 재원을 추가배정받아 사업이 추진되어 왔는데, 2022년에는 추경 및 예비비를 통해 690억원을, 2023년에는 예비비로 225억원을, 2024년에는 587억원의 재원을 예비비로 추가지원받아 집행하여 왔고, 2025년에는 추경으로 500억원의 사업비를 증액시킬 계획임. 이는 매년 예산편성시 합리적으로 사업비를 산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함.

또한 이 사업의 예산안이 1인당 1만원, 1,560만명(본예산 1,060만명)을 기준으로 편성되었으나 1인당 1만원 한도 지원이 적정한 지 여부, 사업수혜자 1,560만명이 어떠한 기준으로 도출된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부족함.

[2022-2024년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실집행액 (C)	집행률 (C/A)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22	39,000	78,000	-	-	30,000	108,000	107,819	99.8	-	181
2023	108,000	-	-	-	22,500	130,500	130,419	99.9	-	81
2024	108,000	-	-	-	58,700	166,700	166,103	99.6	-	597
2025.3.기준	108,000	-	-	-	-	108,000	58,970	54.6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둘째,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할인혜택을 받으려면 이 사업에 참여하는 유통업체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회원가입 등의 절차에 접근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고령층·저소득층 등 특히 장바구니 물가에 더욱 민감한 정보소외계층은 이 사업의 할인혜택을 받기 어려움.

셋째, 참여 유통업체에서 소비자가 할인지정 품목을 얼마나 구입하였는 지, 1인당 할인혜택을 받은 규모 등을 유통업체간 공유하고 있지 않아[6] 소비자가 실제 여러 유통업체 등을 통해 할인혜택을 과도하게 받고 있거나 이와 반대로 정부의 할인혜택 정책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또한 참여 유통업체가 주거지 인근에 없다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는 등 정책수혜 편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넷째, 매년 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 소요(2024년 1,667억원)되지만, 예산산출근거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1,500여만명이 1주일 1인당 최대 1만원 미만의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유통업체 자체적으로 할인행사들이 다양하게 자주 개최되고 있어[7],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예산규모에 비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음.

6)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사유 등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 공유하고 있지 않다고 함.

7) 대형유통업체인 이마트, 롯데마트 등은 자체적으로 전단행사 등을 통해 농축수산물, 가공품, 공산품 등을 매주 정기적으로 세일행사하고 있음.

산림청

Ⅰ. 개 관

1.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산림청 소관 추경안의 총수입은 4,275억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함.[1)]

[2025년도 산림청 소관 추경안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 (현계획)(A)	추경안 (변경안)(B)	증감(B-A)	(B-A)/A
예 산	4,562	4,275	4,275	-	-
합 계	4,562	4,275	4,275	-	-

주 1) 2024년도 본예산 중 기금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2) 2025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문의 : 이유미 예산결산조사관 youme0803@assembly.go.kr (02-6788-5685)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5년도 산림청 소관 추경안의 총지출은 3조 369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4,200억원(16.0%) 증가함.

[2025년도 산림청 소관 추경안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 (현계획)(A)	추경안 (변경안)(B)	증감(B-A)	(B-A)/A
예 산	26,126	26,169	30,369	4,200	16.0
합 계	26,126	26,169	30,369	4,200	16.0

주 1) 2024년도 본예산 중 기금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2) 2025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나.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산림청 소관 세입추경안은 총 3개 회계(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구성되며, 본예산 대비 1,008억원(8.8%) 증가함

[2025년도 산림청 세입추경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일반회계	970	985	985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9,867	9,756	10,764	1,008	10.3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728	719	719	-	-
합계	11,565	11,460	12,468	1,008	8.8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산림청 소관 세출추경안은 총 4개 회계(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구성되며, 본예산 대비 6,216억원(17.1%) 증가함.

[2025년도 산림청 세출추경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일반회계	21,446	21,881	26,081	4,200	19.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9,867	9,756	10,764	1,008	10.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763	3,973	4,981	1,008	25.4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728	719	719	-	-
합계	35,804	36,329	42,545	6,216	17.1

주) 총계 기준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2025년도 산림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신규 및 증액편성된 사업은 총 5개 세부사업으로, 총 증액규모(총지출 기준)는 4,200억원임.[2)]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이번 경북·경남·울산 산불(3.21.~ 3.30.) 산림지역에의 긴급 벌채 등 신속한 산림피해 복구를 위하여 '산림재해대책비'를 1,740억원 증액하였으며, 산불 예방·대응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산림헬기 추가 구입 및 산불진화장비 신규 도입 및 교체 등을 위해 '산림헬기 도입·운영' 및 '산불방지대책' 사업 등에 각각 986억 7,500만원 및 348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음.

또한 산불 현장에 진화장비들이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임도의 추가 설치 및 확장을 위한 '임도시설' 사업에 1,008억 2,500만원, 대형산불 현장대응력 혁신 기술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대형산불 대응 지능형 솔루션 기술개발(R&D)' 사업을 신규편성(116억 5,700만원)하였음.

[2025년도 산림청 추경안 신규 및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4년도 예산	2025년도			
		본예산 (당초)(A)	추경안 (변경안)(B)	증감(B-A)	(B-A)/A
[일반회계]					
산림재해대책비	100,000	100,000	274,000	174,000	174.0
산림헬기 도입·운영	112,344	93,858	192,533	98,675	105.1
산불방지대책	62,434	57,869	92,699	34,830	60.2
대형산불 대응 지능형 솔루션 기술개발(R&D)	-	-	11,657	11,657	순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임도시설(지원)	182,813	190,049	290,874	100,825	53.1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산림재해대책비: 산림재난피해 복구상황의 면밀한 점검 및 예산집행의 철저한 관리 필요

가. 개 요

'산림재해대책비' 사업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 발생시 긴급한 대응 및 산림재난피해지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는 예비비 성격의 사업으로, 2025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1,740억원(174.0%) 증액된 2,740억원이 편성되었음.[3)]

[2025년도 산림재해대책비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산림재해대책비	100,000	100,000	274,000	174,000	174.0

산림재해대책비 사업 추경안의 세부내역으로 직접사업비(실시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등)로 1,439억 600만원, 지자체 보조사업비로 1,300억 9,400만원(50% 보조)이 편성되었음.

3) 세부사업:산림재해대책비(2331-300)(산림재난통제관실)

[2025년 산림재해대책비사업 본예산 및 추경안 세부내역]

2025년도 본예산		2025년도 추경안(증액분)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00억원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774억원** ❍ 실시설계비(420-02) : **10억 5,300만원** ❍ 공사비(420-03) : **208억 4,200만원** ❍ 감리비(420-04) : **5억 3,800만원** ❍ 시설부대비(420-05) : **1억 6,007만원**	2,740억원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1,300억 9,400만원** ❍ 실시설계비(420-02) : **66억 3,700만원** ❍ 공사비(420-03) : **1,325억 2,700만원** ❍ 감리비(420-04) : **38억 6,600만원** ❍ 시설부대비(420-05) : **8억 7,600만원**

자료: 산림청

나. 검토의견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재난피해 복구 진행현황의 면밀한 주기적 점검 및 철저한 예산집행 관리가 필요하고, 재해복구 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독려하는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2010년대와 2020년 이후의 산사태, 산불, 산림병해충 피해 현황을 비교해보면, 산사태의 경우 연평균 피해건수가 2016~2019년 651건이었으나 2020~2024년 2,232건으로 급증하였으며, 연간 산불피해면적(대형산불 건수) 또한 2010년까지는 857ha(1.3건)이었으나 2020년~2024년인 6,171ha(4.8건), 산림병해충 피해 또한 2021년에는 31만그루에서 2023년 107만그루, 2024년 90만그루로 증가하고 있음.

[최근 산림재난으로 인한 산림피해 현황]

o **(산사태)** 2020년 역대 최장(54일)장마, 2023년 남부지방 장마철 강수량(712.6mm) 역대 최대, 2024년 장마철 강우집중 비중(78.8%) 역대 최대

-연평균 산사태 피해건수 : (2016~2019) 651건 → (2020~2024) 2,232건

o **(산불)** 봄철 고온건조 현상이 심화되고 겨울철 적은 강수량 등의 영향으로 산불이 점차 연중화·대형화 추세

-연간 산불피해(대형산불 건수) : (2010년대) 857ha(1.3건) → (2020~2024) 6,171ha(4.8건)

o **(병해충)**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재선충병 피해 집단화 추세

-피해현황 : (2014) 218 → (2021) 31 → (2022) 38 → (2023) 107→ (2024) 90만그루

자료: 산림청

이번 경북・경남・울산 산불(3.21.~ 3.30.)로 인한 산불피해면적 현황은 10만 3,876ha로 역대 최대규모로 추정되고 있음.[4)]

[경북·경남·울산 산불피해면적 현황(4.22.기준, 잠정)]

(단위: ha)

총계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의성 (3.22.~28.)	안동 (3.22.~28.)	청송 (3.22.~28.)	영양 (3.22.~28.)	영덕 (3.22.~28.)	산청・하동 (3.21.~30.)	울주・온양 (3.21.~27.)
103,876	28,853	26,709	20,655	6,864	1,6208	3,397	1,190

주)최종 산불피해면적은 4월말경 확정될 예정임
자료: 산림청

그동안 산림청은 예산부족에 따른 복구예산지원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림재해대책비 예산액(본예산 기준)을 2020년 300억원에서 2025년 1,000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왔으며, 이번 산불로 인한 역대 최대규모의 산림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추경안 편성을 통해 긴급 대응을 위한 예산액 증액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임.

[2020~2025년 산림재해대책비 예산액 현황]

(단위: 백만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본예산	추경
30,000	180,000	50,000	20,000	100,000	100,000	274,000

자료: 산림청

다만, 예산 증액편성, 이・전용 및 예비비를 통한 증액을 통해 산림재해대책비가 꾸준히 증가되어 왔지만, 최근 4년간 결산내역을 검토해 보면, 산림재해의 긴급한 복구를 위한 사업들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예산실집행 현황을 보면, 매년 이・전용 등을 통해 사업비를 증액하여 왔는데, 특히 예비비 재원이 증액된 2022년은 예산집행률이 24.4%로 가장 저조하며, 대체로 74.1% ~ 86.3%의 예산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2024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비목의 평균 예산실집행률이 64.5%에 그치는 등 산림재해의 긴급한 복구를 위한 사업의 예산집행이 부진하였음.

4) 산불피해면적이 큰 산불재해로 2000년 동해안 산불(24천ha) 및 2022년 울진삼척 산불(16천ha) 등이 있음.

이에 대해 산림청은 그동안의 산림재해대책비가 7-8월 발생한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산사태 등에 소요되어 동절기 공사 중지 등 예산집행기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하나, 지자체의 재해복구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을 교부하는 등의 예산집행관리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임.

[2021 ~ 2024년 산림재해대책비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실집행액 (C)	집행률 (C/A)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21	180,000	180,000	7,528	32,706 △32,706	-	187,528	159,894	**85.2**	271	1,830
2022	50,000	50,000	271	11,505 △31,471	40,072	70,377	17,217	**24.4**	41,146	1,297
2023	20,000	20,000	41,164	6,055 △2,725	-	64,494	55,627	**86.3**	1,297	931
2024	100,000	100,000	1,297	39,799 △9,568	-	131,528	97,463	**74.1**	3,765	1,501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 산림재해대책비 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예산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시행 주체 (기관명)	부처		지방자치단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합 계	**89,887**	**89,887**	**89,887**	**4,770**	**94,657**	**61,088**	**26,603**	**6,966**	**64.5**
서울특별시	248	248	248	-	248	190	58	-	76.6
대구광역시	1,592	1,592	1,592	-	1,592	1,428	14	150	89.7
인천광역시	31	31	31	-	31	-	31	-	-
광주광역시	113	113	113	-	113	113	-	-	100
대전광역시	909	909	909	-	909	172	686	51	18.9
울산광역시	843	843	843	46	889	226	663	-	25.4
세종특별자치시	1,083	1,083	1,083	1,102	2,185	1,920	-	265	87.8
경기도	2,936	2,936	2,936	-	2,936	1,662	1,274	-	56.6
강원특별자치도	3,747	3,747	3,747	560	4,307	4,149	71	87	96.3
충청북도	14,215	14,215	14,215	283	14,498	11,882	1,432	1,184	81.9
충청남도	24,184	24,184	24,184	640	24,824	9,259	14,440	1,125	37.3
전북특별자치도	7,853	7,853	7,853	86	7,939	2,554	5,327	58	32.2
전라남도	1,909	1,909	1,909	162	2,071	1,625	250	196	78.5
경상북도	24,585	24,585	24,585	1,891	26,476	20,657	2,032	3,787	78.0
경상남도	5,406	5,406	5,406	-	5,406	5,076	267	63	93.9
제주특별자치도	233	233	233	-	233	175	58	-	75.1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산림재해대책비는 예측하지 못한 산림재해를 긴급하게 복구하는 예비비 성격의 재원으로, 보다 신속·유연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다만,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재난피해 복구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예산 집행 또한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임.

또한 산불피해를 입은 산림의 긴급한 복구를 위해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추경을 통해 예산을 증액한 만큼, 재해복구 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독려하는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2. 긴급벌채: 산림재해대책비(2331-300)로 이관편성 필요

가. 개 요

‘긴급벌채’ 사업은 자연재해로 인한 입목 피해시 국유림 및 지자체에 긴급벌채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추경안은 본예산과 동일한 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5)]

[2025년도 긴급벌채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목재생산관리	8,702	7,847	7,847	-	-
긴급벌채	855	55	55	-	-

주) 긴급벌채 사업 추경안은 2025년 본예산과 동일

[2025년 긴급벌채사업 본예산 및 추경안 세부내역]

2025년도 본예산		2025년도 추경안(증액분)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500만원	❍ 긴급벌채 : 5,500만원 - 2,007본 × 27,400원 ×100% = 5,500만원	5,500만원	❍ 긴급벌채 : 5,500만원(좌동) - 2,007본 × 27,400원 ×100% = 5,500만원

자료: 산림청

나. 검토의견

긴급벌채사업은 목재자원의 안정수급 목적보다는 재해로 인한 산림피해 복구로서의 기능이 크고, 연례적인 대규모 이용절차 방지, 신속한 사업 진행 등의 측면에서 “산림재해대책비(2331-300)” 사업으로 이관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

5) 세부사업:목재생산관리(1540-300)(산림산업정책국)

긴급벌채는 산불·태풍·설해 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나무를 벌채·정리하여 산사태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그럼에도 이 사업은 목재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목재생산관리(1540-300)"의 세부내역으로 편성되어 있어 세부내역과 세부사업간의 사업목적과 내용이 부합하지 않음.

[목재생산관리 사업(1540-300) 내역사업의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사업목적 및 내용	2025년 추경안
국유림 목재생산	국산 목재의 안정적 원료 공급 및 국고세입 증대	3,331
목재생산 기반구축	국내 목재생산 및 목재산업 경영 지원	728
목재생산 사전·사후관리	벌채에 대한 점검 및 관리 강화	1,530
목재수확 타당성 조사	목재생산이 생태·경관·재해 등에 미치는 영향 조사	1,078
긴급벌채	**산불 등 피해지에 대한 2차 피해 예방**	**55**
친환경 목재생산	산주 지원을 통한 벌채 친환경성 강화	1,125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산림청은 2022년 및 2023년에 대형산불 피해지 '긴급벌채'를 위해 '예비비' 및 '산림재해대책비(2331-300)로부터 이용' 등을 통해 재원을 추가 지원받아 집행해왔으며, 이번 추경에서 또한 산불로 인한 긴급벌채를 위해 산림재해대책비로부터 1,500억원(예정)을 이용증액하여 사업을 수행할 계획임.

즉 산림청은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벌채사업을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지 않은 세부사업인 "목재생산관리(1540-300)" 내에 소액편성하고(2024년 8억 5,500만원 → 2025년 5,500만원, △93.6%), 매년 산림재해대책비(2331-300)로부터 대규모 재원을 이용받아 집행하고 있음.

[2022-2025년 긴급벌채 위한 예비비 및 타세부사업으로부터의 이용(증액) 현황]

년도	예비비 및 타세부사업으로부터의 이용 내역
2022년	대형산불 피해지 긴급벌채를 위한 <u>예비비(280억 8,700만원) 및 산림재해대책비 이용(251억 1,800만원)</u>
2023년	대형산불 피해지 긴급벌채를 위한 <u>예비비(55억 9,600만원) 및 산림재해대책비 이용(15억원)</u>
2025년	대형산불 피해지 긴급벌채를 위한 <u>산림재해대책비 이용(1,500억원) 예정</u>

주) 2024년은 산림재해로 인한 예비비 및 이용 사례 없음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산불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긴급벌채 사업을 70~80억원 규모의 '목재생산관리(1540-300)' 사업내에 소액편성하기 보다는 같은 목적의 사업인 '산림재해대책비(2331-300)' 로 이관하여 수행하는 것이 산림재해 발생으로 인한 긴급벌채시 불필요하게 예산의 이용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등 신속하고 유연한 예산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임.

또한 긴급벌채 사업(지자체경상보조)의 연도별 집행현황을 보면,

2022년에는 예비비 280억 8,700만원 및 산림재해대책비로부터의 이용액 251억 1,800만원을 추가 지원받아 당해년도 예산액 8억 5,500만원을 포함하여 540억 6,000만원의 예산현액 중 237억 2,800만원을 집행(집행률 43.9%)하였고,

2023년에는 예비비 55억 9,600만원 및 산림재해대책비로부터의 이용액 15억원을 추가 지원받아 당해연도 예산액 8억 5,5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9억 2,400만원 중 28억 6,300만원을 집행(집행률 36.1%)하였으며,

2024년에는 예산액 8억 5,500만원 및 전년도 이월액 40억 8,800만원 등 예산현액 49억 4,300만원 중 21억 9,200만원이 집행(집행률 44.3%)되는 등 예산집행실적도 저조함.

[2022-2024년 '긴급벌채'사업 예산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현액(A) (본예산)	집행액 (B)	집행률 (B/A)	예산현액(A) (본예산)	집행액 (B)	집행률 (B/A)	예산현액(A) (본예산)	집행액 (B)	집행률 (B/A)	예산현액(예정) (본예산)
54,060 (855)	23,728	43.9	7,924 (855)	2,863	36.1	4,943 (855)	2,192	44.3	150,055 (55)

주)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예산액 + 예비비 + 산림재해대책비로부터의 이용(증액)+전년도 이월액'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은 지방자체단체에서의 연례적인 예산집행률 부진은 중앙정부에서 신속하게 사업비를 증액편성하더라도 산불피해 복구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우려가 있음.

따라서 이번 추경으로 교부될 대규모 긴급벌채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보다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독려가 필요하며, 산림청은 주기적이고 면밀한 사업진행 모니터링을 통해 연내에 집행가능한 사업비를 교부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3. 산림헬기 도입·운영: 국산 헬기 도입 우선적 고려 및 헬기·부품 공급선 다변화 필요

가. 개 요

‘산림헬기 도입·교체’ 사업은 산불의 조기진화 및 산림재난 모니터링 등을 위해 산림헬기를 교체·구입하는 것으로, 2025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968억원(184.3%) 증액된 1,493억원이 편성되었음.[6)]

‘물버킷 교체’ 사업은 대형산불 진화를 위해 산림헬기에 부착하여 물을 운반하는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2025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18억 7,500만원(300.0%) 증액된 25억원이 편성되었음.[7)]

[2025년도 산림헬기 도입·교체 및 물버킷 교체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산림헬기 도입·운영	112,344	93,858	192,533	98,675	105.1
산림헬기 도입·교체	72,500	52,500	149,300	96,800	184.3
물버킷 교체	-	625	2,500	1,875	300.0

산림청은 이번 추경에서 산림헬기를 대형 3대 및 중형 3대를 추가 구입하고, 2025년 본예산에 이미 편성되어 있던 헬기 도입 예산의 연부율을 10% → 30%로 인상하였으며, 물버킷 30개를 추가 교체·구입하는 내용으로 추경안을 편성하였음.

6) 세부사업:산림헬기 도입·운영(2333-300)(산림항공본부)

7) 세부사업:산림헬기 도입·운영(2333-300)(산림항공본부)

[2025년 산림헬기 도입·교체 및 물버킷 교체 사업 본예산 및 추경안 세부내역]

2025년도 본예산		2025년도 추경안(증액분)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31억 2,500만원	❍ 산림헬기 도입・교체 : 525억원 -대형 3년차 : 77억원×1대=77억원 -대형 2년차 : 550억원×1대×40%=220억원 -대형 1년차 : 550억원×1대×10%=55억원 -중형 2년차 : 250억원×1대×40%=100억원 -중형 2년차 증액분 : 40억원×1식=40억원 -중형 1년차: 330억원×1대×10%=33억원 ❍ 물버킷 교체 : 6억 2,500만원 -3,500만원×중형 5개=1억 7,500만원 -9,000만원×대형 5개=4억 5,000만원	1,518억원	❍ 산림헬기 도입・교체 :1,493억원 -대형 3년차 : 77억원×1대=77억원 -대형 2년차 : 550억원×1대×40%=220억원 **-대형 1년차 : 550억원×1대×30%=165억원** **-대형 1년차(추경) : 550억원×3대×30%=495억원** -중형 2년차 : 250억원×1대×40%=100억원 -중형 2년차 증액분 : 40억원×1식=40억원 **-중형 1년차 : 330억원×1대×30%=99억원** **-중형 1년차(추경) : 330억원×3대×30%=297억원** ❍ 물버킷 교체 : 25억원 -3,500만원×중형 20개= 7억원 -9,000만원×대형 20개=18억원

자료: 산림청

나. 검토의견

노후화된 산림헬기 및 물버킷의 신규 구입 및 교체는 산불진화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다만, 국산 헬기 도입의 우선적 고려 및 헬기・부품 공급선의 다변화를 통해 산림 헬기 운영의 효율성 및 산불 진화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임.

2025년 3월 현재 산림청이 운용 중인 헬기는 대형 7대, 중형 32대, 소형 11대이고, 물버킷은 총 100개(배부 93, 예비/보관 7)를 보유중이며, 배부된 93개 중 군(軍)이 83개(전체 배부량 중 89%)를 운영하고 있음.

[산림헬기 운용 현황(2025년 3월 기준)]

(단위: 개)

관리소 / 기종 (담수량)		계	본부	익산	양산	영암	안동	강릉	진천	함양	청양	서울	울진	제주	비무장지대
보유 계		50	6	3	5	3	5	4	4	6	4	4	3	1	2
대형 8천L		7	2	1	-	-	1	1	1	-	-	-	1	-	-
중형	3천L	29	3	2	2	2	3	3	3	3	2	2	2	-	2
	2천L	3	-	-	-	-	-	-	-	-	-	2	-	1	-
소형	8백L	4	-	-	-	1	-	-	-	3	-	-	-	-	-
	6백L	7	1	-	3	-	1	-	-	-	2	-	-	-	-

자료: 산림청

[물버킷 운용 현황(2025년 3월 기준)]

(단위: 개, %)

구분	육군	공군	소방	해병대	경찰·항공	총계
개수(비율)	69개(74.2%)	8개(8.6%)	7개(7.5%)	6개(6.5%)	3개(3.2%)	93개(100%)

자료: 산림청 자료 재작성

산림청이 보유한 50대의 헬기 중, 2025년 3월 기준 기령이 30년 이상인 헬기가 15대(보유헬기 중 30%), 20년 이상인 헬기는 19대(보유헬기 중 38%)로, 산림헬기 노후화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산림청 보유 산림헬기 기령 현황(2025년 3월 기준)]

(단위: 개, %)

기령	30년 이상	21년 이상~30년 미만	10년 이하	총계
대수(비율)	15대(30%)	19대(38%)	16대(32%)	50대(100%)

자료: 산림청 자료 재작성

물버킷 또한 조달청 내용연수가 8년임에도 2001년 구입(내용연수 23년 경과)한 물버킷이 41개로 전체 100개 중 41%를 차지하고 있음.

[물버킷 내용연수 현황(2025년 3월 기준)]

(단위: 개, %)

구입년도	2001년	2018년	2020년	총계
내용연수(24년기준)	23년 경과	6년 경과	4년 경과	100개(100%)
개수(비율)	41개(41%)	1개(1%)	58개(58%)	

자료: 산림청 자료 재작성

산림청의 헬기 및 물버킷의 교체·추가 구입은 동시다발적이고 대형화하는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다만, 2024년도 산림헬기 도입·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725억원 중 151억 6,000만원(헬기 도입·교체 예산의 20.9%)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차단을 위해 산림재해대책비(2331-300)로 전용한 사실은 대형화되는 산불의 조기진화를 위한 산림청의 사전준비 대책이 미흡했음을 보여주고 있음[8].

[2024년 산림청 보유 산림헬기 도입·교체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세사업 명	2024년						
	예산액 (A)	이·전용 등	예산현액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산림헬기 도입·교체	72,500	△15,160	57,340	52,838	72.9	4,502	-

주) 이전용 감액된 151억 6,000만원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산림재해대책비(2331-300)으로 전용됨
자료: 산림청 자료 재작성

2024년 산림헬기 외주정비 예산 또한 136억 2,900만원 중 80억 800만원이 이·전용 등으로 감액되고, 실집행액이 54억 9,300만원으로 실집행률이 본예산 대비 40.3%로 저조함.

[2024년 산림헬기 외주정비 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내역)	2024년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이전용등)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이월액	불용액
외주정비	13,629	1,057	6,678 (△8,008)	5,493	40.3	123	21

자료: 산림청

8) 다만, 산림청은 산림재해대책비로 전용한 것은 산림재난(소나무재선충병) 피해예방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설명함.

산림헬기 외주정비 예산의 실집행률 부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부품수급 곤란 등 외국산 헬기 기종의 부품수급 및 정비를 위한 계약 및 조달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 주요 원인이었음. 이러한 상황은 산림헬기의 노후화 뿐만 아니라 산림헬기 주력기종인 러시아산(KA-32)헬기 다수가 가동되지 못하는 상황을 발생시켜 헬기의 산불진화 능력 제고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음.(KA-32 헬기의 예상 가동 중단 대수가 2025년 9대에 이르고 있음)

[KA-32헬기 가동중단 예측 및 현황]

구 분 (대, 누적)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예상 가동중단	8	8	8	8	8	8	8	9	14	14	14	14	15	15	15	15
실제 가동중단	**8**	**8**	**8**	**8**	-	-	-	-	-	-	-	-	-	-	-	-

주) 2025년 3월 기준
자료 : 산림청

이에 국회는 2023회계년도 결산심사 시(2024년 9월) 대외리스크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산헬기 도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헬기·부품 공급선의 다변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요청하였으며, 부대의견에서도 산림헬기의 외주정비 안정적 운용 및 향후 임차비용 절감을 위해 국산헬기의 구입을 적극 추진할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음.

따라서 산림청은 2025년 추경안에 편성된 신규 산림헬기 6대 도입시 헬기 부품·정비에 대외리스크 영향을 크게 받지 않도록 국산 헬기 도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헬기·부품 공급선의 다변화를 통해 산림 헬기 운영의 효율성 및 산불 진화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임.

4. 산불방지대책: 산불진화장비 도입 시 충분한 사전검토 필요

가. 개 요

‘산불방지대책’ 사업은 산불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고성능 드론을 활용한 산불예방감시, 산불재난의 신속한 대응 위한 진화차량 교체·확충, 산불감시센서 및 CCTV설치 등 산불예방 플랫폼 구축 등 과학기반 산불감시 확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확충 및 처우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348억 3,000만원(60.2%) 증액된 926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음.[9)]

[2025년도 산불방지대책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산불방지대책	62,434	57,869	92,699	34,830	60.2

이번 추경을 통해 증액된 주요 내용은 개인진화장비 및 다목적 산불진화차 확충(본예산 126억 7,700만원→추경안 327억 300만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확충 및 처우개선(본예산 210억 9,700만원→추경안 228억 600만원), 과학기반 산불감시(본예산 32억 2,500만원→추경안 36억원), 리다던트(지연제) 구입(추경안 29억 7,000만원), 진화요원 회복차량 구입(추경안 33억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 등(추경안 28억 5,000만원), 고성능 산불방지드론 구입(추경안 36억원) 등임.

9) 세부사업:산불방지대책(2332-300)(산림재난통제관)

[2025년 산불방지대책사업 본예산 및 추경안 세부내역]

2025년도 본예산		2025년도 추경안(증액분)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69억 9,900만원	❍개인진화장비 및 다목적 산불진화차(16대): **126억 7,700만원** ❍ 산불재난특수진화대: **210억 9,700만원** ❍과학기반 산불감시: **32억 2,500만원**	718억 2,900만원	❍개인진화장비 및 다목적 산불진화차(64대추가)확충: **327억 300만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228억 600만원** ❍과학기반 산불감시: **36억원** **❍리다던트(지연제)구입:29억 7,000만원** **❍진화요원 회복차량 구입(5대): 33억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30대) 및 연구용역: 28억 5,000만원** **❍고성능 산불방지드론(드론 45대 및 드론차량 15대): 36억원**

자료: 산림청

나. 검토의견

산불 예방·진화 역량제고를 위해 고성능드론·다목적 산불진화차 도입 등 첨단장비 도입은 필요하다고 보임. 다만, 신규도입 장비들이 우리 산불진화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관련 기술의 국산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산림청은 추경을 통해 산불감시용 고성능드론 도입, 다목적 산불진화차 추가 구입, 개인진화장비 보완, 산불무인감시카메라 확충 및 ICT플랫폼 구축[10] 등을 통해 신속·정확한 산불 관측 및 진화역량 강화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추후 산불의 대형화 예방 및 진화능력 제고 측면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여짐.

다만, 2024년 산불방지대책사업의 세부내역 중 산림재해드론활용에서 산림재해드론 구입비(자산취득비 5억 2,000만원)의 대부분인 5억 1,700만원이 계약지연 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된 점(집행액 300만원), 2024년 신규사업인 고정익항공기 물탱크도입사업(80억원)[11]을

10) 미국은 이미 CCTV 설치를 통한 산불방지 ICT 플랫폼 구축 등 첨단 기술을 통해 산불대응 역량 제고를 강화하고 있음.(“미국의 산불대응 기술 현대화 정책 및 시사점”(국회입법조사처, 2023.6.) 및 “대형산불 예방·대응을 위한 첨단 ICT 기술 현황과 향후 과제”(국회입법조사처, 2022.5.))

전액 미집행하고, 타 사업으로 이·전용하여 사용한 점 등은 매년 산불이 대형화·초고속 확산되는 상황에서 산림청의 산불방지대책 마련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보여짐.

[2024년 산림재해드론 자산구입비 및 고정익항공기물탱크도입 사업 예산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내역)	2024년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이전용등)	실집행액 (B)	실집행율 (B/A)	이월액	불용액
산림재해드론활용 -자산취득비	520	-	520	3	0	517	-
고정익항공기 물탱크도입 -자산취득비	8,000	-	8,000 (△8,000)	0	0	-	-

자료: 산림청 자료를 재작성

산림청의 산불진화차량은 일반 진화차량(산림청 7대, 지자체 83대), 고성능 진화차량(3대), 다목적 진화차량(2025년 신규도입 예정) 등 세 종류로 운영되고 있는데, 일반 진화차량으로 측방진화 및 잔불정리, 고성능 및 다목적 진화차량으로 주불정리를 계획하고 있음. 다목적 진화차량의 경우 2025년 본예산으로 16대 및 추경으로 48대 등 총 64대 신규 도입 예정임.

다만, 일반 진화차량 및 고성능 진화차량은 이미 산불진화에 투입되어 활용되고 있는 반면, 다목적 진화차량은 2025년 본예산 및 추경을 통해 신규로 도입예정인 차종으로, 사전에 면밀한 다목적 진화차량 구입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11) 2024년 신규·종료된 고정익항공기 물탱크도입사업은 2024년 예산안 검토시 예결위, 상임위, 예산정책처 등에서 물탱크를 장착할 군 수송기 및 운용인력 확보를 위해 국방부·공군 등과의 협의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실제 국방부와의 협의가 진행되지 못하여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였음.

[산불진화차량 유형 및 주요 제원]

구 분	일반 산불진화차량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사 진			
크 기	전장 4,775㎜ × 전폭 1,740㎜ × 전고 1,970㎜	전장 6,920㎜ × 전폭 2,480㎜ × 전고 3,370㎜	전장 6,050㎜ × 전폭 2,195㎜ × 전고2,550㎜
연 료	경유, LPG('24년부터)	경유	경유
물탱크용량	800~1,200L	3,500L	2,000L
탑승가능인원	2인	2인	4인
방수량	o 13㎜ : 60ℓ/분 ⇒ 약 17분	o 13㎜ : 60ℓ/분 ⇒ 약 58분 o 25㎜ : 200ℓ/분 ⇒ 약 18분 o 40㎜ : 500ℓ/분 ⇒ 약 7분	o 13㎜ : 60ℓ/분 ⇒ 약 33분 o 25㎜ : 200ℓ/분 ⇒ 약 18분
호스전개	1㎞ 내외	2㎞ 내외	2㎞ 내외
기 타	o 부가장비 : PTO o 물탱크 : 동결방지	o 부가장비 : 윈치, 방수총, 분무장치, 조명, PTO 등 o 장비적재 : 커플링, 호스 1㎞ 이상, 진화장비 등 o 물탱크 : 동결방지, 지연제	o 부가장비 : 윈치, 범퍼터렛, 분무장치, 조명, 트레일러 o 물탱크 : 동결방지, 지연제

자료: 산림청

산림청의 드론 보유 현황을 보면, 총 398개로 국내생산(47개, 전체 대비 11.8%) 및 중국산(348개, 전체 대비 87.4%), 미국·스위스·프랑스(각 1대, 전체 대비 0.8%)로 구분됨. 산림헬기 도입·교체 사업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해외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경우, 드론의 구입·부품 교체 및 수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산불감시 등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 추경을 통해 신규로 도입하게 될 고성능 드론 구입 계획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고, 드론 기술의 국산화 노력 및 제품과 부품 공급선의 다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참고로 이번 추경안에 국토교통부는 '소방특화 드론 도입 및 국산화 사업' 을 신규(추경안 70억원)로 편성[12]하였는바, 이러한 국산 드론제작 기술력이 산불 진화 역량 제고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간 적극적인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가 필요함.

12) 국토교통부는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화재 발생시, 초기 진화 등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고중량(100kg 이상 탑재) 드론 개발을 위해 2025-2027년까지 총 115억원의 재정 투입을 계획하고 있음.

이번 추경으로 산림청은 다양한 최첨단 산불진화장비를 신규로 도입하고, 상당한 물량구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러한 장비들이 우리 산불진화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관련 부처 등과의 사전 협의 및 국산 기술력 투입·활용 여부 등을 충분히 사전검토하여 예산 집행계획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원계정)】

<세 출>

5. 임도시설: 충분한 사전 검토 후 임도확충 필요

가. 개 요

'임도시설' 사업은 산불 등 산림재난에의 신속한 대응 및 산림 순환경영을 위한 접근성 향상, 산림휴양·레포츠 등 다목적 활용을 위해 산림에 도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2025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1,008억 2,500만원(53.1%) 증액된 2,908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음.[13)]

[2025년도 임도시설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임도시설	182,813	190,049	290,874	100,825	53.1

산림청은 이번 추경안을 통해 산림의 경영·관리 및 보호 등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간선임도', 대형산불 발생시 신속한 접근을 위한 '산불진화임도', 진화 차량과 인력의 이동 수단인 임도의 '노폭확장', 임도건설을 위한 '타당성 고도화' 등에 사업비를 증액하였음.

13) 세부사업:임도시설 지원(1536-302)(산림산업정책국)

[2025년 임도시설사업 본예산 및 추경안 세부내역]

2025년도 본예산		2025년도 추경안(증액분)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900억 4,900만원	❍ 간선임도 : 222억 4,000만원 - 80km x 278백만원 = 222억 4,000만원 ❍산불진화임도 : 1,352억 7,000만원 - 405km x 334백만원 = 1,352억 7,000만원 ❍노폭확장 : - ❍임도 타당성평가 : 25억 7,100만원 - 485km x 5.3백만원 = 25억 7,100만원	2,908억 7,400만원	❍ 간선임도 : 500억 4,000만원 - 180km x 278백만원 = 500억 4,000만원 ❍산불진화임도 : 1,853억 7,000만원 - 555km x 334백만원 = 1,352억 7,000만원 ❍노폭확장 :216억원 - 200km x 108백만원= 216억원 ❍임도 타당성평가 : 38억 9,600만원 - 735km x 5.3백만원 = 38억 9,600만원

자료: 산림청

나. 검토의견

산불발생시 임도를 통해 산불진화 장비 및 인력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임도시설 확충 필요성은 있다고 보임. 다만, 임도확충이 오히려 산불확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 등을 통해 임도확충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임도는 경제림육성단지 등 산림경영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간선임도’,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산불진화임도’, 인공조림지 등 목재생산·운반 등 기계화작업을 위한 ‘작업임도’ 등으로 구분됨. 이번 추경은 간선임도와 산불진화임도의 추가설치, 노폭확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임도의 목적·기능별 유형]

구분	간선임도	산불진화임도	작업임도
시설 기준 (차이점)	ㅇ유효너비 : 3.0m 이상 ㅇ대피소 설치(간격 300m 이내) * 취수장, 내화수림대 없음	ㅇ유효너비 : 3.5m ~ 5m * 산불 발생 시 진화차량의 교행을 위한 노폭 ㅇ취수장 설치, 내화수림대 설치, 정차 및 작업장, 대피소 (간격 200~300m)	ㅇ유효너비 : 2.5~3.0m ㅇ목재생산·운반 등 기계화에 필요한 최소규격
대상지	ㅇ경제림육성단지 등 산림경영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한 지역	ㅇ대형 산불의 위험이 높은 지역 또는 대형산불 발생지 인접지역 ㅇ보전가치가 높은 산림 또는 민가 주변 등 주요시설물과 인접한 산림	ㅇ인공 조림지 등 산림사업이 집중되고, 기계화작업이 시급한 지역
주요 기능	ㅇ숲가꾸기, 목재생산 등 산림경영과 산림정비를 주목적으로 설치하는 임도 - 도로와 도로 및 마을 간 연결 - 산림휴양 및 산악레포츠 등 다목적으로도 이용	ㅇ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설치하는 임도 - 산불 발생 시 방화선 역할 - 진화장비 및 진화인력 투입 통로 - 평상 시 일반인 통행 제한적 허용	ㅇ일정 구역의 산림사업 실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임도 - 간선임도에서 연결
사업 단가	ㅇ278백만원/㎞	ㅇ334백만원/㎞	ㅇ176백만원/㎞

자료: 산림청

2024년까지 전국 임도는 26,785.4km가 설치되었으며, 임도밀도는 4.25m/ha임. 이는 독일 54m/ha, 오스트리아 50.5m/ha, 일본 24m/ha, 미국(국유림) 9.5m/ha에 비해 임도밀도가 낮은 수준임. 산불발생시 임도가 있는 경우, 진화장비 및 인력 등이 현장 접근에 보다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이번 추경에서 산불진화임도 등의 확충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임.[14]

14) 산림청에 따르면, 산불진화 위한 임도효과로서 진입속도(약 12배 차이), 야간진화효율(약 5배), 피해면적감소(최대 1/3) 및 산불확산 저지 등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함.

[전국 임도설치 및 임도밀도 현황]

(단위: km, m/ha)

구분	산림 면적 (천ha)	2013까지 실적	최근 10년간실적												2024까지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소계	거리	밀도
계	6,298	18,394	693	650	619	707	705	695	744.6	773.0	948.7	918.2	937.9	8,391.4	26,785.4	4.25
민유림	4,645	12,805	462	437	410	414	411	412	434.9	435.8	477.4	474.1	517.1	4,885.4	17,690.4	3.81
국유림	1,653	5,589	231	213	209	293	294	283	309.7	337.2	471.3	444.1	420.8	3,506.1	9,095.1	5.50

자료: 산림청

다만, 임도확충이 오히려 산불의 이동통로가 되어 불씨가 확산될 수 있는 우려[15] 또한 제기되는 만큼, 이번 추경안에서 증액편성된 임도 타당성평가(일반용역비 210-14)를 통해 충분한 사전 검토를 전제로 하여 임도 확충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15) '임도 없어서 산불 확산 못 막았다는 산림청‥실상은?' (MBC뉴스, 2025.4.3.) / '"임도 확충? 소방 헬기? 불난 데 부채질하는 꼴"' (노컷뉴스, 2025.4.5.) / ''예상 밖' 산불의 위험과 영향…수도권도 위협?' (jtbc, 2025.4.14.)

해양수산부

Ⅰ. 개 관

1.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추경안의 총수입은 1조 3,449억원으로, 예산은 6,559억원, 기금은 6,890억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함.[1)]

[2025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추경안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 (현계획)(A)	추경안 (변경안)(B)	증감(B-A)	(B-A)/A
예 산	2,804	6,559	6,559	-	-
기 금	6,265	6,890	6,890	-	-
합 계	9,069	13,449	13,449	-	-

주 1) 2024년도 본예산 중 기금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2) 2025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문의 : 양경화 예산결산조사관 yang717@assembly.go.kr (02-6788-5687)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5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추경안의 총지출은 6조 8,099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262억원(0.4%) 증가함. 예산은 6조 143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262억원(0.4%) 증가하였으며, 기금은 7,956억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함.

[2025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추경안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 (현계획)(A)	추경안 (변경안)(B)	증감(B-A)	(B-A)/A
예 산	58,779	59,881	60,143	262	0.4
기 금	8,100	7,956	7,956	-	-
합 계	66,879	67,837	68,099	262	0.4

주 1) 2024년도 본예산 중 기금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2) 2025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나.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세입추경안은 총 5개 회계(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구성되며, 본예산과 동일함.

[2025년도 해양수산부 세입추경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일반회계	533	4,231	4,231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18	322	322	-	-
교통시설특별회계	1,838	1,918	1,918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7	50	50	-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38	38	38	-	-
합 계	2,804	6,559	6,559	-	-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세출추경안은 총 5개 회계(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구성되며, 본예산 대비 262억원(0.4%) 증가함.

[2025년도 해양수산부 세출추경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일반회계	18,778	18,424	18,486	62	0.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6,799	16,711	16,911	200	1.2
교통시설특별회계	17,531	17,736	17,736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038	6,392	6,392	-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633	618	618	-	-
합 계	58,779	59,881	60,143	262	0.4

주) 총계 기준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2025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신규 및 증액편성된 사업은 총 2개 세부사업으로, 총 증액규모(총계 기준)는 261억 8,000만원임.[2)]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 사업은 어선원 구명조끼 보급을 위한 것으로, ‘구명조끼 보급 한시지원 사업’에 61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음.

또한,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사업은 추석 등 주요 소비시기에 수산물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사업’에 200억원을 증액하였음.

[2025년도 해양수산부 추경안 신규 및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4년도 예산	2025년도			
		본예산 (당초)(A)	추경안 (변경안)(B)	증감(B-A)	(B-A)/A
[일반회계]					
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 (구명조끼 보급 한시지원)	1,802 (-)	2,166 (-)	8,346 (6,180)	6,180 (6,180)	285.3 (순증)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136,321 (133,773)	101,748 (100,000)	121,748 (120,000)	20,000 (20,000)	19.7 (20.0)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구명조끼 보급 한시지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면밀한 집행 계획 수립 필요 등

가. 개 요

'구명조끼 보급 한시지원' 사업은 어선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연근해어선에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것으로, 2025년도 추경안은 61억 8,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3)]

[2025년도 구명조끼 보급 한시지원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	1,802	2,166	8,346	6,180	285.3
구명조끼 보급 한시지원	-	-	6,180	6,180	순증

이 사업은 어선사고 발생 시 어업인들의 생존시간 연장 등 어업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수색구조 활동에 따른 사회적·행정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연근해어선에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분담비율은 국가 40%, 지방자치단체 40%, 자부담 20%임.

[2025년 구명조끼 보급 한시지원 사업 추경안 세부내역]

ㅇ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 61억 8,000만원**
- 103,000명(전 어선원 수)×15만원(팽창식 구명조끼 단가)×보조율 40%

자료: 해양수산부

3) 세부사업: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3132-304)(수산정책실)

구명조끼는 고체식 구명조끼와 팽창식 구명조끼로 구분되는데, 고체식 구명조끼는 착용이 불편하다는 어업종사자들의 의견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을 통하여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할 예정임.

[구명조끼 구분]

고체식	팽창식	
	조끼형	벨트형
부력이 있는 고체 재질이 미리 내장되어 있어 별도의 작동 없이 상시 부력을 제공하는 구명조끼	물과 접촉하거나 수동으로 작동시키면 내부의 가스실린더가 작동하여 공기를 주입해 부력을 발생시키는 구명조끼	

자료: 해양수산부

나. 검토의견

첫째, 구명조끼 보급 한시지원 사업은 기존 보급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이 취지에 맞게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해양수산부는 구명조끼 보급 한시지원 사업을 통하여 연근해어선 전체를 대상으로 고체식 대비 착용성이 좋은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전체 연근해어선의 어선원 수인 103,000명을 사업대상으로 설정하였음.

그러나 동일 세부사업 내 어선안전장비 지원 내역사업에서 2015년부터 연근해어선에 대한 구명조끼 보급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하여 2024년까지 고체식 구명조끼 17,703벌, 팽창식(조끼형) 구명조끼 11,294벌, 팽창식(벨트형) 구명조끼 248벌을 각각 보급하였음.[4)]

4) 2025년의 경우에도 어선안전장비 지원 내역사업에서 구명조끼, 무선전화 등 어선설비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2025년 4월 기준 어선안전장비 지원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구명조끼

[2015년~2024년 어선안전장비 지원 사업을 통한 구명조끼 보급 실적]

구분	고체식		팽창식(조끼형)		팽창식(벨트형)		보급금액(원)
	척	벌	척	벌	척	벌	
부산광역시	5	196	48	378	7	28	70,030,070
인천광역시	15	74	216	1,170	2	28	141,983,900
울산광역시	7	18	405	441	-	-	54,478,400
경기도	-	-	107	1,018	-	-	113,276,020
강원특별자치도	137	275	238	1,036	12	49	165,360,500
충청남도	481	3,849	-	-	-	-	418,736,000
전북특별자치도	71	541	8	89	-	-	51,990,154
전라남도	2,285	8,604	357	1,249	-	-	248,983,804
경상북도	38	149	176	970	-	-	80,817,960
경상남도	701	3,274	1,105	4,789	19	143	411,991,008
제주특별자치도	60	723	24	154	-	-	100,434,000
합계	3,800	17,703	2,684	11,294	40	248	2,858,081,816

자료: 해양수산부

구명조끼의 내용연수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어선법」에 정확한 내용연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조달청 고시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부표와 구명정의 내용연수가 각각 5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구명조끼 제작업체에서는 팽창식 구명조끼 부품의 내구연한을 3년으로 보고 있다는 설명임.

이를 고려할 때 최소한 2023년 이후 보급되어 연근해어선에 비치된 팽창식 구명조끼는 사용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업 추진 시 2023년 이후 보급된 구명조끼 개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2023년~2024년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실적]

(단위: 벌)

구분	팽창식(조끼형)	팽창식(벨트형)	합계
2023년	927	59	986
2024년	619	189	808
합계	1,546	248	1,794

자료: 해양수산부

신청자에 대해서는 신설되는 구명조끼 보급 한시지원 사업으로 신청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라는 설명임.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기존에 보급한 팽창식 구명조끼의 경우에도 손상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시에 전 어선에 구명조끼를 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임.

또한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수(103,000명)를 기준으로 사업물량을 103,000개로 설정하였음. 그러나 구명조끼는 어선원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어선에 비치하는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어선 승선 인원을 고려하여 구명조끼 보급 물량을 설정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어선 승선 인원을 추계하는 데 시일이 다소 오래 소요될 수 있어 어선원 수를 기준으로 사업물량을 설정하였다는 설명임.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구명조끼 보급 한시지원 사업은 추진 시 기존에 보급한 팽창식 구명조끼의 개수와 어선에 비치하는 팽창식 구명조끼의 개수 등을 고려하는 등 사업이 어선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라는 취지에 맞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둘째, 어선사고가 매년 7월부터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2인 이하 승선 어선에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 2025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구명조끼 보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면밀히 하는 한편, 구명조끼 착용을 위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2018년~2024년 월별 어선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매년 7월부터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2018년~2024년 월별 어선사고 발생 현황]

(단위: 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18	147	92	132	143	135	137	144	151	218	218	162	167	1,846
2019	148	91	115	148	158	144	174	205	214	208	170	176	1,951
2020	147	116	139	123	181	167	202	202	249	220	198	156	2,100
2021	134	100	138	128	124	159	173	148	181	206	162	133	1,786
2022	110	85	138	110	127	130	146	164	175	195	201	137	1,718
2023	131	121	144	147	160	165	177	206	240	218	154	184	2,047
2024	149	122	158	159	188	164	195	201	250	218	200	171	2,175
합계	966	727	964	958	1,073	1,066	1,211	1,277	1,527	1,483	1,247	1,124	13,623

자료: 해양수산부

그리고 2025년 10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현행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외에도 승선 인원 2명 이하인 어선에서는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 착용이 의무화됨.[5)]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팽창식 구명조끼가 연근해어선에 조기에 보급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지방비 확보에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고, 사업 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서도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자부담이 일부 발생함에 따라 어업인의 신청이 저조할 가능성도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구명조끼의 경우 일반 고체식 구명조끼가 이미 대부분의 어선에 비치되고 있어 어업인의 수요가 낮아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낮은 가운데 각 지자체별 계획 대비 보급률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팽창식 구명조끼의 보급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이라는 시정요구(제도개선)가 채택된 바 있음.

한편 구명조끼는 어선에 보급된 후 실제 착용하여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나, 조업 시 불편하여 구명조끼를 실제로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구명조끼 착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2021년)]

조업 및 항해 시 착용	조업 시 착용	항해 시 착용	가끔 착용	미착용	합계
51명(23.0%)	7명(3.1%)	40명(18.0%)	**69명(31.1%)**	**55명(24.8%)**	222명(100.0%)

자료: 「구명조끼 의무착용 확대(안) 설문조사 결과」 일부 발췌, 2021. 3.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구명조끼 보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면밀히 하는 한편, 보급된 구명조끼를 어선원이 잘 착용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구명조끼 착용을 위한 홍보도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5)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19.]
제24조(구명조끼 등의 착용) ①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은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u>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u>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救命衣)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어선의 선장은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이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였는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10. 19.]
제13조(구명조끼 등의 착용 요건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태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2. <u>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u>
② 법 제24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

<세 출>

2.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객관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사업 추진 필요 등

가. 개 요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사업은 국산 수산물 소비 촉진, 소비자 물가 안정, 어업인 소득 증대 등을 위하여 국산 수산물 할인행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200억원(20.0%) 증액된 1,200억원이 편성되었음.[6)]

[2025년도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136,321	101,748	121,748	20,000	19.7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133,773	100,000	120,000	20,000	20.0

이 사업은 예산의 조기 집행으로 2025년 본예산의 조기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7)] 추석 등 수산물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에 주요 소비품목에 대한 할인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예산 대비 200억원 증액편성되었음.

증액편성된 200억원은 구체적으로 대형마트에 50억원(비중 25.0%), 지역마트 등 중소 유통경로에 25억원(비중 12.5%), 온라인 쇼핑몰에 25억원(비중 12.5%), 전통시장에 100억원(비중 50.0%)이 배정·편성되었음.

---

6) 세부사업: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3044-340)(수산정책실)

7)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사업 2025년 4월 15일 기준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본예산(A)	집행액(B)	실집행액(C)	집행률(B/A)	실집행률(C/A)
100,000	62,670	51,368	62.7	51.4

자료: 해양수산부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사업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본 예산	비중	제1회 추경 증액분	비중	제1회 추경안	비중	추가경정예산안 산출내역
대형마트	25,180	25.2	**5,000**	**25.0**	30,180	25.2	추석 수산물 할인행사 추가 소요
중소유통	12,000	12.0	**2,500**	**12.5**	14,500	12.1	
온라인 쇼핑몰	12,000	12.0	**2,500**	**12.5**	14,500	12.1	
직거래장터	2,800	2.8	-	-	2,800	2.3	-
전통시장	30,000	30.0	**10,000**	**50.0**	40,000	33.3	추석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가 소요
제로페이	8,000	8.0	-	-	8,000	6.7	-
홍보· 운영비 등	9,020	9.0	-	-	9,020	7.5	추석 수산물 할인행사 및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가 홍보·운영비
지방자치단체	1,000	1.0	-	-	1,000	0.8	-
계	100,000	100.0	**20,000**	**100.0**	120,000	100.0	

주) 중소유통은 지역마트, 생협, 스타트업 등임
자료: 해양수산부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사업의 할인 적용 방식은 할인쿠폰 발행, 구매 금액 구간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증정 등 유통경로별로 상이함.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소비처별 할인 적용 방식]

구분	적용방식	할인 한도
대형마트	· 대형마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할인쿠폰 발행 · 대형마트 회원 확인을 통해 할인쿠폰 적용 · 대형마트 자체할인 병행	구매금액 합계에서 할인율 20% 적용, 행사기간 중 1주일 동안 1인 최대 1만원 * 명절 물가 관리 등 필요 시 한시적으로 한도(1→2만원) 및 할인율(20→30%) 상향
중소유통	· 중소유통 업체별 회원 확인을 통해 할인쿠폰 적용 · 중소유통 업체별 자체할인 병행	
온라인 쇼핑몰	· 온라인쇼핑몰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할인쿠폰 발행 · 최종 결제과정에서 할인쿠폰 적용 · 온라인쇼핑몰 자체할인 병행	
전통시장	· 전통시장 참여점포 내 국산 수산물 결제 시 구매 금액 구간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증정	구매 금액에 따라 1만원권 최대 2장 지급
제로페이	· 20% 先 할인된 가격으로 수산대전 전용 상품권 발행	1인당 최대 2만원 (회차별 1인당 최대 10만원 구매가능)

자료: 해양수산부

나. 검토의견

첫째,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되고 있음에도 사업의 주요 추진 목적 중 어업인 소득 증대 기여 효과, 물가 안정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수산물 할인 지원을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 기여 효과, 물가 안정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사업 추진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응하여 국산 수산물 소비 촉진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시작된 사업으로 이후 물가 안정도 사업의 추진 목적에 포함되었음.

이 사업은 매년 사업의 효과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2025년 3월말까지 도출된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사업이 수산물의 소비 진작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8] 어업인 소득 증대와 물가 안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은 결여된 상황임.

사업이 당초 추진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하여는 수산물 할인지원이 수산물 소비 진작 뿐만 아니라 어업인 소득 증대와 물가 안정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2024년 추진한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이 2025년 4월 종료될 예정으로 이 연구용역에는 어업인 소득증대 효과가 포함될 예정이라는 설명임. 그리고 물가 안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는 최종 연구용역 결과가 도출된 후에야 확인할 수 있다고도 설명하였음.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해양수산부는 사업의 효과성 점검을 위하여 이 사업이 어업인 소득증대와 물가 안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고, 향후 사업 추진 시 전체 사업 규모 설정, 유통경로별 배분 금액 결정, 행사 시기 조절 등에 분석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8) 「2023년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효과분석」(한국지방재정학회, 2024. 4.) 일부 발췌

- 동 사업에 투입된 총사업비와 할인행사를 통해 수산물 소비 진작에 기여한 순효과를 추정, 편익·비용 비율(Benefit/Cost ratio)을 도출한 결과 비용 대비 효과가 3배 이상으로 나타남
- 기준연도 비용 대비 효과가 약 3.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u>동 사업이 수산물 소비 진작에 크게 기여</u>한 것으로 나타남

둘째, 수산물 할인지원의 정책효과가 일부 소비층에게만 집중될 수 있으므로 정책효과가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전국민 대상이나 행사마다 유통경로별 지원금액이 배분되어, 배정된 지원금액이 조기에 소진되면 후반에 사용하려던 소비자는 사용할 수 없어 사실상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 중임.

그런데 대형마트나 민간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유통경로의 경우 할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계층은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기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1인 최대 1만원(전통시장 등은 2만원) 한도로 지원하나, 한도가 개인별이 아닌 유통업체별로 나누어 적용되어 동일인이 여러 유통업체에서 중복하여 할인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 접근성이 높은 일부 소비층에게 수혜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는 전국민 대상 할인지원이라는 사업 목적에 맞게 할인지원의 수혜가 정보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국민에게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효과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셋째,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사업은 추석기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확대 실시를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증액되는 예산 중 50.0%를 전통시장에 배정하였는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관련 부정환급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 목적에 맞게 환급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증액되는 예산 200억원 중 50.0%인 100억원을 전통시장에 배정하였는데, 이는 수산물에 대한 소비가 집중되는 주요 시기인 추석에 국산 수산물 소비 촉진 등을 위하여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확대 실시하기 위한 것임.

[2025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진 계획]

(단위: 백만원)

행사명	본예산	추경안
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12,000	-
3월 봄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7,000	-
5월 가정의 달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7,000	-
추석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4,000**	**10,000**

자료: 해양수산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당일 국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로,[9] 환급대상은 국산 수산물이며 국내산 원물 70% 이상을 포함한 젓갈류 등 가공식품도 포함됨.

그런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확대되면서[10] 이와 관련한 부정환급 적발 건수도 증가하고 있음. 특히 이 사업의 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수입수산물이나 비(非)수산물 환급으로 적발되는 건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추세로, 수입수산물 환급 적발은 전체 적발 건수의 56.1%, 비(非)수산물 환급 적발은 전체의 13.1%에 달함. 그리고 허위영수증 발급 적발도 전체의 20.5%에 달하여 비중이 높음.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부정환급 적발 사례(2025년 3월말 기준)]

(단위: 건)

구분	수입 수산물 환급	비(非) 수산물 환급	허위 영수증 발급	분할결제 권고	일반 음식점 대리발급	영수증 대리발급	상인회 관리부실	합계
2023년	30	-	17	1	1	1	-	50
2024년	17	6	5	4	2	1	-	35
2025년	13	8	-	-	-	-	1	22
합계	60 (56.1%)	14 (13.1%)	22 (20.5%)	5 (4.7%)	3 (2.8%)	2 (1.9%)	1 (0.9%)	107 (100.0%)

주) 전통시장 내 점포단위로 적발건수를 취합하였으며, 하나의 점포에서 여러 유형의 적발 사례가 있을 경우 유형별로 모두 기재함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러한 부정환급은 국산 수산물 소비 촉진이라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사업의 효과를 저해할 수 있음.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부정환급 적발 시 향후 행사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상인회와 협력하여 사전 교육 및 안내를 실시하고 현장 모니터링 인력도 배치하는 등 예방조치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설명임.

그러나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특정 시기에 일시에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모든 환급신청 건에 대하여 부정환급 여부를 점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 적발된 사례 외에도 부정환급이 다수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9) <국산 수산물 구매금액 범위별 환급액>
- 구매금액 34,000원 이상 67,000원 미만: 1만원 환급
- 구매금액 67,000원 이상: 2만원 환급

10)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규모>
('21년) 34억 3,100만원 ('22년) 56억 9,800만원 ('23년) 621억 1,400만원 ('24년) 344억 5,200만원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국산 수산물 소비 촉진이라는 당초의 사업목적에 맞게 적절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전통시장 상인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면밀히 협의하여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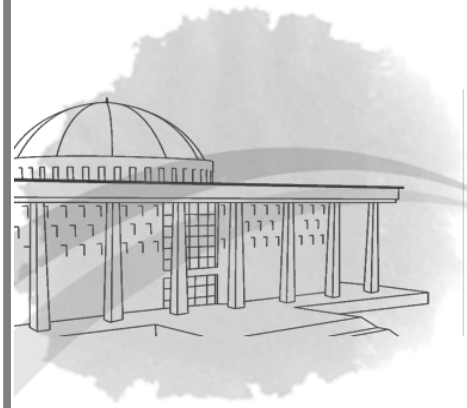

산업통상자원부

Ⅰ. 개 관

1.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추경안의 총수입은 6조 9,375억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함.[1)]

[202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추경안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 (현계획)(A)	추경안 (변경안)(B)	증감(B-A)	(B-A)/A
일반회계	1,579	1,803	1,803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08	530	530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4,398	23,917	23,917	-	-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402	635	635	-	-
전력산업기반기금	35,301	30,625	30,625	-	-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603	616	616	-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1,602	11,249	11,249	-	-
합 계	74,592	69,375	69,375	-	-

주 1) 2024년도 본예산 중 기금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2) 2025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문의 : 노장원 예산결산조사관 shwkddnjs12@assembly.go.kr (02-6788-5697)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추경안의 총지출은 12조 3,926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9,591억원(8.4%) 증가함.

[202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추경안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 (현계획)(A)	추경안 (변경안)(B)	증감(B-A)	(B-A)/A
일반회계	34,877	39,013	45,703	6,690	17.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259	11,878	12,785	907	7.6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5,611	21,664	23,658	1,994	9.2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17,346	18,228	18,228	-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59	57	57	-	-
전력산업기반기금	21,189	20,084	20,084	-	-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1,129	1,421	1,421	-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2,218	1,990	1,990	-	-
합 계	114,789	114,335	123,926	9,591	8.4

주 1) 2024년도 본예산 중 기금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2) 2025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나.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세입추경안은 총 5개 회계(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로 구성되며, 본예산 대비 2,035억원(3.4%) 증가함.

[202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세입추경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일반회계	1,579	1,888	1,888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08	530	530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62,161	60,702	62,737	2,035	3.4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21,655	22,843	22,843	-	-
합계	86,103	85,963	87,998	2,035	3.4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세출추경안은 총 5개 회계(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구성되며, 본예산 대비 9,591억원(8.4%) 증가함.

[202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세출추경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일반회계	55,455	60,843	67,533	6,690	11.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260	11,879	12,786	907	7.6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8,075	24,836	26,830	1,994	8.0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17,390	18,228	18,228	-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59	57	57	-	-
합계	113,339	115,843	125,435	9,591	8.4

주) 총계 기준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202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신규 및 증액편성된 사업은 총 13개 세부사업으로, 총 증액규모(총계 기준)는 9,590억 9,100만원임.[2)]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지원' 사업은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전력공급을 위한 서안성-신이동 송전선로(345kV) 등 5개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625억 8,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또한 '무역보험기금출연' 사업은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보험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무역보험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본예산 대비 3,00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02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추경안 신규 및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4년도 예산	2025년도			
		본예산 (당초)(A)	추경안 (변경안)(B)	증감(B-A)	(B-A)/A
[일반회계]					
무역보험기금출연	45,000	80,000	380,000	300,000	375.0
수출지원기반활용	86,394	91,364	180,171	88,807	97.2
통상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2,279	3,117	5,017	1,900	61.0
반도체아카데미구축	4,260	4,710	5,710	1,000	21.2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기반시설구축지원	-	25,213	142,221	117,008	464.1
팹리스기업첨단장비공동 이용지원	-	7,210	9,510	2,300	31.9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지원	-	-	62,580	62,580	순증
친환경차보급촉진을위한 이차보전사업	2,490	5,494	7,513	2,019	36.7
소부장공급망 안정종합지원사업	1,901	4,547	90,545	85,998	1,891.3
무역기술장벽 대응지원	7,869	6,688	14,088	7,400	110.6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	251,762	200,727	400,157	199,430	199.4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투자유치기반조성	357,914	364,246	403,796	39,550	10.9
산업단지환경조성	397,197	331,378	382,478	51,100	15.4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일반회계】

<세 출>

1.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 향후 협상 진행 상황에 따른 관세 대응 바우처 세부유형 재설계 필요 등

가. 개 요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자사의 역량과 필요에 따라 민관수출지원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를 지원하는 것으로,[3] 2025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888억 700만원(246.3%) 증액된 1,248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수출지원기반활용	86,394	91,364	180,171	88,807	97.2
통합지원사업	56,658	61,628	150,435	88,807	144.1
산업 글로벌 수출역량 강화	31,080	36,050	124,857	88,807	246.3

추경안은 ① 연초 신설한 관세 대응 패키지 서비스를 통하여 미국의 관세 부과조치로[4] 피해 우려가 있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에게 애로해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세

3) 세부사업: 수출지원기반활용(1139-307)(무역투자실)

4) 미국은 2025년 4월 3일 전 세계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10%의 기본관세와 국가별 차등화된 관세율 적용 방침을 발표하였으나, 미국동부시간 기준 4월 9일 오전 12시 1분부로,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재발표하였음. 한국은 미국과의 '5대 우선 협상국'에 포함됨에 따라 4월 18일 기준 반도체, 스마트폰 등 한국의 핵심 수출품에 대한 관세부과 계획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주요국 상호관세 요약]

연번	국가명	對美 관세율(비관세장벽 포함)	상호관세율

대응 바우처’ 846억 7,200만원과 ② 관세 전담 상담인력을 통한 창구 운영(국내) 및 해외무역관 전담직원을 통한 헬프데스크 운영(해외)을 내용으로 하는 ‘관세대응 119 통합지원센터’ 운영비 41억 3,500만원으로 구성됨.

[관세대응 바우처 및 관세대응 119 통합지원센터 운영 세부내역]

① 관세대응 바우처(846억 7,200만원)

□ (지원대상) 美 관세조치로 피해 우려가 있는 중소·중견 수출기업

□ (사업내용) 관세 등 무역장벽 인해 애로 겪는 중소·중견대상 수출바우처 발급, 참여기업은 애로해소 서비스 선택·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국내외 컨설팅사, 물류법인 등 연계 ①피해분석, ②피해대응, ③생산거점 이전, ④대체시장 발굴 지원 등 관세피해 대응 특화 지원
- 동 사업 참여기업은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메뉴에 바우처 총액의 50% 이상 사용 의무
- 기존 수출바우처사업 대비 발급한도(1억원) 대비 20% 우대(최대 1.2억원)

② 관세대응 119 통합지원센터 운영(41억 3,500만원)

□ (국내) 美 통상정책 실시간 대응 창구 운영(28억 8,500만원)

ㅇ 전문성 갖춘 관세 전담 상담인력(관세청 업무 또는 관세사 경력보유) 확충

ㅇ 외부 법무·관세법인 자문계약을 통한 심층 상담

ㅇ 상담내용 연계지원 강화 위해 상담DB 관리시스템 고도화

ㅇ 설명회 개최 및 일반국민 대상 홍보

□ (해외) 미국 등 해외무역관에 거점설치하여 현지조사, 아웃리치, 진출기업 애로상담, 대체시장발굴 및 생산기지 이전 등 지원(12억 5,000만원)

ㅇ 전담직원 배치, 관세 전문 현지 자문사 계약 통한 심층상담, 대체시장 발굴지원, 주요국 통상정책·대응 정보 수집 및 전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연번	국가명	對美 관세율(비관세장벽 포함)	상호관세율
1	중국	67%	34%
2	EU	39%	20%
3	베트남	90%	46%
4	대만	64%	32%
5	일본	46%	24%
6	인도	52%	26%
7	한국	50%	25%
8	태국	72%	36%
9	스위스	61%	31%
10	인도네시아	64%	32%

주) 미국동부시간 기준 4월 9일 오전 12시 1분부로,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하였으나, 다만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에 근거한 국가안보 목적의 관세 부과 대상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전체’,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및 그 파생품’에 대하여는 2025년 4월 3일부터 현재까지 25%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음

자료: 미(美) 백악관 행정명령 주요내용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는 기업은 바우처를 발급받은 후 수출바우처 14대 메뉴판에서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한 이후, KOTRA를 통해서 정산하는 방식임.

[수출바우처 서비스 이용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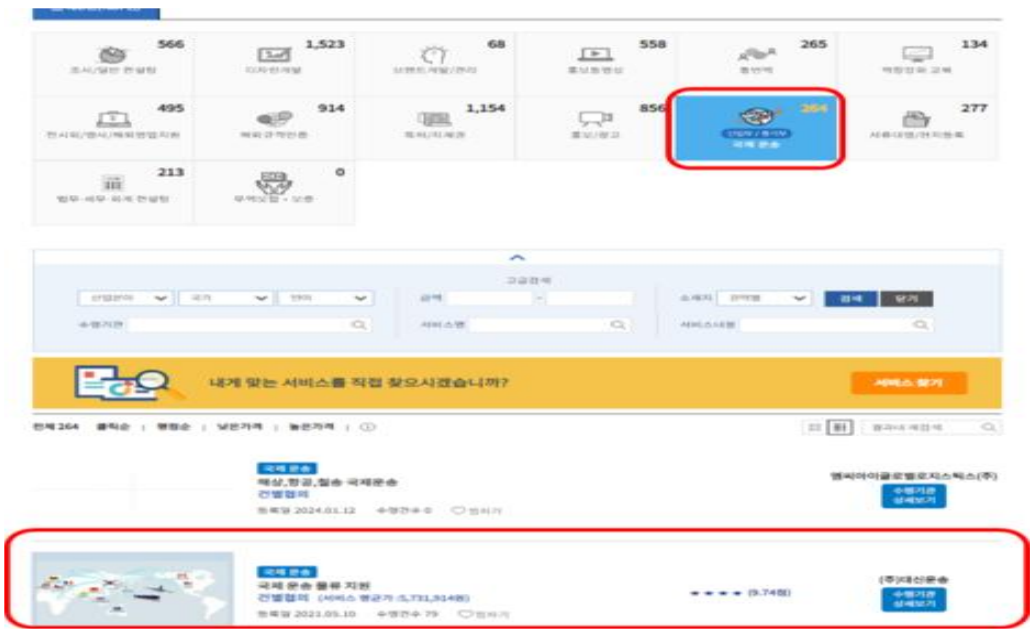

◇ 수출바우처 14대 서비스 메뉴

① 조사·일반 컨설팅, ② 브랜드 개발·관리, ③통번역, ④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⑤역량강화교육, ⑥법무·세무·회계컨설팅, ⑦특허·지재권·시험, ⑧디자인 개발, ⑨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험, ⑩홍보동영상, ⑪홍보·광고, ⑫해외규격인증, ⑬국제운송, ⑭무역보험・보증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서비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해외 현지 관세전문가와 애로기업을 매칭하여 전문적인 컨설팅을 지원하고 공장이전 등 해외거점 진출 지원을 위해 법률・세무 지원을 병행하며, 신규루트 발굴을 통한 물류비 지원, 대체시장 조사 컨설팅도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연번	구분	서비스 명칭(안)	주요내용
1	피해분석	미/캐/멕시코 관세 전문 컨설팅	해외 현지 관세전문가(K-수출파트너)와 애로기업 매칭 (관세법인, 물류회사)
2	피해대응	해외거점 설립 법률, 세무지원	공장이전 등 해외거점 진출 종합지원 (로펌, 회계법인, 부동산, Site Selector 등)
3	피해대응	물류애로 종합지원	신규루트 발굴 등 물류비 절감 컨설팅 및 가격경쟁력 확보 위한 물류비 지원
4	대체시장	무역장벽 대응형 대체시장 발굴지원	대체시장(유럽, 글로벌사우스 등) 진출 위한 조사 컨설팅, 특허, 인증(CBAM등) 취득 지원, 전문 전시회·학회 참가 등 해외마케팅 지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관세대응 119 통합지원센터' 는 국내와 해외를 구분하여 운영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문성을 갖춘 관세상담 인력 확충, 상담 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법무법인과의 컨설팅을 위한 국내 관세대응 통합지원센터 예산 28억 8,500만원과 해외 전담직원 배치, 관세 전문 현지 자문사 계약을 통한 심층상담 및 대체시장 발굴을 위한 해외 관세대응 통합지원센터 예산 12억 5,000만원이 편성됨.

해외 통합지원센터의 경우, 2025년 4월 기준 85개국 131개의 해외 무역관 중 뉴욕 등 20개 해외 무역관에 설치 및 운영될 예정임.

[해외 무역관 현황]

(단위: 개)

지역 본부	중국	유럽	북미	중동	아프리카	일본	동남아	서남아	중남미	CIS	계
무역관	21	24	10	15	9	4	15	9	13	11	131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나. 검토의견

첫째,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에 수행되던 14개 유형의 수출바우처 제도의 수요 편중현상을 점검하고, 미국과의 향후 협상 진행상황에 따라 관세의 적용대상 품목과 시기가 결정되면 그에 대한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유형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수출바우처의 2023~2024년 서비스 유형별 사용금액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시회 및 행사, 홍보, 디자인개발 등의 비용에 대한 바우처 지원이 주된 비중을 차지한 반면, 조사/일반 컨설팅, 서류대행·현지등록,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브랜드 개발·관리, 무역보험보증 등의 서비스 이용 비중은 5% 미만으로 다소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2023~2024년 수출바우처 서비스 유형별 사용금액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연도	대분류변환	서비스 건수	건수 비중	바우처 금액	바우처 금액 비중	바우처 금액 중 국고금	국고 비중
2023	**조사/일반 컨설팅**	**124**	**4.2%**	**942**	**4.8%**	**659**	**4.8%**
	디자인개발	319	10.7%	2,652	13.4%	1,849	13.5%
	브랜드개발/관리	18	0.6%	182	0.9%	127	0.9%
	홍보동영상	114	3.8%	1,918	9.7%	1,340	9.8%
	통번역	165	5.5%	351	1.8%	238	1.7%
	역량강화 교육	74	2.5%	152	0.8%	107	0.8%
	전시회/행사/해외 영업지원	703	23.6%	6,980	35.3%	4,812	35.2%
	해외규격인증	281	9.4%	1,512	7.6%	1,026	7.5%
	특허/지재권	306	10.3%	1,348	6.8%	934	6.8%
	홍보/광고	291	9.8%	2,729	13.8%	1,899	13.9%
	국제 운송	548	18.4%	829	4.2%	567	4.1%
	서류대행/현지등록	19	0.6%	40	0.2%	27	0.2%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16**	**0.5%**	**134**	**0.7%**	**93**	**0.7%**
	무역보험보증	0	0.0%	0	0.0%	0	0.0%
	총합계	2,978	100.0%	19,769	100.0%	13,678	100.0%
2024	**조사/일반 컨설팅**	**116**	**2.3%**	**1,577**	**4.3%**	**1,104**	**4.3%**
	디자인개발	486	9.7%	3,723	10.1%	2,592	10.2%
	브랜드개발/관리	29	0.6%	480	1.3%	336	1.3%
	홍보동영상	180	3.6%	3,414	9.3%	2,386	9.4%
	통번역	172	3.4%	364	1.0%	242	0.9%

(단위: 건, 백만원)

연도	대분류변환	서비스 건수	건수 비중	바우처 금액	바우처 금액 비중	바우처 금액 중 국고금	국고 비중
	역량강화 교육	54	1.1%	121	0.3%	85	0.3%
	전시회/행사/해외 영업지원	1,206	24.1%	13,912	37.9%	9,623	37.8%
	해외규격인증	526	10.5%	2,198	6.0%	1,514	5.9%
	특허/지재권	539	10.7%	2,800	7.6%	1,947	7.6%
	홍보/광고	438	8.7%	3,694	10.1%	2,573	10.1%
	국제 운송	1,158	23.1%	3,773	10.3%	2,602	10.2%
	서류대행/현지등록	56	1.1%	187	0.5%	131	0.5%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39**	**0.8%**	**460**	**1.3%**	**321**	**1.3%**
	무역보험보증	15	0.3%	31	0.1%	22	0.1%
	총합계	7,977	100.0%	36,737	100.0%	39,134	10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그런데 추경안으로 계획된 관세대응 바우처의 세부계획을 살펴보면, 피해분석·피해대응 컨설팅, 현지 세무·회계 지원, 생산거점 후보지 발굴 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연례적으로 이용이 저조하였던 조사/일반 컨설팅, 세무·회계 컨설팅 유형의 바우처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됨.

특히, 이번 추경을 통해 편성되는 '관세대응 바우처'는 지급받은 총 바우처 총액의 50% 이상을 관세 대응 패키지 용도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연례적으로 이용이 저조하였던 컨설팅 및 세무·회계지원 유형으로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유형을 설정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견·중소기업들의 바우처 수요를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5)]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관세대응 바우처'를 위해 846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상술하였듯이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로 인해 철강·알루미늄·자동차를 제외한 한국의 핵심 수출품인 반도체, 스마트폰 등에 대한 관세부과 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임.

이로 인하여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은 무역장벽 심화로 인해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피해 분석, 대응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추진에 있어 실질적인 수요에 대한 사전 조사나 정보가 부족한 시점에서 편성된 것이라 볼 수 있음.

5)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수출바우처에서의 사용률은 미국 관세정책이 가시화 되기 전의 통계로, 최근 경제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기존 서비스 사용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입장임.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과의 향후 협상 진행상황에 따라 적용대상 품목과 시기가 결정되면 그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바우처 유형을 그에 상응하도록 재설계함으로써, 기존에 수행되던 14개 유형의 바우처와 구별되는 지원을 통해 미국발 관세 부과에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6)]

둘째, 산업통상자원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관세119 해외지원센터 사업으로 해외무역관을 거점으로 한 진출기업의 애로상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해외무역관 결원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관세119 해외지원센터 사업은 미국 등 해외무역관에 거점을 설치하여 현지조사, 진출기업 애로상담, 대체시장발굴 및 생산기지 이전 등을 지원하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는 총 20개 무역관에 해외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며,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관세 전문 현지 자문사와의 계약을 통한 심층상담 및 대체시장 발굴 지원 등을 목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관세119 해외지원센터(헬프데스크) 운영 무역관(안)]

(단위: 개)

<table>
<tr><th>연번</th><th>국가</th><th colspan="2">무역관</th><th>진출기업</th><th>주요업종</th></tr>
<tr><td>1</td><td rowspan="2">베트남</td><td colspan="2">호치민</td><td rowspan="2">2,602</td><td rowspan="2">반도체, 디스플레이</td></tr>
<tr><td>2</td><td colspan="2">하노이</td></tr>
<tr><td>3</td><td>말레이시아</td><td colspan="2">쿠알라룸푸르</td><td>181</td><td>반도체, 기계</td></tr>
<tr><td>4</td><td>태국</td><td colspan="2">방콕</td><td>348</td><td>반도체, 열연강판, 합성수지</td></tr>
<tr><td>5</td><td>인도네시아</td><td colspan="2">자카르타</td><td>272</td><td>합성수지, 반도체, 화학</td></tr>
<tr><td>6</td><td rowspan="7">미국</td><td rowspan="7">북미 지역 본부 (워싱턴 D.C)</td><td>뉴욕</td><td rowspan="7">933</td><td>바이오</td></tr>
<tr><td>7</td><td>달라스</td><td>항공방산</td></tr>
<tr><td>8</td><td>실리콘밸리</td><td>반도체</td></tr>
<tr><td>9</td><td>디트로이트</td><td>자동차</td></tr>
<tr><td>10</td><td>시카고</td><td>기계</td></tr>
<tr><td>11</td><td>로스앤젤레스</td><td>소비재</td></tr>
<tr><td>12</td><td>애틀란타</td><td>이차전지</td></tr>
</table>

6)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관세대응 서비스에 대한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수출바우처 지원요건을 탄력적으로 설계하여 변화하는 기업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13	캐나다	밴쿠버	132	자동차, 자동차부품
14		토론토		
15	인도	뉴델리	305	반도체,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16		첸나이		
17	중국	칭다오	2,397	반도체, 통신기기 부품, 합성수지
18		베이징		
19		상하이		
20	멕시코	멕시코시티	92	자동차부품, 평판디스플레이
합계			7,26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그러나 이들 무역관 중 미국 달라스를 비롯한 8개 무역관은 2023년 말 기준 정원 대비 현원의 결원이 발생하였고,[7] 2025년 현재에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국내·외 인력을 균형 있게 운용하고 해외무역관 결원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임.

[2023년 말 기준 해외무역관 파견인력 정원 대비 현원 현황]

(단위: 명)

명칭	소재지 (국가, 도시)	설치연도	파견 인력현황 (2023년 말 기준)	
			정원	현원
달라스	미국 달라스	1969년	4	3
멕시코시티	멕시코 멕시코시티	1973년	10	8
밴쿠버	캐나다 밴쿠버	1969년	3	2
상하이	중국 상하이	1995년	7	6
애틀랜타	미국 애틀랜타	2022년	3	2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1964년	10	9
하노이	베트남 하노이	1966년	11	9
호치민	베트남 호치민	1992년	8	7

주) 2025년 4월 기준 달라스, 상하이는 결원이 해소되었음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해외무역관 결원이 지속될 경우 현지에서 수출기업 지원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관세119 해외지원센터 사업으로 해외무역관을 거점으로 한 진출기업의 애로상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해외무역관 결원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7) 2022년 말 기준 베이징 2명, 멕시코시티 3명, 뉴델리 1명, 하노이 2명, 자카르타 2명의 결원이 발생하였음.

2.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지원: 국비 지원비율 상향에 따른 증액 예산의 이월방지 노력 필요

가. 개 요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지원' 사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단 내 전력, 도로, 폐수 등 핵심 산단 기반시설 구축에 대해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8] 2025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1,170억 800만원(464.1%) 증액된 1,422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지원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지원	-	25,213	142,221	117,008	464.1

추경안 산출내역을 보면, 2025년 본예산 당시 편성되었던 포항, 청주, 새만금, 울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비율 상향에[9] 따른 증액분

8) 세부사업: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지원(3171-364)(산업정책실)

9) <첨단특화단지 인프라 국비지원 비율>

구분	단지별 투자 규모			비수도권	수도권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上	100조원 이상 **용인·평택**	30조원 이상	10조원 이상 **포항, 울산**	30%	25%
中	10~100조원	3~30조원 **천안·아산**	1~10조원 **청주, 새만금, (울산)**	25%	20%
下	10조원 미만 **구미**	3조원 미만	1조원 미만	20%	15%

⇩

구분	단지별 투자 규모			비수도권	수도권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上	100조원 이상 **용인·평택**	30조원 이상	10조원 이상 **포항, 울산**	50%	40%
下	100조원 미만 **구미**	30조원 미만 **천안·아산**	10조원 미만 **청주, 새만금**	40%	3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170억 800만원과 신규로 추가된 용인, 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공사비 998억 6,000만원 및 사업관리비 1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음.[10)]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지원 사업 세부내역]

2025년도 본예산		2025년도 추경안(증액분)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52억 1,300만원	① 포항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71억 3,000만원) · 공사비 등 : 240억원×**30%** - 7,000만원(기평비) ② 청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35억 9,300만원) · 공사비 등 : 146억 5,000만원×**25%** - 7,000만원(기평비) ③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107억 8,000만원) · 공사비 등 : 434억원×**25%** - 7,000만원(기평비) ④ 울산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34억 3,000만원) · 공사비 등 : 140억원×**25%** - 7,000만원(기평비) ⑤ 사업관리 등 : 7,000만원×**4개사업**(기평비)	1,422억 2,100만원	① 포항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119억 3,000만원) · 공사비 등 : 240억원×**50%** - 7,000만원(기평비) ② 청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57억 9,100만원) · 공사비 등 : 146억 5,000만원×**40%** - 7,000만원(기평비) ③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172억 9,000만원) · 공사비 등 : 434억원×**40%** - 7,000만원(기평비) ④ 울산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69억 3,000만원) · 공사비 등 : 140억원×**50%** - 7,000만원(기평비) **⑤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499억 3,000만원)** **· 공사비 등 : 500억원 -7,000만원(기평비)** **⑥ 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499억 3,000만원)** **· 공사비 등 : 500억원 - 7,000만원(기평비)** ⑦ 사업관리 등 : 7,000만원×**6개사업**(기평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10) 이 사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출연사업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이 사업을 위한 관리비 4억 2,000만원을 제외한 1,418억 100만원은 포항, 청주 등 개별 지방자치단체로 2차 교부함.

포항, 청주, 새만금, 울산 특화단지 지원사업은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를 합한 총사업비가 각각 257억 500만원, 146억 5,000만원, 440억 9,200만원, 140억원이며, 2025년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인 포항을 제외하고, 청주, 새만금, 울산 특화단지는 2026~2028년까지 구축이 진행될 예정임.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별 총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table>
<tr><th>구 분</th><th>사업내용</th><th>총사업비 연도별, 비목별 산출 세부내역</th></tr>
<tr><td>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td><td>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내 염 처리수
지하관로(11km) 설치</td><td>※ 사업비는 최초 계획 당시 총사업비(240억원)으로 적용하였으며 2025년도 공사시행 및 전액 집행예정
<table>
<tr><th>사업내용</th><th>산출근거 등</th><th>사업비</th></tr>
<tr><td>토목공사</td><td rowspan="3">전체구간(D500mm, L : 10.58km)
* 도로(L:5.024km), 연안L:3.390km),
추진(L:0.106km), 항만L:2.058km)</td><td>23,256</td></tr>
<tr><td>폐기물처리</td><td>475</td></tr>
<tr><td>GIS 구축</td><td>269</td></tr>
<tr><td>감리비</td><td>건설사업관리용역</td><td>1,705</td></tr>
<tr><td colspan="2">합계</td><td>25,705</td></tr>
</table></td></tr>
<tr><td>청주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td><td>청주 오창2산단 내
전력공급시설(4km)
설치</td><td>※ 2024년 10월 공사 착공하여 3억 3,000만원은 지자체 비용으로 조달되었으며 2025년부터 40% 국비지원
<table>
<tr><th>구 분</th><th>계</th><th>2024년</th><th>2025년</th><th>2026년</th></tr>
<tr><td>합 계</td><td>14,650</td><td>330</td><td>10,050</td><td>4,270</td></tr>
<tr><td>공사비</td><td>14,000</td><td></td><td>9,800</td><td>4,200</td></tr>
<tr><td>설계비</td><td>330</td><td>330</td><td>-</td><td>-</td></tr>
<tr><td>감리비</td><td>320</td><td></td><td>250</td><td>70</td></tr>
</table></td></tr>
<tr><td>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td><td>새만금국가산단 내
전력공급시설(11.2km)
설치</td><td>※ 2024년 공사 착공하여 16억원은 지자체 비용으로 조달되었으며 2025년부터 40% 국비지원
※ 국비지원금은 최초 계획 당시 총사업비(434억원)으로 적용
<table>
<tr><th>구 분</th><th>계</th><th>2024년</th><th>2025년</th><th>2026년</th></tr>
<tr><td>합 계</td><td>44,092</td><td>1,600</td><td>14,551</td><td>27,941</td></tr>
<tr><td>공사비</td><td>43,751</td><td>1,600</td><td>14,390</td><td>27,761</td></tr>
<tr><td>설계비</td><td>162</td><td>-</td><td>71</td><td>91</td></tr>
<tr><td>감리비</td><td>179</td><td>-</td><td>90</td><td>89</td></tr>
</table></td></tr>
<tr><td>울산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td><td>울산미포국가산단
진입도로시설(1.9km)
설치</td><td>※ 2028년까지 사업진행 예정
<table>
<tr><th>구 분</th><th>계</th><th>2025년</th><th>2026년</th><th>2027년</th><th>2028년</th></tr>
<tr><td>합 계</td><td>14,000</td><td>4,500</td><td>3,500</td><td>3,500</td><td>2,500</td></tr>
<tr><td>공사비</td><td>11,327</td><td>3,889</td><td>2,584</td><td>2,584</td><td>2,270</td></tr>
<tr><td>감리비</td><td>2,673</td><td>611</td><td>916</td><td>916</td><td>230</td></tr>
</table></td></tr>
</tabl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편, 이번 추경으로 신규 편성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 폐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은 39만톤/일의 처리용량을 가진 자체 폐수처리장을 구축하는 것으로, 운영사인 SK Hynix는 2024년 11월 착공하였으며 2035년 3월까지 총사업비는 시설공사비 3조 7,593억원, 설계비 1,337억원, 감리비 517억원을 합한 3조 9,466억원이 투입될 예정임.

총 사업비 중 500억원이 국비로 지원될 예정이고 그 금액이 이번 추경안에 전액 반영되었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 폐수처리시설 확충 사업 개요]

ㅇ 폐수처리시설 개요

부지면적(㎡)	처리용량(톤/일)	처리공법	사업비	시행자(운영자)
28,500	388,020	화학적응집 外	39,446억원	SK Hynix

ㅇ 총사업비 : 3조 9,466억원(국비 500억원 정액지원)

(단위: 억원)

구 분	산출근거(요율 등)	소요금액
시설공사비	기본설계 기준	37,593
설계비	기본설계 요율 1.0% 실시설계 요율 2.56%	1,337
감리비	요율 1.37%	517
합 계		39,446

ㅇ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억원)

구 분	총 사업비	기투자	연차별						
			계	2025	2026	2027	2028	229	2030~
합 계	39,446	122	39,334	2,253	3,638	1,860	3,991	7,444	20,148
공사비	37,593	-	37,593	2,099	3,470	1,798	3,766	6,969	19,491
설계비	1,337	122	1,225	126	120	38	173	379	389
감리비	517	-	516	28	48	24	52	96	268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 변전소 신설 사업은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단 2단지로 전력공급을 위한 345kV[11] 변전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운영사업자인 삼성전자는 2024년 1월에 착공하였으며 2026년까지 총사업비 2,206억원을 통해 0.5GW의[12] 추가 전력공급을 위한 변전소를 설치할 예정임.

총 사업비 중 500억원이 국비로 지원될 예정이고 그 금액이 이번 추경안에 전액 반영되었음.

11) kV는 킬로볼트(kilovolt)의 약자로 전기의 압력을 나타내는 단위이고, 전압이 높을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먼 거리로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데 345kV 발전소는 대형 산업단지로 전력을 보내기 충분한 초고압 송전임.

12) GW(기가와트, Gigawatt)는 전력의 단위이며 에너지 산업이나 발전소의 전력용량을 의미함.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단 2단지 변전소 설치 사업 개요]

ㅇ 변전소 설치 개요

위 치			관로연장(km)	시설면적(㎡)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삼성평택변전소	삼성P5변전소	고덕일반산단	-	대지면적 12,065㎡ 건축 연면적 14,975㎡

ㅇ 기 확보된 시설 용량 : 2.2GW
ㅇ 추가 필요 용량 : 0.5GW(금회 확보량)

전력수요량	기확보량	추가필요용량
2.7	2.2	0.5

ㅇ 세부 산출 내역 : 총 사업비 2,206억원(국비 500억원 정액지원)

(단위: 억원)

구 분	산출근거	소요금액
공사비	기본설계 기준	1,876
자재비	기본설계 기준	267
설계비	계약금액	50
감리비	인력투입기준	13
합 계		2,206

ㅇ 연차별 소요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연차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220,600	36,700	126,800	57,100
공사비(자재비)	214,300	33,100	124,100	57,100
설계비	5,000	3,600	1,400	-
감리비	1,300	-	1,300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나. 검토의견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비지원 비율 상향조정에 따라 증액된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임.

이 사업은 2025년 본예산 편성 당시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는데 2025년 단년도 사업으로 진행되는 포항 지하관로 설치사업을 제외한, 청주, 새만금, 울산, 용인, 평택 특화단지 지원사업은 2026년 이후에도 연차별로 예산이 투입될 예정임.

국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매칭금으로 충당될 예정이고 이를 합한 총사업비가 2026~2035년까지 연차별 소요계획에 따라 집행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일부 내역사업의 경우, 2025년 집행예정금액을 초과하는 국비가 추경안으로 편성되었음.

새만금 전력공급시설 설치사업은 추경안을 통해 65억 1,000만원이 증액되어 172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연차별 소요계획에 따른 2025년 집행예정금액인 145억 5,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임.

또한 울산미포국가산단 진입도로시설 설치사업은 추경안을 통해 35억원이 증액되어 69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또한 2025년 집행예정금액인 45억원을 초과함.

[2025년 추경안과 2025년 집행예정금액의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도 본예산	2025년도 추경안(A)	2025년 집행예정금액(B)	초과 편성액 (A-B)
포항 블루밸리 염처리수 지하관로(11km) 설치	7,130	11,930	25,705	-
청주 전력공급시설(4km) 설치	3,593	5,791	10,050	-
새만금 전력공급시설(11.2km) 설치	10,780	17,290	14,551	2,739
울산미포국가산단 진입도로시설(1.9km) 설치	3,430	6,930	4,500	2,430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 폐수처리시설	-	49,930	225,300	-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 변전소 신설	-	49,930	126,800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제출자료를 재구성

이는 연차별 소요예정금액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향 조정된 국비 지원비율을 단순히 총사업비에 곱하여 추경안을 증액 편성함에 따른 것임.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추경안 증액에 따라 연차별 소요금액을 조정할 것이라는 입장인 바, 향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상향된 국비지원 비율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증액된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임.

3.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지원: 기평비 규모조정 및 주민 갈등 등 외부변수에 대한 면밀한 사전조율 필요

가. 개 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지원' 사업은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전력공급을 위한 서안성-신이동 송전선로(345kV) 등 송전선로의 지중(地中)화[13]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14] 2025년도 추경안은 625억 8,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2025년도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지원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지원	-	-	62,580	62,580	순증

추경안은 ① 신안성 변전소에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일반산단 내 동용인변전소까지 345kV 송전선로 6.6㎞ 전체구간 지중화를 위한 공사비의 70%, ② 서안성변전소에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국가산단 내 신이동변전소까지 345kV 송전선로 8.4㎞ 전체구간 지중화를 위한 설계비의 70%, ③ 신평택변전소에서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일반산단 인근 고덕#3변전소까지 345kV 송전선로 13.8㎞ 전체구간 지중화를 위한 설계비 및 공사비의 70% 및 ④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평비 등 총 625억 8,000만원임,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지원 사업 세부내역]

① 신안성-동용인 송전선로 지중화 지원 · 공사비 등×70% - 70백만원(기평비) ② 서안성-신이동 송전선로 지중화 지원 · 설계비×70% ③ 신평택-고덕#3변전소 송전선로 지중화 지원 · 공사비 등×70% - 70백만원(기평비)

13) 전선 지중화란 송배전선을 배관, 공동구 등을 이용하여 땅 속에 설치하는 것을 의미함. 주로 도시 미관과 안전 등에 그 목적이 있고 2025년 현재 한국의 평균 송배전선로 지중화율은 약 20%에 불과함.

14) 세부사업: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지원(3171-482)(산업정책실)

④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기획평가 관리(140백만원) · 사업관리 등 : 70백만원×2개사업(기평비)

주) 개별 내역사업별 공사비, 설계비 등 세부내역은 대외비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이 사업은 용인 및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을 운영하는데 10GW[15] 이상의 전력이 필요하나, 이미 주변 산업단지 및 주거지역에 전력을 공급 중인 기존 전력망만으로는 대규모 클러스터 산단의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신안성, 서안성 및 신평택 변전소로부터 345kV의[16] 송전선로를 지중화하여 필요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려는 것임.

한편 이 사업은 2025년부터 2038년까지 약 1조 5,363억원의 총사업비로 진행되는 출연사업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전담하여 관리하며, 용인과 평택 각각에 대한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위해 2025년에 7,000만원씩 총 1억 4,000만원의 기평비(관리비)가 편성되어 있음.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지원 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 2025~038년 ㅇ 총사업비 : 약 1조 5,363억원 ㅇ 사업규모 ① 신평택-고덕#3(13.8km 전체구간), ② 서안성-신이동(8.4km, 전체구간) ③ 신안성-신기흥 2Π(0.3km, 전체구간), ④ 신안성-동용인(6.6km, 전체구간) ⑤ 신원주-신원삼(53.3km, 일부 지중화) ㅇ 사업수행방법 : 출연사업 ㅇ 전담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15) GW(기가와트, Gigawatt)는 전력의 단위이며 에너지 산업이나 발전소의 전력용량을 의미함. 참고로, 1GW는 대형 원자력 발전소 1기의 발전량과 유사한 수준으로 10GW는 10대의 대형 원자력 발전소가 생산하는 전력량 수준임을 의미함.

16) kV는 킬로볼트(kilovolt)의 약자로 전기의 압력을 나타내는 단위이고, 전압이 높을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먼 거리로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데 345kV 발전소는 대형 산업단지로 전력을 보내기 충분한 초고압 송전임.

나. 검토의견

첫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사업과 '용인·평택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사업의 전담기관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공통되고 각 사업규모가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기평비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2025년 추경안으로 편성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 폐수처리시설' 및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 변전소' 설치 사업(이하 '용인·평택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과 동시에 이번 추경안으로 신규 반영된 것임.[17]

'용인·평택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사업은 이 사업과 동일하게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전담하여 수행하고, 2025년도 추경안으로 1,00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인 기평비 1억 4,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2025년도 용인·평택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사업 추경안 세부내역]

①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499억 3,000만원) · 공사비 등 : 500억원 - **7,000만원(기평비)** ② 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499억 3,000만원) · 공사비 등 : 500억원 - **7,000만원(기평비)** **③ 기평비 : 1억 4,000만원(7,000만원×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런데 용인과 평택, 그리고 기반시설 구축과 송전선로 지중화 구축에 소요되는 기평비를 해당 사업의 규모를[18]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7,000만원씩 총 2억 8,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다소 타당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기평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구분	용인	평택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지원(3171-364)	폐수처리시설(용인) 변전소(평택) 구축	70	70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지원(3171-482)	송전선로 지중화 구축	70	7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17) 세부사업-내역사업: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지원(3171-364)(산업정책실)-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50,000백만원) 및 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50,000백만원)

18)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1조 5,363억원임에 반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 폐수처리시설은 총사업비가 3조 9,466억원이고,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 변전소는 2,206억원임.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통 전담기관이고 사업규모가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기평비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이 사업은 송전선로를 지중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나, 장기간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일부 송전탑 건설구간도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주민과의 갈등 등 외부 변수에 대한 면밀한 사전조율을 통해 보다 철저히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을 통한 초고압 송전선로의 사업규모를 살펴보면 총 82.4km이고, 그 중 29.1km는 전체구간이 지중화 방식이나 그 외 53.3km 구간 중 일부는 지상 송전탑 건설을 통한 송전선로 구축이 계획되어 있음.

[이 사업의 구간별 송전선로 지중화 여부]

구분	송전선로 길이	지중화 여부
신평택-고덕#3	13.8km	전체구간 지중화
서안성-신이동	8.4km	전체구간 지중화
신안성-신기흥	0.3km	전체구간 지중화
신안성-동용인	6.6km	전체구간 지중화
신원주-신원삼	53.3km	일부구간 지중화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이에 따라 송전선로 구축으로 공사기간 중 소음, 진동 및 도로파손, 지중화된 송전선로에 대한 전자파 발생 우려 및 불안감, 송전선로 및 송전탑 건설로 인한 부동산 가치 하락에 따른 재산권 분쟁 및 인근 주민에 대한 보상 여부로 인해 주민들과의 갈등이 고조될 우려가 있음.

일례로 경상남도 밀양시 송전탑 사건은 2001년 한국전력공사가 해당 지역에 765kV 고압 송전선 및 송전탑을 설치할 것을 발표한 이후 밀양 주민들과의 약 10년에 걸친 갈등으로 2014년에 비로소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이는 송전선로 등 인프라 건설 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임.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사업이 대부분 지중화 방식으로 진행되어 송전탑 건설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장기간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일부 송전탑 건설구간도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주민과의 갈등 등 외부 변수에 대한 사전 관리에 유념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소부장 공급망 안정종합지원: 보조금이 중복지원되지 않도록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가. 개 요

‘소부장 공급망 안정종합지원’ 사업은 상시화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 첨단전략산업 소부장 투자 활성화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19] 2025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859억 9,800만원(1,891.0%) 증액된 905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소부장 공급망 안정종합지원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소부장 공급망 안정종합지원	1,901	4,547	90,545	85,998	1,891.0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투자지원	-	-	70,000	70,000	순증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생산 촉진지원	-	-	14,558	14,558	순증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투자지원’ 내역사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중 공급망 안정품목 및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의 신규 투자에 입지·설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5년 투자 예상액 4,000억원에 기업별 보조율과 국비 보조율을 차등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추경안에는 7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투자지원 내역사업 세부내역]

700억원 = 2025년 투자(4,000억원) × 기업별보조율(30~50%) × 국비보조율(60·4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이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이고, 수도권은 국비 40%, 비수도권은 국비 60%가 지원되는데 지원대상 기업의 유형에 따라 기업별 보조율도 차등적용되는 민간자본보조사업임.

19) 세부사업: 소부장 공급망 안정종합지원(3574-306)(산업정책실)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보조금 보조비율]

구 분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국비 40%)	30%	40%
비수도권(국비 60%)	40%	50%

주) 건당 150억원, 기업당 200억원의 한도가 설정되어 있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참고로, 공급망 안정품목은 특정국에 대한 수입의존도, 국내 경제영향을 고려하여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2에 따라,[20] 전략물자는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라 선정됨.[21]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생산 촉진지원' 내역사업은 국내 생산시설은 있으나 중국 등 해외 대비 경제성이 열위하여 생산 유지가 어려운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5년도 추경안에는 145억 5,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보조사업자로서 가동률 50%의 생산량에 대하여 국내 생산원가와 해외 수입단가의 차액 중 70%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대상품목은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임.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생산 촉진지원 내역사업 세부내역]

145억 5,800만원 = 단가차액 x 생산량(가동률 50% 한도) x 보조율(70%)
* 대상품목 예시 : 이차전지 음극재 소재(흑연), 반도체 공정용 소재(무수불산) 등 → 대상 품목, 품목별 지원 규모 등은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2(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급망 안정품목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핵심전략기술의 연구 · 개발 · 사업화 또는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생산 및 수급에 미치는 영향
2. 교역규모 및 국제 분업구조
3. 해외 특정 지역 또는 국가로부터의 수입 비중
4. 중 · 장기 수급 여건 전망
5. 국가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
6. 그 밖에 소재 · 부품 · 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1) 「대외무역법」
제19조(전략물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 또는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에 따라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포함한다)을 지정 · 고시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급망 안정품목, 전략물자 및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을 다양하게 선정 및 고시함으로써 이 사업을 통한 보조금이 소수의 기업에게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추경안으로 신규 편성된 두 내역사업은 공급망 안정품목, 전략물자 및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을 대상으로 투자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나, 이들 투자보조금 대상은 추경안이 편성된 이후 그 금액에 맞추어 선정될 예정임.

다만, 과거 선정 및 지정·고시된 이력이 있는 품목을 통해 지원대상이 되는 공급망 안정품목, 전략물자 및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을 살펴보면 이들 간 중복되는 품목이 있는 것으로 보임.

우선, 공급망 안정품목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12월 '산업공급망3050전략'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희귀가스, 흑연, 희토영구자석, 무수불산, 요소 등 185개의 품목을 공급망 안정품목으로 선정한 바 있음.

[2023년 12월 발표된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

구분	업종	품목수	대표품목
첨단 전략 산업	반도체	17개	반도체 희귀가스(네온, 크립톤, 크세논), 실리콘웨이퍼, 불화수소 등
	이차전지	19개	수산화리튬, 인조(천연)흑연, 이차전지 제조용 전해액·분리막·파우치 등
	디스플레이, 바이오, 전기전자	22개	FMM, OLED 발광소재, 멤브레인, 바이오배지, DC모터 등
주력/ 신산업	자동차, 조선	24개	희토영구자석, 와이어링 하네스, 자율주행칩, 선박용 열교환기 등
	기계, 로봇, 항공	24개	산업용 로봇, 무인운반로봇, 수치제어기 등
기초 소재 산업	금속 (철강, 비철금속)	29개	마그네슘괴, 니켈괴, 알루미늄, 티타늄, 팔라듐 등
	섬유	16개	탄소섬유, 공중합 아라미드 섬유, 분산성 염료 및 그 중간체 등
	세라믹	16개	산화코발트, 공업용 천연석영, 내화성 노즐, 흑연막대, 광섬유 등
	화학	17개	요소, 무수불산, 브롬, 이산화티타늄, 무수암모니아 등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라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수시로 개정하여 전략물자를 지정하는데,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조에 따른 이중용도품목과 군용물자품목이 이에 해당함.[22)]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핵연료 물질, 흑연 세라믹 소재, 플루토늄, 리튬 동위원소, 탄저균 등 상당히 많은 전략물자가 고시되어 있음.

마지막으로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은 경제안보 측면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품목을 의미하는데, 해당 품목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경안 편성 시 고려하였던 무수불산, 흑연 외에도 불화수소, 희토류, 요오드, 가성소다, 탄산리튬 등 다양한 품목이 이에 해당할 수 있음.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사례와 국내 생산기업]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주요 수입국	국내 생산기업	주요 용도
무수불산	중국	후성	반도체 세정용 핵심소재
불화수소	일본	솔브레인, 램테크놀러지, 이엔에프테크놀로지	반도체 공정용
네온	우크라이나	포스코, 대성산업가스	반도체 리소그래피용 레이저 가스
희토류	중국	케이에스엠메탈스	전기차 모터, 국방 무기 등
흑연	중국	포스코퓨처엠	2차전지 음극재 소재
요오드	일본	대정화금, 한국파마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의약품
가성소다	중국	한화솔루션, LG 화학	정밀화학 및 반도체 공정
탄산리튬	중국, 칠레	하이드로리튬, 재영텍	2차전지 소재

자료: 기사 참조하여 작성

상술한 공급망 안정품목, 전략물자 및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은 희소자원이고, 자체생산에 비해 수입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해당 자원에 투자하고 생산하는 기업의 수가 적은 것이 사실임.

그에 따라 정부가 두 내역사업을 통해 특정 품목을 생산하는 중견·중소기업을 선정할 경우, 소수의 기업이 중복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상술하였듯이 보조금 지급 대상은 추후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인데, 특정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품목에 대한 투자 유지 및 국내생산기반을 확보하려는 이들 내역사업의 취지를 고려할 때, 특정 기업에 보조금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22)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조(용어의 정의) 2. "전략물자"라 함은 별표 2(이중용도품목) 및 별표 3(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하는 물품등을 말한다.

5. 무역보험기금 출연: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필요 등

가. 개 요

'무역보험기금 출연' 사업은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보험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무역보험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으로,[23] 2025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3,000억원(375.0%) 증액된 3,800억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무역보험기금 출연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무역보험기금 출연	45,000	80,000	380,000	300,000	375.0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무역보험기금 내 일반회계전입금을 편성하여 무역보험기금 수입의 일정 부분을 이 사업을 통한 정부출연금으로 조달하고 있는데, 이는 무역보험기금의 안정적인 수출금융사업 추진을 위한 것임,

2025년도 제1회 추경안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방산물자 수출지원 내역사업 1,000억원, RG 특례보증 지원 내역사업 5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더하여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보험·보증공급확대를 위해 1,5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무역보험기금 출연 사업 세부내역]

2025년도 본예산		2025년도 추경안(증액분)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800억원	① 방산물자 수출지원 (400억원) - 400억원(예산) × 30배(운용배수) = 1조 2,000억원(지원) ② RG 특례보증 지원 (400억원) - 400억원(예산) × 5배(운용배수) = 2,000억원(지원)	3,000억원	① 방산물자 수출지원 (1,400억원) · 1,400억원 x 30배(운용배수) = 4.2조원(지원) ② RG특례보증 (900억원) · 900억원 x 5배(운용배수) = 4,500억원(지원) ③ 美 관세조치 대응을 위한 수출 中企 무역보험 긴급 지원 (1,500억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3) 세부사업: 무역보험기금 출연(1138-881)(무역투자실)

①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방산물자 수출지원'** 내역사업을 통해 우리 방산기업과 외국 정부의 방산물자 수출계약 시 보증·보험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방산계약이 정부 간 계약(G2G) 성격이 강하고 수출 규모가 커 수출국에서 저리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는 것이 관례임에 따른 것임.

일례로 2022년 11월 한국 방산3사(KAI,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와의 1차 방산 수출계약을 123.3억 달러에 체결하였는데, 이 계약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이 각 50억 달러씩 보험 및 대출을 공급하여 총 100억 달러의 금융지원에 기반하여 체결된 것임.[24]

[폴란드 방산계약 체결 현황]

(단위: $)

구 분	수출계약 체결액	정책금융 필요액	한국무역보험공사 지원액	한국수출입은행 지원액
폴란드 방산 1차 (2022.11.)	123.3억	100억	50억	50억
폴란드 방산 2차	미정	미정	미정	미정

자료: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출자료를 재구성

그 외에도 폴란드와의 K2전차 2차 수출계약, 루마니아와의 K2전차 수출계약, 베트남과의 K9 자주포 수출계약, 말레이시아와의 천궁 함대공미사일 수출계약 등 다수의 방산계약 협상이 2025년 4월 현재 기준 진행 중에 있음.

② **'RG 특례보증 지원'** 은 중소 조선사를 대상으로 RG 발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기서 RG는 선수금 환급보증(Refund Guarantee)을 의미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박 발주사(해외)는 국내 중소 조선사에 선박건조 및 수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선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만일 조선사가 선박을 기한(2~3년) 내 건조

24) <폴란드 방산 1차 계약 및 금융계약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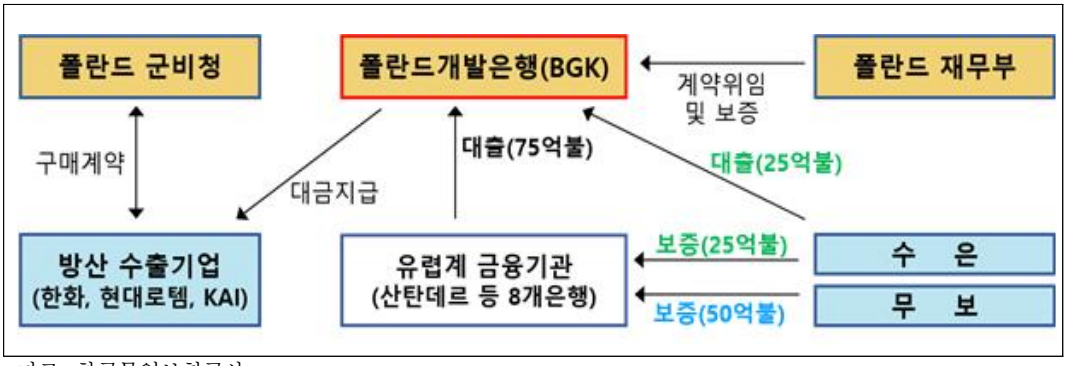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보험공사

하지 못하거나 파산했을 경우 선금을 발주사에 다시 환급하여야 하고, 발주사는 그 환급을 보장받기 위해 조선사와 발주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RG 보증서를 요구하게 됨.[25]

RG 보증서는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으나, 대형 조선사와 달리 중소 조선사는 신용도 및 자금여력 부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RG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선박건조 및 수출계약 포기 사례가 다수 발생함.

이에 정부 및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이 안정적으로 RG 보증서를 중소 조선사에게 발급하도록 보증을 서게 되는데, 이번 추경안을 통해 500억원의 예산에 5배 운용배수를 적용하여 2,5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게 됨.

[RG 특례보증 지원 내역사업 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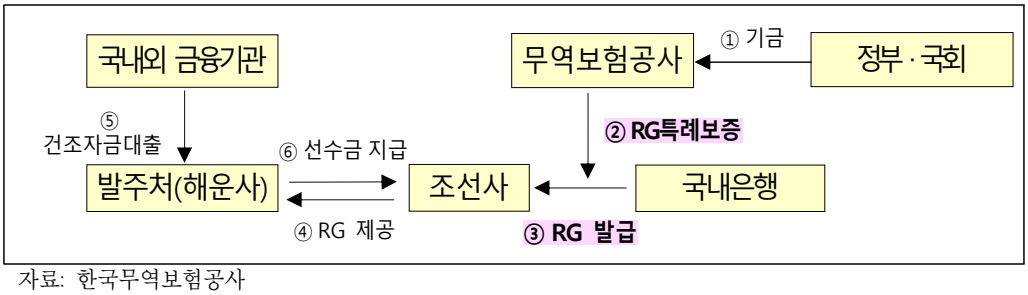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보험공사

특히, 특례보증의 취지에 맞게 한국무역보험공사는 RG 특례보증 사업의 부보율[26]을 95%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기관이 조선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위험의 상당 부분을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할 것임을 의미함.

③ **'관세대응 무역보험 지원'** 은 수출기업이 해외로부터 고율 관세 등 통상장벽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27] 그 손실을 완화하고 충분한 수출자금을 확보하여 수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과 수출신용보증 확대를 통해 금융적 보완을 제공하는 것임.

세부계획을 살펴보면, 수출애로기업을 대상으로 800억원에 12.5배의 운용배수를 적용하여 1조원의 특례보증 등을 지원하고, 내수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2,500억원의 수출신용보증과 9,000억원의 단기수출보험을 지원할 예정임.

---

25) 참고로, 선박건조계약은 선가의 통상 40%를 조선사가 발주사로부터 선수금으로 받고, 발주사는 그 선수금에 대한 RG 발급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26) 부보율이란 보험가입금액이 실제 자산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즉 실제 자산이 보험을 통해 얼마나 보호되고 있는가를 나타냄.

27) 구체적으로 수출계약 해지 및 연기, 관세 인상으로 인한 마진 축소 및 거래무산, 수출 대금 미회수 및 신규계약 실패 등의 사례가 있을 것임.

또한 GVC[28]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0억원에 12.5배의 운용배수를 적용하여 2,500억원의 보험을 지원할 계획임.

[관세대응 무역보험지원 내역사업 세부내역]

· (수출애로기업 핀셋 유동성 특별지원) 800억원(추경) x 12.5배(운용배수) = 1조원(지원금액)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수출신용보증〉 200억원(추경) × 12.5배(BIS비율 최소 권고치인 8%의 역수) = 2,500억원 〈단기수출보험〉 300억원(추경) × 30배(단기수출보험 지원관련 국회가 확정한 가장 최근의 운용배수(2023년 본예산)) = 9,000억원 · (GVC 안정화 지원) 200억원(추경) × 12.5배(BIS비율 최소 권고치인 8%의 역수) = 2,500억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는 2025년 4월 3일 미국이 전 세계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10%의 기본관세와 국가별 차등화된 관세율 적용 방침을 발표한 이후, 이에 따른 관세피해 및 수출위기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동부시간 기준 4월 9일 오전 12시 1분부로,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하였으며,[29] 한국은 미국과의 '5대 우선 협상국' 에[30] 포함됨에 따라 4월 18일 기준 반도체, 스마트폰 등 한국의 핵심 수출품에 대한 관세부과 계획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31]

28)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의 약자로서 하나의 제품 또는 서비스가 여러 국가에 걸쳐 생산, 가공, 조립, 유통되는 과정을 의미함

29) 유예기간은 2025년 7월 초까지로 예상됨.

30) 5대 우선협상국은 한국, 영국, 일본, 인도, 호주이며, 한국은 반도체 및 자동차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문제를 중심으로 협상을 준비하고 있음.

31) 다만,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전체',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및 그 파생품' 은「무역확장법」제232조에 근거한 국가안보 목적의 관세 부과 대상으로, 이에 대하여는 2025년 4월 3일부터 현재까지 25%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음.

나. 검토의견

첫째, '방산물자 수출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 금융 외에 민간 금융의 지원가능성도 검토하여 기금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RG 특례보증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중소형 조선사에 대한 특례적용 남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RG 보증 공급 심사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음.

'방산물자 수출지원' 내역사업과 관련하여, 2025년 4월 현재 기준 폴란드 2차 방산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이는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되고 있음.

우선, 2023년부터 협상이 시작된 1단계(K-9 자주포, 천무) 수출계약은 2024년 4월에 수출계약이 43억 달러에 성사되었는데, 폴란드 정부는 구매자금 전액을 별도의 정책금융 지원 없이 직접 조달하였음.

이후 2024년부터 협상이 시작된 2단계(K-2 전차) 수출계약은 2025년 4월 현재까지 협상 중에 있으며, 폴란드 정부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 지원을 조건화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제4조[32]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5[33]에 따라 동일 차주에 대한 여신총액이 자본금 25조원의 40%인 10조원을[34] 초과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이 2025년 4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기자본금과 1차 방산계약 때 이미 공급한 50억 달러를 제외하면 최대 10억 달러까지만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35]

---

32) 「한국수출입은행법」
제4조(자본금)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은 25조원으로 하고, 정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수출업자의 단체와 국제금융기구가 출자하되, 정부 출자의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3)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5(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③ 수출입은행은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4) 2025년 4월 기준 환율 1,422원/$에 따르면 약 70억$ 수준임.

35) 한국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금 및 환율에 따라 추가 지원가능 금액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음.

그에 반해 한국무역보험공사는「무역보험법」제8조에[36] 따라 계약체결한도 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으나[37] 동일 차주에 대한 여신총액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2025년 4월 기준 한국수출입은행 정책금융 지원가능 금액]

(단위: $)

자기자본금	비율	폴란드 방산계약 대상 여신가능 총액	기 공급액	추가 지원가능금액
150억	40%	60억	50억	10억

주) 2024년 기준 한국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금(잠정 가결산)은 약 21조 3,248억원이고, 이는 2025년 4월 현재 기준 환율로 약 150억 달러 수준임

자료: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한국수출입은행 제출자료를 재구성

이에 따라 폴란드 방산 2차 2단계 수출계약금액은 현재 미정이나 한국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 지원가능금액의 한계로 인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정책금융 지원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결과 무역보험기금 책임잔액의 상승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유효계약액을 적정하게 관리함과 동시에 정책금융 외 민간금융 지원의 가능성도 검토함으로써 무역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음.

---

36)「무역보험법」

제8조(계약체결한도)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무역보험계약체결의 한도를 정한다. 다만 대금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연불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무역보험은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의 범위에서 그 한도를 따로 정하여야 한다.

37)「무역보험법」제8조에 따라 2024년 12월 10일 국회에서 의결된「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의안번호 2203533)에 따르면, 무역보험계약체결 총한도는 280조원임.

[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주요 내용]

(단위: 억원)

구 분	2024년	2025년	전년대비	
			증감액	%
계약 체결 한도(총액)	2,700,000	2,800,000	100,000	3.7
ㅇ 본한도	2,500,000	2,550,000	50,000	2.0
(중장기연불 수출거래*)	(200,000)	(200,000)	(-)	(-)
(단기수출 등 기타거래)	(2,300,000)	(2,350,000)	(50,000)	(2.2)
ㅇ 예비한도	200,000	250,000	50,000	25.0

주) 중장기연불 수출거래는 중장기수출보험, 이자율변동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을 의미함

자료:「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또 다른 내역사업인 **'RG 특례보증 지원'** 은 높은 사고율과 열악한 경영 여건으로 인해 낮은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는 중소형 조선사를 사업 수혜자로 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금융 위험을 내재하고 있음.

또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특례보증 외에 중소형 조선사에 대한 RG 발급을 주로 담당해왔던 산업은행[38]의 RG 발급 한도 확대 및 그간 중소형 조선사 전반에 대한 RG 보증 발급을 중단하고 있던 한국수출입은행[39]의 신규 RG 발급은 적극 검토 중이나 아직 불확실한 상황임.

이에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한 중소형 조선사의 RG 특례보증 지원 수요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또한 개요에서 서술하였듯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특례보증 부보율을 95%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기본적인 금융 위험과 중소형 조선사의 RG 특례보증 수요 증가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 사업으로 인한 무역보험기금의 리스크 부담은 불가피해 보임.

다만, 방산물자 수출계약 성사를 위한 금융기관의 보증 제공과 지원 취약지대인 중소형 조선사에 대한 특례보증은 국내외적으로 필요한 조치임은 분명하므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방산물자 수출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 금융 외에 민간 금융의 지원가능성은 없는지 검토하여 기금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RG 특례보증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중소형 조선사에 대한 특례적용 남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40] RG 보증공급 심사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음.

둘째, 관세 등 통상위기 대응 목적의 보험 및 보증 확대를 통해 수출 및 무역거래에서 발생하게 될 위험에 대비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이나, 대내외 경제상황에 따른 보험금 지출규모의 변동폭이 큰 무역보험의 특성과 관세 부과가 아직 현실화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편성된 추경안임을 고려하여, 향후 실제 관세조치 결과 등 상황에 맞게 무역보험이 실효성 있게 공급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함.

---

38) 산업은행은 대한조선, 케이조선, HJ중공업의 주채권은행으로서, 3개사에 각각 6.0억불, 4.5억불, 3.2억불의 한도를 부여하고 同 한도 내에서 RG를 발급하고 있음.

39) 이는 2023년 10월 대선조선(중소형 선박 건조를 수행하는 국내 중견 조선사)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개시에 따른 것으로, 2023년 하반기 경영악화 및 자금 유동성 문제로 인해 10월부터 은행 등 채권단의 주도하에 기업 구조조정 및 신규 금융지원 제한 조치가 진행되었음.

40)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11년 3월 RG 보험 인수한도 특례 책정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특례를 남용하였고, 부보율이 과다하며, 사후관리가 미흡하였다는 사유로 감사원의 감사 지적을 받은 바 있음.

관세대응 무역보험 지원 내역사업은 개요에서 서술하였듯이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로 인해 철강·알루미늄·자동차를 제외한 한국의 핵심 수출품인 반도체, 스마트폰 등에 대한 관세부과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임.

그로 인하여 이 사업은 수출기업이 해외로부터 고율 관세 등 통상장벽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손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추진에 있어 실제 수요에 대한 사전 조사나 정보가 다소 부족한 상황임.

또한 이 사업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무역보험 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으로서 수출대금 미회수, 계약 취소 등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여야 예산이 집행되는 보험 사업의 특성상 예산집행 실적 관리만으로는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함.

실제로 무역보험기금 지출 사업인 '무역보험금지급' 세부사업[41]에 존재하는 4가지 내역사업[42]의 2024년 말 기준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편성 당시 계획 대비 집행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단기무역거래지원 내역사업은 1,567억원 중 694억원이 집행(집행률 44.3%)되고, 중장기산업설비 수출거래지원 내역사업은 2,860억원 중 211억원이 집행(집행률 7.4%)되는 등 계획 대비 집행이 저조하였으나, 중소기업 수출신용보증 내역사업은 435억원 중 1,819억원이 집행(집행률 418.1%)되고, 가격변동 리스크헷지 내역사업은 199억원 중 550억원이 집행(집행률 275.8%)되는 등 계획 대비 과다하게 집행되었음.

이는 2024년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선적전/후 수출신용보증 수요가 계획 대비 많이 발생하고, 중장기 산업설비 수출거래 부문에서는 거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임.

41) 무역보험기금 - 무역보험금지급(1531-400)

42) <각 내역사업에 대한 개요>

사업명	보험종목	지원 내용
단기무역 거래지원	단기수출보험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거래
	수입보험	철, 동 등 주요자원의 대출기간 1년 이내의 수입거래
중장기 산업설비 수출거래 지원	중장기수출보험	결제기간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수출계약거래
	해외투자보험	대한민국 기업 또는 금융기관의 주식대출금 등을 통한 해외투자
	수출보증보험	해외공사 및 수출거래 중 필요한 수출보증서(AP, P-Bond 등)
	해외사업금융보험	수출증진이나 외화획득 효과가 있는 해외사업에 대한 2년 이상의 대출거래
	서비스종합보험	시스템통합, 기술서비스, 컨텐츠 등의 서비스 수출 거래
	수출기반보험	수출증진 및 외화획득 효과가 예상되는 설비의 도입거래
중소기업수출 신용보증지원	수출신용보증 (선적전)	수출계약에 따라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조달할 수 있도록 대출
	수출신용보증 (선적후)	수출 물품을 선적한 후 금융기관이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 거래
가격변동리 스크헷지	환변동보험	수출 또는 수입을 통해 외화를 획득 또는 지급하는 과정에서 환변동리스크 제거

[2024년 무역보험금지급 사업의 내역사업별 집행 및 보험공급액 현황]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보험종목	계획액	집행액	집행률	보험공급목표액	보험공급액
단기무역거래지원	단기수출보험	151,553	69,070	45.6	214,400,000	209,335,282
	수입보험	5,155	370	7.2	2,000,000	2,925,958
	소계	156,708	69,440	44.3	216,400,000	212,261,240
중장기산업설비 수출거래지원	중장기 수출보험	76,631	21,085	27.5	7,060,000	7,624,122
	해외투자보험	1,143	-	-	750,000	703,075
	수출보증보험	205,416	-	-	1,450,000	1,151,748
	해외사업금융보험	1,641	-	-	7,670,000	6,680,317
	서비스 종합보험	89	-	-	10,000	-
	수출기반보험	1,052	-	-	660,000	2,148,028
	소계	285,972	21,085	7.4	17,600,000	18,307,290
중소기업 수출신용보증	수출신용보증 (선적전)	40,413	53,208	131.7	2,000,000	2,075,464
	수출신용보증 (선적후)	3,085	128,672	4,170.9	2,800,000	2,473,116
	소계	43,498	181,880	418.1	4,800,000	4,548,580
가격변동리스크헷지	환변동보험	19,932	54,976	275.8	1,200,000	1,459,205
	소계	19,932	54,976	275.8	1,200,000	1,459,205
합계		506,110	327,381	64.7	240,000,000	236,576,316

자료: 한국무역보험공사

이처럼 통상의 보험과 달리 무역보험은 대내외 경제상황에 따른 보험금 지출규모의 변동폭이 크고 보험사고 확률추정 및 보험금 지급 규모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관세 등 통상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보험 및 보증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이나, 한편으로는 아직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지 않아 그 피해규모에 대한 정보가 다소 부족한 상황에서 편성된 계획안이므로 무역보험이 실효성 있게 공급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함.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 출>

6.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 핵심광물 수급 상황을 고려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비축자원의 철저한 사후관리 필요

가. 개 요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 사업은 전기차·반도체 등 미래산업의 핵심원료인 희소금속 비축 확대를 위해 핵심광종의 신규 비축 구매, 희소금속 이관, 비축기지 확보로 공공비축 확보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것으로,[43] 2025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1,994억 3,000만원(99.4%) 증액된 4,001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	251,762	200,727	400,157	199,430	99.4

추경안으로 증액 편성된 금액은 전액 핵심광물의[44] 비축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이를 통해 ① 중국의 추가 수출통제가 우려되는 경희토류(세륨/란탄) 28.1일분 예산 6억 1,600만원, ② 경제안보 목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는 리튬(10일분), 마그네슘(13.2일분), 몰리브덴(55.1일분), 코발트(14.3일분) 예산 1,940억 3,500만원, ③ 현재 비축량이 저조하나 수급위기 대응력을 조기에 확보할 필요가 있는 스트론튬 47.8일분 47억 7,9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임.

---

43) 세부사업: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5440-304)(자원산업정책국)

44) 핵심광물이란 가격 및 수급 위기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위기 시 국내 산업 및 경제에 파급효과가 커 경제안보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광물을 의미함. 2025년 4월 기준, 핵심광물 중 리튬, 코발트, 망간, 희토류, 마그네슘 갈륨 등 희소금속 위주 26종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니켈, 주석 등 일반 비철금속 6종은 조달청이 비축 관리하고 있음.

[2025년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 사업 본예산 및 추경안 세부내역]

2025년도 본예산		2025년도 추경안(증액분)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517억 6,200만원	① 비축확대 885억 9,400만원 · 리튬(10일분) : 1,010톤 x 2,100만원 = 216억 1,400만원 · 코발트(72일분) : 728톤 x 4,400만원 = 322억 7,200만원 · 텅스텐(47일분) : 440톤 x 6,100만원 = 268억 3,900만원 · 희토류(1년분) : 78억 6,800만원 산화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 70톤 x 7,800만원 = 54억 5,400만원, 산화디스프로슘 6톤 x 4억 200만원 = 24억 1,400만원 ② 비축일원화 82억 8,000만원 · 조달청 보유 희소금속 바나듐 이관 : 460톤 x 1,800만원 ③ 전용 비축기지 구축 1,026억 3,700만원 · 부지매입비 : 154억 7,200만원 · 시설부대경비(설계비, 감리비 등) : 45억 6,200만원 · 공사비 : 826억 300만원 ④ 비축기지 유지보수비 12억 1,600만원 · 광물보관용 렉 설치비 35만원 x 3,455ea	4,001억 5,700만원	(추경) ① 비축확대 1,994억 3,000만원 · 희토류(세륨/란탄)(28.1일분) : 246톤 x 250만원 = 6억 1,600만원 · 리튬(10일분) : 1,010톤 x 1,650만원 = 166억 6,500만원 · 마그네슘(13.2일분) : 730톤 x 420만원 = 30억 6,600만원 · 몰리브덴(55.1일분) : 4,015톤 x 4,190만원 = 1,682억 2,800만원 · 코발트(14.3일분) : 145톤 x 4,190만원 = 60억 7,600만원 · 스트론튬(47.8일분) : 1,770톤 x 270만원 = 47억 7,900만원 ※ 그 외 좌동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추경안을 통해 2024년 말을 기준으로 비축되어 있는 핵심광물 13종 59.9일분을 85.9일분으로 상향하겠다는 목표임.[4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5년 본예산 886억원을 통해서는 73.9일분까지 비축일수를 확대할 수 있는데 그 증가분 중 4.8일분은 2024년 이전까지 적립된 예산 절감분을 통한 추가 구매를 통해 확보될 예정이고, 이번 추경안 1,994억원을 통하여 12일분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임.

45) 참고로, 자원 수급위기가 발생하면 이를 수급하는데 필요한 자원 공급선박의 도착 기간(대체공급선 확보기간)을 3개월, 약 100일로 설정하고 있는데, 2024년 말 기준 비축량을 59.9일분에서 추경을 통해 85.9일분으로 상향시키게 되면 수급 안정기간이라 할 수 있는 100일에 더욱 근접하게 되는 것임.

[핵심광물 연도별 비축실적 및 추경안에 따른 비축확대 계획]

(단위: 일)

광종		관련산업(용도)	2025 본예산	2025 추경안	2031	비고
몰리브덴		스테인리스강	-	**95.0 (55.1)**	100	• 中 수출통제 품목(2025.2) • 경제안보 목적 관리필요 광종
코발트		이차전지 초경공구	149.2 (19.7)	**163.5 (14.3)**	180	• DR콩고 수출중단 품목 (2025.2)
희토류	경	반도체 연마재 페라이트자석	-	**100.0 (28.1)**	100	• 中 수출통제 우려 • 경제안보 목적 관리필요 광종
마그네슘		자동차 전기・전자 부품	86.8 (6.8)	**100.0 (13.2)**	100	• 경제안보 목적 관리필요 광종
리튬		이차전지	90.0 (40.0)	**100.0 (10.0)**	100	• 경제안보 목적 관리필요 광종
스트론튬		페라이트자석, 디스플레이	-	**50.5 (47.8)**	100	• 비축 저조 품목
희토류	중	전기차용 영구자석 반도체 용사코팅	900.0	900.0	900	
텅스텐		반도체, 군수용 중합금, 초경공구	100.0	100.0	100	
갈륨		반도체, 태양전지	-	-	100	
바나듐		이차전지, 합금강	-	-	100	
니오븀		합금강	-	-	100	
티타늄		합금강	-	-	100	
크롬		스테인리스강	-	-	100	
실리콘		스테인리스강	-	-	100	
평균 비축일수			73.9 (4.8)	**85.9 (12.0)**	111.4	

주 1) 2025년도 본예산 열의 괄호는 2024년 이전 예산 절감분을 활용한 2025년 추가 구매계획 물량임
2) 2025년도 추경안 열의 괄호는 2025년 추경 예산을 활용해 추가 구매하여 증가 예정인 비축일수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광해광업공단

나. 검토의견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핵심광물의 수급상황과 국제가격 변동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비축된 핵심자원의 품목·수량 및 관리 상황 등 관리 실태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여 예산집행에 투명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핵심광물은 전쟁, 수출입 제한 등 글로벌 상황에 따라 연중에도 시세가 급격히 변화하는 특성이 있는데, 그로 인하여 저가 시점을 전략적으로 선별하여 구매하는 것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요함.

그러나 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비축대상으로 선정된 대다수 핵심광물은 수급우려 광물로서 구매시점에 예상과 달리 가격이 급등하는 등 변동성이 매우 크고 예측이 어려운 특성이 있음.

실제로 중국의 수출제한 대상인 희토류 원소 중 디스프로슘은 2025년 4월 14일 기준 $232.5/kg로 연초 대비 2.8% 상승한 고시가격을 보였고, 터븀은 $995.0/kg로 연초 대비 24.0% 상승하였는데, 향후 중국의 수출제한 정책의 변화에 따라 추가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2025년 1월 대비 4월 희토류 일부 원소 고시가 변동 현황]

(단위: USD/kg, %)

원소명	1월 가격	4월 가격	변동률	주요 원인
디스프로슘(Dy)	226.2	232.5	2.8	미얀마 공급 차질 및 중국 희토류 공급통제 정책 발표 등
터븀(Tb)	802.4	995.0	24.0	
네오디뮴(Nd)	56.5	61.4	8.7	

자료: Argus Metals

참고로, 2024년 예산편성 시점 대비 실제 집행시점에 수입(구매)한 단가도 다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리튬은 수입(구매)단가를 톤당 8,89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톤당 1,930만원에 구매하였고, 희토류 중 네오디뮴(Nd)은 kg 당 1억 3,020만원에 계획하였으나 실제 톤당 7,030만원, 디스프로슘(Dy)은 kg 당 4억 5,500만원에 계획하였으나 4억 930만원에 구매하였음.

반면, 갈륨은 구매단가를 톤당 4억 3,76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통제에 따른 가격상승으로 인해 실제로는 톤당 8억 4,040만원에 구매하여 계획 대비 92% 이상 높아진 단가에 입고되었음.

리튬, 희토류의 톤당 단가 하락으로 인하여 예산 편성 당시 계획 대비 발생한 잔금은 갈륨의 단가 상승으로 인한 집행 초과분 충당 및 2025년에 구매하기로 계획된 리튬, 마그네슘의 추가 구매에 활용되었고, 공급 불안정성이 상시 내재되어 있는 글로벌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4억 7,200만원은 예비비로 관리되고 있음.

[2024년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 사업 예산편성 근거와 실제 집행내역]

2024년도 예산 편성 근거	2024년도 집행내역
○ 예산 편성 근거 - 리튬 : 8,890만원/톤 x 24.2일분 = 2,173억 6,100만원 - 희토류 : Nd-Pr 1억 3,020만원, Dy 4억 5,500만원 x 1년분 = 118억 4,400만원 - 갈륨 : 4억 3,760만원/톤 x 60일분 = 13억 1,400만원	○ 구매 실적 - 리튬 : 1,930만원/톤 x 24.2일분 = 470억 9,900만원 - 희토류 : Nd-Pr 7,030만원, Dy 4억 930만원 x 1년분 = 65억 3,600만원 - 갈륨 : 8억 4,040만원/톤 x 60일분 = 25억 2,100만원 ○ 추가 구매 (순차 계약~입고 중으로 최종정산 후 금액 확정) - 리튬 : 3,290만원/톤 x 50일분 = 1,658억 9,800만원 - 마그네슘 : 450만원/톤 x 24일분 = 59억 9,300만원 - 기타(예비비) : 24억 7,200만원

자료: 한국광해광업공단

이처럼 편성된 예산 단가가 구매 대상 광물의 수급상황, 국제가격, 환율 등 변동에 따라 실제 구매 시점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에 따라 계획하였던 구매예산 대비 초과 또는 과소 집행하게 되는 등 실제 집행상 변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2025년에도 반복될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핵심광물의 수급상황과 국제가격 변동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또한 예산편성 당시 계획 대비 집행내역이 변동하는 상황에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비축된 핵심자원의 품목·수량 및 관리 상황 등 관리 실태에 대해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46][47]

46)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15조(비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기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고 핵심자원의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자원을 비축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축대상 핵심자원 · 비축물량 · 비축사유 · 비축기간, 제3항에 따른 비축된 핵심자원의 관리 · 실태보고 및 제5항에 따른 비축의무의 대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7)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비축 핵심자원의 관리 · 실태보고) 비축의무기관의 장(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공공공급기관이 민간공급기관의 핵심자원 비축의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공급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비축된 핵심자원의 품목 · 수량 및 관리상황 등 비축된 핵심자원의 관리 · 실태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 출>

7. 산업단지환경조성: AX 실증산단 구축비가 이월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등

가. 개 요

'산업단지환경조성' 사업은 산업단지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21개 스마트그린산단을 지정하여 산업단지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것으로,[48] 2025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511억원(15.4%)이 증액된 3,824억 7,8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산업단지환경조성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산업단지환경조성		397,197	331,378	382,478	51,100	15.4
	산업단지구조고도화	276,617	219,128	230,228	11,100	5.1
	스마트그린산단촉진	115,580	106,250	146,250	40,000	37.6

내역사업인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사업은 산업집적기반시설 확충,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등을 통해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노후산단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출연사업으로, 2025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111억원(5.1%)이 증액된 2,302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음.

증액된 111억원은 10개 기타산단의 노후공장을 청년 친화적인 공간으로 리뉴얼하기 위한 48억원과 창원, 완주에 랜드마크 건립을 위한 13억원 및 주차 편의 복합건축물 등 청년 친화형 공용편의시설 건립을 위한 50억원으로 구성됨.

48) 세부사업: 산업단지환경조성(3333-305)(산업기반실)

노후공장 청년친화리뉴얼 48억원과 랜드마크 건립비 13억원은 2025년 본예산에 증액편성되는 것이고, 청년 친화형 공용편의시설 건립 50억원은 추경안으로 신규편성됨.

[2025년 산업단지구조고도화 내역사업 본예산 및 추경안 세부내역]

2025년도 본예산		2025년도 추경안(증액분)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191억 2,800만원	① 산단환경 개선펀드: 1,193억원 ② 휴폐업공장리모델링 : 84억원 ③ 청년문화센터건립 : 481억원 ④ 혁신지원센터구축 : 15억 7,500만원 ⑤ 활력있고아름다운거리조성플러스 : 292억 5,300만원 ⑥ 노후공장청년친화리뉴얼 : 108억원 · 문화를담은산단 : 1억원 × 20개 × 3개소 · 기타산단: 4,000만원 × 10개 × 12개소 ⑦ 문화를담은브랜드산단조성 : 17억원 · 랜드마크건립 : 6억 5,000만원 × 1개 · 문화브랜딩 : 3억 5,000만원 × 3개 = 10억 5,000만원	2,302억 2,800만원	① 산단환경 개선펀드: 1,193억원 ② 휴폐업공장리모델링 : 84억원 ③ 청년문화센터건립 : 481억원 ④ 혁신지원센터구축 : 15억 7,500만원 ⑤ 활력있고아름다운거리조성플러스 : 292억 5,300만원 ⑥ 노후공장청년친화리뉴얼 : 108억원 **⑥-1 (추경)** **· 노후공장청년친화리뉴얼 : 48억원** **- 기타산단: 4,000만원 × 10개 × 12개소** ⑦ 문화를담은브랜드산단조성 : 17억원 **⑦-1 (추경)** **· 랜드마크건립 : 6억 5,000만원 × 2개(창원, 완주) = 13억원** **⑧ (추경) 청년친화형공용편의시설 : 50억원** **· 주차편의복합건축물 2억원 x 5개** **· 임대형 기숙사 2억원 x 5개** **· 다목적 체육관 2억원 x 5개** **· 열린 문화광장 4억원 x 5개**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또 다른 내역사업인 **'스마트그린산단촉진'** 내역사업은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된 21개 산단에 대하여 통합관제센터, 스마트물류플랫폼을 구축하고, 스마트 제조고급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2025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400억원(37.6%)이 증액된 1,46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 스마트그린산단촉진 내역사업 본예산 및 추경안 세부내역]

2025년도 본예산		2025년도 추경안(증액분)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62억	① 통합관제센터 : 220억원	1,462억	① 통합관제센터 : 220억원

2025년도 본예산		2025년도 추경안(증액분)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000만원	② 스마트물류플랫폼 : 160억원 ③ 스마트제조고급인력양성 : 140억원 ④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 : 230억원 ⑤ 지역특성화제조기반구축 : 302억 5,000만원	5,000만원	② 스마트물류플랫폼 : 160억원 ③ 스마트제조고급인력양성 : 140억원 ④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 : 230억원 ⑤ 지역특성화제조기반구축 : 302억 5,000만원 **⑥ (추경)** **AX 실증산단 구축 : 400억원** **- AX 실증산단 1년차 40억원 x 10개소 = 400억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증액된 400억원은 미국의 관세조치로 인한 통상환경 변화 및 제조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공지능 전환(AX; AI eXperience) 실증산단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이하 7개 유형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아 지원 시 정부가 그 중 10개소를 선정하여 개소당 3년간 최대 140억원의 국비를 지원토록 설계됨.

[2025년 AX 실증산단 추경안 세부내역]

○ 400억원 = 10개소(공모)×40억원
○ 개소당 3년간 최대 140억원 국비 지원, 국비 지원금액의 40% 이상 지방비·참여기업 매칭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공모 시 아래 지원사업 유형을 2~3개 이상 혼합하여 제시 가능

〈AX 실증산단 구축 유형(안)〉

지원사업 유형(안)		사업내용
산단 AX	5G 특화망 실증	▸고속통신 기반의 AI 솔루션(자율제조, 물류관제 등) 최적화 지원을 위한 산단 공용 5G 특화망 구축
	디지털트윈 실증	▸산단 내 기반시설, 공간정보, 기업정보 등을 담은 디지털트윈 산단을 구현하고 AI 기반 산단 관리 추진
기업 AX	공정혁신시뮬레이션	▸입주기업 제조 전주기(설계~성능시험) 시뮬레이션, AI 최적화 지원을 위한 H/W, S/W 인프라 및 센터 구축
	AX 종합지원센터	▸제조AI 컨설팅, 데이터센터 연계 기술지원 등 입주기업 AX를 위한 토탈 패키징 지원센터 구축
	제조 AI 오픈랩	▸제조·AI 솔루션기업, 수요기업 등이 AI 기술 및 로봇 도입 솔루션의 도입·실증에 활용가능한 개방형 Lab 공간 구축
	LLM 기반 제조 AI 솔루션 실증	▸주력산업 특화 제조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및 제조현장 응용 서비스 실증
	AI 표준제조공정모듈	▸산단별 표준형 AI 제조공정 데모공장 구축, 기술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 산단 내 AI 팩토리 확산 지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나. 검토의견

첫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차 피출연기관의 실집행이 연례적으로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배정된 예산액을 대부분 교부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재정법」 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및 예산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추경안을 통해 증액된 예산집행을 보다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산업단지구조고도화' 내역사업 중 산단환경 개선펀드 내내역사업을 제외한 휴폐업공장리모델링 등 5개 내내역사업은[49] 898억 4,700만원인데,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전액을 교부하였으나 2024년 말 기준 인천시 등 76개 2차 피출연기관의 최종집행률은 16.4%에 불과함.

[2024년 말 기준 산업단지구조고도화 내 5개 내내역사업의 최종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교부액	매칭	교부현액	최종집행액	최종집행률	차년도 이월액
인천시 등 76개 2차 피출연기관	89,847	43,197	133,044	21,840	16.4	111,204

주) 최종집행액은 사업비 관리시스템상 입력된 금액 기준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 금액 입력 여부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있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로 인해 1,112억 400만원이 2025년으로 이월되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건축사업의 특성상 설계 또는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최종집행률이 낮은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절차 및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2025년 4월까지도 집행이 저조한 상황임.

---

49) '문화를 담은 브랜드 산단조성' 내내역사업은 2025년도 본예산으로 반영된 신규사업으로, 2024년에는 휴폐업공장리모델링 등 5개 내내역사업이 수행되었음.

[2024년 산업단지구조고도화 내 5개 내내역사업 예산액]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예산현액	교부액	전담기관	실교부액
산업단지구조고도화	89,847	89,847	한국산업단지공단	89,847
휴폐업공장리모델링	26,820	26,820		26,820
혁신지원센터 구축	9,035	9,035		9,035
청년문화센터건립	44,740	44,740		44,740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조성 플러스	6,252	6,252		6,252
노후공장 청년친화리뉴얼	3,000	3,000		3,0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편,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교부실적을 4월 기준으로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998억 2,800만원 중 754억 9,700만원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교부하였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그 중 624억 2,800만원을 재교부하였음.

이는 2차 피출연기관 수준에서 2024년에서 이월된 금액의 최종집행이 모두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예산액 중 약 624억원을 추가로 교부받았음을 의미함.

[2025년 4월 기준 산업단지구조고도화 내역사업의 부처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교부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본예산					2025년 추경안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산업단지구조고도화	219,128			219,128	160,807 [62,512]	230,228
- 산단환경개선펀드	119,300	-	-	119,300	85,310 [84]	119,300
- 휴폐업공장리모델링 등 6개 내내역사업	**99,828**	**-**	**-**	**99,828**	**75,497 [62,428]**	**110,928**

주) 집행액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교부한 금액이고, 실집행액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지방자치단체 등 2차 피출연기관에 교부한 금액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특히, 이 사업은 사업출연금(350-02)으로 편성된 출연사업으로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한 정산 및 집행잔액 반납의무가 있는 보조사업과 달리 정산 등 사후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법령이 부재함.[50]

그러나 2차 피출연기관의 집행 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배정된 예산액을 대부분 교부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재정법」 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및 예산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51]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25년 추경안을 통해 증액된 예산집행을 보다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50)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사업출연금에 대하여 "필요 시 주무부처가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대한 별도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하도록 하는 등 출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을 뿐임.(p.205)

51)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출연사업의 실집행 실적 제고를 위해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자금 교부 시 사전에 지자체, 공공기관의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하며, 예산을 적기에 배정·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p.28)

둘째, 산업통상자원부는 AX 실증산단 구축 사업의 공모 절차를 고려하여 예산이 차년도로 이월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스마트그린산단촉진' 내역사업 중 추경안으로 신규 편성된 내내역사업인 **'AX 실증산단'** 구축 사업의 1~3차년도 사업수행 계획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1차년도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산단의 업종 및 입지 특성을 감안하여 AX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산단 AX 수준을 진단하는 작업이 우선 진행될 예정임.

이후 AI 설비 등 구축 유형형 공용 인프라 구축, AX 기업의 실증 지원 및 산업단지 AX 협의체 운영을 위한 얼라이언스 구축 작업이 계획되어 있음.

[AX 실증산단 구축 사업의 1~3차년도 계획]

❶ 산업단지 AX 마스터플랜 전략 수립(1차년도)
- 선정 산단의 업종, 입지 특성을 감안한 AX 중장기 전략 수립, 산단 AX 수준진단 등

❷ 산업단지 AX 인프라 구축(1~3차년도)
- AI 설비*(HW/SW), 지원센터 등 구축 유형별 공용 인프라 구축
  * GPU 등 연산자원, 데이터 서버 및 플랫폼, AI 솔루션 S/W, 기업지원 장비 등

❸ AX 기업 실증 지원(1~3차년도)
- 산단 입주기업 대상 AI 솔루션 개발·실증을 통해 기업이 AI 도입효과를 체감가능한 선도사례 확보 → 자발적 민간확산 유도

❹ 산업단지 AX 얼라이언스 구축·운영(1~3차년도)
- 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산단 내 수요기업, AX 솔루션 공급기업, 지역 내 대학, 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산단 AX 협의체 운영
- 산단 입주기업 대상 AX 도입 컨설팅, AX 수요-공급기업 매칭, AX 도입·실증 기술지원 등 수행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러나 추경안으로 편성된 400억원은 AX 실증산단을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으로써 이는 인프라, 플랫폼, 장비 등을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인데, 추경안이 확정되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모 및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는데 약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실제 집행은 7월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AX 실증산단 구축 사업의 집행절차]

① 사업 공모		② 사업자 선정		③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④ 연차평가 및 사업비 정산
추경 확정 후 공고 (부처, 산단공)	→	공고 후 약 40일 이내 선정 (산단공)	→	선정 후 30일 이내 협약체결 (산단공, 수행기관)	→	연차 사업수행 내용 평가 (산단공, 수행기관)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사업이 추경안으로 반영될 경우, 그 예산이 차년도로 이월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

Ⅰ. 개 관

1.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추경안의 총수입은 9조 4,922억원으로, 예산은 2,707억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하고, 기금은 9조 2,215억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함.[1)]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추경안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 (현계획)(A)	추경안 (변경안)(B)	증감(B-A)	(B-A)/A
예 산	2,135	2,707	2,707	-	-
기 금	82,553	92,215	92,215	-	-
합 계	84,688	94,922	94,922	-	-

주 1) 2024년도 본예산 중 기금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2) 2025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추경안의 총지출은 20조 2,6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5조 112억원(32.9%) 증가함. 예산은 3조 9,337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2,965억원(8.2%) 증가하고, 기금은 16조 3,262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4조 7,146억원(40.6%) 증가함.

문의 : 김지수 예산결산조사관 kkjjss@assembly.go.kr (02-6788-5689)

---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추경안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 (현계획)(A)	추경안 (변경안)(B)	증감(B-A)	(B-A)/A
예 산	35,004	36,372	39,337	2,965	8.2
기 금	117,205	116,116	163,262	47,146	40.6
합 계	152,209	152,488	202,600	50,112	32.9

주 1) 2024년도 본예산 중 기금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2) 2025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나.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세입추경안은 2,707억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함.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세입추경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일반회계	1,952	2,498	2,498	-	-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	-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83	210	210	-	-
합계	2,135	2,707	2,707	-	-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세출추경안은 총 3개 회계(일반회계,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며, 본예산 대비 2조 2,794억원(34.4%) 증가함.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세출추경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일반회계	61,936	61,716	84,510	22,794	36.9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731	357	357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931	4,148	4,148	-	-
합계	66,598	66,221	89,015	22,794	34.4

주) 총계 기준

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3개 기금(중소벤처창업및진흥기금,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는 26조 6,782억원으로 현계획 대비 4조 7,247억원(21.5%) 증가함.

기금별로 살펴보면,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12조 2,595억원으로, 현 계획 대비 7,000억원(6.1%) 증가하고, 기술보증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현 계획과 동일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11조 1,107억원으로, 현 계획 대비 4조 247억원(56.8%) 증가함.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계획	2025년도				
		당초	현계획(A)	변경안(B)	증감(B-A)	(B-A)/A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114,101	115,595	115,595	122,595	7,000	6.1
기술보증기금	31,543	33,080	33,080	33,080	-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75,085	70,860	70,860	111,107	40,247	56.8
합계	220,729	219,535	219,535	266,782	47,247	21.5

주 1) 총계 기준이며, 2024년도 계획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2) 기술보증기금은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700억원 증액 예정임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사업은 총 17개 세부사업으로, 총 증액규모(총계 기준)는 7조 741억원임.[2)]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미국 관세 품목업종 영위 또는 대미 수출 중소기업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사업으로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한시, 융자)' 1,000억원을 신설하고,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000억원 및 '긴급경영안정자금' 5,000억원이 증액되었음.

또한, 수출 중소기업의 통관, 수출규제 등에 대한 종합지원 등을 위해 '수출지원기반 활용' 사업에 898억원을 증액하였으며, AI 기술을 중소 제조기업이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사업에 167억원을 증액하고, 기술집약형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선별해 투자하고 R&D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에 100억원을 증액하였음.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운영 지원을 위한 신규 보증공급 확대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사업에 신규 보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3,334억원을 증액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진으로 소비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세부사업 중 '취약상권 환급 활성화' 사업에 645억원을 증액하였고,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위한 '소상공인재기지원'사업에 점포철거비와 재기사업화를 위해 494억원을 증액하였음.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 및 유동성 제공을 위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성장지원'세부사업 중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에 1조 5,66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또한, 민생경제의 핵심인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게 소비 진작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세부사업 중 '상생페이백' 사업에 1조 3,700억원을 신규반영하였으며,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 및 구매력 확보를 위해 구매전용 신용카드 발급 사업으로 '소상공인성장지원'세부사업 중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 사업에 1,314억원을 신규편성함.

---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추경안 신규 및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4년도 예산	2025년도			
		본예산 (당초)(A)	추경안 (변경안)(B)	증감(B-A)	(B-A)/A
[일반회계]					
신용보증기금출연	80,000	-	100,000	100,000	순증
기술보증기금출연	20,000	40,000	110,000	70,000	175.0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219,054	236,076	252,823	16,747	7.1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423,205	567,983	577,983	10,000	1.8
수출지원기반활용	111,860	127,560	217,360	89,800	70.4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91,499	82,058	92,058	10,000	12.2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150,000	250,000	750,000	500,000	200.0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189,370	382,450	482,450	100,000	26.1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한시, 융자)	-	-	100,000	100,000	순증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125,354	210,940	544,377	333,437	158.1
소상공인성장지원	292,498	265,085	1,962,421	1,697,336	640.3
소상공인재기지원	166,308	274,806	324,194	49,388	18.0
소상공인지원(융자)	3,710,000	3,770,000	4,270,000	500,000	13.3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422,796	465,205	1,899,705	1,434,500	308.4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신용보증기금 출연: 지원대상 선정기준 명확화 및 '위기대응 특례보증 대위변제' 세부사업의 별도 편성 검토 필요

가. 개 요

'신용보증기금 출연' 사업은 신용보증기금이 수행하는 보증사업의 대위변제금 지급 등에 필요한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 조성을 목적으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추경안은 1,0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3)]

[2025년도 신용보증기금 출연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신용보증기금 출연	80,000	-	100,000	100,000	순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관세피해, 내수침체 등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한 유동성 부족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히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내 '(가칭)위기대응계정'을 별도로 신설하고, 3조원 규모의 '위기대응 특례보증'을 공급하기 위한 재원으로 신용보증기금에 1,000억원을 출연하는 것임. 3조원의 보증공급을 위해서는 2,400억원이 필요한데, 정부출연금은 1,000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1,400억원은 신용보증기금의 자체재원으로 조달할 계획임.[4)]

---

3) 세부사업: 신용보증기금출연(1231-881)(글로벌성장정책관)

4) 보증재원 2,400억원 = 특례보증 공급규모 3조원 ÷ 보증배수 12.5배

나. 검토의견

첫째, 무역분쟁 및 산업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내 위기대응 특례보증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으나 실제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금융위원회는 관세피해, 내수침체 등으로 인해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 신속하게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내 '(가칭) 위기대응계정'을 신설하여 다른 계정과 구분계리하도록 하고 해당 계정 내에서 '위기대응 특례보증'을 3조원 공급할 계획임.

[신용보증기금 위기대응특례보증(안)]

◦ (개요)
- 관세피해, 내수침체 등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한 유동성 부족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자금을 제공하는 위기대응특례보증 신설

◦ (재원·규모) 재정출연금 1,000억원 + 신용보증기금 자체재원 1,400억원 → 보증공급 규모 3조원
- 운용배수 : 12.5배
- 관리방법 : 신보 내 별도계정(가칭, 위기대응계정)을 신설하여 구분계리

◦ (지원대상) 관세피해, 내수침체 등으로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
- 지원 대상을 폭넓게 정의하여 피해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
  ① 관세 피해 업종 (美 관세조치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수출 중소기업 등)
  (수출실적이 감소하거나, 매출액, 영업이익, 고용 등이 감소한 기업)
  ② (선제적) 산업위기대응지역
  ③ 산불·수해 등 재난피해지역 등

◦ (지원내용) 일반보증 대비 우대하되, 지원대상·상황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
- (보증비율) 90% (통상 85% 대비 우대)
- (보증료율) 최대 0.5%p 우대 (큰 폭의 보증료 차감 혜택, 통상 보증료율 1% 이상)
- (보증한도) 5억원* (통상 3억원 대비 상향)
  * 향후 기업 수요에 따라 한도 인상 등 추가 검토
- (기타) 내부심사절차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자금지원

◦ (기대효과) 관세피해 기업 등에 최대 3.33조원*의 유동성을 신속 지원
- 보증공급규모 3조원 ÷ 보증비율 90% = 보증부대출 3.33조원

자료: 금융위원회

전체 보증재원 2,400억원 = 정부출연금 1,000억원 + 신용보증기금 자체재원 1,400억원
보증부 대출(유동성) 공급규모 3조 3,333억원 = 특례보증 공급 규모 3조원 ÷ 보증비율 90%

신용보증기금은 관세피해, 산업위기, 재난피해 등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일반보증 대비 보증비율, 보증료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하는 내용으로 위기대응 특례보증을 공급하여,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 대출을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임.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 등으로 인해 전세계적인 무역분쟁이 심화되고 석유·화학 등 일부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심사절차 완화 및 보증료 차감을 통해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 보증부 대출을 신속히 집행할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위기대응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지원대상 여부에 대해 실무적인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지원대상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신속한 보증심사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는 ① 관세피해의 경우 관세조치의 직접적 피해는 미국에 직접 수출하는 경우만 해당하여 제한적일 수 있고 간접적 피해는 추상적이어서 입증하기가 어려워 지원 대상의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고, ②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2025년 4월 현재 지정된 지역이 없고, 최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선정된 포항시의 경우 하천 범람으로 인한 제철소 침수로 인해 지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원범위가 다소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

이 경우 위기대응 특례보증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특례보증 지원 대상인지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지원 대상의 범위가 협소하여 일반 보증상품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고, 당초 계획 대비 특례보증 공급실적이 부진할 경우 특례보증의 지원대상 기준을 갈수록 완화할 여지가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5)]

이에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관세피해 등으로 인해 유동성 부족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우대보증을 제공하려는 위기대응 특례보증의 도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보증심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둘째, 금융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 내 별도계정을 신설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 내에 '(가칭) 위기대응 특례보증 대위변제' 세부사업의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신용보증기금은 위기대응 특례보증을 공급하기 위해 기금 내 별도 계정을 신설하여 다른 계정과 구분계리할 계획인데, 해당 계정의 기본재산으로 적립하기 위한 정부출연금은 편성되어 있으나, 특례보증의 부실 발생 시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에

5) 참고로, 신용보증기금이 2022년 9월부터 운영하는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보증의 경우 9조 5,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을 세웠으나, 보증수요 부족으로 인해 2025년 2월 현재 당초 계획의 17.5%인 1조 6,626억원만 보증공급하였음. 해당 기간 동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상환기간 및 대출한도 등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3차례(2023.3., 2023.8., 2024.3.) 사업내용이 변경된 바 있음.

대해서는 이를 별도의 세출사업으로 편성하지 않은 상황임.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위기대응 특례보증을 통한 기업대출이 연내 부실화될 가능성이 낮아 대위변제액 규모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고 대위변제가 발생하는 경우 '일반보증 대위변제(2431-300)' 사업으로 집행할 예정이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시 '위기대응 특례보증 대위변제' 세부사업을 편성하겠다고 설명함.[6)]

그러나 위기대응 특례보증도 별도 계정으로 구분계리하는 만큼, 소상공인 위탁보증이나 대환보증과 마찬가지로 대위변제를 위한 별도 세부사업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이는 일차적으로 2025년 위기대응 특례보증의 기본재산 적립 시에는 위기대응 특례보증으로 계상되었다가 대위변제 발생 시 일반보증의 재원으로 사용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보증계정간 구분계리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임.

또한, 대위변제 세부사업의 편성은 당해연도 보증공급액 및 보증잔액, 보증부실 및 대위변제율에 대한 추계를 전제로 하는데, 이는 특례보증의 도입 필요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수적임.

이에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위기대응 특례보증의 연도별 보증공급계획 및 보증부실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 2025년 이 사업의 대위변제 규모를 추산하고,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시 '위기대응 특례보증 대위변제' 세부사업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7)]

---

6) 별도 계정으로 구분계리하는 소상공인 위탁보증과 저금리 대환보증의 경우, 소상공인위탁보증 대위변제(2431-316), 대환보증 대위변제(2431-317) 사업은 출연금 편성이 이루어진 이듬해에 편성되었음.

7) 기술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과 마찬가지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출연금이 편성되어 있으나,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은 '(가칭)통상환경변화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하지 않고 일반보증 내 보증상품으로 취급할 예정임. 이 경우 기술보증기금은 특례보증의 대위변제 발생 시 기존 '기술보증 대위변제(2441-300)' 세부사업 내에서 집행하게 되므로, 기술보증기금 내 별도 세부사업 편성은 필요하지 않음.

2. 수출지원기반활용: 신속 지원을 통한 통상장벽 해소 노력 제고 및 집행관리 철저 필요

가. 개 요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은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의 역량별 맞춤형 수출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으로, 2025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898억원(70.4%) 증액된 2,173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음.[8)]

[2025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수출지원기반활용	111,860	127,560	217,360	89,800	70.4

이 사업은 평가·선발과정을 거쳐 선정된 수출기업에 보조금을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 수출바우처를 받은 기업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통합포털[9)]에서 수출 업무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용할 수 있음.[10)]

선발된 참여기업이 일정액의 자비부담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운영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이 지급하는데, 그 총액을 쿠폰 형태의 수출바우처로 부여하고 참여기업이 서비스를 제공 받은 후 소요비용을 정산하는 구조임. 전년도 수출액 및 매출액 등에 따라 지원대상별 지원한도(3,000만원~1억원)와 지원비율(50~70%)은 상이하게 적용됨.

8) 세부사업: 수출지원기반활용(3131-301)(글로벌성장정책관)

9)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포털 (www.exportvoucher.com)

10) 조사/일반, 컨설팅, 통번역, 역량강화교육, 특허/지재권/시험, 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험, 홍보/광고, 브랜드 개발·관리,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법무·세무·회계컨설팅, 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해외규격인증 등

[수출바우처 발급 및 정산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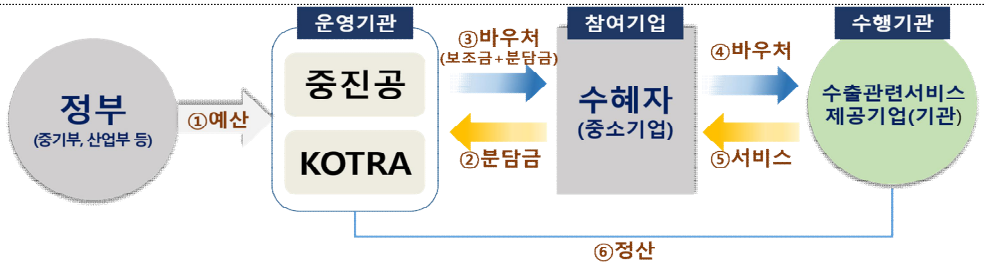

운영기관이 바우처 총액(①국고+②기업부담금)을 재원으로 참여기업(선정기업)에 ③바우처(가상의 쿠폰)를 발급하고, 바우처를 보유한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수출지원 서비스를 온라인 메뉴판에서 비교, 선택하여 ④수행계약 체결 및 ⑤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⑥소요비용을 정산

〈 수출바우처사업 진행 프로세스(참여기업 기준) 〉

신청·접수	평가·선발	협약체결	바우처발급	서비스거래	바우처정산
홈페이지 접 수 수출바우처.com	➡ 사업별 평가기준 적용·선발	➡ 참여기업-운영기관 협약 체결	➡ 기업별 협약금액 內 바우처 발급	➡ 수출지원 서비스 구매계약 ·수행	➡ 서비스 종료 후 바우처 정산 대금 지급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사업계획]

(단위: 개사, 백만원)

사업명	지원 대상	기업수	한도	국고보조율
내수	전년도 수출액 1,000달러 미만	1,050	30	100억원 미만 70% 100~300억원 60% 300억원 이상 50%
	튼튼한 내수기업	100	45	
초보	전년도 수출액 '1,000달러~10만달러 미만'	900	30	
유망	전년도 수출액 '10~100만달러 미만'	500	45	
성장	전년도 수출액 '100만~500만달러 미만'	400	70	
강소	전년도 수출액 '500만달러 이상'	250	100	
테크서비스	테크서비스 업종 영위 중소기업	400	35	
합 계		3,500	-	

주) 합계에 테크서비스 기업 수 400개 사는 포함되지 않았음. 테크서비스 유형은 신청현황에 따라 지원기업 수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환율 급등, 미국 관세조치 등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수출바우처(일반)의 지원 대상기업을 확대(3,290개사→5,930개사)하기 위해 898억원을 증액하려는 것임.

[2025년 수출기반활용 사업 본예산 및 추경안 세부내역]

2025년 본예산		2025년 추경안(증액분)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275억 6,000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1,273억 9,200만원** - 내수·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수출바우처 보조금(**1,116억 9,200만원**) ***3,290개사** × 5,020만원 × 67.8% - 각 부처에서 추천하는 한류 연관 산업 유망기업 수출바우처 연계지원(17억원) *50개사 × 5,020만원 × 67.8% - 테크서비스기업 특화지원을 위한 수출바우처 보조금(140억원) *400개사 × 5,020만원 × 67.8% ◦ 일반수용비(210-01): 1억원 - 수출바우처 신청 기업평가 및 간담회 등 개최(1억원) ◦ 국외업무여비(220-02): 6,800만원 - 해외 수행기관 점검에 필요한 여비(6,800만원)	2,023억 6,000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2,171억 9,200만원** - 내수·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수출바우처 보조금(**2,014억 9,200만원**) ***5,930개사** × 5,020만원 × 67.8% - 각 부처에서 추천하는 한류 연관 산업 유망기업 수출바우처 연계지원(17억원) *50개사 × 5,020만원 × 67.8% - 테크서비스기업 특화지원을 위한 수출바우처 보조금(140억원) *400개사 × 5,020만원 × 67.8% ◦ 일반수용비(210-01): 1억원 - 수출바우처 신청 기업평가 및 간담회 등 개최(1억원) ◦ 국외업무여비(220-02): 6,800만원 - 해외 수행기관 점검에 필요한 여비(6,800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나. 검토의견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출바우처 증액분을 패스트 트랙을 통해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고, 관세메뉴판에 대한 의무 비중을 도입하는 등 사업 예산 증액이 관세피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수출바우처 사업의 증액을 통해 기업의 수출 동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미국 및 주요국의 관세 부과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피해우려 기업에 대한 통관 지원, 수출규제 대응, 수출 다변화 등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고, 환율 및 운송료 상승에 따른 물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맞춤형 수출서비스 지원을 통해 수출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2024년 수출바우처 지원기업의 수출 및 고용지표를 살펴보면 수출바우처 지원기업의 수출액 및 고용규모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미국 관세부과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수출바우처 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것은 실효적인 지원 수단으로서 타당성이 있음.

2024년 수출바우처 지원기업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6.8% 증가하였고, 고용인원도 전년 대비 5.5% 증가하여 4,831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하였음.

[수출바우처 지원기업의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성과]

(단위: 개사, 백만달러, 기준: 2024.12.말)

구분		내수	초보	유망	성장	강소	전체
지원 기업 수		1,028	820	442	334	340	2,964
수출	지원 전	0.041*	21.6	155.6	716.7	4492.8	5,386.7
	지원 후	51	65.1	242.1	857.7	4542.0	5,757.9
	증가율	-	201.3	55.5	19.6	1.0	6.88

주) 2024년부터 ‘내수트랙’은 ‘전년도 수출실적 1,000불 이하’로 설정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지원기업의 전년 동기 대비 고용 성과]

(단위: 개사, 명, %, 기준: 2024.12.말)

구분		내수	초보	유망	성장	강소	전체
고용	지원 전	16,336	13,724	12,647	15,732	28,672	87,111
	지원 후	17,937	14,162	13,034	16,449	30,360	91,942
	증가율	9.8	3.2	3.1	4.6	5.9	5.5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다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분이 관세 피해기업 등 수출 중소기업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수행 시에 다음과 같은 점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을 통한 수출바우처에 대해서도 2025년 제2차 수출바우처와 마찬가지로 패스트 트랙 제도를 통해 평가를 간소화하여 대상기업을 신속하게 선정하는 한편, 수출바우처 사업기간을 직전 사업과 동일하게 2026년 2월말로 단축하여 선정기업이 수출바우처를 조속히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4월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2차 모집공고를 게시하면서, 신속한 관세 피해(우려) 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현장평가를 생략하고 서류평가만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선발할 계획임을 공고하였음.[11]

[2025년 제2차 수출바우처 사업진행 절차]

신청·접수	평가선발	협약체결	바우처발급	메뉴 이용
홈페이지 접수	**서류평가** (중진공 지역본부)	선정기업 ↔ 운영기관	협약금액 내 바우처 포인트 발급	필요한 수출 지원 메뉴 이용 및 정산
공고일: 4.10. 접수기간: 2주 (4.10.~4.21.)	4~5월	5월	2025.5월 (사업기간은 4.1.부터 소급 적용)	~ 2026.2.28 사업기간: 11개월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2차 모집공고", 2025.4.10.

이는 수출바우처 선정기업이 사업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출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관세특화패키지 및 기존 14개 메뉴판의 서비스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따라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출바우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제2차 수출바우처 사업과 마찬가지로 패스트트랙 방식을 통해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25년 수출바우처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시, 사업기간을 1개월씩 앞당겨 차년도 이월을 단계적으로 최소화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수출바우처도 사용기간을 2026년 2월말까지로 단축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관세 피해기업이 신속하게 수출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인하여 수출바우처 제도의 효과성 및 시의성을 제고하고 보조금의 정산을 앞당겨 보조금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1) 서류 평가 시에는 ① 신청기업 대상 지원요건(미국 직·간접 수출 여부) 및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② 지원가능 규모를 초과하여 접수될 경우, 지역별, 수출단계별 지원규모 결정 후 최근 3년 미국 수출액* 상위 순서로 선정하게 됨.

[수출바우처 차수별 사업기간 및 사용기간 현황]

사업년도	2024		2025*			
모집차수	1차	2차	1차	2차		3차 (추경안)
				당초	변경	
사업기간	2024.4월 ~2025.2월	2024.7월 ~2025.3월	2025.3월 ~2026.1월	2025.6월 ~2026.2월	2025.4월 ~2026.2월	2025.7월 ~ 미정
바우처 사용기간	11개월	9개월	11개월	9개월	11개월 (소급적용)	미정
공고일	2024.1.23	2024.6.17	2024.12.30.	2025.5	2025.4.10.	미정

주)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에는 1차 및 2차 협약기간을 전년 대비 1개월씩 단축하여, 단계적 감축을 통해 차년도 이월을 최소화할 계획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 기본계획” 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고려하여 일부 수정하여 작성

둘째, 추가경정예산안의 목적이 관세피해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 확대라는 점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바우처 사업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과 마찬가지로 관세대응 패키지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공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5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각각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2차공고를 게시하였음. 두 사업 모두 관세피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수출바우처의 14대 메뉴와 함께 ‘관세특화패키지’를 지원하는 것은 유사하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이 ‘관세특화패키지’에 바우처 총액의 50% 사용의무가 있는 것과 달리,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은 관세특화패키지에 대한 사용의무가 없음.

[2025년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부의 제2차 수출바우처 사업 비교]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명	2차 수출바우처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2차 수출바우처 (수출 바로(Barrier zero) 프로그램)
주무부처 운영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대상	2022~2024년 ①미국 직접수출 실적 보유, ②해외생산거점에서 미국 직접수출 실적 보유, ③캐나다·멕시코 중간재 직접수출 실적 보유 중소·중견기업	최근 3개년 ①미국 직접수출 실적 보유, ②해외생산거점에서 미국 직접수출 실적 보유, ③ 미국 간접수출한 중소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내용	수출바우처 지원 14개 메뉴판 + 관세대응패키지 (관세대응패키지 50% 이상 사용의무)	수출바우처 지원 14개 메뉴판 + 관세대응패키지 (관세대응패키지 관련 의무규정 없음)
사업기간	2025.4.1. ~ 2026.1.31.(10개월)	2025.4.1. ~ 2026.2.28.(11개월)
사용기간	2025.5.초 ~ 2025.11.15.	2025.5. ~ 2026.2.28.
게시일	2025.4.2.	2025.4.1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5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공고", 2025.4.2.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공고", 2025.4.10.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출바우처 증액 편성 이유가 미국 및 주요국의 관세부과 등으로 인한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 만큼, 직간접적인 수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집중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며, 수출바우처 사용금액 중 관세특화패키지의 의무사용 비율을 규정하여 피해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수출바우처 관세특화패키지 등 서비스 메뉴판 개요]

지원메뉴		지원내용
관세 특화 패키지 (예시)	① 관세 피해 컨설팅	· 미 관세 조치에 따른 관세애로 긴급 해결 컨설팅 - 관세 조치에 따른 법률, 회계, 관세 등 심층자문 - 대응방향 설정 * 신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인증, 세율 등 관련 컨설팅 * 원산지 증명 요구 대응
	② 관세 분쟁 해결 지원	· 현지 법률 전문가 등을 연계하여 부당한 관세 부과 및 분쟁 해결 지원
	③ 관세 분야 서류 대행	·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포괄) 확인서, 관세환급, 인증신청, 통관절차(할당관세 원가계산 등) 대행
	④ 대체 공급망 확보	· 미국 수출 중단 대비 대체 공급망(신규 바이어) 발굴 연계 - 바이어 추천, 신용조사 등
기존 메뉴	14개 메뉴판	· 조사/일반 컨설팅, 전시회 참여 등 바우처 시스템 활용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공고", 2025.4.10.

【중소벤처기업진흥기금】

<지 출>

3.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융자): 저리대출의 지원대상 명확화 필요

가. 개 요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사업은 미국 관세조치 품목 업종을 영위하거나 대미 수출 중소기업 등의 경영애로를 완화하기 위하여 한시적 긴급 융자사업을 신설하는 것으로, 변경안은 1,0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2)]

[2025년도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한시, 융자) 사업 변경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도		2025년도				
	당초	수정	당초	현계획(A)	변경안(B)	증감(B-A)	(B-A)/A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한시, 융자)	-	-	-	-	100,000	100,000	순증

주 1) 2024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2) 2025년도 현계획은 2025년 당초 계획액 대비 변경된 계획액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은 2025년 한시 신규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직접대출을 수행하며, 미국 관세 품목업종 영위 또는 대미 수출중소기업에게 연 30억원을 최대 10년 동안 대출하는 사업임.[13)] 정책자금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미국의 관세 부과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에게 저리대출의 혜택을 지원하려는 것임.

12) 세부사업: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한시, 융자)(1261-314)(글로벌성장정책관)

13) 구체적으로는 시설자금의 경우 연 30억원 대출기간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로 대출하고, 운전자금의 경우 연 10억원 대출기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로 대출함.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사업 개요]

◦ (융자방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 (지원대상) 미국 관세 품목업종 영위 또는 대미 수출 중소기업 ◦ (대출한도) 연 3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시설자금(10년 이내), 운전자금(6년 이내)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 운전자금: 6년 이내 (거치기간: 3년) - 만기연장: 1년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3%p 정책자금 기준금리: 3.15%(2025년 2사분기)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나. 검토의견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사업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보다 0.3%p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수출 중소기업의 많은 자금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원대상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지원기업 선정의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제 대출 공고 시에는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대출 현장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사업은 미국의 관세 부과 등으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리대출의 혜택을 지원하는 것인데, 수출기업글로벌화,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등 유사사업 대비 대출한도, 대출기간 및 대출금리 등의 조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함.

이 사업은 수출기업글로벌화 자금에 비해서는 대출금리가 0.3%p 낮고, 긴급경영자금(일시적경영애로)에 비해서는 대출한도 및 대출기간이 유리하고 대출금리 역시 0.8%p 낮은 융자임. 특히 원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거치기간도 1년 더 길고 만기연장도 1년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당한 우대조건을 부여하고 있는 것임.

[2025년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주요 정책자금 융자사업]

구분		대출한도	대출기간	대출금리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내수기업수출기업화	5억원	5년	기준금리
	수출기업글로벌화	**30억원(운전 10억원)**	**10년(시설), 5년(운전)**	**기준금리**
신성장기반자금	혁신성장지원	60억원(운전 5억원)	10년(시설), 5년(운전)	기준금리 + 0.5%p
	Net-Zero 유망기업 지원	60억원(운전 5억원)	10년(시설), 5년(운전)	기준금리 + 0.5%p
	제조현장스마트화	100억원(운전 10억원)	10년(시설), 5년(운전)	기준금리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창업기반지원자금(일반)	60억원(운전 5억원)	10년(시설), 5년(운전)	기준금리 - 0.3%p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	1억원(제조업 2억원)	10년(시설), 6년(운전)	2.5% 고정금리
	개발기술사업화자금	30억원(운전 5억원)	10년(시설), 5년(운전)	기준금리
재도약지원자금	재창업자금	별도 융자한도	10년(시설), 6년(운전)	기준금리
	구조개선전용자금	60억원(운전 10억원)	10년	기준금리
	사업전환지원자금	100억원(운전 5억원)	10년(시설), 6년(운전)	기준금리
긴급경영안정자금	**일시적경영애로**	**10억원(3년 15억원)**	**5년**	**기준금리 + 0.5%p**
	재해중소기업	10억원(3년 15억원)	5년	1.9%

자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수출기업의 경영애로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에 해당하는 '신시장진출지원자금(수출기업글로벌화)',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및 이 사업의 직접대출 예산을 모두 증액 편성하였음.

[수출애로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사업 관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단위: 억원)

구분	2024년 계획액	당초 계획 (A)	증감 (B)	변경안 (A+B)
통상리스크대응 긴급자금	-	-	1,000	1,000
수출기업글로벌화	1,005	1,824.5	1,000	2,824.5
일시적경영애로	1,500	2,500	5,000	7,5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만일 기금운용계획안대로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미국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은 이 사업의 대출조건이 가장 유리하므로, 향후 이 사업에 대출수요가 집중될 우려가 있음.

그러나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미국 관세 품목업종 영위 또는 대미 수출 중소기업'으로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수출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워 기한 내에 지원하지 못하거나, 과도한 신청으로 인해 지원대상 선정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음.

또한 추가경정예산안의 다른 사업인 기술보증기금의 '(가칭) 통상환경변화 특례보증'이 지원대상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명확한 요건을 규정하는 것에 비해[1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의 선정기준은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15]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000억원의 한정된 대출재원을 수출 중소기업 중 피해기업에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이 사업이 많은 사업수요에 부응하겠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기금 자체변경을 통한 증액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

14) [기술보증기금 통상환경변화 특례보증(안)]
- 개요: 미국 관세조치 등 직·간접피해 (수출) 중소기업 및 첨단기술 영역에 대한 위기극복 특례보증 1조 2,000억원 공급
- 지원대상: (트랙1) 직접피해 우수 기술 수출기업, (트랙2) 직접피해 기업과 거래중인 간접피해 우수 기술 기업 및 (트랙3) 시장규모 확대등이 예상되는 첨단기술 사업영위 기업

구분	위 기 지 원		도 약 지 원
	Track1	Track2	Track3
지원대상	직접 피해기업	간접 피해기업	첨단기술 경쟁력 확보한 우수 기술 기업
	관세 피해 우수 기술 수출기업	직접피해기업과 거래하는 우수 기술 1,2차 협력기업	관세효과로 시장규모 확대 등이 예상되는 기회산업 영위기업
관련 산업	자동차, 철강, 반도체 배터리, 전자제품 제조 등		방산, 조선, 인공지능(AI), 양자, 로봇, 자율주행, 의약품 등

주 1) 수출감소, 수입비용 증가 등 통상환경변화에 따라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2)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 IP 사업화, 정부 R&D 성공판정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기술성과 사업성을 보유한 기업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15)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관세 부과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참조하여 지원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4. 수출기업글로벌화: 신속한 자금 지원 및 리스크 관리 병행 필요

가. 개 요

‘수출기업글로벌화’ 사업은 수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액 10만 달러 이상의 수출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설비도입, 원·부자재 매입비용 등 수출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시설·운전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변경안은 당초 기금운용계획 대비 1,000억원(54.8%) 증액된 2,824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16]

[2025년도 수출기업글로벌화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도		2025년도				
	당초	수정	당초	현계획(A)	변경안(B)	증감(B-A)	(B-A)/A
신시장진출 지원자금(융자)	200,500	245,500	382,450	382,450	482,450	100,000	26.1
수출기업 글로벌화	100,500	145,500	182,450	182,450	282,450	100,000	54.8

주 1) 2024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2) 2025년도 현계획은 2025년 당초 계획액 대비 변경된 계획액

수출기업글로벌화 융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로서, 수출액 10만 달러 이상 중소기업에 대해 연 30억원을 최대 10년 동안 대출하는 사업으로,[17] 상대적으로 낮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적용하여 수출 유망기업에게 저리대출의 혜택을 제공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출기업글로벌화 내역사업 예산을 1,000억원 확대하는 것으로, 대출 요건이나 내용의 변경 없이 예산만 증액하여 약 420개사에 대한 추가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16) 세부사업: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1261-303)(글로벌성장정책관)

17) 구체적으로는 시설자금의 경우 연 30억원 이내 대출기간 10년 이내로 지원하고, 운영자금의 경우 연 10억원을 5년 이내로 지원함.

[수출기업글로벌화 사업]

◦ (융자방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 (지원대상) 최근 1년간 직·간접 수출실적 10만 달러 이상 중소기업(소상공인도 포함) ◦ (대출한도) 연 3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시설자금(10년 이내), 운전자금(5년 이내)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2025년 2사분기: 3.15%)

자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2025년 수출기업글로벌화 사업 본예산 및 추경안 세부내역]

당초 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824억 5,000만원	❍ 기타민간융자금: **1,824억 5,000만원** - **770개사** × 2억 3,700만원* * 2021~2023년 평균지원액	2,824억 5,000만원	❍ 기타민간융자금: **2,824억 5,000만원** - **1,192개사** × 2억 3,700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나. 검토의견

수출기업글로벌화 사업은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자체변경을 통해 융자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등 사업수요가 상당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대출자금 공급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신속한 자금공급과 함께 최근 상승하는 부실률에 대한 관리도 병행하여 리스크관리에도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음.

수출기업글로벌화 융자는 수출 유망기업에게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적용하여 저리대출의 혜택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수요가 계획대비 많아 2022년부터 연례적으로 계획변경을 통해 융자액을 연중 확대하는 상황임.[18)]

18) 수출기업글로벌화 내역사업은 2023년,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에서는 직접대출 자금(기타민간융자금 450-04)과 이차보전지원금(이차보전금 320-05)이 동일한 내역사업에 함께 편성되었으나, 2025년부터 이차보전금은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1253-301) 사업에 이관되었음.

[수출기업 글로벌화 사업 계획 및 집행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당초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당초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당초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당초 계획액
직접대출	2,500	3,800	3,800	-	1,500	1,500	893.7	1,343.7	1,343.7	1,824.5
이차보전	-	-	-	38.55	38.55	35.74	111.3	111.3	111.3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최근 이 사업의 계획 및 집행 현황을 보면, 2022년에는 당초 기금운용계획 편성 시 직접대출에 2,500억원이 편성되었다가 같은 해 7월 1,300억원을 증액한 3,800억원을 연내 전액 집행하였고, 2023년에는 당초 기금운용계획 편성 시에는 직접대출이 편성되지 않았다가 같은 해 7월 1,500억원을 자체변경을 통해 신규 편성하여 이를 연내 전액 집행하였음.

2024년에도 당초 기금운용계획 편성 시에는 직접대출이 893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같은 해 8월 500억원을 증액하였다가 11월 50억원을 감액하여 최종 1,343억 7,000만원을 연내 전액 집행하였음.

[최근 수출기업 글로벌화 사업 계획 변경 현황]

연도	구분	계획 변경 사유	변경 규모
2022	자체변경 (7.25.)	원전기업 및 신산업분야 중기지원 확대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1,300억원
2023	자체변경 (7.21.)	신산업분야 중기지원 확대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1,500억원
2024	자체변경 (8.21.)	대외 불확실성 및 경기 변동성 증가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증액	500억원
	자체변경 (11.28.)	재해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증액에 따른 수출기업글로벌화자금 자체변경	△50억원
2025	국회승인 변경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신시장 진출(수출 다변화 포함) 등을 위한 신시장진출지원자금 확대	1,000억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2,824억 5,000만원은 2025년 당초 계획 대비 54.8% 증액편성된 것으로 증액 규모가 상당하나, 이 사업은 과거 2019년 2,300억원, 2020년 2,500억원, 2021년 3,500억원, 2022년 3,800억원을 전액 집행한 바 있었다는 점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 사업수요 부진에 따른 불용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다만, 수출기업 글로벌화의 대출액에 대한 부실률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신속한 자금공급과 함께 상승 추세인 부실률에 대한 관리도 병행하여 리스크관리에도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4년 수출기업 글로벌화 융자의 부실률은 4.07%로 2022년 1.56%, 2023년 3.92%에 비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종료된 이후 원리금 상환이 도래한 중소기업의 융자부실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신규대출 시 리스크 평가를 통해 사전적 부실위험을 예방하는 한편, 지속적인 대출 관리를 통해 사후적으로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수출기업 글로벌화 사업 대출 및 부실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수출기업 글로벌화	신규대출액	250,000	350,000	380,000	150,000	134,370
	대출잔액(a)	472,569	786,011	1,056,232	1,011,535	877,851
	부실금액(b)	4,330	11,918	16,465	39,693	35,697
	부실률(b/a)	0.92	1.52	1.56	3.92	4.07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5.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증액 규모의 적정성 검토 및 리스크 관리 필요

가. 개 요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사업은 재해·재난, 원자재 가격 급등, 환율 급등 등 예측할 수 없는 요인으로 일시적인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을 통해 경영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변경안은 당초 기금운용계획 대비 5,000억(200.0%) 증액된 7,500억원이 편성되었음.[19]

[2025년도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사업 변경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도		2025년도				
	당초	수정	당초	현계획(A)	변경안(B)	증감(B-A)	(B-A)/A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150,000	235,000	250,000	250,000	750,000	500,000	200.0

주 1) 2024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2) 2025년도 현계획은 2025년 당초 계획액 대비 변경된 계획액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일시적 경영애로 또는 재해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게 연 10억원 이내(3년간 최대 15억원)의 정책자금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형식으로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5%p를 가산하여 직접대출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여 경영정상화에 기여하려는 사업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사업 예산을 5,000억원 확대하는 것으로, 대출 요건이나 내용변경 없이 융자사업 예산만 증액하여 약 3,100개사에 대한 추가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19) 세부사업: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1261-302)(글로벌성장정책관)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 개요]

◦ (융자방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 (지원대상) 일시적 경영애로 중소기업 또는 재난피해 중소기업 - 일시적 경영애로: 원자재 가격 급등, 이커머스 미정산 피해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재해지원: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대출한도) 연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5년 이내(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대출금리) - 일시적 경영애로: 정책자금 기준금리* + 0.5%p *정책자금 기준금리: 3.15%(2025년 2사분기) - 재해지원: 1.9% (고정금리)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본예산 및 추경안 세부내역]

당초 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500억원	❍ 기타민간융자금: **2,500억원** - **1,563개사** × 1억 6,000만원* * 2021~2023년 평균지원액	7,500억원	❍ 기타민간융자금: **7,500억원** - **4,688개사** × 1억 6,000만원* * 2021~2023년 평균지원액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나. 검토의견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사업의 변경안은 사실상 2020~2021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수준으로 융자사업의 규모를 크게 확대하려는 것으로, 증액 규모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고 대출 부실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은 코로나19 위기 이전에 2,000억원 수준으로 집행되었다가 2020~2021년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최대 1조 3,000억원으로 확대 집행되었으며, 2022년 이후에는 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구체적으로는, 2020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매번 3,000억원씩 4차례 증액하여 1조 3,000억원으로 수정・집행하였음. 2021년에는 코로나19 및 물류비 상승 등으로 인한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3,000억원을 증액하여 8,000억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수정・집행하였음.

2022년에는 원전 및 우크라이나 사태를 고려한 자체변경이 있었고, 2023년에는 포

항재해피해 내역사업의 사업부진으로 인한 내역변경이 있었으며, 2024년에는 이커머스 미정산 피해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자체변경이 있었으나, 대출규모는 각각 3,600억원, 2,589억원, 2,350억원으로 감소하였음. 이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이전의 사업규모로 회귀한 것임.

[최근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사업 계획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당초	증감액	수정(A)	증감율		
2019	100,000	108,000	208,000	108	208,000	208,000
2020	100,000	1,200,000	1,300,000	1,200	1,300,000	1,300,000
2021	500,000	300,000	800,000	60	800,000	800,000
2022	200,000	160,000	360,000	80	360,000	360,000
2023	258,900	-	258,900	-	258,900	258,900
2024	150,000	85,000	235,000	57	235,000	235,000
2025(안)	250,000	500,000	750,000	200	750,000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사업 계획액 증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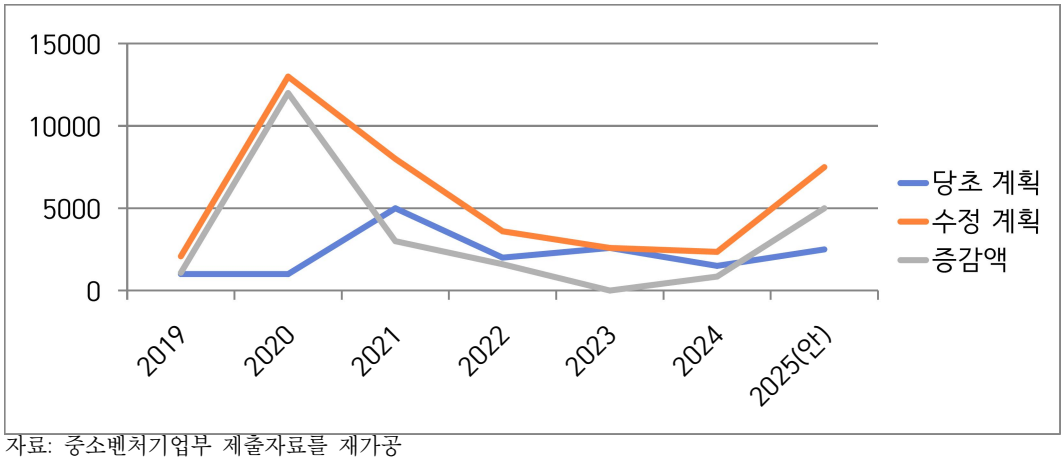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가공

[최근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사업 계획 변경 내역]

연도	구분	계획 변경 사유	변경 규모
2020	국회승인변경 (제1회 추경)	코로나19 직접피해 중소기업 지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고위험 집합금지 업종	3,000억원
	자체변경		3,000억원
	자체변경		3,000억원
	국회승인변경 (제4회 추경)		3,000억원
2021	자체변경	코로나19 피해기업 고용유지 지원 등	2,000억원
	자체변경	물류비 상승 등으로 인한 경영애로 수출 중소기업 지원 등	1,000억원
2022	자체변경	원전 관련 중소기업 지원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에 긴급유동성 공급	1,600억원
2023	자체변경	중소기업 어려운 경영 여건 및 일시적 경영애로·재해자금의 높은 자금수요를 반영하여 내역사업 간 예산변경 (포항재해피해중소기업지원→일시적경영애로)	±1,073억원
2024	자체변경	이커머스 미정산 피해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유동성 공급	800억원
	자체변경	태풍·화재 등 재해중소기업 지원등을 위한 자금 공급	50억원
2025	국회승인변경 (제1회 추경)		5,000억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런데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사업의 변경안은 사실상 2020~2021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수준으로 융자사업의 규모를 크게 확대하려는 것으로, 코로나19 대응 시기 수준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증액할 만큼 현재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한국은행의 월별 기업경기조사(전망)를 살펴보면, 2024년 제조 중소기업의 기업심리지수는 85.6, 업황전망 BSI는 59, 매출전망 BSI는 69로 100에 크게 미달하는 상황임. 2020년 이후 시계열적으로 살펴볼 때, 코로나 19와 같이 급작스러운 하락은 아니나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중소기업은 지속된 내수경기 침체와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의 관세부과,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 등으로 코로나19 시기에 맞먹을 정도로 경기전망이 부진한 상황이고, 고금리·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된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의 파산 신청도 역대 최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20]

20) 매일경제, “코로나 때가 더 나았어요... 쓰러지기 일보 직전 韓” 산업, 일선현장은 더 우울”, 2025.3.26.
매일경제, “철강중기 내우외환... 건설한파·미국 관세에 코로나 때보다 어렵다”, 2025.3.25.

[한국은행 제조 중소기업 기업경기조사(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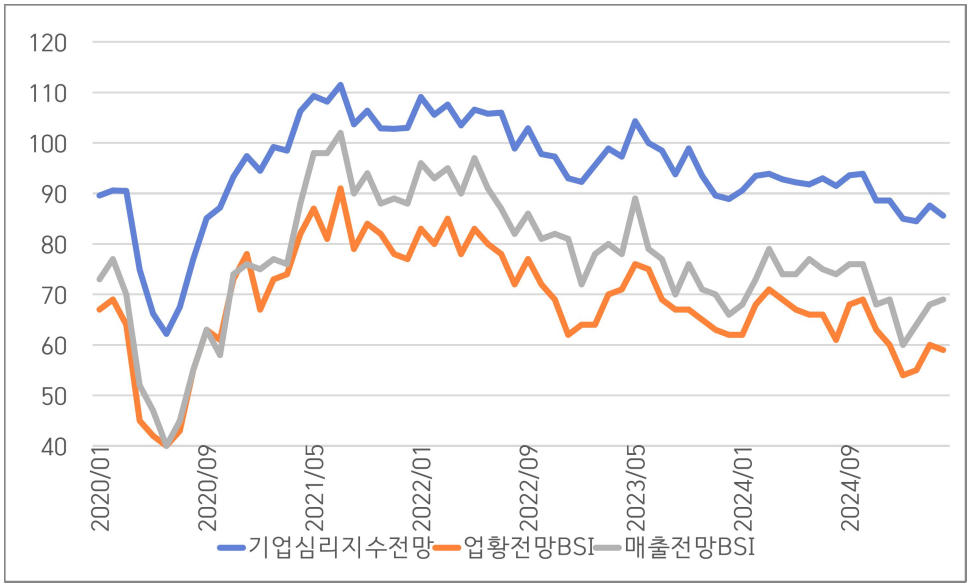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6.1.1.2. 기업경기조사(전망)" 을 재가공

한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출규모가 급증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종료된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부실률이 증가하고 있음. 이 사업의 부실률은 2020년 2.02%, 2021년 2.16%, 2022년 3.42%, 2023년 5.50%, 2024년 6.27%로 상승하고 있음.

[최근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융자 대출 및 부실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신규대출액	208,000	1,300,000	800,000	360,000	257,288	235,000
대출잔액(a)	623,417	1,815,984	2,486,058	2,541,744	2,231,181	1,750,664
부실금액(b)	32,824	36,750	53,684	86,911	122,825	109,718
부실률(b/a)	5.27	2.02	2.16	3.42	5.50	6.27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0~2021년 신규 대출되었던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상환시점이 도래한 상황에서 기존 대출의 부실액 및 부실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신규 대출규모를 확대

뉴시스, "한계왔다 문닫는 중기... 올 파산신청 1745곳 역대 최대", 2024.12.24.

하는 이번 변경안으로 인해 대출잔액이 증가하여 당장의 부실률은 낮아질 것으로 보이나 거치기간(2년)이 종료된 2027년 이후부터 대출부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현재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한 불확실성 및 내수경기 부진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게 신속히 유동성을 공급하는 한편, 대출 부실이 심화되지 않도록 부실리스크 역시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지 출>

6.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연내 집행 가능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등

가. 개 요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내역사업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민생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고정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변경안은 1조 5,659억 8,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21]

[2025년도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사업 변경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도		2025년도				
	당초	수정	당초	현계획(A)	변경안(B)	증감(B-A)	(B-A)/A
소상공인 성장지원	292,498	292,498	265,085	265,085	1,962,421	1,434,500	308.4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	-	-	-	1,565,980	1,565,980	순증

주 1) 2024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2) 2025년도 현계획은 2025년 당초 계획액 대비 변경된 계획액

이 사업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 및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 50만원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충전금액) 카드를 발급하는 한시 신규사업임.

21) 세부사업: 소상공인성장지원(4131-317)(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영세 소상공인이 고정적으로 소요되는 공과금(전기・가스・수도 등) 및 보험료 등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비용경감 지원

◦ (사업내용) 소상공인이 바우처 카드(신용・체크・선불카드)를 등록・발급받아 등록된 사용처에서 50만원 한도액 내에서 사용

- 지원대상: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311만 1,000명 예상)
  *311만 1,000명: 전체 소상공인 765만 7,000명 중 비활동, 정책자금제외업종, 신생기업 등 제외
- 지원액: 국비 100%, 최대 50만원

◦ (사업비) 1조 5,659억 8,000만원 (2025년 한시)

◦ (집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사업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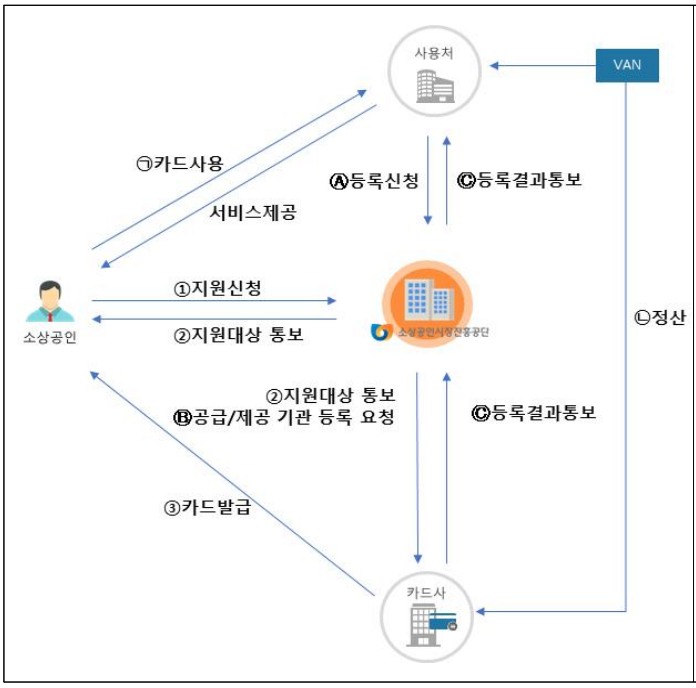

① (크레딧 신청) 소상공인이 바우처를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카드사에 명단 제공

② (사용처 등록) 기존 사용처는 카드사 보유 정보를 통해 일괄 등록하고, 신규 사용처는 심사(업종확인 등)를 통해 새로 등록

③ (크레딧 사용) 사용자 희망에 따라 3종 카드*로 운용(신용・체크・선불)하여, 자유롭게 필요항목에서 지출

* 예시) 기존 보유 신용・체크카드는 크레딧 카드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신용・체크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계좌압류 등)는 선불카드 신규 발급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구체적으로는, ① 약 311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원의 공공요금・보험료 등을 경감하기 위한 충전금액 1조 5,555억원과 ② 부담경감크레딧 사업의 신청・접수 정보시스템 구축 등 104억 6,600만원, ③ 사업수행기관 및 유관 협・단체와의 업무협의에 필요한 국내여비 1,100만원과 사업추진비 300만원으로 구성됨.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사업 세부산출내역]

계획액	산출내역
1조 5,659억 8,000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1조 5,659억 5,900만원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급(1조 5,555억원) · 311만 1,000명 × 50만원 - 신청·접수시스템 구축 및 클라우드 임차 비용 등(104억 6,600만원) · 1식×104억 6,600만원 ◦ 국내여비(220-01): 1,100만원 - 사업수행 기관 및 정보연계, 현장 의견 수렴 등을 위한 협의 (1,100만원) · 3명×2회×4주×8개월×5만 7,000원 ≒ 1,100만원 ◦ 사업추진비(240-01): 300만원 - 사업 시스템 구축 등 관련 협의(150만원) · 10명×5회×3만원=150만원 - 의견수렴을 위한 소상공인 협단체 간담회 등(150만원) · 10명×5회×3만원=150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나. 검토의견

이 사업은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대상, 사업 추진체계 및 사업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고, 신청·접수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연내 집행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은 311만 1,000명의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 및 보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현금카드에 50만원의 보조금(크레딧)을 먼저 지급하고, 소상공인이 해당 현금카드로 공공요금 등을 납부할 때 이미 지급한 보조금에서 차감하여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임.

이 사업은 1조 5,000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고 300만명이 넘는 소상공인을 사업대상자로 예정하고 있으므로, 사업계획이 사전에 면밀히 수립되고 유관 공공기관·민간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소상공인에 대한 대규모 안내·홍보가 이루어지고, 대규모의 신청·선정·발급·정산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되어야 비로소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이 사업은 수혜대상인 소상공인의 선정 기준, 보조대상이 되는 공공요금 및 보험료의 범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공공요금 납부대상 공공기관 및 민간 보험사·카드사와의 사업추진체계, 신청·검증·통보 및 현물 카드 등록·발급의 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전 준비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임.

먼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사업의 수혜대상인 소상공인을 311만 1,000명으로 추산하고 1인당 보조금을 50만원으로 산정하였는데, 기존에 시행했던 소상공인 고정비용 경감 관련 유사 보조사업의 집행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사업의 지원대상 소상공인 311만 1,000명은 전체 활동 중인 개인·법인 사업자(휴업 포함) 중 전년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정책자금제외업종[22]을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추산한 것이고, 지원액 50만원은 소상공인의 월평균 고정비용 추산치 109만원의 절반 가량을 단가로 산정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이 사업은 소상공인 고정비용 경감 관련 유사사업인 2024년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과 2025년 배달·택배비 지원사업과 비교할 때, 지원대상의 매출액 기준이 상향(연매출 1억 400만원→3억원)되고 지원액도 50만원으로 증액하여 설계됨.

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경우, 당초 사업계획 구상 시에는 현재 활동 중이고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126만명에게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사업부진 등으로 인해 매출기준 등 사업대상을 3배 이상이나 확대(3,000만원→6,000만원→1억 400만원)하고, 고지서 등의 증빙절차를 완화하며, 지원금액을 확대(20만원→25만원)하는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였음.

[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내용 변경 내역]

구 분	1차·2차 공고 (2024.2.15.~7.7.)	3차 공고 (2024.7.8.~9.1.)	4차 공고 (2024.9.2.~12.31.)
매출기준	3,000만원 이하	6,000만원 이하	1억 400만원 미만
주요 변경 사항	(직접) 신청자 정보만 입력 (비계약) 한도액 이상 고지서 첨부	(직접) 한전 고객번호 제출 (비계약) 월 1.2만원 증빙인정	(공통) 고객번호 없이 신청 6,000만원 이하 업종제한
신청건수 (누적)	58만 7,000건	75만 8,000건	124만 3,000건
지원건수 (누적)	31만 6,000건	48만 7,000건	86만 7,000건
집행실적 (누적)	632억 4,000만원	974억원	2,258억 1,000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의 경우, 현재 활동 중인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로서 배달·택배비 실적이 있는 개인·법인사업자 67만 9,000명에게 최

22) 현재 정책자금 융자제외대상 업종은 사행성 업종, 유흥업, 금융·보험·법무·회계·세무·부동산 서비스업 등 34개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음.

대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었는데, 2월 17일부터는 배달플랫폼사 및 배달대행사로부터 사전에 배달비 실적이 확보된 소상공인에게만 신속지급이 이루어졌고, 신청·확인을 통해 지급해야 할 나머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4월 21일부터 접수가 개시된 상황임.

[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지원유형별 개요]

구분	신속지급	확인지급
지원대상	배달플랫폼사 및 배달대행사 등 배달비 실적이 사전 확보되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전체의 19%)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자로서, 택배, 배달플랫폼 및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직접배달을 하는 소상공인(전체의 81%)
제출서류	제출서류 없음	택배, 배달플랫폼 등: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택배운송장 등 직접배달: 실제 배달여부 및 배달실적이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신청기간	2025년 2월 17일부터	2025년 4월 21일부터

자료: 소상공인24 홈페이지

유사사업의 집행상황을 살펴볼 때,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은 지원 대상의 범위가 넓은데, 제출서류 면제 등의 신속지급 방식 없이 카드 신청 및 발급이 전제되는 사업의 특성 상 행정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신청률이 예상보다 낮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또한,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에서는 공공요금 등의 경감에 상응하는 소상공인의 의무부담이 있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23] 필요가 있을 것임.

다음,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하위법령 등이 완비되지 않아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지불 가능한 공공요금 등의 범위와 지급·결제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위 법령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25년 1월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경영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3)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사업의 경우, 가격상승 억제, 영업제한 등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공공요금 등을 보조금을 지급하였음. 예컨대,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및 용인특례시는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공공요금 50만원을 지원하였고, 2020~2021년 서울 강남구 및 대전 중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게 공공요금을 50만원 지원한 바 있음,

개정되었고, 2025년 7월부터 개정법률이 시행될 예정임.[24]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요금 지원 기준,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 2025년 2월 입법예고하였으나, 2025년 4월 기준으로 아직 시행령이 공포되지 않은 상황임.

특히, 입법예고된 시행령에서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공공요금 종류에 따라 지원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세부지침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어야 비로소 가능할 것으로 보임.[2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제・개정 이유) - 정부가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따라 경영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공포(2025.1.21.) - 법 개정에 따라, 공공요금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 규정 ◦ (주요내용) - 지원범위: 공공요금의 범위를「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규정 - 지원대상: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영업활동 여부, 매출액, 업종 등을 검토할 수 있음 - 지원방식: 공공요금 지원은 직접지원, 차감, 환급 등의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 지원절차: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개요,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을 공고하여 지원 - 세부지침: 중기부 장관은 공공요금 종류에 따라 지원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운영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지불 가능한 공공요금 및 보험료의 범위를 아직 획정하지 않았고, 한국전력(전기요금), 한국가스공사(가스요금), 지방자치단체(상하수도 요금) 및 근로복지공단(자영업자 고용보험) 등과 구체적인 업무분담 및 협력사항 등을 결정하지 못하였음.

마지막으로, 신청・검증・통보 및 현물 카드 등록・정산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은 300만명이 넘는 소상공인의 지원사업 신청・접수와 카드 등록・사용 후 정산 등의 업무가 발생할 예정으로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인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접수를 위한 정

2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8(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 ① 정부는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따라 경영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5) 이와 같이 공공요금별 지원 세부지침이 마련되더라도, 보험료와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지원 세부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보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104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음.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 추진절차]

①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② 지원대상 검증,통보	③ 부담경감 크레딧 카드 등록 · 발급	④ 크레딧 사용
(소상공인→소진공)	(소진공→소상공인)	소진공(카드사 협업)	(소상공인)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한 사전준비가 미비한 상황임.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 준비가 부재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에서 제안요청서 작성 등 내부절차 및 조달청 계약의뢰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조달청을 통한 경쟁입찰, 낙찰자 선정 및 우선협상대상자 협상과정에서도 통상적으로 1~2개월이 경과되고, 계약 체결 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수행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또한, 민원종합센터 구축・운영(34억 8,400만원), 클라우드 임차비용(12억원) 등은 시스템 구축 완료를 전제로 하는 것임.[26)]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조속히 경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26)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접수시스템 구축 및 클라우드 임차 비용 등'으로 104억 6,600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으로 사업설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민원종합센터 34억 8,400만원,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용역비 20억 4,800만원, 클라우드 임차비용 12억원, 인건비 24억 8,400만원, 홍보비 6억 5,000만원 등을 세부 소요내용으로 설명함. 다만, 이와 같은 세부 예산 편성도 추후 예산집행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임.

7.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 지원대상의 적정성 검토 및 지원 목적 외 사용제한의 검증 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 사업은 소상공인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하고 해당 카드의 이용한도(최대 1,000만원)에 대해 보증하며 6개월 무이자 할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하는 것으로, 2025년 변경안은 1,313억 5,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27)]

[2025년도 소상공인비즈플러스 사업 변경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2025년				
	당초	수정	당초	현계획 (A)	변경안 (B)	증감 (B-A)	(B-A)/A
소상공인 성장지원	292,498	292,498	265,085	265,085	1,962,421	1,434,500	308.4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	-	-	-	-	131,356	131,356	순증

주 1) 2024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2) 2025년도 현계획은 2025년 당초 계획액 대비 변경된 계획액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 사업은 소비심리 위축 및 내수침체가 지속되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단기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1,000만원 한도의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6개월 무이자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임.

구체적으로는 7만명의 소상공인에게 1,000만원 한도로 카드를 발급하여 90%까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할 수 있도록 출연금을 1,260억원을 편성하고, 6개월간 이용한도 최대 1,000만원에 대한 무이자 할부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금을 53억 5,6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1,313억 5,600만원을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하는 것임.

27) 세부사업: 소상공인성장지원(4131-317)(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소상공인 대상 카드 발급을 통해 유동성 지원 및 내수 활성화 ◦ (사업내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발급 지원(이용한도 보증) - 가입대상: NICE 신용점수 595~839점 이내 소상공인 - 지원한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 이자지원: 무이자 6개월 할부 등 혜택 제공 - 보증비율: 90% ◦ (사업비) 1,313억 5,600만원 ◦ (사업수행방식)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 후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보증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 사업 세부산출내역]

◦ 사업출연금(350-02) 1,313억 5,600만원 - (보증재원) 1,260억원 ・1,260억원 = 7만명 × 1,000만원 × 20%(예상부실률) × 90%(보증비율) * 지역신보의 중저신용 특례보증 부실률 26.79% 준용 - (이자비용) 53억 5,600만원 ・53억 5,600만원 = 7만명 × 1,000만원 × 2.66% × 6개월 * 카드사별 조달금리가 다른 점을 고려하여 1년물 국고채 금리로 계산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나. 검토의견

첫째,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 사업은 기존 운영 중인 유사사업인 햇살론카드 및 사업자햇살론 대비 소득제한이 없고 상대적으로 신용점수가 높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해당하는데, 지원대상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 사업은 NICE 신용점수 595~839점(신용등급 4~7등급)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이용가능한 신용카드를 발급하도록 하고, 1,000만원 한도로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려는 사업임. 이는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카드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사업자햇살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신용점수가 높은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융자혜택을 지원하는 것임.

햇살론카드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이용한도가 있는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이에 대해 서민금융진흥원이 100% 보증하는 상품이고,

사업자햇살론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의 저신용・저소득자에게 최대 5,000만원의 대출을 지원하고 이에 대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95% 보증하는 상품임.

햇살론카드 사업은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사업자햇살론은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비교적 고액(최대 5,000만원 이하)의 융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

[햇살론카드, 사업자햇살론 개요]

구 분	햇살론카드	사업자햇살론
사업목적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할부·포인트 등 이용혜택에서 소외된 저신용자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	개인신용평점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서민에게 자금지원
지원대상	①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KCB 700↓, NICE 749↓) ② 가처분소득 연 600만원 이상 ③ 신용카드 미보유자 ④신용관리교육을 일정시간 이수	①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KCB 700↓, NICE 749↓) ② (운영자금) 영업중인 자영업자·농림어업인 ③ (창업자금) 창업교육 이수
대출한도	최대 300만원* *신규발급시 최대 200만원 12개월 성실상환 후 한도증액	운영자금: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최대 5,000만원 고금리 채무 대환자금: 최대 3,000만원
상환방식		5년(1년 거치, 4년 원금균등상환)
보증비율	서민금융진흥원 100% 보증	지역신용보증재단 95% 보증
대출금리	-	최대 10.5%
보증재원의 조달방식	금융회사 출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통한 간접 출연(수지차)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참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사업은 단기 운영자금에 활용할 수 있는 보증상품이 없던 중신용 소상공인(신용등급 4~7등급)에 대한 정책 공백을 해소할 수 있고, 시중 카드사 대비 약 2배 높은 한도 1,000만원을 지원하여 단기 운영자금 마련이 원활하지 않았던 중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함.

신용평점 하위 20%(6등급 이하)을 지원하는 햇살론과 달리, 이 사업은 신용등급 4~7등급인 중신용 소상공인에 대해 소득요건 없이 지원하여 정책서민금융을 두텁게 보장할 수 있고, 대출시점부터 이자 비용이 소요되는 기존 보증부대출 등과 달리, 무이자 할부 혜택으로 단기 자금 융통에 필요한 금융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이용자의 대출 규제와 무관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되는 장점이 있음.

다만, 소득요건도 고려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신용이 높은 소상공인에 대해 사업자의 담보 없이 정책적으로 대출 보증을 제공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지 지원대상의 적정성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중소벤처기업부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소상공인이 비즈플러스 카드의 무이자 할부를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 제한 범위를 면밀히 설계하고 결제액 사용처의 사후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카드 이용한도 1,000만원 내에서 사업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면서, 지원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흥·오락업에 대한 사용처 제한 및 기타 현금서비스·카드론 등을 미지원할 계획임.

이 사업은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사업상 필요한 지급·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유흥·오락 등 사행성 업종에 대한 사용처 제한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중소벤처기업부는 유흥·오락업 등을 예시로 하였으나 구체적인 업종을 규정하지는 않았는데, 정부부처 업무용 법인카드(클린카드)의 의무적 제한업종[28] 보다 제한업종을 추가하여 소상공인이 영업활동이 아닌 생활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규제할 수 있도록 제한업종을 면밀히 규율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비즈플러스 카드를 통한 무이자 할부 결제 내역에 대하여 목적 외 사용으로 의심되는 이상징후를 포착하는 경우 소명절차 및 무이자혜택 취소 등의 제재 역시 함께 마련함으로써, 정부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임.

---

28) [클린카드 의무적 제한 업종]
1. 유흥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 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2. 위생업종: 이용실, 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네일아트 등 대인서비스
3. 레저업종: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헬스클럽 등
4.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5. 기타업종: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5.1., p.175.)

8. 상생페이백: 행정비용 발생 등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등

가. 개 요

'상생페이백' 사업은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소비진작 및 내수 활성화를 촉진하는 신규사업으로, 2025년도 변경안은 1조 3,7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29]

[2025년도 상생페이백 사업 변경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도		2025년도				
	당초	수정	당초	현계획(A)	변경안(B)	증감(B-A)	(B-A)/A
시장상권경영 혁신지원	420,669	420,669	465,205	465,205	1,899,705	1,434,500	308.4
상생 페이백	-	-	-	-	1,370,000	1,370,000	순증

주 1) 2024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2) 2025년도 현계획은 2025년 당초 계획액 대비 변경된 계획액

상생페이백 사업은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점포에서 카드로 결제한 경우 2024년 대비 월평균 카드 소비액 대비 증가한 월별 카드소비액의 20%를 다음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사업임.

[상생페이백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소비진작 및 내수 활성화 촉진
◦ (사업내용) 2024년 대비 월평균 소비증가분의 20%를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 환급액: 2024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 대비 증가한 월 카드소비액의 20%
- 대상소비: 부적합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카드) 30억원 이하 점포에서의 국내 카드 사용액
*부적합 소비: 명품, 유흥업소, 대형마트 차량 등
- 환급방식: 다음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 환급한도: 1인당 30만원, 월 10만원
◦ (사업비) 1조 3,700억원
◦ (사업수행방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보조사업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구체적으로는, ① 약 600만명의 일반 국민에게 평균 22만원의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기 위한 환급액 1조 3,200억원, ② 1조 3,200억원의 디지털온누리상품권 발행에

29) 세부사업: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4154-304)(소상공인정책관)

필요한 발행 수수료 76억 5,600만원, ③ 상생페이백 관련 시스템 구축 및 홍보비 423억 2,800만원, ④ 사업수행기관 및 유관 협·단체와의 업무협의에 필요한 국내여비 1,200만원과 사업추진비 400만원으로 구성됨.

[상생페이백 사업 세부산출근거]

계획액	산출내역
1조 3,700억원	◦ 민간경상보조(320-01): 1조 3,699억 7,300만원 - (페이백) 22만원 x 600만명 = 1조 3,200억원 - (디지털 온누리발행수수료) 1조 3,200억원 x 0.58% = 76억 5,600만원 - (시스템구축·홍보비 등) 423억 2,800만원 ◦ 사업추진비 (240-01): 400만원 ◦ 국내여비 (220-01): 1,200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나. 검토의견

상생페이백 사업은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에 비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점포·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 등에 대한 소비 증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이미 시스템이 완비된 소득공제제도와 달리 사업 신설에 따른 상당한 행정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임.

상생페이백 사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점포에서의 카드 사용액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월 카드소비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려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사업을 통해 600만명이 1인당 약 22만원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환급 받을 것으로 산출하였음.

이 사업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1조 3,700억원의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려는 것인데, 국세청의 연말정산을 통한 신용카드 소득공제(2024년 조세지출 규모 4조 1,183억원)를 통해서도 이와 유사한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와 더불어 이 사업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세청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포함한 연말정산 제도를 통해 당해연도 소비액 및 전년도 대비 소비증가액에 대해 이듬해 소득세를 환급하고 있으며,[30] 정부는 소득공제

30) 현행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임.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30%,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15%를 적용하고, 2024년 한시적으로만 적용되는 2023년 대비 20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10%의 공제율이 적용됨. 또

요건 신설, 공제율 및 공제한도 상향 등을 통해 내수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현행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

<table>
<tr><th colspan="2">소득공제율</th><th colspan="4">공제한도</th></tr>
<tr><th>구분</th><th>공제율</th><th colspan="2">구분</th><th>7천만원 이하</th><th>7천만원 초과</th></tr>
<tr><td>❶ 신용카드</td><td>15%</td><td colspan="2" rowspan="2">기본공제 한도</td><td rowspan="2">300만원</td><td rowspan="2">250만원</td></tr>
<tr><td>❷ 현금영수증・직불카드</td><td>30%</td></tr>
<tr><td>❸ 전통시장
※ 2023년 4.1 ~ 12.31. 사용분</td><td>40%
(50%)</td><td rowspan="4">추가공제한도</td><td>전통시장</td><td rowspan="3">300만원</td><td rowspan="2">200만원</td></tr>
<tr><td>❹ 대중교통
※ 2023년 1.1 ~ 12.31. 사용분</td><td>40%
(80%)</td><td>대중교통</td></tr>
<tr><td>❺ 도서・신문・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 등
※ 2023년 4.1 ~ 12.31. 사용분</td><td>30%
(40%)</td><td>도서 등</td><td>-</td></tr>
<tr><td>❻ 2023년 대비 20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
※ 2024년 사용금액 분에 한시적으로 적용</td><td>10%</td><td>2023년 대비 소비증가분</td><td colspan="2">100만원</td></tr>
</table>

정부는 연초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① 소비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에 소비를 전년보다 5% 이상 늘리면 100만원의 별도 한도 내에서 20%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② 소상공인의 매출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인 영세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2025년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서는 2025년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기존 15%에서 30%로 상향하겠다는 내용의 소득공제 제도 개편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31][32]

전년 대비 소비증가분 및 영세소상공인 점포 소비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방안은 소비회복 촉진 및 소상공인 매출기반 확대라는 측면에서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상생페이백 사업의 정책목적과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보임.

한,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기본 공제한도를 차등하여 적용하고, 2023년 대비 20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한도가 별도로 적용됨.

31) 대한민국 정부, “2025년 경제정책방향”, 2025.1.1., p.8., p.25.

32) 다만, 2025년 4월 기준으로,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의 소득공제 개편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황임.

그러나 상생페이백 신규사업은 소비진작 대상을 특정할 수 있어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에 비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점포·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 등에 대한 소비 증진 효과가 있다는 장점이 있음.

상생페이백 사업은 카드사 자료를 바탕으로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서 지원적합 업종인 점포를 분류하여 지원 대상의 점포를 세분화하여 특정할 수 있고, 소비증가분의 20%를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여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이 가능한 일부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국세청 전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을 바탕으로 간이과세자(연 매출 1억 400만원)를 특정하는 것은 용이하나 매출액 기준을 변경하거나 업종을 제한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고, 연말정산을 통한 근로소득세 공제는 소득세 환급액의 소비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곤란한 측면이 있음.

다만, 상생페이백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사용자의 신청·등록과정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막대한 행정비용이 소요된다는 단점도 존재함.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존의 국세청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체계 및 홈택스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어 전국민이 별도의 페이백 신청, 카드 등록 등이 필요하지 않고 신규 정보시스템 개발 등의 행정비용이 크지 않다는 장점이 있으나, 상생페이백 사업은 신청·등록과정에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33] 사업과정에서 사업수행기관 및 유관기관의 대규모 행정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됨.[34]

[상생페이백 사업 절차]

① 상생페이백 신청 개인카드 사용	② 전년도 결제금액 추출	③ 결제액 비교 및 환급액 추출	④ 환급액 지급 및 후속관리
전 국민	카드사 →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협회	소진공, 운영기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33) 이 사업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상생페이백을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개인카드를 등록하도록 하고, 환급액을 수령하기 위해 디지털온누리상품권 앱 다운로드·가입, 사용카드를 등록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디지털 정보격차 및 신청과정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 상생페이백 신청이 당초 예상 대비 저조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소비자는 상품소비 및 결제과정에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여부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워 상생페이백을 고려한 소비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소비증대 효과가 계획대비 크지 않을 우려가 있음.

34)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지원 적합업종 점포를 선별하고 개·폐업에 따른 점포목록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며, 매달 신청자별로 당월 카드 결제액과 전년 평균 카드결제액을 비교하여 지원대상을 선별하고 대상여부 및 환급액 관련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고, 환급액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을 대상자별로 건별로 신규 발행하고 관리하여야 함.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사실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사업을 수행하는데 발생하는 행정비용을 축소하고 소비자 불편을 완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상생페이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전 준비가 다소 부족한 상황이고, 상생페이백 신청·접수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실제 운영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음.

상생페이백 사업은 1조 3,700억원의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 점포의 획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카드사 및 여신금융협회 등과의 추진체계 마련,[35] 카드결제액 자료를 통한 환급여부 결정 및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의 발급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전 준비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임.

특히 상생페이백 사업은 사실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 및 접수를 수행하여야 하고, 카드결제액 자료를 매달 확인하여 환급여부를 결정하고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을 발급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임.

정부는 여신금융협회 등의 실적 시스템이나, 디지털온누리상품권 앱을 기능·개선할 계획으로 정보화전략계획(ISP) 등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나, 이 사업과 관련 있는 각종 시스템의 연계를 위해 수반되는 데이터·시스템 연계분석 등이 이루어진 바 없고, 사업의 내용 상 단순한 시스템 기능개선 수준을 넘어 시스템 고도화 차원의 설계·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36]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상생페이백 사업을 실제 추진하는 경우에는 대국민 홍보 및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내수경기 활성화에 시의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음.

---

35) 상생페이백의 신청·접수, 소비대상 점포의 목록 및 갱신, 소비증가분의 확인·검증·환급여부의 결정,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의 발급 등의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어야 함

36)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페이백 시스템과 관련하여, 10억원 이상의 정보시스템 구축 시 사전에 수립하여야 하는 정보화전략계획(ISP)이나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ISMP)을 수립한 바 없는 상황임.

9. 온누리상품권 발행: 당초 계획 편성과 달리 사업의 임의 변경 지양 필요

가. 개 요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은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변경안은 당초 기금운용계획 대비 645억원(16.5%) 증액된 4,552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음.[37]

[2025년도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 변경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도		2025년도				
	당초	수정	당초	현계획(A)	변경안(B)	증감(B-A)	(B-A)/A
시장상권경영 혁신지원	420,669	420,669	465,205	465,205	1,899,705	1,434,500	308.4
온누리상 품권 발행	351,348	351,348	390,748	390,748	455,248	64,500	16.5

주 1) 2024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2) 2025년도 현계획은 2025년 당초 계획액 대비 변경된 계획액

이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총괄적인 사업계획 수립·운영을 담당하고 있고, 2025년 2월까지는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은 한국조폐공사,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비즈플레이·하나은행,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KT·비씨카드에 위탁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었으나 2025년 3월부터 지류상품권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모바일·카드형 통합) 모두 한국 조폐공사에서 발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변경안은 경기 악화, 매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위축된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5월부터 9월까지 디지털온누리상품권 결제 시 10%를 환급하는 사업으로, 5개월 간 월 129억원을 환급하기 위해 총 645억원이 편성되었음.

37) 세부사업: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4154-304)(소상공인정책관)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 세부산출근거]

2025년 당초 계획		2025년 변경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907억 4,800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3,907억 4,800만원** - (비할인판매, 지류) 224억원 0.8조원×2.8%(발행・운영수수료) - (5% 할인판매, 지류) 702억원 0.9조원×(2.8%+5%) - (5% 할인판매, 디지털) 1,283억 4,000만원 2.3조원×(0.58%+5%) - (10% 할인판매, 디지털) 1,587억원 1.5조원×(0.58%+10%) - (기타운영비) 111억 800만원	4,552억 4,800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4,552억 4,800만원** - (비할인판매, 지류) 224억원 0.8조원×2.8%(발행・운영수수료) - (5% 할인판매, 지류) 702억원 0.9조원×(2.8%+5%) - (5% 할인판매, 디지털) 1,283억 4,000만원 2.3조원×(0.58%+5%) - (10% 할인판매, 디지털) 1,587억원 1.5조원×(0.58%+10%) - (기타운영비) 111억 800만원 - **(신규) (10% 환급행사) 645억원** **월129억원×5개월**

나. 검토의견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과 관련하여 국회가 심사・확정한 기금운용계획과 달리 온누리상품권의 추가할인 및 환급행사를 추진하였는데,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이후에는 사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 관련 2025년도 당초 기금운용계획은 ① 지류형상품권은 비할인 또는 5% 할인, ② 디지털 상품권은 5% 또는 10% 할인하는 등 총 5조 5,000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한 계획액 3,907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4년 말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거쳐 확정(2024.12.10.)되었음.

그러나, 정부는 2025년이 시작하자마자 당초 기금운용계획에서 편성된 것과 달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을 상향하고 결제액 환급행사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2025.1.1.)」을 발표하였고, 국회 심사내용과 달리 집행하였음.

구체적으로는, ① (할인율 상향) 2025년 1~2월(1.10.~2.10.)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을 15%로 상향하였고,[38] ② (결제액 환급)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결제액의 일부를 다시 환급하였는데, 1~2월(1.10.~2.10.)에는 결제액의 15%를 환급하고,[39] 3월(3.17.~28.)에는 결제액의 20%를 환급하였음.[40]

2025년 4월 16일 기준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은 1조 1,457억원으로, 이 중 특별 판매기간 동안 판매실적은 1조 327억원임. 특히, 특별 판매기간 동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8,453억원이 판매되었는데, 당초 계획보다 할인율을 5%p 높인 디지털 15% 할인 판매가는 8,393억원으로 특별할인판매 기간의 판매 물량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또한 2025년 1~2월 결제액 15% 환급행사 시 154억 9,000만원이 지급되었고, 3월 20% 환급행사 시 130억 2,000만원이 지급되어 총 258억 1,000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이 환급되었음.

---

38) [2025년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개요]
○ (할인기간) 2025.1.10.(금) ~ 2025.2.10.(월)
○ (할인율・한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할인판매율을 상향(10→15%) (지류형 상품권은 제외)
○ (할인구매한도) 1인당 월 200만원
○ (할인규모) 예산 소진시까지

[2025년 할인판매행사 기간 온누리상품권 판매현황]

(단위: 억원)

구분	지류	모바일	카드형	합계
비할인	739	-	70	809
5% 할인	1,135	-	-	1,135
10% 할인	-	-5	-6	-11
15% 할인	-	3,330	5,063	8,939
소계	1,874	3,326	5,127	10,327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39) [2025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5% 환급행사 개요]
○ (행사기간) 2025.1.10.(월) ~ 2025.2.10.(금)
○ (행사내용) 행사 기간 동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15%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다시 환급
- 결제 누적액 최소 5,000원 이상, 회차별 최대 2만원, 최대 8만원 한도 지급
- 결제금액의 15%를 산출한 금액에서 1,000원 단위로 환급
○ (환급액) 154.9억원

40) [2025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20% 환급행사 개요]
○ (행사기간) 2025.3.17.(월) ~ 2025.3.28.(금)
○ (행사내용) 행사 기간 동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다시 환급
- 결제 누적액 최소 5,000원 이상, 회차별 최대 2만원 한도 지급
- 결제금액의 20%를 산출한 금액에서 1,000원 단위로 환급
○ (환급액) 103.2억원

[2025년 온누리상품권 유형별 판매현황]

(단위: 억원)

구분		계획액	판매실적		
			전체 판매 실적	특별판매 기간 (1.10.~2.10.)	1~4월 특별판매 기간 제외
지류	비할인	8,000	1,112	739	373
	5% 할인	9,000	2,916	1,135	1,781
	10% 할인	-	-	-	-
	15% 할인	-	-	-	-
	소계	17,000	4,027	1,874	2,153
디지털	비할인	-	227	70	157
	5% 할인	23,000	-	-	-
	10% 할인	15,000	2,011	-10	2,021
	15% 할인	-	8,299	8,393	-94*
	소계	38,000	10,537	8,453	2,084
계		55,000	14,565	10,327	4,238

주) 온누리상품권 환불 시에는 환불액을 음의 값(-)으로 표기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을 상향조정하거나 환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사업 내용의 변경을 넘어서서 온누리상품권 발행 가능 총량이 축소되는 효과가 발생함.[41]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시 온누리상품권 발행목표를 5조 5,000억원으로 설정하였으나, 3개월이 지난 4월 현재 발행가능규모를 3조 5,000억원(지류형 1조 3,000억원, 디지털 2조 2,00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음.

즉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친지 1개월도 지나지 않아 2025회계연도가 시작하는 시점에서 국회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적이 없는 내용으로 사업을 임의로 변경하여, 결과적으로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 초래된 것임.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온누리상품권의 환급행사를 추가하겠다는 내용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제출한 것인바, 향후 국회 심사내용과 달리 임의로 변경·집행하여 국회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형해화하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음.[42]

41) 할인율 5%의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을 10%로 상향 조정하는 경우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의 발행가능규모는 약 절반으로 감소하고, 할인율 10%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을 15%로 상향 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형의 온누리상품권의 발행규모는 당초 계획의 약 67% 수준으로 감소하게 됨.

42) 중소벤처기업부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10%의 환급행사를 개최하겠다고 설명하였는데, 향후 집행과정에서 환급행사 기간을 변경하거나 환급률을 임의로 상향하는지 사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10. 희망리턴패키지: 지방자치단체 유사 폐업지원 사업과의 연계 및 사업관리 강화 필요

가. 개 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개선하고, 폐업부담 경감 및 신속한 재기를 위해 경영개선지원, 원스톱폐업지원, 재취업지원, 재창업지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변경안은 당초 기금운용계획 대비 493억 8,800만원(20.2%) 증액된 2,943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음.[43]

[2025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변경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2025년				
	당초	수정	당초	현계획 (A)	변경안 (B)	증감 (B-A)	(B-A)/A
소상공인 재기지원	166,308	179,594	274,806	274,806	324,194	49,388	18.0
희망리턴 패키지	151,300	168,386	245,010	245,010	294,398	49,388	20.2

주 1) 2024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2) 2025년도 현계획은 2025년 당초 계획액 대비 변경된 계획액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원스톱폐업지원, 특화취업지원 및 재기사업화지원 사업으로 구성됨.

①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은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 폐업지원을 편리하게 지원하는 것이고, ② 특화취업지원 사업은 전직교육, 직업체험 등 취업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전직장려 및 취업연계수당을 지급하며, 채용연계를 위해 지역별 파트너쉽을 구축하는 것이며, ③ 재기사업화지원 사업은 경영위기 및 재창업 희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전 경영진단, 사업화교육 및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재기사업의 성공률을 높이려는 것임.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스톱폐업지원 중 점포철거비지원을 425억원, 재기사업화지원을 69억원 추가하는 내용으로 당초 기금운용계획 대비 494억원 증액된 2,944억원이 편성되었음.

43) 세부사업: 소상공인재기지원(4131-319)(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2025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변경안 세부 산출내역]

2025년 본예산		2025년 추경안(증액분)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450억 1,000만원	○[원스톱폐업지원] **1,332억원** -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을 원스톱으로 폐업 지원 ① 사업정리컨설팅: 12,000명×90만원 **② 점포철거비지원 : 30,000명×400만원** ③ 법률자문 : 1,500명×60만원, ④ 채무조정 : 750명×200만원 ○[특화취업지원] 380.6억원 - 전직교육, 직업체험 등 교육과정(기초,특화) 운영 및 고용유지율 제고를 위한 전직장려수당 지원하고, 채용연계를 위한 지역별 파트너쉽 구축 ① 취업교육 : 10,400건×250만원 ② 전직장려수당 8,000건×100만원 ③ 국민취업연계수당 : 2,000명×120만원 ④ 지역별파트너쉽구축 : 17개소×1억원 ○[재기사업화지원] **737.5억원** - 경영위기 및 재창업 희망 소상공인 대상으로 사전 진단 확대 및 사업화 기본교육, 사업화 지원 등 사업화 성공률 제고 ① 경영진단 : 5,000건×125만원 ② 사업화교육 : 6,000건×125만원 ③ 사업화지원 : 2,500건×2,000만원 ④ 사업화PM지원 : 2,500건×400만원	2,943억 9,800만원	○[원스톱폐업지원] **1,757억원** -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을 원스톱으로 폐업 지원 ① 사업정리컨설팅: 12,000명×90만원 **② 점포철거비지원 : 40,613명×400만원** ③ 법률자문 : 1,500명×60만원, ④ 채무조정 : 750명×200만원 ○[특화취업지원] 380.6억원 - 전직교육, 직업체험 등 교육과정(기초,특화) 운영 및 고용유지율 제고를 위한 전직장려수당 지원하고, 채용연계를 위한 지역별 파트너쉽 구축 ① 취업교육 : 10,400건×250만원 ② 전직장려수당 8,000건×100만원 ③ 국민취업연계수당 : 2,000명×120만원 ④ 지역별파트너쉽구축 : 17개소×1억원 ○[재기사업화지원] **806.9억원** - 경영위기 및 재창업 희망 소상공인 대상으로 사전 진단 확대 및 사업화 기본교육, 사업화 지원 등 사업화 성공률 제고 ① 경영진단 : 5,500건×125만원 ② 사업화교육 : 6,250건×125만원 ③ 사업화지원 : 2,750건×2,000만원 ④ 사업화PM지원 : 2,750건×400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나. 검토의견

점포철거비 사업은 지속적인 지원단가 상승 및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과의 중복 수혜 가능성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요비용의 적정성 평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유사사업 지원정보 사전 공유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점포철거비 사업은 임대차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비용을 평당 20만원, 최대 40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기금운용계획에는 1,20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는 425억원이 증가한 1,62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중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개요]

◦ (사업개요)
- 목적: 폐업 시 사업정리비용(원상복구, 철거 등)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소요비용 최소화
- 대상: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임대차 점포에 한정)
- 지원내용: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 1평(3.3m^2) 당 20만원, 최대 400만원 지원
- 지원 제외: ①~⑥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①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② 점포철거비 지원 기수혜자, ③ 유사사업 수혜자, ④ 주거용도 건축물, ⑤ 사업장 이전, ⑥ 지원 제외업종
  ※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점포철거비 지원 절차]

① 신청서류 제출(1차)	② 신청서류 검토	③ 점포철거	④ 정산서류 제출(2차)	⑤ 정산서류 검토	⑥ 비용지급	⑦ 현장점검
소상공인 (온라인)	소진공 (재기플래너)	소상공인	소상공인 (온라인)	소진공 (재기플래너)	소진공 →소상공인	공단 (재기플래너)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의 폐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폐업에 수반되는 비용을 경감하여 취업 또는 재창업으로 신속히 재기지원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지속·확대할 필요성은 인정되나,[44] 이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도덕적 해이가 유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사전·사후적 점검을 강화하여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점포철거비 사업의 지원규모가 빠르게 확대되어 실제 사업수행 비용에 비해 지원액이 클 경우 비용 과다청구 유인이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철거비 지원사업을 사후점검하여 향후 소상공인의 자부담 신설 또는 철거비용 단가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점포철거비 사업의 1평당 지원단가는 2020~2022년 8만원, 2023~2024년 13만원, 2025년 2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최대한도 역시 2020~2021년 200만원, 2022~2024년 250만원, 2025년 400만원으로 상승하였음.

44) 2024년 점포철거비 사업의 수요가 당초 예상 대비 증가함에 따라, 2024년 10월에 이미 예산이 모두 소진되었고 목표 2만 2,000건의 134%인 2만 9,533건을 지원하였음.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의 지원액 및 지원 건수]

(단위: 건, 백만원, 기준일: 2025.4.11.)

연도	1평당 지원단가	최대 한도	총지원액	목표지원건수	실제지원건수
2020	8만원	200만원	18,969	16,700	11,535
2021	8만원	200만원	23,508	9,750	15,679
2022	8만원	250만원	30,487	14,500	16,323
2023	13만원	250만원	48,852	20,000	22,404
2024	13만원	250만원	62,439	22,000	29,535
2025	20만원	400만원	-	30,000	1,244

주) 2025년 4월 11일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건수는 2만 6,394건이고, 지원완료 건수는 1,244건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은 2만 9,533건 수행되었고, 1인당 평균 지원액은 211만 4,000원이고, 1평당 평균 지원액은 10만 1,000원임.

[2024년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의 시·도별 지원실적]

(단위: 건, 천원)

구 분	지원건수	지원금액	1건당 평균 지원금액	1건당 평균 점포규모(평)	1평당 평균 지원액
서울	5,163	10,034,385	1,944	22.42	104
부산	2,387	4,994,170	2,092	26.18	100
대구	2,340	5,120,536	2,188	27.57	102
인천	1,699	3,497,733	2,059	23.92	105
광주	892	1,946,648	2,182	30.29	93
대전	957	2,082,319	2,176	27.52	100
울산	810	1,782,645	2,201	30.21	94
경기	7,060	14,540,377	2,060	24.34	103
강원	556	1,234,832	2,221	28.94	95
충북	1,003	2,214,306	2,208	27.86	99
충남	870	1,923,425	2,211	27.59	97
경북	1,387	3,149,902	2,271	29.30	96
경남	2,149	4,770,033	2,220	27.45	100
전북	1,185	2,748,989	2,320	30.19	97
전남	553	1,261,030	2,280	32.69	87
제주	243	557,467	2,294	34.42	83
세종	279	580,535	2,081	22.16	110
합계	29,533	62,439,332	2,114	26.04	10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은 1인당, 1평당 최대한도를 적용받는 소상공인과 최대한도에 비해 낮은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으로 나뉘는 것으로 나타남. 구체적으로는, 전체의 41%에 해당하는 1만 2,190건은 1인당 지원액이 250만원이고, 나머지는 1인당 지원액이 평균 158만원임. 또한 전체의 38%에 해당하는 1만 1,396건은 1평당 지원액이 13만원이고, 나머지는 1평당 지원액이 평균 7.9만원임.

2025년부터 평균 지원단가가 1평당 20만원으로, 최대지원한도가 40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실제 철거·원상복구 소요비용에 비해 지원한도가 큰 경우 점포철거 소상공인과 철거업체는 비용을 과다청구할 유인이 발생할 수 있음.[45] 2025년 지원사업이 종료된 이후 1인당·1평당 최대한도 요건에 해당하는 비율이 전년 대비 얼마나 감소하였는지 사후적으로라도 지원현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만일 소상공인의 과다청구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소상공인의 자부담 설정 또는 철거·원상복구 소요비용의 적정성 사후평가 등이 수반되어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5년 사업 종료 후 지원사업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차년도 사업부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둘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간 점포철거비 관련 지원금의 중복 수령을 차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신청자 정보 사전공유 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

소상공인의 폐업 지원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하는 이 사업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소상공인의 사업정리·폐업지원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예컨대 2024년 서울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새 길 여는 폐업지원 사업'으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였고,[46] 경기도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통해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으로 경기도 소재 소상공인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음.[47]

중소벤처기업부의 '점포 철거비' 지원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폐업지원·사업정리 사업 모두 유사사업의 수혜자에 대해서는 지원제외 대상으로 하고 적발 시 사후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방자치단체는

45) 점포철거의 시장단가는 점포의 소재 위치, 층수, 엘리베이터 유무, 배관·가스 등 설비의 이전 유무 등에 따라 1평당 10만원~50만원으로 상이한 상황임.

46) 서울시, "2024년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2024.7.1.

47)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공고", 2024.8.22.

신청·접수 단계에서 관련 사업 지원실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지 않고 있음.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유사사업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이력을 조회하고 있는 상황임.[48]

2020~2024년 연도별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의 부정수급 환수실적을 보더라도, 2020~2022년은 전무하고 2023년 및 2024년 각 1건에 불과한데,[49] 총 9만 5,474건의 지원실적 중 부정수급 적발·환수가 2건(0.002%)밖에 되지 않은 것은 부정수급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통해 점포철거비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점포철거비 관련 지원금 중복 수령 여부를 사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기존 점포 철거비 사업에 대해서도 중복 수령금에 대한 사후점검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4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재)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2021~2024년),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2024년), 서울신보·울산신보(2021년) 등 유관기관 요청에 따라 유사사업 중복수혜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의견임.

49) 2023년: 1건(24년 적발: 환수 조치완료 ➪ 사유: 허위서류 제출
2024년: 1건(24년 적발: 환수 조치완료 ➪ 사유: 동일장소 재창업

환경노동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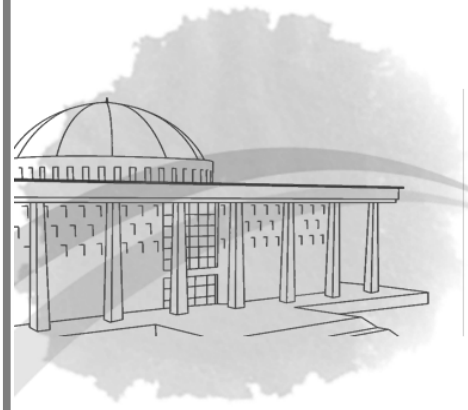

환경부

Ⅰ. 개 관

1.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추경안의 총수입은 2조 5,966억원으로, 예산은 1조 5,837억원, 기금은 1조 129억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함.[1)]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추경안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 (현계획)(A)	추경안 (변경안)(B)	증감(B-A)	(B-A)/A
예 산	15,645	15,837	15,837	-	-
기 금	11,020	10,129	10,129	-	-
합 계	26,665	25,966	25,966	-	-

주 1) 2024년도 본예산 중 기금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2) 2025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문의 : 이동현 예산결산조사관 gerbera@assembly.go.kr (02-6788-5680)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추경안의 총지출은 14조 1,317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753억원(1.26%) 증가함. 예산은 13조 1,592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753억원(1.35%) 증가한 반면, 기금은 9,725억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함.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추경안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 (현계획)(A)	추경안 (변경안)(B)	증감(B-A)	(B-A)/A
예 산	125,059	129,839	131,592	1,753	1.35
기 금	10,474	9,725	9,725	-	-
합 계	135,534	139,564	141,317	1,753	1.26

주 1) 2024년도 본예산 중 기금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2) 2025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나.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세입추경안은 총 5개 회계(일반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구성되며, 본예산 대비 1,753억원(2.3%) 증가함.

[2025년도 환경부 세입추경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일반회계	139	652	652	-	-
환경개선특별회계	70,476	73,468	75,221	1,753	2.39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073	1,879	1,879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7	127	127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6	21	21	-	-
합계	72,711	76,147	77,900	1,753	2.30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세출추경안은 총 5개 회계(일반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구성되며, 본예산 대비 4,062억원(1.9%) 증가함.

[2025년도 환경부 세출추경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일반회계	78,748	81,873	83,626	1,753	2.14
환경개선특별회계	70,476	73,468	75,221	1,753	2.39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0,670	32,007	32,007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8,974	25,967	26,523	556	2.1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80	824	824	-	-
합계	199,248	214,139	218,201	4,062	1.90

주) 총계 기준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증액편성된 사업은 총 3개 세부사업으로, 총 증액규모(총계 기준)는 1,752억 9,400만원임.[2)]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재해대책비’ 사업은 재해발생지역에 대한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1,120억원을 증액하였음.

‘국립공원공단 출연’ 사업은 국립공원의 보전 및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것으로, 76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음.

또한,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도시침수 예방 및 하수의 배수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556억 4,400만원을 증액하였음.

[2025년도 환경부 추경안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4년도 예산	2025년도			
		본예산 (당초)(A)	추경안 (변경안)(B)	증감(B-A)	(B-A)/A
[환경개선특별회계]					
재해대책비	50,000	50,000	162,000	112,000	224.0
국립공원공단 출연	229,518	222,728	230,378	7,650	3.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하수관로 정비	1,281,593	1,626,418	1,682,062	55,644	3.4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Ⅱ. 사업별 검토

【환경개선특별회계】

<세 출>

1. 재해대책비: 조속히 피해복구 계획을 확정하여 신속한 집행 필요

가. 개 요

'재해대책비' 는 산불 등으로 인한 환경기초시설, 국립공원 등의 재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통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추가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500억원 대비 1,120억원(224.0%) 증액된 1,620억원이 편성되었음.[3)]

[2025년도 재해대책비 추경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재해대책비	50,000	50,000	162,000	112,000	224.0

[2025년 재해대책비 추경안 세부내역]

(단위: 억원)

2025년 예산		2025년 추경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00	가. 재해복구 (500억원) ○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 50억원 **○ 자치단체경상보조(310-01) : 350억원** ○ 자치단체자본보조(310-03) : 100억원	1,620	가. 재해복구 (1,620억원) ○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 50억원 **○ 자치단체경상보조(310-01) : 1,470억원** ○ 자치단체자본보조(310-03) : 100억원

자료: 환경부

3) 세부사업: 재해대책비(7140-300)(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1,120억원은 경북·경남·울산 산불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육상쓰레기 처리비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경상보조로 편성된 금액임. 구체적으로, 본예산 및 이전용을 통하여 확보한 330억원과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1,120억원을 합산한 총 1,450억원을 국고 부담률 100%로[4]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려는 것임.

[2025년 재해대책비 추경안 산출내역]

가. 재해복구
○ 자치단체경상보조 - 재난 폐기물 처리비용(1,450억원) (본예산 330억원 + 추가경정예산 1,120억원)
- 주택·농업시설 재난폐기물 처리비용(국가재난정보시스템 집계) : 1,400억원
- 공장 등 재난폐기물 처리비용(국가재난정보시스템 집계 외) : 50억원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주택·농업시설 재난폐기물 처리비용(1,400억원)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된 금액을 통하여 산정하였고, 공장 등 재난폐기물 처리비용(50억원)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집계 외 금액으로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료를 받아 산정하였음.

[재해대책비 처리비용 산출 근거]

○ 주택·농업시설 재난폐기물 처리비용 (1,400억원) : NDMS 집계(4. 1. ~ 4. 15.) 내역을 고려하여 산정

지 역	합 계		건설폐기물		혼합폐기물		슬레이트		기 타	
	발생량(톤)	처리비(백만원)	발생량(톤)	단가(원)	발생량(톤)	단가(원)	발생량(톤)	단가(원)	발생량(톤)	단가(원)
합 계	1,551,790	140,000	1,406,556	-	129,266	-	4,766.5	-	11,201	
안동시	482,024	43,476	435,000	75,150	43,954	206,727	1,959	645,000	1,111	392,000
영덕군	473,656	41,901	429,566	75,150	42,938	206,727	1,152	645,000	-	392,000
영양군	30,497	3,528	26,613	76,350	568	280,954	144	645,000	3,172	392,000
의성군	114,430	11,558	95,483	75,150	17,320	206,727	647	645,000	980	392,000
청송군	444,752	38,853	414,650	75,150	23,323	206,727	841	645,000	5,938	392,000
산청군	5,255	517	4,371	75,150	871	207,098	13	645,000	-	-
하동군	38	8	-	-	37	207,098	0.5	645,000	-	-
울주군	1,138	159	873	75,150	255	330,000	10	950,000	-	-

○ 공장 등 재난폐기물 처리비용 (50억원) : NDMS 집계 외[5]
- 경상북도에서 추산한 물량을 토대로 관련 협회의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함
- 중앙합동조사단 피해복구 계획 확정에 따라 피해기업 수 및 물량은 변동될 수 있음
- 건설폐기물 3,640백만원(48,665톤 × 처리비 52,822원/톤 + 운반비 21,872원/톤)
- 사업장폐기물 1,360백만원(5,000톤 × 처리비 250,000원/톤 + 운반비 21,872원/톤)

자료: 환경부

4)「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1

구분	부담액	부담률
쓰레기 등의 처리비용	처리에 드는 금액	국고 100퍼센트

나. 검토의견

지방자치단체별 실제 재해복구 소요비용 등이 확정되는 피해복구 계획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재해대책비를 신속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음.

재해대책비는 재해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액을 산정한 후 그 금액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합동조사를 시행한 후 피해복구 계획을 확정하고 예산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재해대책비 예산안 편성 세부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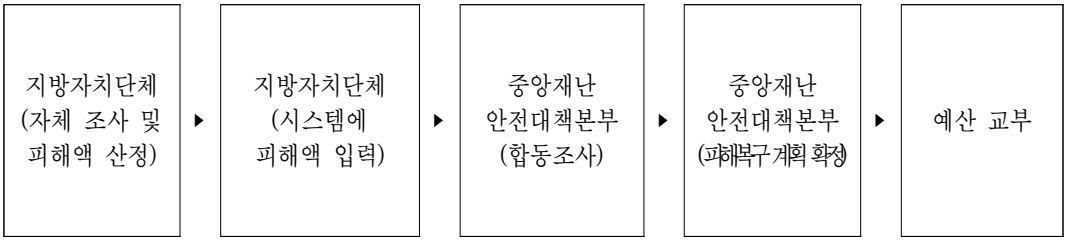

자료: 환경부

이에 따르면, 경북·경남·울산 산불의 경우에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피해복구 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정확한 피해복구금액의 산정이 가능함. 그런데 이번 산불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피해복구 계획 확정이 4월 말이므로, 현재 정확한 피해 규모가 산정되지 않은 상태로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었음.

구체적으로, 현재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주택·농업시설 재난폐기물 처리비용과 공장 등 재난폐기물 처리비용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음.

[재해대책비 산정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 현황]

절차	기한
지방자치단체(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액 입력)[6]	4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합동조사)	4월 15일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제출	4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피해복구 계획 확정)	4월 말

자료: 환경부

5) 해당 비용은 NDMS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별도로 자료를 받아 산출하였음

6) 공장 등 재난폐기물 처리비용의 경우 4월 21일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할 예정임

그런데 피해복구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획 확정 이후 실제 소요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특히,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더라도 피해복구계획 없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바, 이 경우 국고보조금 교부가 지연되어 예산을 연내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음.

실제로 2024년 재해대책비 집행과정에서 7억 6,300만원을 지방자치단체로 교부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확정이 늦어짐에 따라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지연되어 해당 금액이 전액 이월된 바 있음.

[2024년도 자치단체경상보조 이월내역]

(단위: 백만원)

세사업명	이월액	보조사업 계획	중대본 금액 산정일	이월 이유
자치단체 경상보조	763	9월 19일 ~ 21일 사이 호우피해 복구계획	2024년 10월 30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확정지연

자료: 환경부

마찬가지로 경북·경남·울산 산불 재해로 인한 쓰레기 처리의 경우에도 피해복구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금액 산정이 늦어지면 지방자치단체의 세부계획 수립도 같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 집행이 지연될 수 있음.

산불 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지역의 쓰레기는 미세먼지, 악취, 수질오염 등 2차 오염 발생의 가능성이 있고, 주택 등 파손된 건축물의 처리가 지연될 경우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어 주민의 거주여건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함.

따라서 환경부는 조속히 피해복구 계획 확정을 마무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복구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피해복구가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국립공원공단 출연: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신속한 집행 필요

가. 개 요

'국립공원공단 출연' 은 국립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25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76억 5,000만원(3.4%) 증액된 2,303억 7,800만원이 편성되었음.[7)]

[2025년도 국립공원공단 출연 추경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국립공원공단 출연	229,518	222,728	230,378	7,650	3.4

[2025년 국립공원공단 출연 추경안 세부내역]

(단위: 억원)

'25년 예산		'25년 추경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	○ 공원관리장비운영 - 공원관리헬기 도입 : 250억원 x 2% = 5억원	81.5	○ 공원관리장비운영 - 공원관리헬기 도입 : 330억원 x 22.4% = 74억원 (본예산 5억원 + **추가경정예산 69억원**) ○ 재난안전관리 - **고성능 진화차량 확보 : 3.75억원 x 2대 = 7.5억원**

자료: 환경부

추경안에 따르면 공원관리헬기 도입은 총 헬기 금액 330억원의 선금 30%인 99억원[8)]을 기준으로, 고성능 진화차량 확보는 대당 3억 7,500만원인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을 2대 확보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임.

현재 공원관리헬기 및 고성능 진화차량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국립공원공단은 현재 1대의 공원관리헬기를 운용하고 있음. 이 헬기는 경북·경남·울산 산불 진화에

7) 세부사업: 국립공원공단 출연(1831-306)(자연보전국)

8) 99억원 = 25억원(2024년 예산 이월액) + 5억원(2025년 본예산) + 69억원(2025년 추가경정예산)

약 52시간 투입되어 담수 총 83만 5,000리터를 투하하는 등 산불 진화 기능을 하였음.

[국립공원공단 운용 헬기의 경북·경남·울산 산불 진화 투입현황]

	투입 지역	투입일	투입 시간	담수 투하 횟수	담수 투하량 (L)
국립공원공단 운용 헬기	지리산, 주왕산	9일	52시간 25분	334회	835,000L

자료: 국립공원공단

다음으로 국립공원공단은 현재 경주국립공원, 오대산, 무등산, 설악산에 총 4대의 산불 진화전문차량을 운용하고 있음.

국립공원은 동부, 서부, 중부, 북부 등 4개 권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국립공원공단은 현재 산불진화전문차량을 동부 및 서부에 각각 1대, 북부에 2대를 배치하여 운용하고 있음.

[국립공원공단 권역별 공원 및 산불진화차량 배치 현황]

권역	국립공원
동부 (6개)	지리산, 경주, 한려해상, 가야산, 주왕산, 팔공산
서부 (6개)	내장산, 덕유산, 다도해해상, 변산반도, 월출산, 무등산
중부 (5개)	계룡산, 속리산, 태안해안, 월악산, 소백산
북부 (5개)	설악산, 오대산, 북한산, 치악산, 태백산

주) 밑줄 부분 : 산불진화차량 배치 국립공원
자료: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공단 권역(본부)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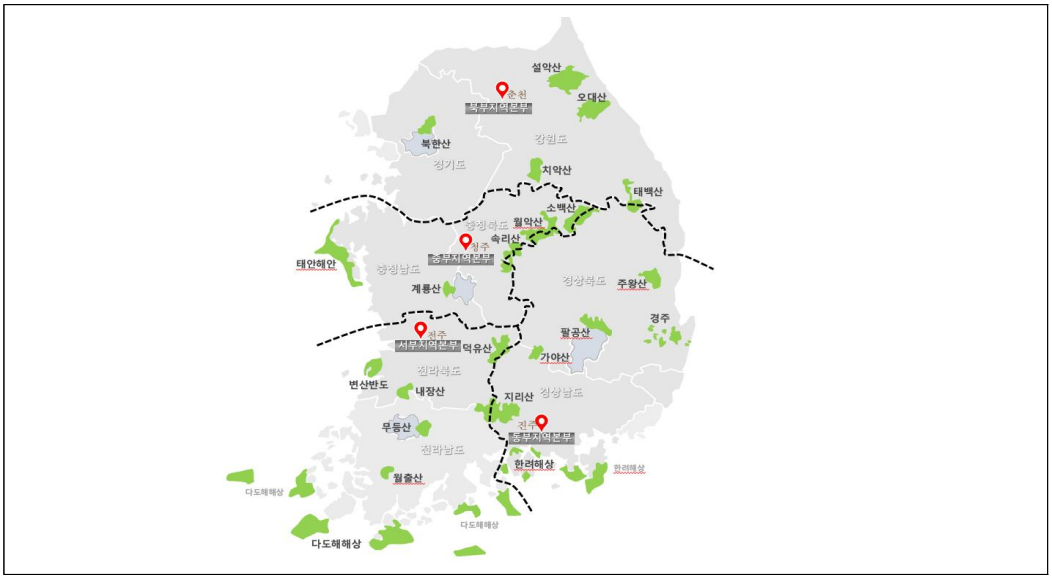

자료: 국립공원공단

나. 검토의견

첫째, 2024년도에 공원관리헬기도입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두 차례 유찰되어 예산이 전액 이월된 상황이므로 신속한 집행을 할 필요가 있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공원관리헬기 도입 사업은 2024년에 이미 동일한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두 차례 유찰로 인해 예산 전액이 이월된 바 있음.

당시 공원관리헬기 도입에 필요한 금액은 총 250억원으로 산정되었고, 선금으로 10%가 책정되어 본예산으로 25억원이 반영되었음.

[2024년 및 2025년 공원관리헬기 도입 본예산 세부내역]

	2024년	2025년
본예산액	25억원	5억원
편성내역 (공원관리헬기도입)	250억원 x 10% = 25억원	250억원 x 2% = 5억원

자료: 환경부

그런데 2024년 두 차례 헬기 구매 입찰공고가 모두 유찰되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예산이 전액 이월되었음.

[공원관리헬기 도입 2024년 입찰 경과]

	입찰공고일	유찰일
입찰공고	2024. 08. 21.	24. 10. 08.
재입찰공고	2024. 10. 10.	24. 10. 22.

자료: 국립공원공단

현재 원자재 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당초 사업계획 시보다 헬기 총 견적이 80억원 증가하였으며, 계약금 선금도 신속 집행을 위하여 10%에서 30%로 증가하였음. 공원관리헬기가 산불 진화에 큰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지연되어 도입 시기가 늦어지고 있고, 계약에 소요되는 금액도 증가하고 있음.

[사업계획시와 현재 공원관리헬기 도입비용 차이]

	사업계획시(2024년)	현재(2025년)
총 도입비용	250억원	330억원
선금액 (비율)	25억원 (10%)	99억원 (30%)

자료: 환경부

또한, 국립공원공단이 현재 운용하고 있는 헬기는 1997년 5월 1일부터 가동되어 운용한 지 27년이 경과하여 노후화 우려가 있고, 2025년 총 46근무일 동안 정비 입고 예정으로 정비 입고 기간동안 국립공원공단의 산불 진화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2025년 국립공원공단 운용 헬기 정비 입고 횟수 및 예정일수]

검사 종류	정비 입고 횟수	정비 입고 예정일수
계절검사[9]	2회	총 13근무일
50시간 검사[10]	3회	총 3근무일
100시간 검사[11]	1회	총 30근무일

자료: 국립공원공단

환경부는 선금 비율을 10%에서 30%로 증가하여 편성하는 등 신속한 사업집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으나, 헬기는 계약체결 시부터 도입 시까지 1,080일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신속한 계약체결 등 집행이 요청됨.

따라서, 환경부는 국립공원공단의 산불 진화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원관리헬기 도입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음.

둘째, 산불진화전문차량을 도입할 공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철저하게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산불진화전문차량을 배치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음.

산불진화전문차량 구매 사업을 통하여 도입할 예정인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2대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느 공원에 배치할지 확정되지 않았음.

환경부는 권역별 최소 1대의 산불진화차량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특정 국립공원에 배치하는 것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부, 서부, 중부, 북부로 구분된 국립공원공단의 권역별로 배치하려는 대략적인 계획만 있는 것임.

산불의 경우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출동시간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배치권역은 산불 진화에 있어서 중요함.

구체적으로, 현재 운용 중인 산불진화전문차량은 도입된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활동하고 있는데,[12] 경주국립공원의 산불진화차량의 경우 지역 내 출동이 7회, 지역 외 출동이 1회이고,

9) 여름 및 겨울 헬기 정기검사

10) 항공기 50시간 운용에 따른 주요 장비품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검사

11) 항공기 100시간 운용에 따른 항공기, 엔진, 기어박스 등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검사

12) 국립공원공단에서 기존에 운용 중인 산불진화차량의 경우 모두 어느 공원에 배치할지 사업 설계 시부터 미리 계획하고 도입하였음.

오대산국립공원의 산불진화차량의 경우 지역 내 출동이 2회, 지역 외 출동이 2회임.

[국립공원공단 산불진화전문차량의 도입 이후 훈련 및 산불 진화 출동 지역]

	국립공원 지역	지역 내 출동	지역 외 출동
경주국립공원	경주	7회	1회[13]
오대산	평창	2회	2회[14]

자료: 국립공원공단

산불진화차량의 배치권역 및 운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것은 활용의 효과성을 고려하였을 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따라서 환경부는 신속한 산불 진화라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산불진화차량의 권역별 배치 등 운용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13) 주왕산

14) 강릉, 주왕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 출>

3. 하수관로 정비: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등

가. 개 요

'하수관로 정비' 는 하수도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국민보건·위생 확보 및 침수피해 예방 및 결함 하수관로 정비를 통하여 지반침하를 사전 예방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556억 4,400만원(3.4%) 증액된 1조 6,820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음.[15)]

[2025년도 하수관로 정비 추경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하수관로 정비	1,281,593	1,626,418	1,682,062	55,644	3.4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하수도법」 제4조의3 및 제63조에 근거하여 하수도정비대책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 또는 재해복구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사업임.

하수관로 정비는 지역지원계정으로 집행되는 사업으로서 도시침수대응, 하수관로 정비 등을 수행함.

도시침수대응은 하수도 인프라 확충으로 상습 침수지역 해소를 수행하는 사업이고, 하수관로 정비는 하수도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국민보건·위생 확보 및 결함 하수관로 정비를 통하여 지반침하를 사전 예방하려는 사업임.

15) 세부사업: 하수관로 정비(1132-750)(물환경정책관)

[하수관로 정비 세부사업의 예산 및 추경안]

(단위: 백만원)

기능·비목별 분류	2024년 예산	2025년 본예산	2025년 추경안
○ 합계	1,281,593	1,626,418	1,682,062
· 도시침수 대응	327,514	313,757	313,757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327,514	313,757	313,757
· 하수관로 정비	935,943	**1,295,067**	**1,350,711**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935,943	**1,295,067**	**1,350,711**
·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4,405	2,594	2,594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4,405	2,594	2,594
· 대심도하수저류시설	13,731	15,000	15,000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13,731	15,000	15,000

자료: 환경부

하수관로 정비는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금액의 일정 비율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2025년 본예산으로 계속사업 496개소 및 신규사업 61개소로 총 1조 2950억원이 본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음.

추가경정예산안은 하수관로 정비에 총 556억 4,400만원을 증액하려는 것으로, 싱크홀·도시침수 예방을 위하여 2025년 계속사업 496개소 중에서 기착공됐거나 연내집행가능성을 고려해서 선정한 38개소에 대한 연부액 총 505억원 증액 및 서울시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인 27개소의 조기 준공을 위한 신규사업 1개 총 51억 4,400만원 증액을 합산하여 산출하였음.

[2025년 하수관로 정비 추경안 세부내역]

(단위: 억원)

'25년 예산		'25년 추경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2,950	○ 하수관로 정비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1조 2,950억원 가. 계속사업 1조 2,663억원 · 496개소 총 1조 2,663억원 나. 신규사업 287억원 · 61개소 총 287억원	13,507	○ 하수관로 정비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1조 3,507억원 가. 계속사업 1조 3,168억원 · 496개소 총 1조 2,663억원 · (연부액 증액) 38개소 총 505억원 나. 신규사업 338억원 · 61개소 총 287억원 · 1개소 51억 4,400만원

자료: 환경부

[2025년 하수관로 정비 추경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

지자체	본예산	추경안	순증	비고	지원비율
인천시	382	3,538	3,156	계속	30
수원시	1,904	3,005	1,101	계속	30
양주시	777	3,894	3,117	계속	50
의정부시	2,085	3,000	915	계속	50
부산시	396	1,000	604	계속	20
익산시	1,453	3,000	1,547	계속	50
부산시	2,677	5,000	2,323	계속	20
임실군	671	1,865	1,194	계속	50
구미시	1,376	2,000	624	계속	50
광양시	183	676	493	계속	50
완주군	1,845	3,000	1,155	계속	60
안성시	3,141	3,966	825	계속	50
제천시	305	849	544	계속	60
인천시	180	1,114	934	계속	30
음성군	727	1,154	427	계속	60
구리시	1,101	2,266	1,165	계속	60
구례군	1,874	2,913	1,039	계속	60
연천군	946	3,435	2,489	계속	60
완주군	220	489	269	계속	50
광명시	239	1,619	1,380	계속	60
화순군	1,003	2,503	1,500	계속	60
경산시	1,605	2,702	1,097	계속	50
문경시	506	2,306	1,800	계속	50
창원시	2,967	5,000	2,033	계속	50
안산시	1,493	2,513	1,020	계속	50
달성군	458	2,500	2,042	계속	50
달성군	424	1,910	1,486	계속	50
진천군	753	1,195	442	계속	50
양평군	31	144	113	계속	50
부산시	1,812	2,797	985	계속	20
영암군	1,056	2,000	944	계속	50
청주시	1,443	3,420	1,977	계속	50
고양시	478	2,214	1,736	계속	60
동두천시	246	1,518	1,272	계속	60
인천시	137	1,268	1,131	계속	30
부산시	1,646	2,540	894	계속	30
성남시	346	4,061	3,715	계속	50
용인시	1,723	2,735	1,012	계속	60
서울시	-	5,144	5,144	신규	20

자료: 환경부

나. 검토의견

첫째,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연례적으로 사업시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철저하게 집행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2021년~2024년 실집행현황을 보면, 교부현액 대비 실집행률은 2021년 69.7%, 2022년 83.0%, 2023년 83.6%, 2024년 80.8%으로, 연례적으로 1,000억원이 넘는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2024년 경우 이월액 1,936억원 및 불용액 88억원으로, 이월액과 불용액을 합산한 금액의 규모가 2,000억원을 초과하였음.

[2021~2024년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집행현황(금액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환경부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2021	715,507	715,507	652,198	652,198	151,605	803,803	560,364	101,270	7,343	69.7
2022	748,773	735,503	795,072	795,072	101,270	896,342	743,821	144,336	8,185	83.0
2023	783,948	783,948	790,243	790,243	144,336	934,579	781,605	137,852	15,122	83.6
2024	976,374	976,374	914,918	914,918	137,852	1,052,770	850,283	193,627	8,860	80.8

자료: 환경부

또한, 2024년의 경우 실집행률 20% 이하를 보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10개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5개 지자체의 경우 전액을 집행하지 못하였음.

[2024년 하수관로 정비 실집행률 20% 이하 사업시행주체]

(단위: 백만원, %)

사업시행 주체 (기관명)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C)			
공주시	172	172	0	0	140	140	0	0	0	140	0	0.0
광명시	712	712	712	712	407	1,119	498	712	91	621	0	12.8
군포시	1,995	1,995	1,300	1,300	559	1,859	603	1,300	244	1,256	0	12.2
김천시	306	306	306	306	471	777	35	306	7	742	0	2.3
달성군	2,000	2,000	0	0	1,406	1,406	1,406	0	0	0	0	0.0
산청군	188	188	188	188	1,249	1,437	392	188	0	1,046	0	0.0
성남시	842	842	420	420	1,406	1,826	697	420	0	1,117	13	0.0
양산시	1,303	1,303	1,303	1,303	619	1,922	268	1,303	9	1,298	356	0.7
여수시	757	757	0	0	0	0	0	0	0	0	0	0.0
통영시	2,228	2,228	2,228	2,228	3,710	5,938	3,295	2,228	428	1,585	1,058	19.2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이러한 실집행 부진 사유로 민원,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과 준공 시기 미도래를 들고 있음.

그러나, 환경부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편성하고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사업선정·편성 단계에서 차수별 계약금액을 확인하는 등 수요를 면밀하게 산정하고 실집행 단계에서도 월별 집행관리를 하는 등 철저한 집행관리를 하여 사업이 계획된 대로 원활하게 진행되게 할 책임이 있음.

따라서 환경부는 지반침하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이월 및 불용 등 집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둘째, 서울시의 경우 높은 재정자립도와 하수도 보급률을 감안하여 2009년부터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 범위에서 제외한 이후에도 계속 지원을 해왔는바, 향후 정부는 원활한 하수관로 정비 집행을 위해 서울시에 대한 하수관로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 및 보조비율을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환경부는 서울시의 높은 재정자립도와 하수도 보급률(100%)을 감안하여 「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을 개정하여 2009년부터 서울시에 대한 하수도 분야 보조금 지급 근거를 삭제하였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한 서울시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보조비율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112. 하수관로 정비	광역시(군지역은 제외) : 30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군 : 60	-
122.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	사업 수행의 근거 법령·성격에 따라 정률(100%, 80%, 70%, 50%, 40%, 30%, 20%) 또는 정액 보조	기획재정부장관이 수립한 예산안 편성지침에 대상사업 명칭과 기준보조율을 분명하게 밝히거나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

하수관로 정비사업	~ '08년	'09년 ~ '16년	'17년 ~ '22년	'23년 ~	비고
○ 특별시	10%	(삭제)			
○ 광역시	30%(10%)		30%(20%)	30%	14년부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지원 16년까지 ( )는 보수 17년부터( )는 교체, 보수
○ 도청소재지, 특별자치시·도	50%(20%)		50%(30%)	60%	
○ 일반 시·군	70%(30%)		70%(50%)		

자료: 환경부

그러나, 이러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싱크홀 우려 등을 이유로 서울시에 하수관로정비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음.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서울시에 하수관로 정비와 관련하여 예산 51억 4,400만원(보조율 20%)이 편성되었음.

[보조금 지급 제외 이후 년도별 서울시 하수관로정비 보조금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년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5년 (추경)
금액	10,000	31,500	-	23,900	39,100	5,144
보조율	100%	24%	-	20%	20%	20%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동 시행령과 동 실무요령에 따라 서울시에는 하수관로정비사업 보조비율과 관련된 기준이 없어 동 시행령 별표 1 제122호의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 이라는 예외적인 규정을 통하여 서울시에 보조금을 지급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하수관로 정비지원사업 수행 시 기준보조율(광역시 30%, 시·군 60% 등)에 따라 국고보조율을 산정하는 반면, 위 근거 규정은 기준보조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서울시의 경우 정책 필요에 따라 기준보조율 없이 산정하여 보조율 산정의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정부는 향후 원활한 하수관로 정비 집행을 위해 서울시에 대한 하수관로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 및 보조비율을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고용노동부

Ⅰ. 개 관

1.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안의 총수입은 34조 7,382억원이며, 예산은 3,472억원, 기금은 34조 3,910억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함.[1)]

[202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안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 (현계획)(A)	추경안 (변경안)(B)	증감(B-A)	(B-A)/A
예 산	3,423	3,472	3,472	-	-
기 금	309,519	343,910	343,910	-	-
합 계	312,942	347,382	347,382	-	-

주 1) 2024년도 본예산 중 기금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2) 2025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문의 : 오민석 예산결산조사관 ohmin3259@assembly.go.kr (02-6788-5701)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안의 총지출은 35조 5,565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2,113억원(0.6%) 증가함. 예산은 5조 8,146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597억원(1.0%) 증가하고, 기금은 29조 7,419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516억원(0.5%) 증가함.

[202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안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 (현계획)(A)	추경안 (변경안)(B)	증감(B-A)	(B-A)/A
예 산	58,151	57,549	58,146	597	1.0
기 금	278,674	295,903	297,419	1,516	0.5
합 계	336,825	353,452	355,565	2,113	0.6

주 1) 2024년도 본예산 중 기금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2) 2025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나.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추경안은 총 3개 회계(일반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며, 본예산과 동일함.

[2025년도 고용노동부 세입추경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일반회계	3,235	3,254	3,254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87	218	218	-	-
합계	3,423	3,472	3,472	-	-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출추경안은 총 4개 회계(일반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구성되며, 본예산 대비 597억원(0.9%) 증가함.

[2025년도 고용노동부 세출추경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일반회계	55,520	57,183	57,480	297	0.6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896	866	866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839	1,229	1,529	300	24.4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4,111	3,985	3,985	-	-
합계	62,365	63,263	63,860	597	0.9

주) 총계 기준

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5개 기금(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는 54조 8,036억원으로 현계획 대비 267억원(0.05%) 증가함.

기금별로 살펴보면,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7조 6,955억원으로, 현계획과 동일함.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3조 4,181억원으로, 현계획과 동일함.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조 1,829억원으로, 현계획과 동일함.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9,142억원으로, 현계획과 동일함.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5,928억원으로, 현계획 대비 267억원(4.7%) 증가함.

[2025년도 고용노동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계획	2025년도				
		당초	현계획(A)	변경안(B)	증감(B-A)	(B-A)/A
고용보험기금	234,136	276,955	276,955	276,955	-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202,950	234,181	234,181	234,181	-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20,048	21,829	21,829	21,829	-	-
임금채권보장기금	9,728	9,142	9,142	9,142	-	-
근로복지진흥기금	5,011	5,661	5,661	5,928	267	4.7
합계	471,873	547,769	547,769	548,036	267	0.05

주) 총계 기준이며, 2024년도 계획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202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증액편성된 사업은 총 15개 세부사업으로, 총 증액규모(총계)는 863억 7,800만원임. (총지출 기준으로는 2,113억 3,400만원)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대지급금지급’ 사업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따라 체불 증가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체불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것으로, 819억원을 증액하였음.

‘신용보증대위변제’ 사업은 고금리·경기둔화로 융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대위변제를 통해 신용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330억원을 증액하였음.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은 산불·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발생한 고용둔화가 지역 경제 전반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300억원을 증액하였음.

[2025년도 고용노동부 추경안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4년도 예산	2025년도			
		본예산 (당초)(A)	추경안 (변경안)(B)	증감(B-A)	(B-A)/A
[일반회계]					
청년일자리창출지원	657,680	777,181	802,597	25,416	3.3
중장년 인턴제	-	3,640	7,930	4,290	117.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106,292	107,864	137,864	30,000	27.8
[고용보험기금]					
고용유지지원금	71,372	70,255	81,368	11,113	15.8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 (폴리텍)	55,226	57,689	61,961	4,272	7.4
비통화금융기관예치	5,743,688	8,284,165	8,268,780	△15,385	△0.2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14,299	14,299	20,859	6,560	45.9
비통화금융기관예치	7,172,771	8,550,527	8,543,967	△6,560	△0.1
[임금채권보장기금]					
대지급금지급	474,733	529,346	611,197	81,851	15.5
비통화금융기관예치	325,005	280,090	198,239	△81,851	△29.2
[근로복지진흥기금]					
생활안정자금(융자)	88,462	91,462	106,342	14,880	16.3
신용보증대위변제	30,195	31,659	64,611	32,952	104.1
신용보증사업계정 전출	35,352	31,215	57,887	26,672	85.4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72,078	208,887	167,335	△41,552	△19.9
비통화금융기관예치 (신용보증)	21,119	34,901	28,621	△6,280	△18.0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연내 집행 가능성 제고를 위한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등

가. 개 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와 해당 사업체에 근속하는 청년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청년고용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2025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254억 1,600만원(3.3%) 증액된 8,025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음.[2)]

[2025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청년일자리창출지원	657,680	777,181	802,597	25,416	3.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607,780	777,181	802,597	25,416	3.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유형1’과 ‘유형2’로 분류됨. ① ‘유형1’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3)]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이며, ② ‘유형2’는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근로자’에게 480만원을 지원하는 것임.

2) 세부사업: 청년일자리창출지원(1043-301)(청년고용정책관)

3)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대해서는「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주로 상시 근로자 수가 많지 않은 중소기업(예: 제조업의 경우 500명 이하)이 이에 해당함.

고용둔화가 전망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빈일자리[4]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등 노동시장의 불균형이 발생하자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임금격차 해소 및 생계부담 완화와 기업 구인난 해소 등을 위해 '유형2'가 2025년 신설되었음.

[2025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1·유형2 비교]

구분	유형1	유형2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28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대상 업종	모든 업종	빈일자리 업종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취업애로청년은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등을 의미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해당 기업과 취업 후 빈일자리업종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지원내용	기업에게 신규채용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기업에게 신규채용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근로자가 18개월이상 재직 시 2년간 최대 480만원을 지원(18개월·24개월차 각 240만원씩 지원)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음. ① 먼저 지역 고용센터에서 운영기관을 선정함. ② 이후 선정된 운영기관이 기업의 참여신청을 받아 승인 여부를 결정함. ③ 참여가 승인된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함. ④ 이후 기업은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하고, ⑤ 운영기관은 1차적으로 지원금 지급 여부를 심사함. ⑥ 고용센터가 최종적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기업과 청년에게 지원금을 지급함.

4) 월말일 현재 구인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 달 내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를 의미하며, 2025년 2월 기준 빈일자리는 16만 6,506개임.

[2025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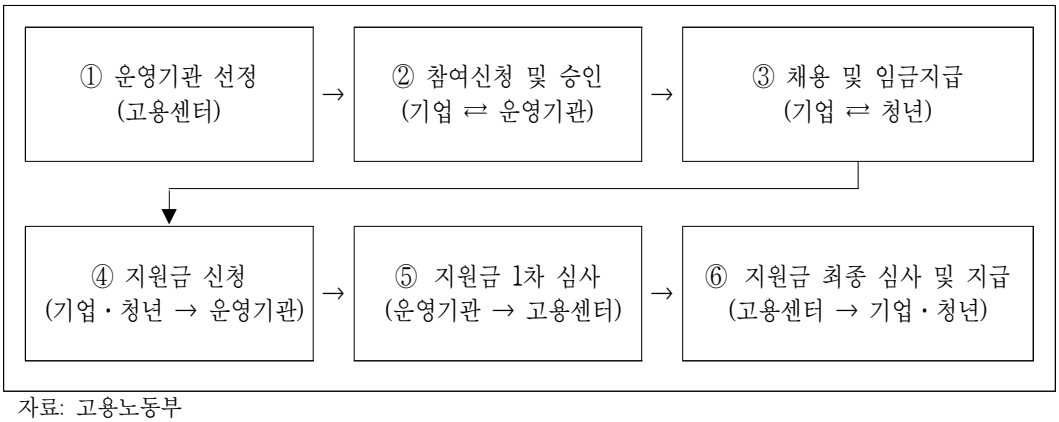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일선 고용센터는 기존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인력 증원이 용이하지 않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업무를 전부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기업과 청년간 일자리 매칭을 위해 민간고용서비스 기관을 활용하고 있음.[5)]

민간위탁 운영기관은 위탁운영약정 기간 동안 ① 기업 및 청년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② 참여 희망 기업과 청년의 발굴·모집 및 상담 지원, ③ 참여 신청 접수 및 적격 여부 확인·승인, 서류 보완, ④ 참여기업과 지원 청년의 상담 및 채용 알선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관리 청년 1인당 '유형1'의 경우 20만원, '유형2'의 경우 30만원을 위탁사업비로 지급받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5년 제1회 추경안에서 총 254억 1,600만원 증액편성되었는데 이는 ① 당초 지원대상 청년에서 제외되었던 '대학교 졸업예정자'[6)]를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사업대상자 확대와 ② '유형2'의 '6개월 및 12개월 근속인센티브 신설'로 인한 것임

고용노동부는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할 경우 '유형1'은 3,850명, '유형2'는 3,150명의 물량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증가된 물량에 대한 신규 지원금 85억 7,200만원(유형1: 47억 1,500만원, 유형2: 38억 5,700만원)과 민간위탁 사업비 8억 5,800만원(유형1: 3억 8,500만원, 유형2: 4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5) 추가로 고용노동부는 기존 장려금 사업은 사전참여신청 없이 요건을 충족 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인해 집행전망을 미리 예측할 수 없어 사업을 조기마감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경우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통해 참여 신청을 사전에 접수해 채용 추이를 모니터링하여 집행 전망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설명하였음.

6)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이미 지원대상에 포함됨.

청년 근속인센티브의 경우 유형2 장려금에서 당초 18개월과 24개월 근속 시 각 240만원을 지급하던 것에서 6개월과 12개월 근속 시 청년에게 직접 1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 시기를 확대하였으며,[7] 이를 위해 159억 8,600만원을 신규 편성함.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본예산 및 추경안 세부내역]

2025년도 본예산		2025년도 추경안(증액분)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771억 8,100만원	○ 기업지원금: 7,510억 3,100만원 - 유형1 (6,959억 2,800만원) a.'23년 채용자(8.8만명), '24년 채용자(12.5만명)에 대한 잔여 지원금(6,285억 8,100만원) b.'25년 채용자(5.5만명) 신규 지원분(673억 4,700만원) - 유형2 (551억 300만원) '25년 채용자(4.5만명) 신규 지원분(551억 300만원)	8,025억 9,700만원	○ 기업지원금: **7,596억 300만원** - 유형1 **(7,006억 4,300만원)** a.'23년 채용자(8.8만명), '24년 채용자(12.5만명)에 대한 잔여 지원금(6,285억 8,100만원) b.'25년 채용자**(5.885만명)** 신규 지원분 **(720억 6,200만원)** - 유형2 **(589억 6,000만원)** '25년 채용자**(4.815만명)** 신규 지원분(589억 6,000만원)
	○ 청년 근속인센티브: 0원 - 18·24개월 근속인센티브는 차년도부터 집행 예정		○ 청년 근속인센티브: **159억 8,600만원** - 6개월 근속 청년 대상 인센티브 지원 **(159억 8,600만원)** (12·18·24개월 근속 인센티브는 차년도부터 집행 예정)
	○ 민간위탁사업비: 247억 5,000만원 - 유형1 (180억원) a.'24년도 사업 민간위탁사업비 잔여분: 12.5만명 × 20만원 × 0.5 b.'25년도 사업 민간위탁사업비 신규지원: 5.5만명 × 20만원 × 0.5 - 유형2 (67억 5,000만원) : 4.5만명 × 30만원 × 0.5		○ 민간위탁사업비: **256억 800만원** - 유형1 **(183억 8,500만원)** a.'24년도 사업 민간위탁사업비 잔여분: 12.5만명 × 20만원 × 0.5 b.'25년도 사업 민간위탁사업비 신규지원: **5.885만명** × 20만원 × 0.5 - 유형2 **(72억 2,300만원)** : **4.815만명** × 30만원 × 0.5
	○ (수용비·경상경비) 12억원		○ (수용비·경상경비) 12억원
	○ (사업출연금) 2억원		○ (사업출연금) 2억원

자료: 고용노동부

7) 12개월·18개월·24개월 근속 인센티브는 차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집행될 예정이며 18개월과 24개월 근속 인센티브의 단가는 당초 24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하되었음.

나. 검토의견

첫째, 2025년의 경우 3월까지 실제 채용인원이 당초 목표 대비 부진하고 미국의 관세부과로 경기 하방압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므로, 추경 증액분이 연내 집행 가능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2022~2024년까지의 집행률을 보면, 2022년의 경우 5,427억 6,90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333억 2,100만원만 집행되고 3,094억 4,8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이 43.0%로 부진하였으며, 2023년과 2024년의 경우 편성액 대비 약 81% 집행되어 불용액이 매해 1,200억 이상 발생하였음.

[2022~2025년(3월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2년	542,820	542,769	-	-	-	542,769	233,321	43.0	43.0	-	309,448
2023년	889,078	889,078	-	-	-	889,078	719,429	80.9	80.9	-	169,649
2024년	607,780	607,780	-	-	-	606,280	487,003	80.1	80.3	-	119,277
2025년 (3월말)	777,181	777,181	-	-	-	777,181	219,841	28.2	28.2	-	-

자료: 고용노동부

2025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본예산은 2023년과 2024년 채용자에 대한 계속지원금 6,285억 8,100만원과 2025년 신규채용자에 대한 지원분 1,224억 7,700만원(유형1 673억 4,700만원, 유형2 551억 3,000만원)으로 구분되며 3월말까지의 집행률은 28.2%임.[8)]

이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추경안의 경우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장려금 지원대상자에 추가로 포함시켜 연내 7,000명의 신규채용인원에 대한 85억 7,200만원의 추가 기업지원금 수요가 발생한다고 예측하였음.

그러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실제 채용인원을 보면 2025년 3월 기준으로 당초 목표한 10만명 중 1만 3,815명(목표 대비 13.8%)만을 채용하였고, 경기여건의 경우 미국의 관세부과로 인한 경기 하방 압력으로 고용부진이 우려되는 상황임.

8) 고용노동부는 2025년 3월말까지의 집행률이 양호한 것에 대해 일선 지방고용관서가 지속적으로 지원금 수령을 독려하여 2년차 계속지원금이 원활히 집행되었다고 설명하였음.

[2022~2025년(3월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채용인원 현황]

(단위: 명, 개, %)

연도	신규지원 목표(A)	실적		
		기업	실제 청년 채용인원 (B)	목표 대비 실제 채용인원 (B/A)
2022	140,000	47,634	113,700	81.2
2023	90,000	38,735	88,649	98.5
2024	125,000	39,194	100,955	80.8
2025년 (3월말)	100,000	7,744	13,815	13.8

주) 2025년 3월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미국의 관세부과로 인한 불확실성 심화 이전에도 고용부진은 우려되는 상황이었음.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0대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0만 2,000명 감소하였고, 실업자 수는 전년동월 대비 3만 1,000명 증가하였으며 20대 실업률은 전년동월 대비 1.1%p 상승한 7.5%로 나타났음.

이러한 상황에서 당초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한 것 이상으로 7,000명의 신규 채용인원에 대한 지원분이 발생하는 것은 다소 불확실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경기 전망 등을 고려해 추경으로 증액된 금액이 연내 집행 가능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둘째, 빈일자리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18개월과 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원을 지급하는 것에서 6개월·12개월·18개월·24개월 근속 시 각각 1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였는 바, 재정지원이 실질적인 장기근속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집행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근속기간별로 인센티브 금액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번 추경을 통해 개선되는 주요 내용은 빈일자리 취업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의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당초 18개월과 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원을 지급하는 것에서 6개월·12개월·18개월·24개월 근속 시 각각 1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것임.[9)]

9) 24개월 근속 시 수령할 수 있는 장려금의 최대금액은 480만원으로 동일하며, 지원단가가 120만원으로 인하되고 지원기간이 6개월과 12개월로 확대된 것임. 이러한 제도개선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일선 고용관서와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청년들의 조기 취업과 근속 의지 고취를 위해서는 근속 초기부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였다고 설명하였음.

빈일자리에 근속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인센티브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이 사업의 2023년도 6개월 고용유지율이 83%, 12개월 고용유지율이 67%였으므로[10] 6·12개월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할 경우 당초 근속 인센티브 없이도 고용이 유지되었던 근로자들에게 재정의 대부분이 지출되어 재정지원이 추가적인 장기근속 효과를 유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개선된 인센티브 구조 하에서는 근속기간과 무관히 인센티브 금액이 120만원으로 동일한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장기근속 시 청년 근로자가 수령하는 실질 인센티브 금액이 오히려 감소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장기근속 유인을 약화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청년 6개월 근속인센티브가 실질적인 고용창출과 청년일자리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근속기간별로 인센티브 금액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11]

셋째, 이번 추경을 통해 장려금 지원대상이 '대학교 졸업예정자'로 확대되나, '취업애로청년'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실제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를 엄밀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2025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에 따르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유형1은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있음.

동 지침에 첨부되어있는 「채용자 명단 제출서」에는 취업애로청년의 유형을 ① 4개월 이상 실업, ② 고졸 이하 학력, ③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④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 일학습병행제 이수, ⑤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⑥ 자립지원필요 청년, ⑦ 대량고용변동신고사업장 이직, ⑧ 북한이탈청년, ⑨ 자영업 폐업, ⑩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등 10가지로 규정하고 있음.

10) 2022~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채용인원의 고용유지율

(단위: %)

고용유지기간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22년		83	78	75	73	71	69	68	43	40
	'23년	전체	83	80	77	75	72	70	67	-	-
		제조업	83	80	77	74	72	70	67	-	-

자료: 고용노동부

11) 근속 인센티브의 지급이 청년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임금지급 유인 감소로 연결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도 있음.

고용노동부는 추경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확대하여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취업애로청년으로 보아 유형1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나,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업애로청년 유형과 같이 대학교 졸업예정자가 일률적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경기침체 및 불확실성 증가로 기업의 수시·경력직 위주 채용이 증가되어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취업까지 평균적으로 11.5개월 소요('24년 5월, 통계청)되고, 45.5만명의 쉬었음 청년이 존재('25년 3월 기준)하여 심각한 청년고용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졸업예정자를 채용 대상으로 포함하는 기업의 채용 행태를 반영한 요건 완화로 사업의 현실성을 확보하였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2023년에 이미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취업애로청년으로 보기 어려워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했던 전례가 있고, 고용장려금의 사업대상을 과도하게 확대할 경우 지원 필요성이 낮은 대상자에게까지 장려금이 지급되어 사중손실(deadweight loss)[12]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를 고려할 때, 실제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를 엄밀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12)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의미함. 고용장려금 없이도 고용장려금 제도가 있는 상황만큼 근로자를 고용한다면 사회적으로 아무런 부가적 편익도 창출하지 못한 채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을 지출한 것이고, 이러한 비용은 경제 내의 어느 구성원에게도 손해를 끼치지 않고 피할 수 있었던 비용으로 볼 수 있음.

【고용보험기금(고용안정·직업능력계정)】

<지 출>

2. 고용유지지원금: 연내 집행 가능성 제고 및 사업주 대상 안내 교육 강화 필요

가. 개 요

'고용유지지원금' 은「고용보험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 예방과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2025년도 변경안은 현계획 대비 111억 1,300만원(15.8%)이 증액된 813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음.[13)]

[2025년도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변경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도		2025년도				
	당초	수정	당초	현계획(A)	변경안(B)	증감(B-A)	(B-A)/A
고용유지지원금	71,372	71,372	70,255	70,255	81,368	11,113	15.8

주 1) 2024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2) 2025년도 현계획은 2025년 당초 계획액 대비 변경된 계획액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를 채용하고 해고하는데 있어 준고정비용(quasi-fixed cost)[14)]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경기변동 시에는 기업으로 하여금 근로자의 해고를 막고,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인원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인 외적 환경의 악화로 인해 감원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자들의 대량 실업을 막고 사업주의 준고정비용을 줄이며 근로자의 숙련유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13) 세부사업: 고용유지지원금(1045-350)(노동시장정책관)

14) 근로자의 노동시간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비용으로, 기업이 지출하는 채용비용이나 사회보험료, 또는 각종 복지 비용을 의미함.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 시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일시적 고용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의 판단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및 제34조(휴업 등의 고용유지조치 요건)에서 규정한 기준 달의 매출액이 기준 달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무급의 경우 30%)이상 감소한 경우 등임.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 및 이후 1개월까지의 고용조정제한 의무를 이행하고, 근로자에게 휴업이나 휴직에 대한 보전금품을 지급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급함.[15)]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휴업 또는 휴직기간 동안 금품 지급 여부를 기준으로 유급고용유지조치와 무급고용유지조치로 나뉘는데, 휴업과 휴직 각각의 경우 고용유지조치 이행 여부를 다르게 판단하고 있음.

예를 들어 휴업 또는 휴직기간 동안 휴업수당 등의 금품을 지급하는 ‘유급’ 휴업 또는 휴직의 경우, ‘휴업’은 1개월을 단위로 하여 피보험자의 전체 근로시간 대비 20%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야 하나, ‘휴직’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를 면제 하는 것을 고용유지조치 이행 조건으로 하고 있음.

[2025년도 고용유지지원금의 유형별 고용유지조치 이행 조건]

유급	① 휴업	1개월 단위 피보험자 전체 근로시간 대비 20% 초과 단축	휴업·휴직기간 휴업수당 등 금품 지급
	② 휴직	1개월 이상 근로 면제	
무급	① 휴업	사전 노동위원회 승인, 30일 이상 실시 실시비율: ▲50% 이상 (19명 이하), ▲10명 이상 (99명 이하), ▲10% 이상 (100명 ~ 999명),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휴업기간 금품 미지급 (또는 평균임금 50% 미만 지급)
	② 휴직	직전 1년 이내 유급휴업 또는 유급휴직(피보험자 20%이상)을 3개월(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1개월)이상 실시, 근로자대표 합의, 30일 이상 실시 실시비율: ▲10명 이상 (99명 이하) ▲10% 이상 (100명 ~ 999명)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휴직기간 금품 미지급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내용은 유급 휴업·휴직과 무급 휴업·휴직으로 나뉘어 있음. 유급 휴업·휴직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을 기준으로 업종과 지원한도를 차등화하여 지원하고 있음.

15) 단, 무급 지원유형의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지원금은 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함.

예를 들어 일반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을 기준으로 2/3를 1일 6만 6,000원의 한도에서 연 180일의 기간 동안 지원하지만,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9/10를 1일 7만원의 한도에서 연 180일을 지원하고 있고,

기업규모별로도 차등을 두어 우선지원대상기업 아닌 대규모기업의 경우 일반업종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1/2(단축율이 50% 이상인 경우 2/3)을 1일 6만 6,000원의 한도에서 연 180일을 지원하며,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대규모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단축율이 50% 이상인 경우 2/3)를 1일 6만 6,000원의 한도에서 연 180일간 지원하고 있음.

반면 무급 휴업·휴직의 경우 지원수준은 업종이나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1일 6만 6,000원을 한도로 최대 180일 간 지원되고 있음.

[2025년도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내용]

구분	유급 휴업·휴직		무급 휴업·휴직	
	지원수준*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기준)	지원한도 (기간)	지원수준	지원한도 (기간)
일반업종	· 우선지원 2/3 · 대규모 1/2 또는 2/3* (* 단축율 50% 이상)	· 우선지원(대규모) 1일 6.6만원 (연 180일)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결정	· 우선지원 (대규모) 1일 6.6만원 (최대 180일)
특별고용 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 우선지원 9/10 · 대규모 2/3 또는 3/4* (* 단축율 50% 이상)	· 우선지원 1일 7만원 · 대규모 1일 6.6만원 (연 180일)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음. 먼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함.[16] 이 때 사업주는 고용조정제한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해고 등을 할 수 없음. 이후 매월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고용센터는 사실관계 확인 후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함.

16) 다만, 무급 휴업·휴직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함.

[2025년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고용유지조치 계획 승인 여부 결정 (무급만 해당)	➜	고용유지조치 실시 (고용조정제한의무 준수)	➜	지원금 신청 (매월)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 고용센터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센터 → 사업주 또는 근로자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은 2025년도 제1회 추경안에서 111억 1,3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미국의 관세부과로 인한 경기하방 우려 업종(화학제조, 자동차제조, 1차금속제도)의 2025년 3월 근로자수 약 77만명에 2020년 초 고용위기시 전체 취업자수 감소율 약 0.8%를 고려하여[17]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101억 6,500만원(5,750명)과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9억 4,800만원(250명)을 증액 편성하였음.

5,750명에 대한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증액분의 경우 2025년 월 평균 지원단가인 85만 4,000원에 2024년 평균지원 기간 2.07개월을 적용하여 산출하였고, 250명에 대한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증액분의 경우 2025년 월 평균 지원단가 14만 7,600원에 고용위기 시인 2020년의 평균 지원기간 2.57개월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2025년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변경안 세부내역]

2025년도 계획		2025년도 변경안(증액분)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02억 5,500만원	○ 보험금(320-04): 702억 500만원 가. 휴업·휴직(701억 500만원) · 23,866명×2.5개월×117만 5,000원 ≒ 701억 500만원 나. 무급휴업·휴직(1억원) · 48명×1.38개월×151만 3,000원 ≒ 1억원	813억 6,800만원	○ 보험금(320-04): 813억 1,800만원 가. 휴업·휴직(802억 7,000만원) · (본예산) 23,866명×2.5개월×117만 5,000원 ≒ 701억 500만원 · (추경) 5,750명×2.07개월×85만 4,000원 ≒ 101억 6,500만원 나. 무급휴업·휴직(10억 4,800만원) · (본예산) 48명×1.38개월×151만 3,000원 ≒ 1억원 · (추경) 250명×2.57개월×147만 6,000원 ≒ 9억 4,800만원
	○ 일반용역비(210-14): 5,000만원 · 채권관리 비용 5,000만원		○ 일반용역비(210-14): 5,000만원 · 채권관리비용 5,000백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17) 77만명의 0.08%는 6,160명이나 고용노동부는 6,000명으로 추계하였음.

고용노동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수출 및 생산감소 우려가 있는 기업과 그 협력업체의 경영위기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고물가·고금리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경제·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 경영 악화와 고용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 예상되므로 추경을 통한 고용유지지원금 증액이 안정적인 고용유지 및 고용 충격 최소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함.[18)]

나. 검토의견

첫째, 미국의 관세부과에 따른 고용충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하반기 고용악화 대비를 목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출계획액을 증액하였으나, 2025년 3월까지의 지급 실적을 고려하여 연내 집행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미국의 관세부과에 따른 고용충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하반기 고용악화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출계획액을 증액하였음.

과거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24년에는 현액 대비 집행률이 98.3%로 양호하나 2022년과 2023년에는 집행률이 모두 80% 미만이었고, 2021년에는 코로나19 이후 어려운 경기여건을 반영해 4,894억 1,500만원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증액하였으나 5,734억 7,3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년의 경우 3월말까지 계획현액 702억 500만원 중 152억 1,5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21.5%이고, 1분기 집행실적이 연중 계속될 경우 예상되는 집행률은 약 86%로 98억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2021~2025년(3월말) 고용유지지원금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개사, 명, %)

연도	예산		실적			
	당초	현액(A)	사업장	순인원	집행액(B)	집행률(B/A)
2021년	1,365,832	1,855,247	40,950	338,921	1,281,774	69.1
2022년	597,621	596,901	14,268	137,114	463,802	77.7
2023년	197,220	197,220	6,204	61,176	126,802	64.3
2024년	71,372	71,372	3,727	44,842	70,126	98.3
2025년 (3월말)	70,205	70,205	1,252	11,833	15,215	21.7

자료: 고용노동부

18) 또한 고용노동부는 현재 지방관서에 지침을 하달하여 산불 피해가 심각한 지역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의 매출감소 요건 없이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경기하방 우려 업종(화학제조, 자동차제조, 1차금속제도)의 2025년 3월 근로자수 약 77만명에 2020년 초 고용위기 시 전체 취업자 수 감소율 약 0.8%를 고려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 2025년 3월까지의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증액 편성된 고용유지지원금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2024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들이 휴업조건과 휴직조건의 혼동으로 지원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신청하여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였으므로, 추경 후 집행단계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주에게 충분한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2024년 재정지원일자리평가보고서는 기업들이 휴업조건과 휴직조건의 혼동 때문에 지원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신청하여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에게 충분한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을 권고받았음.

보고서가 참고한 보도사례에 따르면,[19] 휴업은 날짜를 정해 근무가 가능하나 휴직의 경우 직원이 출근하면 안되는 차이가 있음에도 휴직상태에서 직원이 출근을 하여 부정수급혐의를 받았고, 해당 사업주는 신청 전 휴업과 휴직의 이러한 차이에 대해 담당자로부터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설명함.

일선 고용센터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자세한 상담을 원칙으로 하더라도, 구조조정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지원금 수요가 집중되는 경우에는 인력상의 한계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 내용이나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사업주들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충분히 안내하는 교육 절차를 마련하여 제도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의도하지 않은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20]

---

19) 중소업체 울리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실 교육으로 부정수급자 만들고 징수금 폭탄" (MBN news, 2023.3.31.)

20)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시 추가징수금이 발생함.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근로복지진흥기금(신용보증사업계정)】

<지 출>

3. 신용보증대위변제: 구상채권 회수율 개선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신용보증대위변제' 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21] 및 제26조[22]에 따라 보증·담보여력이 낮은 취약근로자 등에 대한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금융회사를 통해 융자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소득격차 해소와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2025년도 변경안은 현계획 대비 329억 5,200만원(104.1%)이 증액된 646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음.[23]

[2025년도 신용보증대위변제 사업 변경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도		2025년도				
	당초	수정	당초	현계획(A)	변경안(B)	증감(B-A)	(B-A)/A
신용보증 대위변제	30,195	30,195	31,659	31,659	64,611	32,952	104.1

주 1) 2024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2) 2025년도 현계획은 2025년 당초 계획액 대비 변경된 계획액

---

21)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신용보증 지원 및 대상)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구직신청한 실업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근로자를 포함한다.)가 금융회사 등에서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등의 융자를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 등과의 계약에 따라 그 금전채무를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대상 융자사업 및 보증대상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2) 「근로복지기본법」
제26조(보증채무의 이행 등)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융자사업을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은 같은 조의 계약 내용에 정하여진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의 계약 내용에 따라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3) 세부사업: 신용보증대위변제(3064-308)(근로기준정책관)

이 사업을 통해 근로복지진흥기금(신용보증계정)이 취약계층 근로자 등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융자사업은 ①「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에 따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②「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 융자,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에 따른 산업재해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④「고용보험법」 제29조에 따른 전직실업자 등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등이 있음.

신용보증사업계정의 보증을 제공받는 융자사업의 집행절차는 다음과 같음. 먼저 대상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생활안정자금이나 직업훈련생계비 등에 대한 융자 및 보증을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요건을 확인하여 융자신청자에게 융자결정 통보를 하고 대행금융기관에게 융자대상자를 통지함. 이후 각 기금으로부터 융자금을 지급받은 금융기관은 융자대상자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대상자의 원리금 상환액을 각 기금에 반납함.

만약 대출 상환 사고(6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가 발생하면 금융기관은 신용보증계정에 대위변제를 청구하여 이 사업 예산에서 융자원리금을 회수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융자대상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대위변제한 융자원리금을 회수하는 절차로 진행됨.

[신용보증대위변제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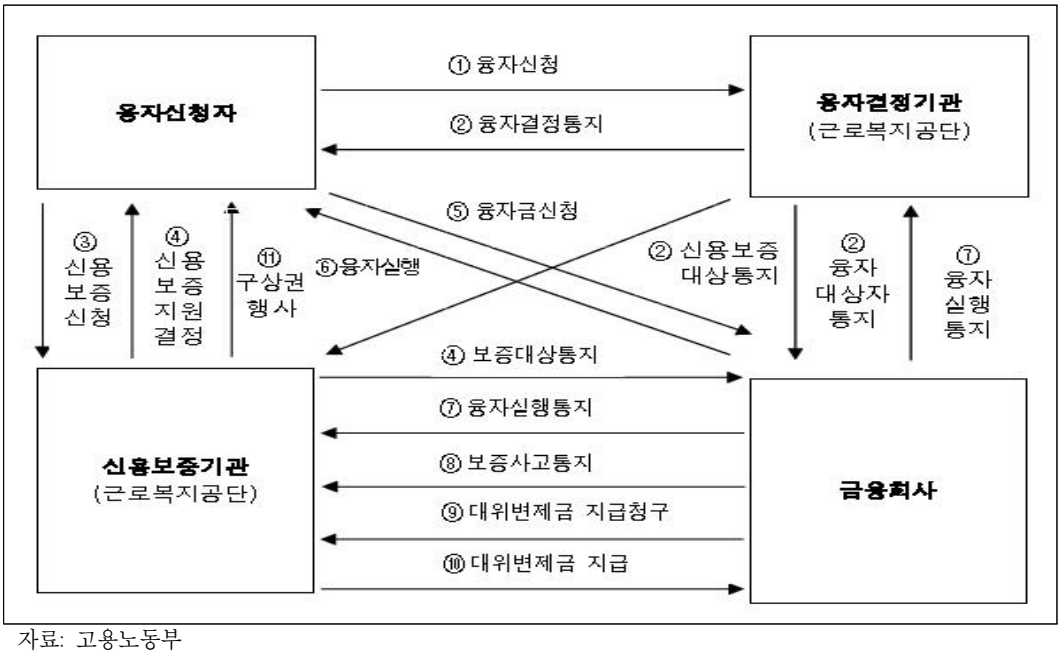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신용보증대위변제 사업은 2025년 제1회 추경안에 636억 5,000만원 편성되었고, 본예산대비 329억 5,200만원 증액되었음.

이는 2024년 12월말 기준으로 금융회사로부터 통보받은 연체금액 996억 9,900만원에서 2025년에 대위변제 청구기한(연체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도래하는 767억 1,100만원[24] 중 2025년도에 신용회복지원을 통한 대위변제 예상 예방액 130억 6,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임.

[2025년 신용보증대위변제 사업 변경안 세부내역]

<table>
<tr><th colspan="2">2025년도 계획</th><th colspan="2">2025년도 변경안(증액분)</th></tr>
<tr><th>예산</th><th>산출내역</th><th>예산</th><th>산출내역</th></tr>
<tr>
<td>316억
5,900만원</td>
<td>○ 신용보증대위변제: 306억 9,800만원
- '24년말 추정보증잔액에 최근 5년간('19～'23년) 융자사업별 대위변제율의 평균 적용・산출
- 융자사업별 '24년말 추정보증잔액 × 대위변제율
(단위: 백만원, %)
<table>
<tr><th>구분</th><th>'24년말 추정 보증잔액</th><th>대위 변제율</th><th>대위 변제금</th></tr>
<tr><td>생활안정자금</td><td>383,386</td><td>4.39</td><td>16,831</td></tr>
<tr><td>임금체불생계비
(체불근로자생계비 포함)</td><td>75,169</td><td>3.52</td><td>2,646</td></tr>
<tr><td>소액생계비</td><td>5,624</td><td>12.78</td><td>719</td></tr>
<tr><td>직업훈련생계비</td><td>310,054</td><td>2.74</td><td>8,495</td></tr>
<tr><td>산재생활안정자금</td><td>52,139</td><td>3.85</td><td>2,007</td></tr>
<tr><td>산재대학학자금</td><td>-</td><td>-</td><td></td></tr>
<tr><td>계</td><td>826,372</td><td>-</td><td>30,698</td></tr>
</table>
○ 신용보증료환급: 9억 6,100만원</td>
<td>646억
1,100만원</td>
<td>○ 신용보증대위변제: 636억 5,000만원
- '24년 12월 말 연체액(금융회사 통보액 996억 9,900만원) 중 '25년 중 대위변제 청구기한(연체일로부터 1년 6개월) 도래하는 767억 1,100만원('25년 우선청구예정 579억 200만원 + '24년도 미지급액(188억 900만원) 에서 '25년도 신용회복지원을 통한 대위 변제 예방액 (연체해소, 전년대비 해제건수 15% 증가목표설정) 130억 6,100만원[25]) 을 제외한 금액
(단위: 백만원, %)
<table>
<tr><th>구분</th><th>청구 예상액</th><th>구분</th><th>청구 예상액</th></tr>
<tr><td>'25.1월</td><td>5,061</td><td>'25.7월</td><td>5,308</td></tr>
<tr><td>'25.2월</td><td>3,727</td><td>'25.8월</td><td>5,457</td></tr>
<tr><td>'25.3월</td><td>3,827</td><td>'25.9월</td><td>5,087</td></tr>
<tr><td>'25.4월</td><td>4,657</td><td>'25.10월</td><td>5,292</td></tr>
<tr><td>'25.5월</td><td>4,624</td><td>'25.11월</td><td>4,986</td></tr>
<tr><td>'25.6월</td><td>5,437</td><td>'25.12월</td><td>4,439</td></tr>
<tr><td>계</td><td colspan="3">57,902</td></tr>
</table>
○ 신용보증료환급: 9억 6,100만원</td>
</tr>
</table>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024년 보증 대상자의 66.4%가 중・저 신용자로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자력변제가 불가능하여 채무 조정 신청 건수가 증가하였고, 정상적인 채무조정 진행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금융회사에 대위변제 후 채권을 인수하여 채권자로서 신용회복위원회에 조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나 대위변제 지연에 따른 해당 절차 진행 불가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24) 2025년 우선청구예정금액 579억 200만원과 2024년도에 미지급한 188억 900만원을 합한 수치임.

25) 2,721건('24년 사고해제건수 2,284 × 노력도 115%) × 조정 계수 3.6% × 480만원 ('24년 건당 평균대위변제액 = '24년 대위변제액 295억 5,500만원÷'24년 대위변제건 수 6,138건) = 119억 5,800만원

또한 보증채무에 대한 대위변제는「근로복지기본법」제26조에 따른 의무지출로서, 금융회사의 보증채무에 대한 대위변제 이행 청구시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기한 도과 시 연 2%의 추가 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번 추경을 통해 금융회사에 대한 보증채무 대위변제 지연에 따른 추가 이자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음.

나. 검토의견

첫째, 2025년 제1회 추경에서 이 사업을 통해 신용보증을 받는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지출계획액 148억 8,000만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출계획액 65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향후 신용보증잔액 증가에 따른 대위변제금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므로, 대위변제 후 구상채권 회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4년 이 사업을 통해 19만 2,945명의 근로자들이 366억 800만원의 신용보증을 받았음. 사업별로는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이 가장 큰 규모의 203억 600만원의 신용보증지원을 받았고, 다음으로는 고용보험기금의 직업훈련생계비 융자(100억 5,300만원),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47억 3,400만원), 산재보험기금의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15억 1,500만원) 순임.

[2020~2025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 내 신용보증사업계정의 융자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3월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생활안정자금융자 (근로복지진흥기금)	31,743	206,647	24,801	143,946	41,639	220,676	30,639	165,030	20,306 (55.4%)	118,234	5,945	35,683
직업훈련생계비융자 (고용보험기금)	17,120	101,808	20,383	173,005	8,405	53,848	13,103	78,953	10,053 (27.5%)	25,055	3,027	5,884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산재보험기금)	1,459	13,635	1,588	15,481	1,580	15,636	1,637	15,617	1,515 (4.1%)	14,265	446	4,190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임금채권보장기금)	-	-	2,842	19,724	3,080	18,918	5,910	47,207	4,734 (12.9%)	35,391	981	7,679
신용보증합계	50,322	322,090	49,614	352,157	54,704	309,078	51,289	306,807	36,608	192,945	10,399	53,436

주) 괄호안의 숫자는 전체에서 해당 융자사업 신용보증 지원금액 또는 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고용노동부

신용보증금액은 2021~2023년 기간 동안 크게 확대되었는데,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 일환으로 2020년부터 취약계층 융자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기금별로 융자지원이 크게 증가하였고, 결과적으로 이들 융자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는 근로복지기금(신용보증사업계정)의 신용보증금액이 증가한 것임.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기하방 압력이 강하게 작용한 2025년 1~3월 기간 동안에도 생활안정자금융자(근로복지진흥기금), 직업훈련생계비대부(고용보험기금),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산재보험기금)의 월평균 신용보증 금액은 전년도 월평균 신용보증 금액을 상회하고 있음.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가 발생하여 금융회사 등이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26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대위변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융자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보증지원 후 원리금 연체 등의 발생으로 근로복지공단이 금융기관에 지급한 대위변제금도 큰 규모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2020~2024년도 사업별 대위변제금 회수 및 지급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회수	지급	회수	지급	회수	지급	회수	지급	회수	지급
생활안정자금융자 (근로복지진흥기금)	4,570	10,221	4,726	13,176	5,088	17,432	4,742	18,346	5,147	16,301
직업훈련생계비융자 (고용보험기금)	1,369	3,095	1,482	3,874	1,696	8,788	1,784	12,510	2,139	10,975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산재보험기금)	909	2,135	880	1,368	931	1,399	747	1,739	780	1,529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임금채권보장기금)	-	-	-	-	2	92	21	439	86	750
합 계	6,848	15,451	7,088	18,418	7,717	27,711	7,294	33,034	8,152	29,555

자료: 고용노동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대위변제금에 대한 회수율은 저조한 수준이며, 2024년에는 회수관리가 불가능한 불납결손액도 74억 6,300만원 발생하여, 2020~2024년간 가장 크게 나타났음.

[2020~2025년(3월말) 구상채권 수납액 및 미수납액 등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징수결정액(A)	수납액(B)	수납률(B/A)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2020	15,451	6,908	44.71	8,543	3,361
2021	18,418	7,147	38.80	11,271	4,170
2022	27,711	7,756	27.99	19,955	6,532
2023	33,035	7,320	22.16	25,715	6,942
2024	29,555	8,173	27.65	21,382	7,463
2025년 3월말	28,068	2,362	8.42	25,706	0

자료: 고용노동부

구상채권 회수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증가한 융자 건의 거치기간 경과와 2022년 이후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상환능력이 저하된 취약근로계층의 대위변제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설명하였음.

이번 추경으로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융자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향후 대위변제금 지급 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구상채권 회수율이 하락될 것이 예상되므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상채권 회수율 제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고용노동부는 타 기금의 융자사업에 대한 보증으로 인해 발생되는 근로복지진흥기금(신용보증사업계정)의 손실분에 대하여 융자사업 소관 기금별로 재원을 분담하는 방안을 포함해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근로복지진흥기금(신용보증사업계정)은 타 기금의 융자금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제공하면서 2020~2024년 동안 누적하여 78억 2,8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2020~2024년 신용보증사업 기금별 수지현황]

(단위: 백만원)

기금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고용보험기금	1,997	7,210	△4,183	△6,806	△7,524	△9,306
산재보험기금	△838	△56	△33	△538	△189	△1,654
임금채권보장기금	-	580	614	1,067	665	2,926
장애인고용기금	61	60	39	26	20	206
합계	1,220	7,794	△3,563	△6,251	△7,028	△7,828

주) 장애인고용기금 소관 융자사업은 종료되어 대위변제금 회수만 이루어지고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이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이 고용보험기금·산재보험기금·임금채권보장기금 등 다른 3개 기금 융자사업에 대한 대출상환 위험을 부담하여 3개 기금을 간접적으로 지원하여 발생하는 문제임.

고용보험기금 등 3개 기금이 기금 내 융자사업의 상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위험을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근로복지진흥기금 신용보증사업계정은 다른 기금의 융자금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제공하면서 「근로복지기본법」 제24조에 따라 1% 이내의 보증료를 받고 있으나, 신용보증으로 인한 대위변제액이 보증료 수입과 구상채권 회수액보다 많음에 따라 신용보증사업계정의 사업비가 부족하여 이를 근로복지진흥기금 내 중소복지계정으로부터 전출받고 있음.

2022년 이후 중소복지계정에서 신용보증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금번 추경에서는 당초 본예산 대비 266억 7,200만원이 증액되어 총 578억 8,700만원이 중소복지계정에서 신용보증사업계정으로 전출되는 계획을 수립하였음.[26]

[2020~2025년 제1회 추경 기준 근로복지진흥기금 내 중소복지계정에서 신용보증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단위: 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예산	2025제1회 추경
전출금	4,000	-	10,700	20,200	35,352	31,215	57,887

주) 2020~2024년도 결산값 기준 작성
자료: 고용노동부

그러나 근로복지진흥기금은 기금의 규모가 작고 복권기금 전입금과 보증료 수입 외에 다른 수입원이 없어 수입구조가 다소 취약하므로, 근로복지진흥기금 내 내부거래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과도한 신용보증사업계정으로의 전출로 인해 중소복지계정 내 자체사업(근로자복지지원, 퇴직연금사업운영 등)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음.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의 타 기금 융자사업에 대한 신용보증제도를 종료하여 각 기금별 융자사업에 대한 손실분은 각 소관 기금에서 자체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거나, 융자사업 보증으로 인한 손실분은 각 소관기금별로 분담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6) 2025년 제1회 추경안을 기준으로 근로복지진흥기금 사업비에서 신용보증대위변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7.8%로 전년대비 10.6%p 증가하였음.

【근로복지진흥기금(중소복지계정)】

<지 출>

4. 생활안정자금(융자): 특정 직종으로 융자가 편중되는 문제 개선 필요

가. 개 요

'생활안정자금(융자)' 은 생계의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혼례비·장례비·생계비 등을 장기·저리(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로 융자함으로써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변경안은 현계획 대비 148억 8,000만원(16.3%)이 증액된 1,063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음.[27]

[2025년도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변경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도		2025년도				
	당초	수정	당초	현계획(A)	변경안(B)	증감(B-A)	(B-A)/A
생활안정자금(융자)	88,462	118,462	91,462	91,462	106,342	14,880	16.3

주 1) 2024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2) 2025년도 현계획은 2025년 당초 계획액 대비 변경된 계획액

이 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28] 및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2020년 12월에는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하여 융자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체 및 산재가입 1인 자영업자로 확대하였음.

---

27) 세부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3062-306)(근로기준정책관)

28)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생활안정자금의 지원) ①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등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경제상황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혼례비·장례비·생계비 등의 지원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등은 자신과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요양비·자녀양육비·소액생계비를 장기·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음.

[2025년도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개요]

구분		대상 및 조건
사업 내용		• 저소득 근로자(비정규직, 특고, 1인 자영업자 포함)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하여 장기 저리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기간		• '96년부터 ~ 계속
사업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생활안정자금의 지원) • 근로복지사업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2호)
융자대상	①의료비 ②혼례비 ③장례비 ④노부모부양비 ⑤자녀양육비	•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의 1/2(' 25년 252만 원) 이하 (* 일용직은 소득요건 비적용)
	⑥소액생계비	•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 휴업·휴직(경영상 이유, 개인 사정), 사업 구조상 이유(계절 사업, 공공근로)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의 1/2(' 25년 252만 원) 이하 (* 일용직은 소득요건 비적용)
융자한도	①의료비 ③장례비	• 1,000만 원
	②혼례비	• 1,250만 원
	④노부모부양비	• 2,000만 원 한도 내 부모 1인당 500만 원
	⑤자녀양육비	• 2,000만 원 한도 내 자녀 1인당 500만 원(7세 미만 자녀)
	⑥소액생계비	• 200만 원
	• 2종목 이상 신청 시 1인당 총 2,000만 원 한도	
금리	• 연 1.5% (신용보증료 연 0.9%)	
상환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자료: 고용노동부

2025년도에는 기준 융자사업 대상자를 중위소득 2/3 이하 근로자에서 중위소득 1/2 이하 근로자로 축소하면서,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 등에 대하여는 최대 500만원한도로 보전해주는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제도를 신설하였음.

[2025년도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이차보전 유형 비교]

구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
융자 방식	금융기관 대하방식(기존)	이차보전방식(신규)
목적	결혼, 장례, 치료 등 목돈이 필요한 취약계층 근로자 생활 보호	결혼, 자녀 양육으로 긴급 생활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근로자 생활보호
대상	중위소득 1/2이하 취약계층 근로자	중위소득이하 근로자
조건	결혼, 장례, 치료, 자녀양육 등 생활필수 자금 소요가 확인되는 경우	결혼, 자녀양육으로 생활필수자금 소요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 한도	종목당 1,000만원(혼례비 1,250만원) 1인당 2,000만원 한도	- 중위소득 2/3 이하자 1,000만원 (기존 생활안정자금(융자)와 통합하여 1인당 총 2,000만원 한도) - 중위소득 2/3초과 중위소득 이하자 500만원
융자 금리	1.5% (보증료율 연 0.9% 별도)	개인 신용대출금리에서 3% 이내 보전 * 기존 융자 금리(1.5%)와 역전 현상 방지를 위해 이차보전 지원율 3%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 메이저급 은행 신용대출 평균 금리 5.8%('25년 3월) 기준 시 고객부담금리 2.8% 예상
필요 예산	885억원('25년)	30억원('25년)
지원 규모	16,818명	20,000명 (융자재원 1,000억원 기준)
융자 신청	근로복지공단	기업은행
심사 기준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기업은행 대출심사기준
담보 제공	공단 신용보증지원사업을 통한 신용보증	개별 신용대출

자료: 고용노동부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은 2025년 제1회 추경안에 148억 8,0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이차보전이 아닌 금융기관 대하방식[29]으로 진행되는 기존 융자사업을 증액한 것임.

고용노동부는 글로벌 경제둔화 등으로 인해 저소득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경제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으므로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규모의 확대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음.

[2025년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변경안 세부내역]

2025년도 계획		2025년도 변경안(증액분)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14억 6,200만원	○ 생활안정자금(융자) 884억 6,200만원 = 16,818명 × '23년 융자종목별 평균단가 - 의료비 3,170명×360만원('23년 평균단가) = 114억 1,200만원 - 혼례비 2,319명×1,220만원('23년 평균단가) = 282억 9,200만원 - 장례비 189명×910만원('23년 평균단가) = 17억 2,000만원 - 부모요양비 1,291명×440만원('23년 평균단가) = 56억 8,000만원 - 자녀학자금 2,698명×470만원('23년 평균단가) = 126억 8,100만원 - 자녀양육비 5,324명×470만원('23년 평균단가) = 250억 2,300만원 - 소액생계비 1,827명×200만원('23년 평균단가) = 36억 5,400만원 ○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30억원 = (20,000명 × 500만원) × 이차보전율 3.0%	1,063억 4,200만원	○ 생활안정자금(융자) 884억 6,200만원 = 16,818명 × '23년 융자종목별 평균단가 - 의료비 3,170명×360만원('23년 평균단가) = 114억 1,200만원 - 혼례비 2,319명×1,220만원('23년 평균단가) = 282억 9,200만원 - 장례비 189명×910만원('23년 평균단가) = 17억 2,000만원 - 부모요양비 1,291명×440만원('23년 평균단가) = 56억 8,000만원 - 자녀학자금 2,698명×470만원('23년 평균단가) = 126억 8,100만원 - 자녀양육비 5,324명×470만원('23년 평균단가) = 250억 2,300만원 - 소액생계비 1,827명×200만원('23년 평균단가) = 36억 5,400만원 **○ 생활안정자금(융자) 증액 148억 8,000만원 = 2,400명 × 620만원('25.2~3월 융자지원 평균단가)** ○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30억원 = (20,000명 × 500만원) × 이차보전율 3.0%

자료: 고용노동부

29) 대하 방식이란 소관 부처 또는 기금관리주체(주관기관)이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시중은행 또는 공공기관(취급기관)에 융자금을 대여하면 취급기관이 해당 자금으로 융자대상자에게 융자를 시행하는 형태의 사업을 의미함.

나. 검토의견

2020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대상에 포함된 이후 집행실적을 보면, 보험설계사와 같이 정보 접근성이 높은 특정 직종에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편중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취약계층 민생지원이라는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타 업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적절히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과거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임금근로자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한 자는 제외함)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하였음.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노동자뿐만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융자를 신청할 수 없어 사실상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적용대상자(49만명)의 15.3%(7.4만명)에 불과하였음.

이에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신용보증사업 등의 지원대상을 전속성이나 종속성이 낮은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확대[30]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강화하였음.[31]

다만, 사업대상이 확대된 이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지원 현황을 보면 직종 중에서 보험설계사 대상 융자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예를 들어 2024년에는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액 104억 1,800만원 중 보험설계사 대상 융자가 39억 7,400만원으로, 전체 융자금액의 38.1%를 차지하였고, 인원 기준으로는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생활안정자금 융자 인원 2,232명 중 보험설계사가 966명으로 전체의 43.3%를 차지하였음.

고용노동부가 2021년 11월 실시한 「제5차 근로복지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에 따르면, 융자대상 확대(특고)와 관련하여 보험설계사와 같이 '정보접근성이 높은 특정 직종'에 융자가 편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하였음.[32]

---

30) 현재 산재보험에 가입 가능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5개 업종(① 보험설계사, ② 콘크리트믹서트럭자차기사, ③ 학습지 교사, ④ 골프장 캐디, ⑤ 택배기사, ⑥ 전속 퀵서비스 기사, ⑦ 대출모집인, ⑧ 신용카드모집인, ⑨ 전속 대리운전기사, ⑩ 건설기계조종사, ⑪ 방문강사, ⑫ 방문판매원, 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⑭ 가전제품 설치기사, ⑮ 화물차주)와 기타업종(경륜선수, 대리운전기사(비전속), 학원강사 등)이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음.

31) 환경노동위원회,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확대>」(2020.9.)

[2020~2025년(3월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보험설계사 지원 비율]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계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임금감소 생계비		소액 생계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년	전체	2,869	24,359	219	1,142	68	842	12	120	101	491	326	1,638	-	-	1,190	15,558	952	4,556
	보험설계사	1,622	12,474	145	783	33	409	5	50	51	249	194	981	-	-	577	7,074	617	2,928
	비중	56.5	51.2	66.2	68.6	48.5	48.6	41.7	41.7	50.5	50.7	59.5	59.9	-	-	48.5	45.5	64.8	64.3
'21년	전체	2,517	13,304	346	1,563	132	1,589	15	135	86	423	375	1,867	546	2,697	339	3,413	678	1,616
	보험설계사	1,446	6,979	235	1,082	51	623	11	95	47	231	187	931	312	1,542	163	1,407	440	1,068
	비중	57.4	52.5	67.9	69.2	38.6	39.2	73.3	70.4	54.7	54.6	49.9	49.9	57.1	57.2	48.1	41.2	64.9	66.1
'22년	전체	4,509	20,481	679	2,939	315	3,749	31	254	263	1,226	606	2,949	1,212	5,945	218	1,076	1,185	2,342
	보험설계사	2,127	8,973	342	1,500	75	918	11	101	102	433	311	1,527	503	2,439	166	835	617	1,221
	비중	47.2	43.8	50.4	51.0	23.8	24.5	35.5	39.8	38.8	35.3	51.3	51.8	41.5	41.0	76.1	77.6	52.1	52.1
'23년	전체	4,115	17,572	670	2,314	265	3,199	25	228	249	1,075	592	2,718	1,193	5,633	97	461	1,024	1,944
	보험설계사	2,085	8,258	391	1,283	76	915	15	144	130	547	338	1,540	546	2,538	62	308	527	983
	비중	50.7	47.0	58.4	55.4	28.7	28.6	60.0	63.2	52.2	50.9	57.1	56.7	45.8	45.1	63.9	66.8	51.5	50.6
'24년	전체	2,232	10,418	412	1,337	247	2,991	11	91	119	482	335	1,544	703	3,224	-	-	405	749
	보험설계사	966	3,974	217	618	63	757	4	25	41	155	162	755	303	1,344	-	-	176	320
	비중	43.3	38.1	52.7	46.2	25.5	25.3	36.4	27.5	34.5	32.2	48.4	48.9	43.1	41.7	-	-	43.5	42.7
'25년 3월	전체	782	3,969	159	637	86	1,058	6	55	50	225	-	-	395	1,832	-	-	86	162
	보험설계사	285	1,317	75	280	21	259	3	30	14	54	-	-	143	642	-	-	29	53
	비중	36.4	33.2	47.2	44.0	24.4	24.5	50.0	54.5	28.0	24.0	-	-	36.2	35.0	-	-	33.7	32.7

자료: 고용노동부

2021년 5월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기준보수액 및 평균임금 등 산정을 위한 소득수준 실태조사 마련」 용역 보고서를 보면, 보험설계사 외에도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임금 조건 하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이들의 경우 계약 기간이 불확실하여 고용 안정성이 낮고, 사회보험 가입과 「근로기준법」 적용이 어려워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아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을 통한 생계보호가 더욱 필요한 측면이 있음.

32) 「제5차 근로복지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p.29.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기준보수액 및 평균임금 등 산정을 위한 소득수준 실태조사 결과(요약)]

(단위: 천원, 명)

업종	구분	평균	중위값	표본수	최소값	최대값
건설기계 조종사	월평균 순소득[1]	3,234.7	3,000.0	619	500.0	7,900.0
골프장 캐디	월평균 순소득(Ⅲ-1)[2]	3,142.6	3,237.5	329	520	6,240.0
	월평균 순소득(Ⅲ-2)[3]	4,543.0	4,046.7	329	520.0	10,063.3
보험설계사	월평균 순소득(Ⅲ-1)[2]	3,512.8	2,791.7	519	322.7	19,759.7
	월평균 순소득(Ⅲ-2)[4]	3,514.2	2,860.7	519	338.3	15,176.0
택배기사	월평균 순소득(Ⅲ-1)[2]	4,562.8	4,333.3	353	1,978.7	8,250.0
	월평균 순소득(Ⅲ-2)[5]	4,157.6	4,075.0	353	1,583.3	6,900.0
퀵서비스기사	월평균 순소득(Ⅲ-1)[2]	2,627	2,358.3	427	650.0	5,225.0
	월평균 순소득(Ⅲ-2)[6]	2,892.4	2,666.7	427	1,041.7	6,030.0
대출모집인	월평균 순소득(Ⅲ-1)[2]	2,869.1	2,250.0	324	329.3	20,625.0
	월평균 순소득(Ⅲ-2)[7]	3,030.7	2,479.2	324	323.4	20,791.7
신용카드 모집인	월평균 순소득(Ⅲ-1)[2]	3,081.3	2,762.5	312	651.6	11,082.9
	월평균 순소득(Ⅲ-2)[8]	3,155.2	2,699.6	312	659.3	10,172.9
대리운전 기사	월평균 순소득(Ⅲ-1)[2]	1,574.3	1,537.5	300	875.0	3,166.7
	월평균 순소득(Ⅲ-2)[9]	1,490.0	1,475.0	300	600.0	5,650.0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월평균 순소득(Ⅲ-1)[2]	4,111.8	3,937.5	300	891.7	10,500.0
	월평균 순소득(Ⅲ-2)[10]	3,883.9	3,016.7	300	-715.8	18,333.3

1) 월평균 소득액 - 월평균 지출비용
2) 전년도 연간소득액/12-월평균 지출비용
3) 전년도 월평균 기본급+(월평균 라운딩수×월평균 라운딩당 캐디피)-월평균 지출비용
4) 전년도 월평균 기본급+(월평균 관리계약 건수×월평균 관리계약 건당 수당)+(월평균 신규계약 건수×월평균 신규계약 건당 수당)-월평균 지출비용
5) 전년도 월평균 기본급+(월평균 배송횟수×박스당 배송비)-월평균 지출비용
6) 전년도 월평균 기본급+(월평균 종사일수×일평균 배송횟수×회당 배송비)-월평균지출비용
7) 전년도 월평균 기본급+(월평균 관리계약건수×월평균 관리계약 건당 수당)+(월평균 신규계약 건수×월평균 신규계약 건당 수당)-월평균 지출비용
8) 전년도 월평균 기본급+(월평균 관리계약건수×월평균 관리계약 건당 수당)+(월평균 신규계약 건수×월평균 신규계약건당 수당)-월평균 지출비용
9) 월 평균 종사일 수×일 평균 대리운전 횟수×1회당 평균 대리운전비-월평균 지출비용
10) 전년도 수행 프로젝트 수×프로젝트 건당 소득-월평균 지출비용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더욱이 이번 추경에서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은 민생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저소득 근로자·최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맞춤형 정책자금 확대의 일환으로 편성되었음을 고려할 때, 보다 취약한 업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 융자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추경 편성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이번 추경의 목적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융자사업 홍보와 집행관리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적기에 융자를 받아 생계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임금채권보장기금】

<지 출>

5. 대지급금 지급: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와 연계한 기금건전성 강화 방안 검토 필요

가. 개 요

'대지급금 지급' 사업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여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2025년도 변경안은 현계획 대비 818억 5,100만원(15.5%) 증액된 6,111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음.[33]

[2025년도 대지급금 지급 사업 변경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도		2025년도				
	당초	수정	당초	현계획(A)	변경안(B)	증감(B-A)	(B-A)/A
대지급금 지급	474,733	727,203	529,346	529,346	611,197	81,851	15.5

주 1) 2024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2) 2025년도 현계획은 2025년 당초 계획액 대비 변경된 계획액

이 사업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34] 및 제7조의2[35]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으로 도산한 기업이 급증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1998년 2월 「임금채권보장법」을 제정하여 1998년 7월부터 사업을 실시하였음.

33) 세부사업: 대지급금 증액(3051-300)(근로기준정책관)

34)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35)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근로자(이하 "재직 근로자"라 한다)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지급한다.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분류되는데, 도산대지급금은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퇴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대지급금이며, 2015년 7월 신설된 간이대지급금은 기업의 도산여부와 관계없이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로 체불 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 '퇴직 근로자 또는 저소득 재직 근로자(최저임금 110% 미만)'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음.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을 기준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①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②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 ③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의 범위에서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재직근로자의 경우 ① 재직 근로자가 체불 임금에 대하여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을 위한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진정·청원·탄원·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②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휴업수당 중 지급받지 못한 휴업수당, ③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할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의 범위에서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2025년도 도산대지급금 및 간이대지급금 유형 비교]

구분		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지급사유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 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
지급대상		퇴직 근로자만 대상	퇴직 근로자 또는 저소득 재직 근로자(최저임금 110% 미만)가 대상
지급범위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상한액		최대 2,100만원(연령별로 상한액 차등, 월별(또는 연별) 상한액 존재)	퇴직자: 1,000만원(항목별로 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상한) 재직자: 700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도산대지급금의 사업집행절차는 사실상의 도산인 경우와 재판상의 도산인 경우로 나뉘어 진행됨. 사실상의 도산은 도산등 사실인정 기관이 지방고용관서인 것이고, 재판상 도산의 경우 도산인정이 법원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차이가 있음.

지방관서 또는 법원을 통해 기업의 도산이 인정될 경우에는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지방관서에 청구하고 지방관서는 요건 충족시 지급청구서 및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절차로 집행됨.

[도산대지급금 사업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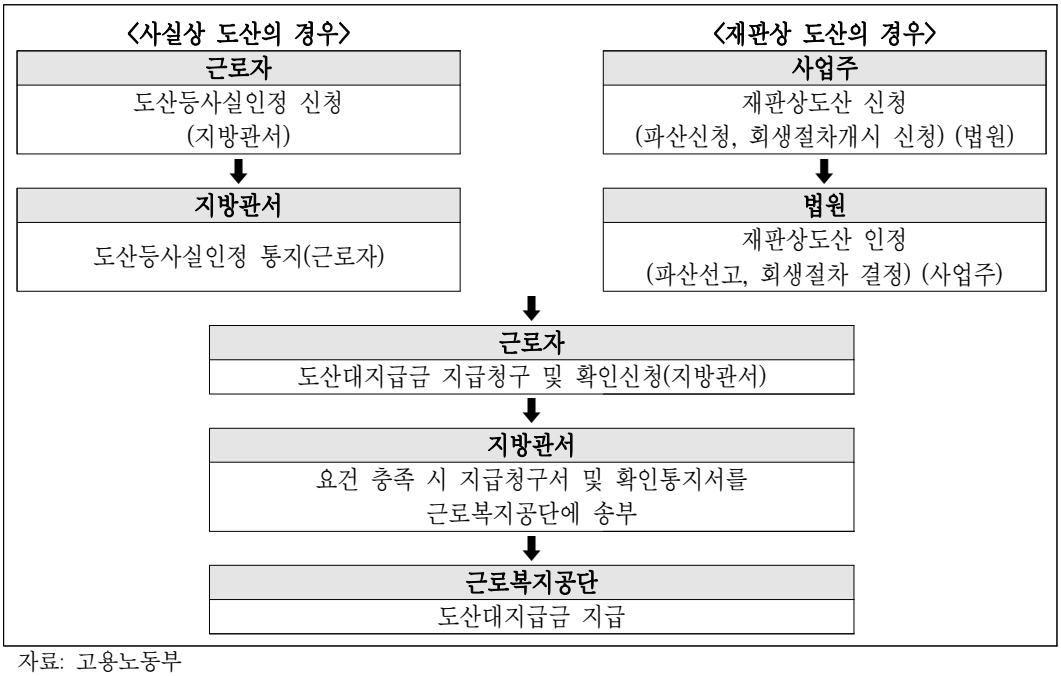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확정판결로 청구하는 경우와 체불확인서로 청구하는 경우 절차가 구분되어 진행되고 두 유형은 임금청구소송 확정판결의 필요 여부에 차이가 있음.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먼저 지방관서가 임금 체불 조사 및 체불금액을 확정한 이후 자체청산을 지도함. 자체청산 지도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미청산 된 경우 근로자는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체불확인서 발급을 통해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음.

확정판결로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관서가 소송제기용 체불확인서를 발급하고 근로자는 이를 근거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지급요건 등을 확인한 이후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함.

반면 체불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금 청구소송 확정판결을 요하지 않음. 자체청산 지도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미청산 된 경우 지방관서가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확인서를 발급함. 이후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지급요건 등을 확인한 이후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함.

[간이대지급금 사업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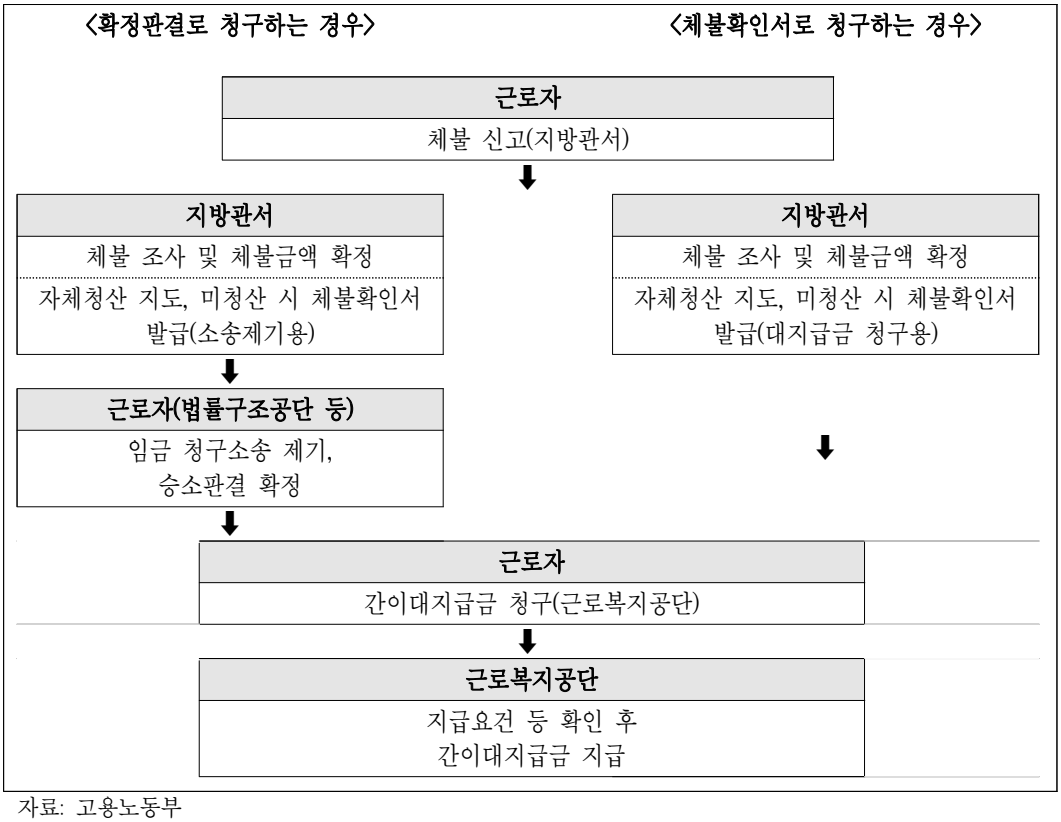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확정판결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것에 비해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절차가 간소하고 시간이 오래걸리지 않아 실제로는 체불확인서 발급을 통해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음.

대지급금 지급 사업은 2025년 제1회 추경안에 818억 5,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2023년 이후 급격한 체불임금액 증가 후 최근까지 그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2025년 1분기 사업실적으로 바탕으로 예상되는 '간이대지급금' 추가소요액을 증액한 것임.

[2025년 대지급금 지급 사업 변경안 세부내역]

2025년도 계획		2025년도 변경안(증액분)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293억 4,600만원	○ 기타보전금(310-04) 5,264억 300만원 1.도산대지급금: 422억 6,742만원 5,798명×729만원=422억 6,742만원 2.간이대지급금: 4,841억 3,662.8만원 99,188명×488.1만원=4,841억 3,662.8만원	6,111억 9,700만원	**○ 기타보전금(310-04) 6,082억 5,400만원** 1.도산대지급금: 422억 6,742만원 5,798명×729만원=422억 6,742만원 **2.간이대지급금: 5,659억 8,731.4만원** **109,308명×517.7913만원=5,659억 8,731.4만원**
	○ 사업출연금(350-02) 29억 4,300만원 1. 소제기 비용 6,212건×21만 7,218원=13억 4,935.8만원 2. 보전처분 비용 4,331건×11만2,925원=4억 8,907.8만원 3. 강제집행 비용 158건×86만 4,075원=1억 3,652.4만원 4. 기타 소송비용: 2억 804만원 가. 변호사 소송수임료 1,432.723만원×10건=1억 4,327.2만원 나. 자문변호사료 259.3만원×12개월=31,116천원 다. 채권관리 교육비용 33,652,000원=3,365.2만원 5.미회수채권 위탁(한국자산관리공사) 수수료 5,114억 8,500만×25.1%×5.917%=7억 5,964.1만원		○ 사업출연금(350-02) 29억 4,300만원 1. 소제기 비용 6,212건×21만 7,218원=13억 4,935.8만원 2. 보전처분 비용 4,331건×11만2,925원=4억 8,907.8만원 3. 강제집행 비용 158건×86만 4,075원=1억 3,652.4만원 4. 기타 소송비용: 2억 804만원 가. 변호사 소송수임료 1,432.723만원×10건=1억 4,327.2만원 나. 자문변호사료 259.3만원×12개월=31,116천원 다. 채권관리 교육비용 33,652,000원=3,365.2만원 5.미회수채권 위탁(한국자산관리공사) 수수료 5,114억 8,500만×25.1%×5.917%=7억 5,964.1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025년 3월까지의 지급근로자 규모인 27,328명이 평균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여 예상 간이대지급금 예상 지급근로자 수를 당초 계획 대비 1만 120명 증가한 10만 9,308명으로 조정하였고, 1인당 지급단가 또한 최근 3년간의 실제 지급단가인 약 517만원으로 인상하였음.

[2025년 대지급금 지급 사업 변경안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① '25년 간이대지급금 지급 집행액(추계): 5,659억 8,700만원 - 연간 예상 지급 근로자수: 10만 9,308명 ⇒ (2만 7,328명('25년 3월 지급 근로자수) ÷ 3개월) × 12개월 - 1인당 단가 : 517만 9,913원(최근 3년 평균단가) ⇒ 최근 3년 단가: ('24년) 554만 666원, ('23년) 512만 9,012원 ('22년) 486만 4,060원 - 연간 지급 예상액: 5,659억 8,700만원(109,308명×517만 9,913원) ② '25년 추가 요구액: 818억 5,100만원 ⇒ (연간 간이대지급금 지급 예상액 5,659억 8,700만원) - ('25년 간이대지급금 예산액 4,841억 3,600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나. 검토의견

경기 위축으로 인한 체불임금 증가로 대지급금 지급액이 증가하고 채권회수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임금체불을 완화하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2019년 소액체당금 지급한도를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2021년 간이대지급금 절차간소화와 재직자를 지급대상자에 포함하는 제도개선으로 대지급금 지급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19년부터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적자가 발생하고 기금적립금이 감소하고 있음.

[2025년 대지급금 지급 사업 변경안 세부내역]

(단위: 억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수입(A)	4,482	4,884	5,156	5,239	5,654	6,173	6,630
지출(B)	4,268	5,192	6,404	6,274	6,004	7,923	8,362
대지급금 지급액	3,740	4,599	5,797	5,466	5,369	6,869	7,272
수지차(A-B)	214	△308	△1,248	△1,035	△350	△1,750	△1,732
적립금	9,895	9,587	8,340	7,305	6,955	5,205	3,473

자료: 고용노동부

2024년 결산 기준으로 지급 후 미납총액이 3조 6,997억 4,700만원에 달하고, 이 중 4년 이상 채권의 비율이 1조 5,942억 2,600만원으로 전체의 43.1%를 차지하고 있어 대지급금 지급 후 회수에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2024년 결산 기준 대지급금 미수납채권 연령 분석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미납총액 (비율)	채권 연령 현황				
		1년 이내	1~2년	2~3년	3~4년	4년 이상
도산대지급금	919,715 (100.0)	47,687 (5.2)	36,403 (4.0)	24,304 (2.6)	47,081 (5.1)	764,240 (83.1)
간이대지급금	2,780,032 (100.0)	567,823 (20.4)	608,601 (21.9)	400,858 (14.4)	372,764 (13.4)	829,986 (29.9)
합계	3,699,747 (100.0)	615,510 (16.6)	645,004 (17.4)	425,162 (11.5)	419,845 (11.3)	1,594,226 (43.1)

자료: 근로복지공단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 간이대지급금액 818억 5,100만원을 증액하여 지출할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성 문제는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임.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대지급금 지급 원인이 되는 임금체불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함.

2024년의 경우 상당 기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영향과 건설경기 악화, 경제·정치적 불확실성 증대로 매월 체불임금액이 증가하였고, 2025년 1~2월 동안에는 총 4,315억 4,900만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하였음.

임금체불의 경우 2022년 1조 3,472억원, 2023년 1조 7,845억원, 2024년 2조 448억원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전체 체불임금액의 약 40%가 퇴직금임.

[2022~2024년 체불임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체불 사업장 수	임금 체불 근로자 수	체불 임금액	체불 사업장 수	임금 체불 근로자 수	체불 임금액	체불 사업장 수	임금 체불 근로자 수	체불 임금액
임금	88,870	168,109	716,010 (53.1)	93,559	199,874	974,635 (54.6)	94,018	200,917	1,058,721 (51.8)
퇴직금		53,821	546,559 (40.6)		60,376	683,843 (38.3)		66,993	822,941 (40.2)
기타수당		15,571	84,640 (6.3)		15,182	126,052 (7.1)		15,302	163,186 (8.0)
전체 체불임금액		237,501	1,347,209		275,432	1,784,530		283,212	2,044,848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년도 체불임금액에서 해당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장 규모별로 체불임금액 규모를 살펴보면, 전체 체불임금액의 70% 이상이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음. 2022년 전체 체불임금액 1조 3,472억원 중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9,960억원(73.9%)을 체불했고, 2023년 전체 체불임금액 1조 7,845억원 중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1조 3,218억원(74.1%)을 체불하였으며, 2024년에는 전체 체불임금액 2조 448억원 중 1조 4,591억원(71.4%)을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체불하였음.

[2022~2024년 기업규모별 임금체불 현황]

(단위:억원, %)

연도	기업 규모				
	5인 미만	5~29인	30~99인	100인 이상	전체
2022	4,533 (33.6)	5,427 (40.3)	2,034 (15.1)	1,469 (10.9)	13,472 (100.0)
2023	6,150 (34.5)	7,068 (39.6)	2,666 (14.9)	1,937 (10.9)	17,845 (100.0)
2024	6,659 (32.6)	7,932 (38.8)	3,277 (16.0)	2,559 (12.5)	20,448 (100.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년도 체불임금액에서 해당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고용노동부

특히 2023년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사업장 도입률(23.2%) 및 근로자 가입률(33.1%)이 상대적으로 낮아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가 미흡한 상황으로, 사업장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게 된 상황에서는 임금보다 더 큰 금액인 퇴직금을 체불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임.

[2023년 기준 기업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 및 가입률]

(단위: 개소, 인, %)

구 분	사업장 도입률			근로자 가입률		
	도입대상	도입사업장	비율	가입대상	가입근로자	비율
합계	1,625,183	429,345	26.4	12,722,191	6,747,884	53.0
30인 미만	1,532,993	356,029	23.2	5,165,440	1,709,990	33.1
30～49인	41,259	30,341	73.5	952,149	535,345	56.6
50～99인	29,860	24,289	81.3	1,199,643	729,334	61.0
100～299인	15,361	13,451	87.6	1,527,291	1,050,008	68.7
300인 이상	5,710	5,235	91.7	3,877,668	2,723,207	70.2

자료: 통계청

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를 시행 중임.

이 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퇴직급여가 사외에 적립이 되어 근로자의 퇴직급여 체불이 사전에 예방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대지급금 수요도 완화될 것으로 보임.

실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22년) 이후 2024년까지 4만 3,058명에게 총 1,765억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한 실적이 있음.

[2022~2024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퇴직급여 지급 현황]

(단위: 명, 억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퇴직자	632	11,897	30,529	43,058
퇴직급여 지급	1.8	398	1,365	1,764.8

자료: 고용노동부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추경 후 예상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계획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활성화와 연계하여 수립·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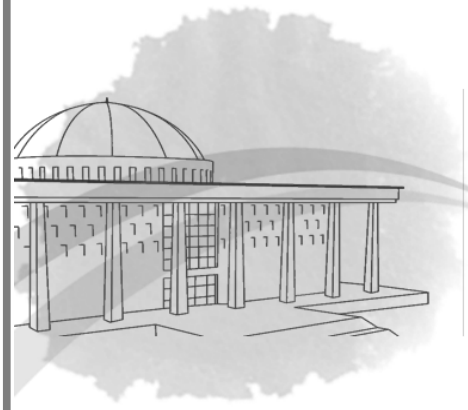

국토교통부

Ⅰ. 개 관

1.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추경안의 총수입은 본예산과 동일한 27조 6,409억원으로, 예산은 1조 6,921억원, 기금은 25조 9,488억원임.[1)]

[2025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추경안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 (현계획)(A)	추경안 (변경안)(B)	증감(B-A)	(B-A)/A
예 산	17,152	16,921	16,921	-	-
기 금	235,663	259,488	259,488	-	-
합 계	252,815	276,409	276,409	-	-

주 1) 2024년도 본예산 중 기금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2) 2025년도 기금 현계획액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문의 : 강세욱 예산결산조사관 sewook@assembly.go.kr (02-6788-5675)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5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추경안의 총지출은 58조 5,116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3,356억원(0.6%) 증가함. 예산은 22조 8,84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592억원(0.7%) 증가하고, 기금은 35조 6,276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764억원(0.5%) 증가함.

[2025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추경안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 (현계획)(A)	추경안 (변경안)(B)	증감(B-A)	(B-A)/A
예 산	236,439	227,248	228,840	1,592	0.7
기 금	378,966	354,512	356,276	1,764	0.5
합 계	615,405	581,760	585,116	3,356	0.6

주 1) 2024년도 본예산 중 기금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2) 2025년도 기금 현계획은 자체변경을 포함한 계획액 기준

나.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세입추경안은 총 5개 회계(일반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며, 본예산 대비 1,496억원(1.0%) 증가함.

[2025년도 국토교통부 세입추경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일반회계	1,899	2,010	2,010	-	-
교통시설 특별회계	148,134	137,856	139,352	1,496	1.1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8	8	8	-	-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5,859	2,049	2,049	-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5,804	5,837	5,837	-	-
합계	161,704	147,760	149,256	1,496	1.0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세출추경안은 총 5개 회계(일반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며, 본예산 대비 2,158억원(0.5%) 증가함

[2025년도 국토교통부 세출추경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일반회계	221,312	234,213	234,795	582	0.2
교통시설 특별회계	148,134	137,856	139,352	1,496	1.1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144	137	137	-	-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5,840	2,036	2,036	-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21,617	20,380	20,460	80	0.4
합계	397,047	394,621	396,780	2,158	0.5

주) 총계 기준

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2개 기금(주택도시기금,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는 103조 6,507억원으로 현계획과 동일함.

기금별로 살펴보면, 주택도시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의 재원을 활용함에 따라 (총계기준) 현계획 대비 기금 규모의 변동은 없음.

[2025년도 국토교통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계획	2025년도				
		당초	현계획(A)	변경안(B)	증감(B-A)	(B-A)/A
주택도시기금	1,054,003	1,033,915	1,033,915	1,033,915	-	-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2,654	2,592	2,592	2,592	-	-
합계	1,056,657	1,036,507	1,036,507	1,036,507	-	-

주) 총계 기준이며, 2024년도 계획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기준

2.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2025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신규 및 증액편성된 사업은 총 12개 세부사업으로, 총 증액규모(총계 기준)는 2,158억 700만원임.[2)]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12·29 여객기사고 후속조치'로 활주로이탈방지장치 설치,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방위각개선 등을 위해 '일반공항시설관리' 사업과 '항행안전시설운영 및 구축' 사업에 각각 223억 9,000만원, 209억원을 증액하였음.

또한, 산불피해 이재민에게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다가구매입임대(출·융자)' 사업에 1,520억원을 증액하였음.

그리고, 12·29 여객기사고 추모행사를 위한 '12·29여객기사고 피해지원' 사업 1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2025년도 국토교통부 추경안 신규 및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4년도 예산	2025년도			
		본예산 (당초)(A)	추경안 (변경안)(B)	증감(B-A)	(B-A)/A
[일반회계]					
건설 및 지하안전관리	1,996	1,687	3,047	1,360	80.6
건축안전	8,062	9,395	10,595	1,200	12.8
국토안전관리원출연	84,336	85,950	86,863	913	1.1
[교통시설특별회계]					
12·29여객기사고 피해 지원	-	-	1,428	1,428	순증
드론안전및활성화지원	23,343	22,330	32,330	10,000	44.8
일반공항시설관리	389	314	22,704	22,390	7,131
항행안전시설운영및구축	35,023	44,226	65,126	20,900	47.3
도로유지보수	837,805	866,507	959,507	93,000	10.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도시재생사업	429,540	472,946	480,946	8,000	1.7
[주택도시기금]					
다가구매입임대(융자)	4,637,000	3,044,394	3,124,394	80,000	2.6
다가구매입임대출자	2,434,322	273,070	345,070	72,000	26.4
분양주택(융자)	2,015,332	1,471,639	1,496,039	24,400	1.7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국토안전관리원 출연: 지반탐사방식 다양화 필요

가. 개 요

'국토안전관리원 출연' 사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지하안전 관리, 건축시설 안전점검 등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2025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9억 1,300만원(1.1%) 증액된 868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음.[3)]

[2025년도 국토안전관리원 출연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국토안전관리원 출연	84,336	85,950	86,863	913	1.1

국토안전관리원은 2015년부터 도로지반 내 공동(空洞)을 발견·보수하기 위해 지반침하 취약지역에 대한 지반탐사를 실시하여 왔고, 2025년도 추경안에는 지반탐사 연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음.

추경안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도로지반 내 차량형 도로지반조사장비 1대를 추가로 구매(8억 5,800만원)하고, 탐사구간 연장에 따른 출장비 3,500만원, 소모품 구입 2,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9억 1,3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음.

3) 세부사업: 국토안전관리원출연(4313-301)(건설정책국)

[차량형 도로지반조사장비 보유 현황]

구분	'23년까지	'24년	'25년	'25년 추경안
차량형 도로지반조사장비	2대	4대 (2대 추가구매)	5대 (1대 추가구매)	6대 (1대 추가구매)

자료: 국토교통부

[2025년 국토안전관리원 출연 사업 추경안 세부내역]

'25년 예산	'25년 추경안
산출내역	산출내역
○ 지반침하 안전점검 14억 6,200만원 **가. 차량형 도로지반조사 장비 구매 8억 5,000만원** 나. 협소지역용 도로지반조사 장비 구입비 1억 6,500만원 **다. 장비 유지보수 및 지반탐사 운영 4억 4,700만원** * 안전점검 수행출장비 =2억 6,800만원 * 소모품 구입 = 8,900만원 * 안전점검 지자체 교육 운영 = 9,000만원	○ 지반침하 안전점검 23억 7,500만원 **가. 차량형 도로지반조사 장비 구매 17억 800만원** 나. 협소지역용 도로지반조사 장비 구입비 1억 6,500만원 **다. 장비 유지보수 및 지반탐사 운영 5억 200만원** * 안전점검 수행출장비 =3억 300만원 * 소모품 구입 = 1억 900만원 * 안전점검 지자체 교육 운영= 9,000만원

자료: 국토교통부

[차량형 도로지반조사장비]

자료: 국토교통부

나. 검토의견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지표투과레이더(GPR) 지반탐사방식은 탐사 심도가 얕아(2m내외) 최근 문제가 되는 도심지 대규모 굴착공사장 탐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GPR탐사 외에 다양한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재 국토안전관리원은 레이더파를 반사시켜 반사신호를 분석하는 지표투과레이더(GPR:Ground Penetrating Radar) 지반탐사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이번 추경안에서도 차량형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위한 장비 구입 예산을 편성하였음.

[GPR탐사 수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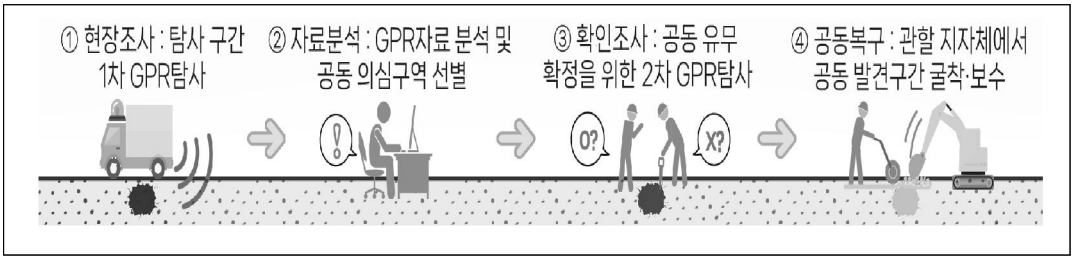

GPR탐사는 노후하수관로 등 지하매설물 손상을 도로 통행제한 없이 탐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우수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그러나 GPR탐사는 탐사심도가 1~3m내외로 지표면 근처의 탐사만 가능하여, 지하 깊은 곳에서 발생한 굴착공사장의 공동(空同)을 탐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자체 GPR탐사 장비를 유일하게 보유하여 지반탐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서울과 부산에서 최근 대형 싱크홀 사고[4]가 발생하였는데, 그 중 서울 명일동 싱크홀 사고지역의 경우 사고 발생 4개월 전 GPR탐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얕은 심도를 대상으로 하는 GPR탐사 장비는 기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깊은 심도의 대형 굴착공사장에서 지반침하를 탐사하기 위한 대안적인 탐사방식을 검토하여 장비를 구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4) 서울 연희동(2024.8.), 명일동(2025.3.), 부산 사상구(2024.9.)

[공동조사법 비교표]

구분	GPR 탐사	표면파 탐사	전기 비저항탐사
탐사 원리	• 레이더파를 반사시켜 반사 신호를 분석하는 물리탐사	• 지표면을 따라 전파하는 표면파를 관측하여 S파(전단파) 속도 분포를 파악	• 전류를 방사하여 획득한 전기 비저항 분포에 따른 지하구조 파악
탐사 심도	• 1~3m 이내 (주파수에 따라 다름)	• 50m 이내	• 수백~수천m
장점	• 얕은 심도 해상도 높음 • 이동 중 탐사 가능	• 굴착 없이 탐사 가능	• 상대적으로 다른 탐사법에 비해 분석이 쉬움
단점	• 조사 심도가 가장 낮음	• 차량 소음 및 진동 등 영향으로 신뢰도 저하	• 도로 손상(드릴천공 후 전극 고정) • 금속 매설물에 취약
도로 차단	• 불필요	• 필요	• 필요

자료: 국토교통부

2. 지반탐사 지원: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지원 필요

가. 개 요

'지반탐사 지원' 사업은 지반침하 위험구간에 대한 지반탐사 용역비를 지자체에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추경안은 13억 6,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5)]

[2025년도 지반탐사 지원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건설 및 지하안전관리	1,996	1.687	3,047	1,360	80.6
지반탐사 지원	-	-	1,360	1,360	순증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지자체 지반탐사를 지원 중이나 한정된 장비·인력을 이용한 탐사에는 한계가 존재하고, 최근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고위험구간에 대한 신속한 탐사를 위해 지자체에 대한 지반탐사 용역비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음.

추경안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세종시에 대한 자치단체 보조사업(보조율 50%)으로 13억 6,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2025년 지반탐사 지원 사업 추경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지자체 (광역시)	'25년 소요예산			탐사연장 (km)
	합계	국비	지방비	
인천광역시	900	450	450	450
대전광역시	200	100	100	100
대구광역시	700	350	350	350
부산광역시	600	300	300	300
광주광역시	120	60	60	60
세종특별자치시	200	100	100	100
합 계	2,720	1,360	1,360	1,360

자료: 국토교통부

5) 세부사업: 건설 및 지하안전관리(4323-304)(건설정책국)

나. 검토의견

지자체 수요에만 근거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기 보다는, 데이터나 시스템에 기반한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을 선정하여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는 2024년부터 지자체 지반탐사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 신설을 추진하였고 이를 위해 각 지역별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추경에서는 지방비 매칭이 가능한 광역시 6개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그런데 이는 굴착공사현장 주변, 노후하수관로 매설 지역, 지하수위 급변 지역, 상습침수지역이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역 등[6] 데이터나 시스템에 기반하여 선별된 고위험지역과 무관하게 지자체 수요에만 근거하여 사업대상을 선정한 문제가 있음.

이로 인해 지반침하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경기도(173건), 전북도(65건), 강원도(65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반면 사고건수가 낮은 인천·대구에는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등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될 우려가 있음.

[각 지역별 지반침하 사고 발생 현황]

(단위: 건)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전 국	284	142	177	162	102	867
서울특별시	15	11	20	22	17	85
부산광역시	29	17	8	16	19	89
대구광역시	2	1	2	4	3	12
인천광역시	20	2	1	2	3	28
광주광역시	55	13	6	28	6	108
대전광역시	20	8	9	9	4	50
울산광역시	2	5	3	0	0	10
세종특별자치시	2	0	1	0	3	6
경기도	47	35	36	26	29	173

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지반침하위험도평가 및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등)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지반침하위험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라 한다)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긴급복구공사를 완료한 경우
2.제34조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제34조 제4항에 따라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명령을 받은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지반침하의 위험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반침하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 제1항에 따른 시·군·구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중점관리대상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하여야 한다.

(단위: 건)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강원특별자치도	30	5	10	18	2	65
충청북도	24	2	9	10	2	47
충청남도	5	5	4	0	2	16
전북특별자치도	7	14	40	3	2	66
전라남도	7	7	5	4	4	27
경상북도	14	12	16	8	2	52
경상남도	5	5	4	9	3	26
제주특별자치도	0	0	3	3	1	7

자료: 국토교통부

따라서 단순히 지자체의 요청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보다는 고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지원대상 및 규모를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신속한 예산 집행 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은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12억원(62.1%) 증액된 31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음.[7)]

[2025년도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건축안전	8,062	9,395	10,595	1,200	12.8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1,933	1,933	3,133	1,200	62.1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은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에 대해서 총 공사비 4천만원 이내에서 국가가 33%를 보조(국가・지자체・건축물관리자 각각 1/3씩 부담)하는 것임.

추경안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화재안전성능보강이 필요한 건축물 2,057동 중 1,640동의 보강이 완료되었고, 미완료된 417동 중 233동은 2025년 본예산 및 2024년 이월예산으로 보강예정이며, 나머지 184동에 대한 추가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그 중 50%인 92동(지원단가 1,333만원)에 대한 예산 12억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본예산 및 추경안 세부내역]

항목		건수	산출근거
미완료 건축물		417건	진행중 220건 + 미접수 192건 + ’25년 완료 5건
현재	가용 예산	31억원	신규 예산 19.33억원 + 이월 예산 11.67억원
	보강 가능 건수	233건	가용 예산 31억원 ÷ 1,333만원/건
잔여 동수		184건	미완료 건축물 417건 - 보강 가능 건수 233건
사업 완료 필요 예산		24.5억	잔여 동수 184건 × 1,333만원/건
요구 추경 예산		12억	(184건 중) 92건 × 1,333만원/건

자료: 국토교통부

7) 세부사업: 건축안전(6132-308)(국토도시실)

나. 검토의견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은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저조하고 신청 접수부터 공사 시행 후 보조금 지급까지의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신속한 예산 집행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의 추진근거인 「건축물관리법」 제29조의2(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의 유효기간이 2025년까지이고,[8] 기한 내 보강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9] 성능보강 미완료 건축물에 대한 예산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됨.

그런데 이 사업의 실집행률을 살펴보면 2022년 19.0%, 2023년 7.8%, 2024년 29.0%, 2025년은 4월 기준 2.2%에 불과하는 등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사업참여 유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상황임.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집행실적]

(단위 : 억원, %)

구분	예산			집행	
	본예산(A)	추경, 이월금 등 (B)	예산현액(A+B)	실집행액 (C)	실집행률(%) (C/A+B)
'22년	459.16	24.25	483.41	92.00	19.0
'23년	-	334.84	334.84	26.21	7.8
'24년	19.33	-	19.33	5.60	29.0
'25.4월	19.33	11.67	31.00	0.67	2.2

자료: 국토교통부

사업비 지원의 근거법률이 올해까지만 유효하고 처벌규정으로 인해 신청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신청접수부터 공사시행 후 보조금 지급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8) 「건축물관리법」
제29조의2(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자가 제28조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강대상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4. 18.]
[법률 제19367호(2023. 4. 18.)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9) 「건축물관리법」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28조제6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받고 정해진 기한까지 보완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경 예산이 연내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화재성능보강 사업 절차]

신청접수		보강계획수립		보강계획 검토		보강계획 승인		공사시행		검사 및 지급
LH	➡	건축물관리자·보강사업자	➡	LH	➡	지자체	➡	건축물관리자·보강사업자	➡	지자체 (LH 지원)

【교통시설특별회계(공항계정)】

<세 출>

4. 일반공항 시설 관리: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 설치대상 공항의 적정성 검토 필요

가. 개 요

'일반공항 시설관리' 사업은 12·29 여객기사고 이후 조류탐지레이더,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 등 공항시설 개선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223억 9,000만원(7,130.6%) 증액된 227억 400만원이 편성되었음.[10)]

[2025년도 일반공항 시설관리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일반공항 시설관리		389	314	22,704	22,390	7,130.6
	조류충돌 예방강화 사업	-	-	3,600	3,600	순증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 설치	-	-	15,056	15,056	순증
	공항시설 개선	-	-	3,734	3,734	순증

내역사업인 **'조류충돌 예방강화 사업'**은 총포·경보기 등 기존 조류대응체계는 공항에서 수km 떨어진 조류활동 예방에 한계가 있으므로 원거리 조류를 사전에 탐지하기 위한 조류탐지레이더를 설치하고, 조류충돌예방 통합감시센터를 구축하는 것임.

추경안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민·군 겸용 공항으로 국방부와 협의가 필요한 7개 공항을 제외한 김포공항(5억원), 제주공항(5억원), 양양공항(3억원), 울산공항(3억원), 여수공항(3억원), 무안공항(3억원)에 대한 조류탐지레이더 설계비 22억원과 조류충돌 예방 통합감시센터 설계비 및 구축비 14억원이 편성되었음.

10) 세부사업: 일반공항 시설관리(3532-312)(항공정책실)

[조류탐지레이더 개요]

구분	조류 탐지 레이더
개요	ㅇ 레이더를 사용하여 공항 주변의 조류 이동을 실시간 파악한 후, 관제사, 예방인력 등에 정보를 제공 - (정보수집 절차) ❶ 레이더를 통해 조류의 위치·고도를 측정 → ❷ 측정 데이터를 컴퓨터 송부 → ❸ 모니터에 표출 * 예방인력은 소형 단말기(휴대)를 통해 조류의 서식처나 수량 파악 가능
도입 현황	ㅇ 독일 브란덴브루크 공항, 덴마크 코펜하겐 공항, 네덜란드 로테르담 공항, 스페인 빌바오 공항 등에서 도입 ※ 국내 공항은 서산공항(군공항)이 유일하게 도입됨
활용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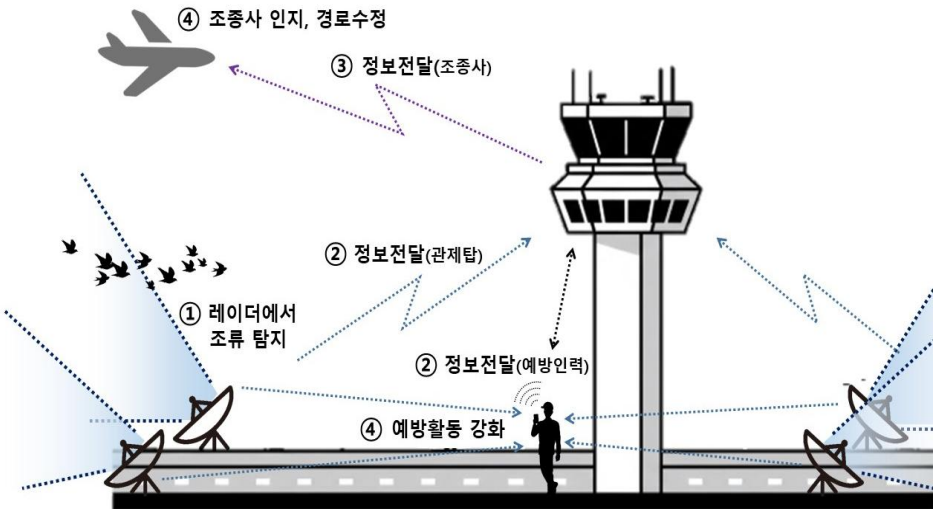

내역사업인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 설치'** 사업은 항공기가 활주로 이탈시 시멘트 블록이 부서지며 항공기를 제동하는 장치인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EMAS)[11]을 종단안전구역[12] 확보가 곤란한 공항을 대상으로 설치하는 것임.

추경안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공항의 지형여건 등으로 종단안전구역 확보가 어려운 포항경주공항(32억 5,700만원), 사천공항(31억 8,600만원), 울산공항(49억 4,900만원, 제주공항(36억 6,400만원) 등 총 150억 5,600만원이 설계비로 편성되었음.

11) Engineered materials arresting system

12) 항공기가 활주로를 벗어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확보된 활주로 끝 부분에 설정된 안전지대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 설치 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공항	'25년	'26년	'27년	총계
포항경주	3,257	15,594	8,749	27,600
사천	3,186	15,255	8,559	27,000
울산	4,949	23,696	13,295	41,940
제주	3,664	17,543	9,843	31,050
소계	15,056	72,088	40,446	127,590

자료: 국토교통부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 개요]

구분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
개요	ㅇ종단안전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제동시스템으로 항공기 이탈 시 항공기 무게로 바닥 시멘트 블록이 부서져 제동시키는 원리 ㅇ 설계 및 제작(1.5년) → 운송(2개월) → 설치(4~6주) 등 총 2년 정도 소요 예상(사전 검증절차 포함 시 2.5년 예상)
도입 현황	ㅇ 미국·중국·스페인·일본·대만 등에 설치(스웨덴·中·프랑스 등 업체) ▲(美) 보스턴 로건 등 72개 공항, ▲(中) 텅충 투오펑, ▲(日) 하네다, ▲(대만) 쑹산 등 ㅇ 국내의 경우 설치사례는 없고, 흑산·울릉공항에 설치 검토 중
활용 예시	

나. 검토의견

활주로이탈방지시스템(EMAS)은 다른 제동시스템에 비해 설치·유지·복구 비용이 매우 높은 편이라는 점, 국내 공항의 EMAS 도입 가능성 및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는 점, EMAS 도입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국방부와 협의가 필요한 공항 등도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시 충분한 조사·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활주로를 벗어난 항공기를 제동하는 시스템은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EMAS 외에도 항공기 제동용 네트 장치, 항공기 제동용 와이어 케이블, 이동식 항공기 포획시스템 등이 있음.

[항공기 제동 시스템 유형]

구 분	추정가격		수명주기 비용(LCC) 관련
	설치비(USD)	유지보수 비용 및 주기	
항공기 제동용 네트 장치 (Aircraft Arresting Barrier)	약$100만~$150만 (케이블형 + 그물/지주 장치가 추가된 시스템, 규모에 따라 상이)	평시 유지비 낮음 사용 시 그물 교체 필요 10년 주기 기계부 오버홀	시스템+그물교체 비용 주기적 정비 비용은 케이블 시스템과 유사
항공기 제동용 와이어 케이블 (Aircraft Arresting cable)	약 $100만 (美 미시간 주 설치사례)	10년 주기 부품 교체 및 오버홀	초기 설치비가 수명주기 총비용의 약 50% 수준 (사용빈도가 낮기 때문) 20년간 유지보수 + 재설치비 포함 총 $200만 수준(설치비 $100만 기준) ※ 재설치비가 기존 설치비 50% 수준
이동식 항공기 포획 시스템 (Mobile Aircraft Arresting System)	장비비 : 약 $61.5만 현장설치비 : 약 $1만 (美 공군설치사례)	10년 주기 오버홀 사용 없을 시 보관 유지	20년간 약 $100만~$120만 예상 고정형 케이블 방식보다 저렴
항공기 이탈방지 시스템 (Engineered Material Arresting System)	평균 $500만 (300ftx150ft /45mx15m 기준) 준비공사:$14/ft2 자재설치 : $78/ft2	10년 유지비 약 $17만(시스템당) 항공기 진입 시 복구비 $40만~150만	설계수명 20년 20년 수명주기 총비용은 설치비의 약 1.8배 수준

자료 : FAA Order 5200.9, FAA AC150 5220-9B 등

이 중 EMAS는 다른 유형의 제동시스템에 비해 설치비(평균 500만 달러), 유지비(10년간 17만 달러), 복구비(40만~150만 달러) 등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시스템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EMAS 제동효과, 사고 예방(혹은 미작동) 사례, EMAS 기술의 한계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토교통부가 「항공기 이탈방지 제동장치(EMAS) 국내 도입방안 연구」(2025.2~)를 통해 국내 EMAS 도입 가능성과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에서 이번 추경안의 설치 대상 공항 및 예산 규모를 확정한 문제가 있음.

[항공기 이탈방지 제동장치(EMAS) 국내 도입방안 연구 세부내용]

가. 항공기 이탈방지 제동장치(EMAS) 기술현황 및 해외 적용사례 조사 ㅇ EMAS 상용화 기술의 종류, 업계 현황 ㅇ 미국, 중국, 일본 등 EMAS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해외 공항 사례 조사·분석(사례 조사 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 - EMAS 설치 공항 여건 등 도입 배경, 도입 과정 중 논의된 쟁점사항 등 - 공항의 물리적인 사항(활주로, 안전구역 길이, EMAS 설치규모 등), 기후·환경요인, 항공운항적 사항(취항 항공기 종류, 항공기 운항 횟수·방향, 운항 시 제약사항 등) 등 국내 적용 가능성 검토 시 고려해야 할 사항 ㅇ EMAS 제동효과, 사고 예방(혹은 미작동) 사례, EMAS 기술의 한계사항(오버런 외 다양한 유형의 항공 안전 사고 등 비정상 상황에 미치는 영향 분석) 나. 국내 EMAS 도입 가능성 검토 ㅇ 국내 공항의 물리적 요인(활주로 길이, 공항 인근 여건, 취항항공기 종류 등), 기후, 환경적 요인 등을 고려한 EMAS 국내 적용·도입 가능성 분석 ㅇ EMAS 운영 비용, 관리 인력, 유사시 대응 계획 등 고려 필요사항 수립 다. 국내 EMAS 도입 방안 검토 ㅇ 국내 적용 가능한 EMAS 제작·설치 기술 및 도입 검토 가능 공항 도출 ㅇ 국내 EMAS 도입시 일정, 비용, 유지관리 방안 등 검토(해외기술, 국내기술 개발 비교) 라. 국내 EMAS 도입을 위한 제도 마련 ㅇ EMAS 관련 ICAO, FAA 등 국제기준 현황 조사 ㅇ 미국, 중국, 일본 등 국가별 EMAS 설계기준 현황 조사 ㅇ 국내 EMAS 설치 시 허가를 위한 검토사항, 허가기준 등 마련

자료 : 국토교통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주공항의 경우 종단안전구역이 권고 수준까지 확보된 상황으로 규정상 EMAS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은 아님.[13] 다만, 종단안전구역 밖에 설치되어

13)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21조(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의 크기) ① 다음 분류문자를 가진 활주로의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에서부터 90m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분류번호 1, 2인 계기활주로
2. 분류번호 3, 4
3.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착륙대 종단에 제동시스템을 설치

있는 방위각시설[14]이 다른 공항과 달리 강풍 등의 영향으로 H형 철골구조로 설치되어 있어 이를 부러지기 쉬운 경량 철골로 교체할지, 아니면 그대로 둔 상태에서 EMAS를 설치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 추경안이 편성되었음.

[방위각시설 현황]

구조형태	둔덕형	콘크리트 돌출형	H빔 구조물
사진			
해당공항 (시설개소)	무안(1), 광주(1), 여수(1), 포항경주(1)	김해(2), 사천(2)	제주(1)

또한, 포항경주 및 사천공항은 민·군 겸용 공항으로 공항구역 內 기지 방호시설, 군용기 운항시설 등을 고려할 때 EMAS 설치 여부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참고로 조류탐지레이더의 경우도 국방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민·군 겸용 공항의 경우 이번 추경안의 편성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EMAS는 대상 공항의 시설 여건, 기상·기후 등 환경적 요인, 취항 항공기의 기종·중량 등 다양한 요소의 종합 고려가 필요한 시설로, 해외사례와 국내 공항의 EMAS 적용 가능성·효과, 항공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하는 경우,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의 길이를 줄일 수 있다.

14) 항공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활주로 중심선 및 거리정보를 항공기에 제공하는 시설

5. 방위각시설 개선: 사업추진방식 변경 고려 필요

가. 개 요

'방위각시설 개선' 사업은 공항 방위각시설 기초대를 성토 등을 통해 지하구조물화하거나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교체하는 것으로, 2025년도 추경안은 209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5)]

[2025년도 방위각시설 개선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항행안전시설 구축 및 운영	35,071	44,226	65,126	20,900	47.3
방위각시설 개선	-	-	20,900	20,900	순증

추경안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무안·광주·여수·포항경주·김해·사천 등 6개 공항의 방위각시설 개선을 위해 둔덕 등 기초구조물을 철거하는 성토공사의 설계비와 공사비 등 209억원이 편성되었음.

15) 세부사업: 항행안전시설 운영 및 구축 사업(3631-302)(항공정책실)

나. 검토의견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 과정에서 방위각시설 개선 사업의 공법이 변경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는 2025.1.22.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을 통해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에 대해 ① 성토 및 둔덕 제거를 통해 지하구조물化하는 방법과 ② 경량철골(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교체하는 방안을 병행 검토하여 설계하기로 하였음.

[방위각시설 개선 방안]

(대안 ❶) 둔덕 상단에서부터 활주로쪽 방향으로 일부 성토하여 방위각 시설을 지하化, 경사가 완만한 지형이 되도록 개선

(대안 ❷) 기존 둔덕 제거,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방위각시설 재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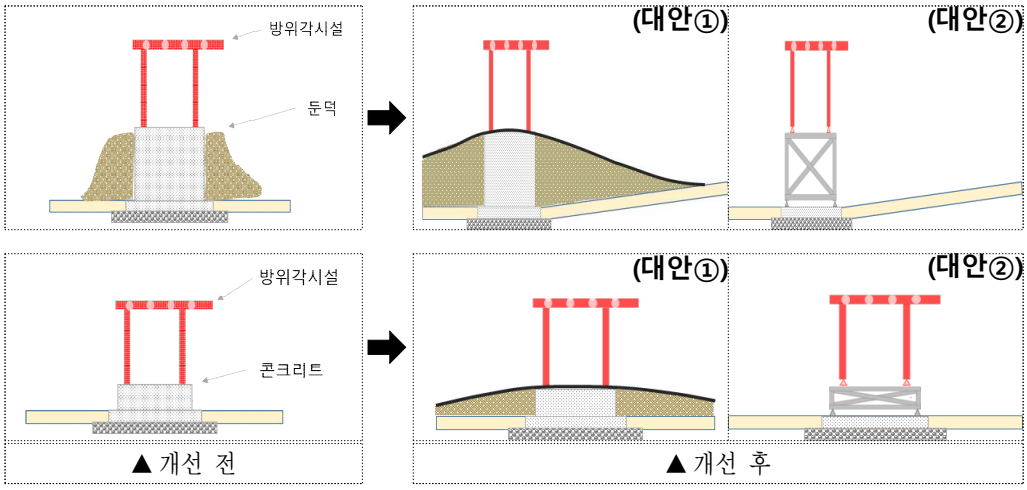

이후 방위각시설 개선 TF(2025.1. 구성)를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경량철골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이 수렴되었음.[16]

['경량 철골로 교체' 의견 제시 사유]

❶ 성토는 시간(야간공사만 가능)·비용 증가, 통신장비 전파환경 변화로 인한 공사기간 및 정밀착륙 중지기간 증가 등 제약사항이 많아 최적 대안으로 보기 어려움 ❷ 경량 철골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시공이 가능하여 정밀착륙 중지기간 최소화 ❸ 성토 시 종단안전구역 재포장에 따른 군작전 영향, 주변 필수시설 이전 등으로 경량 철골 변경 또는 안테나 지지대 연장이 적정하다고 제시(공군본부, 해군 항공사령부)

자료 : 국토교통부

16) 국토교통부 확인 결과, 2025.4.22. 실시설계 착수보고회 후 경량철골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음

[공항별 설계 변경안]

공항		개선방안 (1.22)		TF·전문가 등 의견 제시
무안	—	▪ 경량 철골로 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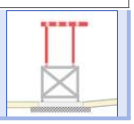	→	▪ **경량 철골**로 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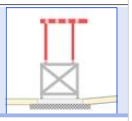
여수	—	▪ 경량 철골로 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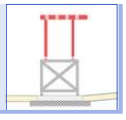	→	▪ **경량 철골**로 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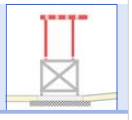
광주	—	▪ 성토 후 지하구조물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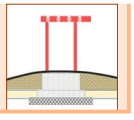	→	▪ **경량 철골**로 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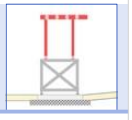
포항경주	—	▪ 성토 후 지하구조물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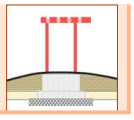	→	▪ **경량 철골**로 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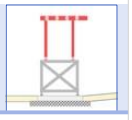
김해	—	▪ 성토 후 지하구조물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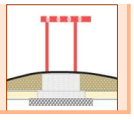	→	▪ **경량 철골**로 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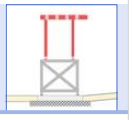
사천	—	▪ 성토 후 지하구조물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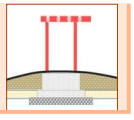	→	▪ **경량 철골**로 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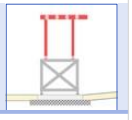
제주	—	▪ 정밀조사 후 경량 철골 또는 EMAS	→	▪ 정밀조사 후 경량 철골 또는 EMAS

따라서 현재 실시설계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경량철골로 교체하는 공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

<세 출>

6. 도로유지보수: 타 사업으로 전용 및 이월·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철저한 집행 관리 필요

가. 개 요

'도로유지보수' 사업은 일반국도의 포장보수, 낙석위험 비탈면 정비, 수해위험지구 및 배수시설 개선 등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보수하는 것으로, 2025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930억원(10.7%) 증액된 9,595억 700만원이 편성되었음.[17]

[2025년도 도로유지보수 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도로유지보수	837,805	866,507	959,507	93,000	10.7

추경안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낙석·산사태 정비 240억원, 균열률이 일정 비율 이상인 노후 구간 도로포장을 위한 도로포장정비 680억원, 도로 비탈면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비탈면 IoT 상시계측시스템 유지관리 등을 위한 도로통합관리시스템 운영사업 10억원 등 총 930억원이 증액 편성됨.

나. 검토의견

도로유지보수사업(총액계상사업)은 연례적으로 타 사업으로 전용,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추경 증액분에 대한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7) 세부사업: 도로유지보수(1733-461)(도로국)

도로유지보수사업의 최근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연례적으로 타 사업으로의 전용이 발생하고 있고 그 규모가 점차 커져 2024년에는 135억 4,200만원이 전용되었음. 또한, 2024년 기준 이월액 509억원, 불용액 33억원이 발생하였음.

[도로유지보수사업 최근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1	664,406	664,406	20,884	△67	685,224	658,319	99.1	96.1	24,553	2,351
2022	773,342	773,342	24,553	△2,726	795,169	747,555	96.7	94.0	44,132	3,482
2023	778,391	778,391	44,132	△6,874	815,649	768,698	98.8	94.2	40,650	6,301
2024	837,805	837,805	40,650	△13,542	864,913	810,715	96.8	93.7	50,893	3,305

자료 : 국토교통부

이번 추경안에 증액 편성된 도로포장정비와 낙석·산사태 정비 사업의 경우에도 연례적으로 타 사업으로의 전용,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고 있음.

[2023년 도로유지보수 내역별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년 이월	2023년					
		본예산	이·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도로유지보수							
ㅇ 도로포장정비	4,406	351,000	△659	354,747	345,345	8,095	1,307
ㅇ 낙석산사태 정비	23,417	190,000	△13,002	200,415	182,646	15,648	2,121

자료 : 국토교통부

[2024년 도로유지보수 내역별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이월	2024년					
		본예산	이·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도로유지보수							
ㅇ 도로포장정비	8,095	405,450	△3,009	410,536	402,111	7,763	662
ㅇ 낙석산사태 정비	15,648	187,300	△24,802	178,146	151,202	26,754	190

자료 : 국토교통부

도로유지보수사업은 총액계상사업[18]으로 내역사업간 우선순위 조정을 통한 자율적인 집행이 가능하므로 이번 추경 증액분에 대해서도 타 사업으로의 전용과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8) 「국가재정법」
제37조(총액계상)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총액으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 출>

7. 특별재생사업: 특별재생계획 수립 기간을 고려하여 신속한 집행 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특별재생사업**' 은 대규모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생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추경안은 8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9]

[2025년도 특별재생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도시재생사업	429,540	472,946	480,946	8,000	1.7
특별재생사업	-	-	8,000	8,000	순증

추경안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대규모 산불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지자체[20] 중 2개를 특별재생지역으로 선정하여 각 40억원씩 착공비를 지원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특별재생지역 지정을 위한 피해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특별재생계획 수립에 약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적극적

19) 세부사업: 도시재생사업(5641 - 301)(국토도시실)

20) 경북 영덕·안동·청송·의성·영양, 경남 산청·하동, 울산 울주

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1]에 따르면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피해규모 확정[22]→ 특별재생지역 지정 요청(지자체)→도시재생 특위 심의 및 지정(국토부)→ 특별재생사업계획 수립(지자체)의 절차를 거쳐야 함.

그런데 현재 피해규모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재생 특위에서 2곳이 의결될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어 도시재생사업 1차년도 평균 연부액(40억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

또한, 과거 유일하게 특별재생지역으로 선정된 포항 흥해읍의 경우 특별재생계획 수립에 6개월(2018년 4월부터 10월까지)이 소요되었고, 2019년 본예산부터 공사비가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도시재생사업은 건축행정절차 지연, 사업초기단계부터 주민의견 수렴에 따른 사업착수 지연, 토지매입 보상협의의 어려움에 따른 설계용역 및 본공사 지연 등으로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부진함.(2024년 실집행률 55.9%, 불용액 233억원)

따라서 이번 추경으로 편성되는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예산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24년 도시재생사업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C)			
'22	806,750	806,750	745,050	745,050	390,178	1,135,227	573,490	745,050	333,134	546,253	15,484	50.5
'23	539,757	539,757	531,704	531,704	542,966	1,074,670	598,842	531,704	255,682	448,148	27,680	55.7
'24	420,732	420,732	418,433	418,433	443,323	861,757	482,305	418,433	189,217	356,115	23,337	55.9

자료 : 국토교통부

2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5조(특별재생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대규모 재난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재생지역은 제1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22) [특별재생지역의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기준](국토부 고시) 단일면적 기준 100만㎡ 이하의 범위 내, 다음 각 호의 피해항목별 피해금액 기준을 모두 충족한 합계 피해금액이 100억원 이상
1. 기반시설 : 20억원 이상 2. 주택 : 60억원 이상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

<지 출>

8. 다가구매입출자·융자: 원활한 공급을 위한 신속 집행 방안 마련 필요 등

가. 개 요

'다가구매입임대 출자·융자' 사업은 도심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으로, 2025년도 변경안은 현계획 대비 1,520억원(4.5%)이 증액된 3조 4,694억 6,400만원이 편성되었음.[23]

[2025년도 다가구매입임대 출자 및 융자 사업 변경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도		2025년도				
	당초	수정	당초	현계획(A)	변경안(B)	증감(B-A)	(B-A)/A
다가구매입 임대(출자)	2,434,322	2,434,322	273,070	273,070	345,070	72,000	26.4
다가구매입 임대(융자)	3,612,000	4,637,000	3,044,394	3,044,394	3,124,394	80,000	2.6
합계	6,046,322	7,071,322	3,317,464	3,317,464	3,469,464	152,000	4.5

주 1) 2024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2) 2025년도 현계획은 2025년 당초 계획액 대비 변경된 계획액

추경안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울산·경북·경남 산불피해 이재민 주거 지원을 위해 신축 매입임대 1,000호(단가 1억 6,000만원)에 대한 출자 720억원과 융자 800억원이 편성되었음.[24]

---

23) 세부사업: 다가구매입임대 출자(1440-402)(주택토지실)
다가구매입임대 융자(1336-401)(주택토지실)

24) 다가구매입임대 재원은 출자 45%, 융자 50%, 입주자 부담 5%로 이루어져 있음

나. 검토의견

첫째, 신축 매입임대 물량을 확보하기 보다는 기존의 건설·매입임대 공가(空家)를 우선 활용하거나 전세임대(융자)로 지원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과거 산불 피해지역 긴급주거지원 사례를 살펴보면, 주로 건설·매입임대 공가(空家)와 전세임대(융자) 방식을 통해 지원하였음.

[산불 피해지역 주거 지원 현황]

(단위: 호)

구분	공급유형	계획(확보)	이주대상	입주
강원산불 (2019년)	계	92	658	165
	공공임대	92	-	18
	전세임대	-	-	147
동해안산불 (2022년)	계	65	276	32
	공공임대	65	-	8
	전세임대	-	-	24
충남·강원·경남 산불 (2023년)	계	2,013	331	89
	공공임대	2,013	-	22
	전세임대	-	-	67
경북·경남·울산 산불 (2025년)	계	944	수요조사 중	44
	공공임대	944	-	44
	전세임대	-	-	-

자료 : 국토교통부

이번 산불 피해지역도 현재 944호의 공가를 확보하였고, 부족한 경우 전세임대를 활용하면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25] 신청 즉시 입주가능할 것으로 보임.

그런데 추경안에 편성된 신축 매입임대의 경우 기존 지원방식과 달리 추가적인 기금 출자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사기간을 감안할 때 전세임대나 공가 입주 방식에 비해 신속한 주거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산불 피해지역 인근에 적정한 주택이 부족하여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공가나 전세임대로 충당할 수 있는 수요를 고려하는 한편[26]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방안 마련이 필요함.

25) 공가의 경우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것이고, 전세임대는 민간이 보유한 주택을 LH가 전세계약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융자방식이므로 기금 회수가 가능함

26) 2019년 강원 산불의 경우 이번 추경안과 같이 신축 매입임대를 지원한 사례가 있으나 15호를 신축한 후 6호 입주하는데 그쳤음

둘째, 이번 추경안에서는 매입임대 1,000호에 공급에 필요한 공사비 전액을 편성하였는데, 신축 매입임대의 경우 매입공고에서 계약체결까지 1~3년이 소요됨에 따라 기존에는 3년으로 분할 편성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신축 매입임대의 경우 매입공고에서 약정계약 체결까지 평균 4개월이 소요되고, 인허가·착공 및 품질점검 단계를 거쳐 준공 이후 매매계약 체결까지 1~3년의 기간이 소요되며, 이후 잔금납부 및 소유권 이전까지는 추가로 1~2개월이 소요됨.

[신축 매입임대 절차]

매입공고	매입신청 접수	매입심의	매입약정	주택건설	매입계약
LH	LH	LH	LH · 사업자	사업자	LH · 사업자
물량 및 매입기준 등	건축예정, 건축중 주택	심사(입지, 주택품질) 및 대상선정	매입약정 체결	설계, 허가, 시공, 준공 등 현장품질 점검	현장점검 (품질검사), 계약, 소유권이전 등

이에 따라 현재 신축 매입임대의 경우 3년으로 분할(34%, 33%. 33%)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그러나 이번 추경안의 경우 신축 매입임대 1,000호 공급을 위한 예산 전액을 단년도에 편성하였는바, 연내 집행을 위한 적극적인 집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9. 재해주택복구자금(융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지원 기준 보완 필요

가. 개 요

'재해주택복구자금(융자)' 은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주택 복구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변경안은 244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27]

[2025년도 재해주택복구자금(융자) 사업 변경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도		2025년도				
	당초	수정	당초	현계획(A)	변경안(B)	증감(B-A)	(B-A)/A
분양주택(융자)	2,015,332	2,015,332	1,471,639	1,471,639	1,496,039	24,400	1.7
재해주택 복구자금(융자)	-	-	-	-	24,400	24,400	순증

주 1) 2024년도 수정은 최종 변경된 계획액
2) 2025년도 현계획은 2025년 당초 계획액 대비 변경된 계획액
3) 재해주택복구자금(융자)는 별도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수요 발생시 지급하고 있음

추경안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산불로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 400명에 대해 1인당 6,100만원(과거 5년 지원실적 평균)이 지원될 것으로 추산하여 244억원이 편성됨.

나. 검토의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산불 화재와 같은 사회재난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에 한하여 국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지원 기준 및 대상을 관련 규정에 맞게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28]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27) 세부사업: 분양주택(융자)(1134-401)(주택토지실)

2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29]에서 위임한 국토교통부 고시[30]를 근거로 일반재난지역의 경우 전파·유실은 8,400만원, 반파는 4,200만원,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전파·유실은 1억 3,600만원, 반파는 6,800만원을 한도로 지원하고 있음.

[재해주택 복구자금(융자) 지원 기준]

구 분	구입자금	기타자금(신축 및 개량)	
특별 재난지역	최대 12,400만원	전파 및 유실	최대 12,400만원 (내진설계 반영 시 최대 13,600만원)
		반파	최대 6,200만원 (내진설계 반영 시 최대 6,800만원)
일반 재난지역	최대 7,200만원	전파 및 유실	최대 7,200만원 (내진설계 반영 시 최대 8,400만원)
		반파	최대 3,600만원 (내진설계 반영 시 최대 4,200만원)

자료 : 국토교통부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31]에 따르면 산불 화재는 '사회재난' 에 해당하는데, 같은 법 제66조[32]에 따르면 사회재난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은 대통령령에 따라

29)「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구분	부담액	부담률
가. 주택 복구		
1) 주택의 반파·전파 또는 유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내진설계를 반영한 경우 (1) 지원 30퍼센트 (2) 융자(주택도시기금) 70퍼센트 나) 내진설계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1) 지원 30퍼센트 (2) 융자(주택도시기금) 60퍼센트 (3) 자기 부담 10퍼센트

30)「자연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국토부 고시)

3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 · 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 · 붕괴 · 폭발 ·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 · 화생방사고 · 환경오염사고 · 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 · 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국비로 지원하고,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사회재난' 이 아닌 '자연재난' 에 관한 복구 기준을 근거로 하여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일반재난지역에 대해서도 주택복구자금 융자 지원을 하고 있음.

현행「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시행령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일반재난지역과 특별재난지역을 구분하여 국비 지원 여부를 상세히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관련 규정에 맞게 지원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

아울러 자연재난과 달리 현행「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33]에 주택 복구자금 융자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지원단가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지원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3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 · 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연재난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3)「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 ① 국가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조한다.

2. 간접지원: 재난피해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지원
   라. 주택 복구자금의 융자